季刊 1979年 3月 13日 登錄
登錄番號 바-565

겨울호
1980

韓國開發研究

◀論 文▶

韓國製造業의 産業組織 — 李奎億
韓國製造業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役割과 生産函數 — 金栽元
韓國産業의 輸入代替對 輸出의 相對的 誘因率 構造 — 南宗鉉
에너지 節約型 輸送體系로의 轉換 — 林浩奎
公的扶助事業의 現況과 改善方向 — 徐相穆
家族規模의 決定要因과 既婚女性의 經濟活動 — 具成烈, 李淑民

◀研究資料▶

自動車關聯 課税政策의 分析 — 金榮奉
國別 外國人 投資規模의 決定要因에 관한 分析 — 具本英
勞動生産性指數 測定上의 問題點 — 朴烜求
韓國 社會福祉서비스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金東炫
家計消費支出의 分布와 不均等 要因分析 — 崔奎雙

KDI
韓國開發研究院

季刊 韓國開發研究

第2卷 第4號 1980. 12

◀ 論 文 ▶

韓國製造業의 產業組織 ……李 奎 億… 2

韓國製造業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役割과 生產函數 ……金 栽 元… 20

韓國產業의 輸入代替對 輸出의 相對的 誘因率構造 …南 宗 鉉… 42

에너지節約型 輸送體系로의 轉換 …林 浩 奎… 59

公的扶助事業의 現況과 改善方向……徐 相 穆… 78

家族規模의 決定要因과 旣婚女性의 經濟活動 ……具 成 烈, 李 淑 民… 95

◀ 研究資料 ▶

自動車關聯 課稅政策의 分析……金 榮 奉…112

國別外國人投資規模의 決定要因에 관한 分析……具 本 英…123

勞動生產性指數 測定上의 問題點……朴 烜 求…131

韓國 社會福祉서비스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金 東 炫…146

家計消費支出의 分布와 不均等要因分析……崔 奎 燮…162

「韓國開發研究」는 우리나라 經濟·社會開發과 관련되는 諸般課題를 理論的 및 實證的으로 다룬 論文과 關聯研究資料를 수록하여 年 4回(3月, 6月, 9月, 12月) 發行한다.

이 研究誌는 本研究院의 研究結果에 立脚한 論文과 研究資料를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紹介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特別招請形式으로 外部人士의 原稿도 수록할 수 있다.

本誌에 실린 論文의 結論과 政策建議를 포함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意見이며 결코 本研究院이나 編輯委員會의 公式意見을 反映하는 것은 아니다. 本誌의 內容은 出處明示 慣例를 지키는 限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다.

編輯委員

朴 宗 淇(委員長)
南 相 祐(幹 事)
南 宗 鉉 李 奎 億
徐 相 穆 李 烘

編輯問議 : 研究調整室(967-2670)
購讀問議 : 圖書室(967-6240)

韓國製造業의 産業組織

李 奎 億

▷ 目 次 ◁

Ⅰ. 序 言
Ⅱ. 製造業部門의 成長
Ⅲ. 企業集中의 趨移
Ⅳ. 財 閥
Ⅴ. 結 言

Ⅰ. 序 言

現代的인 生産技術을 통하여 이룩되는 經濟成長은 일반적으로 企業의 大型化와 市場의 獨占化를 수반하게 마련인데 獨占은 때때로 原初的 資本蓄積의 必要條件으로 간주되어 開發初期에는 이의 形成과 增大를 조장하는 경향이 많지만 經濟의 規模와 發展段階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獨占의 弊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規制하게 되는 것이 資本主義體制의 공통된 歷史的 經驗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過程에 예외는 아니어서 1976年의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로써 價格을 중심으로 하는 獨占의 弊害를 제도적으로 規制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實效가 적었으며 특히 獨占化를 방치하였으므로 企業集中의 문제는 완화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政府는 「獨占規制와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獨占化 자체를 본원적으로 規制하고자 하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배경 아래 1970~77年間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의 産業組織的 變化와 市場構造的 現況을 관찰함으로써 獨占規制에 관한 主眼點을 제공하기로 한다.

사용된 資料는 「鑛工業 統計調査 報告書」의 母資料로서[1] 아래의 논의에서는 이 資料에 입각하여 構造變化를 記述的으로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市場構造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變數에는 出荷·雇傭·附加價値·資産 등이 있지만, 어떤 變數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여도 質的인 결론에는 변화가 없으며[2] 더우기 市場力을 가장 잘 나타내 주

筆者：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1) 本稿는 筆者와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과의 共同硏究(近刊豫定)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2) 이들 變數를 이용한 통계 결과는 筆者가 제공할 수 있음.

는 것은 出荷이므로 아래에서는 주로 出荷面을 다루기로 하고, 産業組織의 構造的 變化要因과 經濟的 效果에 관한 計量的 分析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 일반적으로 市場構造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市場構造가 市場行態와 市場成果를 결정하므로 市場構造가 競爭的인지 여부가 市場經濟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으로, 本稿에서는 이러한 産業組織論의 構造主義(structuralism)[3]를 채택하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각국의 市場構造를 분석한 결과는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몇가지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Hart(1960), Shepherd(1964), Pashigian(1969), Bain(1970), Pryor(1972), White(1974), Prais(1974), Ghosh(1974) 등이 있다[4].

그러나 本稿가 이들과 다른 점은, 우선 本稿에서 이용한 統計는 要約되어 出版된 資料가 아닌 調査原資料이므로 그들보다 훨씬 풍부하고 자세한 結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商品別 事業體別 資料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硏究에서는 試圖될 수 없는 問題, 예컨대, 多工場企業, 財閥, 企業規模隔差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表 1〉 製造業部門의 雇傭·出荷額·事業體數의 趨移

(단위 : 雇傭=千名, 出荷額=經常 10億원 事業體數=千個)

	雇傭	出荷額	事業體數
1970	861	1,307	24.1
1974	1,298	5,473	22.6
1977	1,920	15,207	26.7

3) 이러한 입장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은 Mason(1959).

4) 市場構造와 市場成果와의 關係 및 市場構造의 決定要因에 관한 計量的 分析結果는 市場構造의 變化를 논의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데 이에 관한 文獻은 拙著(1977)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음.

5) 本稿의 모든 統計는 5人 이상 雇傭事業體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유의해야 함.

Ⅱ. 製造業部門의 成長

1. 製造業 全體

1960年代의 급속한 經濟成長은 1970年代에도 계속되어 國民總生産은 1970~77年의 기간중 年平均 9.8%의 實質成長率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주로 製造業의 성장에 基因하는 것으로서 이 기간중 製造業部門은 年平均 18%로 성장하여 國民總生産 構成比가 1970年의 17.9%에서 1977年의 29.8%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製造業部門의 産業組織도 현저하게 변화하였는데 우선 事業體數·雇傭·出荷額의 세 가지 構造的 側面에서 검토하여 본다[5].

〈表 1〉에서 보면 製造業部門의 雇傭은 2.2倍 증가하여 總雇傭中 占有率이 13.2%에서 21.6%로 신장하였다. 또한 이 기간중 出荷額은 經常價格으로 11.7倍나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不變價格으로도 3.2倍에 해당하며, 반면 事業體數에 있어서는 불과 11%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1970年 이후 製造業의 雇傭과 出荷는 工業化政策에 따라 다른 産業部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事業體數는 대체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製造業의 성장은 事業體規模의 大型化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事業體 規模別 趨勢에 있어서는 〈表 2〉에서 小規模業體(5~49名 雇傭)의 相對的 衰退를

지적할 수 있다. 즉, 小規模業體數의 全製造業體數 構成比는 1970年의 90.1%에서 1977年의 78.0%로 크게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雇傭과 出荷額에 대한 이들의 構成比도 각각 30.3%에서 16.1%, 14.6%에서 8.3%로 현저하게 저하하였다. 반면 大規模業體는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名 이상을 雇傭하는 事業體를 대상으로 하면, 事業體數, 雇傭, 出荷額 構成比가 각각 3.0%, 51.1%, 69.5%에서 6.6%, 62.4%, 76.4%로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앞서 지적한 事業體規模의 大型化는 小規模業體의 쇠퇴와 大規模業體의 生成으로 특징지을 수 있지만, 〈表 3〉에서 보면 모든 規模에 있어서 業體의 平均規模가 확대된 것을 알게 된다. 특히 小規模業體는 絶對數가 감소하였지만 殘存業體는 모든 指標에 걸쳐 현저한 成長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高度成長過程에서 새로운 大企業의 등장과 旣存企業의 大型化가 진행되어 왔지만 成長에서 낙오된 小企業은 淘汰된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2. 小分類 產業

위에서 槪觀한 製造業部門의 構造的 變化를 〈附表 1〉에 요약된 小分類 產業基準으로 좀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製造業體數의 產業別 分布를 보면, 1970年의 5大產業은 食料品, 衣服, 纖維, 其他非金屬鑛物製品, 飮料의 순서로 전체의 53.5%를 차지하였으나 1977年에는 纖維, 食料品, 衣服, 組立金屬製品, 機械가 47.9%를 占有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組立金屬製品과 機械業體數의 격증을 볼 수 있다. 業體數 變化에 있어서는 食料品, 飮料品, 衣服, 其他鑛物製品 등 1970年의 9個 大宗產業에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小規模 業體의 淘汰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며, 반면 業體數가 증가한 나머지 17個 產業에서 增加分이 큰 것은 纖維, 工業用化學製品, 其他 플라스틱製品, 通信機械 등 重化學系統이 대부분이다.

〈表 2〉 事業體規模別 事業體數·雇傭·出荷額 構成比

(단위 : %)

	5~49名			50~199名			200~499名			500名 이상		
	事業體數	雇傭	出荷	事業體數	雇傭	出荷	事業體數	雇傭	出荷	事業體數	雇傭	出荷
1970	90.1	30.3	14.6	6.9	18.7	15.9	1.9	16.1	15.9	1.1	35.0	53.6
1974	83.7	18.2	8.6	11.1	19.0	15.1	3.1	17.9	21.3	1.9	44.9	55.0
1977	78.0	16.1	8.3	15.5	21.5	15.4	4.4	18.4	19.9	2.2	44.0	56.5

〈表 3〉 事業體 規模別 平均指標

(단위 : 雇傭=名, 出荷=經常價格 100萬원)

	5~49名		50~199名		200~499名		500名 以上		全 製 造 業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事業體當 雇傭	12.0	14.8	96.6	99.6	304.8	304.7	1,185.5	1,438.5	35.7	71.9
事業體當 出荷	8.8	60.3	124.9	565.2	457.1	2,612.5	2,758.1	14,624.1	54.2	569.6
雇傭人當 出荷	0.7	4.1	1.3	5.7	1.5	8.6	2.3	10.2	1.5	7.9

雇傭에 있어서는 纖維의 占有率이 20.1%로서 압도적 위치를 견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衣服, 通信機械, 食料品, 고무製品과 함께 5大 勞動集約的 産業이 製造業雇傭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雇傭變化를 보면 飮料品을 예외로 모든 産業에 있어서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衣服, 고무製品, 通信機械 등 12個 産業에서는 占有率도 동시에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와 달리 大規模業體의 占有率이 減退한 産業은 工業用化學製品, 石油精製, 其他 플라스틱製品, 유리 및 유리製品, 第1次非鐵金屬 등 9個에 달하는데 이들 産業의 業體數 變化의 내용과 결부하여 볼 때 中規模 내지 準大規模業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出荷額 比重이 큰 5大 産業은 1970年에 纖維, 食料品, 石油精製, 飮料品, 輸送裝備로 전체의 43.6%에 해당하였으며 1977年에는 飮料品 대신 通信機械가 4倍로 상승하였을 뿐 같은 産業群이 46.5%의 다소 증가된 占有率을 갖고 있다. 出荷占有率이 증가 내지 不變인 産業은 通信機械, 輸送裝備, 第1次鐵鋼, 石油精製 등 重化學系統을 위시한 14個이며, 감소한 産業은 飮料品, 食料品, 其他鑛物製品, 製材 및 木材品 등 12個이다.

이상의 결과는 重化學産業의 성장이 70年代 産業構造變化의 특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또한 製造業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小企業의 상대적 쇠퇴와 企業規模의 확대를 통하여 달성되었다고 하지만 70年代 前半과 비교할 때[6] 70年代 後半에는 中規模 및 準大規模企業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결국 重化學業體가 대체로 勞動節約型 技術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雇傭面에서는 大企業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70年代 後半에서는 企業集中의 深化趨勢가 부분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6) 拙著(1977), pp.75~76.

Ⅲ. 企業集中의 趨移

1. 總括集中率

總括集中率(overall concentration ratio)은 産業의 구별없이 全製造業部門에서 一定數의 上位業體群이 갖는 占有率을 나타낸다. 〈表 4〉에서 보면 1970年의 雇傭 및 出荷基準의 上位 50大 事業體 總括集中率은 15.4%와 33.8%이며, 1977年에는 각각 14.6%와 29.4%로서 雇傭보다는 出荷額에 있어서 業體間의 不均等度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또한 두 基準의 集中率이 모두 저하한 것은 이 期間中에 中規模 및 準大規模事業體의 비중이 증대하였다는 사실에 基因한다.

그러나 事業體 總數를 감안하면, 예컨대, 上位 50大出荷業體를 기준으로 할 때, 1970年에는 全製造業體의 0.21%가 總出荷額의 33.8%를 차지하였고 1977年에는 全製造業體의 0.18%가 29.4%를 占有하였으므로 극소수의

〈表 4〉 總括 集中率의 趨勢

(단위 : %)

	雇傭基準		出荷基準	
	50大	100大	50大	100大
1970	15.4	22.8	33.8	44.6
1977	14.6	20.7	29.4	38.9

事業體에 經濟力이 편중되어 있다는 현상에는 별다른 변함이 없다. 더우기 多工場企業(multiplant firm)을 고려하여 總括集中率을 企業體 基準으로 산출하면, 集中率은 일층 높아지게 되어 1977年 雇傭基準 50大 및 100大 企業의 集中率은 16.9%와 23.9%, 出荷額基準으로는 각각 35.0%와 44.9%가 된다. 또한 上位業體群의 상당수가 財閥의 系列業體이므로 實質的인 經濟力의 集中은 集中率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현저하게 되는데, 예로써, 30大財閥[7]의 系列企業, 其他 民間企業, 國營企業으로 구분한다면, 〈表 5〉에서처럼 財閥의 系列企業이 압도적인 위치를 保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各 企業體의 資本集約度, 生產性, 市場支配力에 따라 雇傭基準에 의한 順位와 出荷基準에 의한 順位가 다르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두 가지 基準에서 100位 이내에 들어가는 企業體數는 1977年에 纖維 14個, 電氣機械 8個, 運送裝備 7個, 食料品 5個 등 58個로서 이들이 上位 100大雇傭企業과 出荷企業의 雇傭 및 出荷額에서 갖는 比重은 각각 72.4%와 59.3%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產業構造의 변모에 따라 1970年과 1977年의 上位 業體群의 產業別 構成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出荷 100大 事業體를 대상으로 하여 小分類 產業別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1970年에는 食料品(18), 纖維(17), 工業用化學製品(7), 飮料品(6), 고무製品(6), 其他非金屬鑛物製品(6), 第1次鐵鋼(6)의 순서였으나 1977年에는 纖維(14), 食料品(13), 電氣機械(11), 工業用化學製品(9), 第1次鐵鋼(9), 輸送裝備(9)의 순서로 바뀌었으며, 특히 종이 및 유리는 1977年의 100大 出荷事業體에서 탈락한 반면, 衣服, 가죽신, 機械 등에서 새로운 大規模 出荷事業體가 배출되었다.

또한 100大 事業體 總出荷額의 產業別 構成比에 있어서는, 食料品, 飮料品, 담배, 纖維의 占有率이 상당히 저하한 반면, 石油精製, 第1次鐵鋼, 電氣機械, 輸送裝備의 占有率이 크게 증가하여 이제까지 지적한 이 期間의 工業化 樣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表 5〉 上位 100大 企業의 性格

	雇傭基準		出荷額基準	
	50大	100大	50大	100大
30大財閥系列企業	28(63.9)	47(56.3)	34(61.7)	53(56.8)
其他民間企業	20(31.0)	50(39.5)	12(11.3)	43(22.1)
國營企業	2 (5.0)	3 (4.2)	4(27.0)	4(21.1)

註 : 괄호안 數字는 50大 및 100大 企業의 雇傭 또는 出荷額中에서 各區分別 企業群의 占有率.

2. 產業別 集中率

總括集中率은 經濟力의 集中을 측정함에 비하여 產業別集中率(industrial concentration ratio)은 해당 產業의 市場構造를 나타낸다[8]. 產業別 集中率은 어느 한 視點에서 관찰하기보다는 두 視點間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細細分類產業基準으로 1970年과 1977年을 對比하되 兩年度의 產業分類를 1970年 基準으로 조정하며 兩年度間에 對應關係가 없는 31個 產業과 其他類 產業에서 產業性格이 크게 변모하여 비교의 의의가 없는 28個 產業을 제외한 213個 產業을 대상으로 한

7) 1977年度 製造業部門의 出荷額 順位로 결정하였음.
8) 產業別 集中率은 上位 3個業體 集中率(CR_3)을 이용함.

다. 제외된 59個의 産業은 數的 比重은 크지만, 이들이 製造業의 出荷와 雇傭에서 차지하는 占有率은 각각 1970年에 4%와 12%, 1977年에는 5%와 10%에 불과하므로 趨勢分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表 6〉에 要約된 出荷集中率 階層別 變化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高集中産業의 저하와 低集中 産業의 상승을 특징으로 指摘할 수 있다. 즉, 出荷額基準 集中率이 60% 이상되는 産業數가 1970年의 105個에서 1977年의 94個로 감소되었으며 이들의 出荷額占有率도 52.8%에서 41.1%로 저하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高集中産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出荷額占有率이 여전히 40%를 초과한다는 것은 獨寡占 問題의 중요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거꾸로 産業別集中率의 變化値를 조사하여 보면, 1970年의 集中率보다 5%「포인트」 이내로 증가한 것이 21個, 5%「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 64個이며, 5%「포인트」 이내로 감소한 것은 30個, 5%「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은 98個로서, 결국 5%「포인트」 이내에서 변화한 産業은 51個임에 비하여 增減의 絶對値가 이보다 큰 産業은 162個에 달하고 있으므로, 1970年代의 급격한 産業構造의 변화에 따라 각 産業의 市場構造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表 6〉 出荷集中率 階層別 産業數 및 出荷額占有率分布

集中率(%)	産業數		出荷額占有率	
	1970	1977	1970	1977
80～100	58	49	24.3	27.5
60～ 80⁻	47	45	28.5	13.6
40～ 60⁻	56	64	22.4	31.0
20～ 40⁻	39	41	16.0	18.6
0～ 20⁻	13	14	8.8	9.3

3. 總平均集中率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은 다양한 産業別 集中率變化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平均集中率(average concentration ratio)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平均으로는 單純平均과 加重平均의 두 가지를 채택하며, 産業의 형태에 따른 차이를 檢出하기 위하여 對象産業을 生産財와 消費財産業으로 나누고 後者는 다시 耐久財와 非耐久財로 양분하였다[9].

〈表 7〉 加重平均 및 單純平均 出荷集中率

産業形態	加重平均出荷集中率										單純平均出荷集中率		
	$CR_3^{S,70}<60\%$			$CR_3^{S,70}\geq60\%$			全産業						
	産業數	1970	1977	産業數	1970	1977	産業數	1970	1977	△	1970	1977	△
生産財産業	57	37.1	42.8	61	86.2	71.4	118	62.7	59.6	−3.1	63.5	57.7	−5.8
消費財産業	51	35.4	39.6	44	81.8	74.4	95	53.2	52.8	−0.4	59.2	58.4	−0.8
耐久財	29	36.0	39.8	20	83.0	53.0	49	45.3	43.5	−1.8	58.8	54.0	−4.8
非耐久財	22	34.9	39.2	24	81.5	87.1	46	57.8	62.6	4.8	59.6	63.3	3.7
全産業	108	36.2	41.2	105	84.6	72.2	213	58.5	57.0	−1.5	61.6	58.0	−3.6

註：加重値는 各産業의 年度別 出荷額.

9) 이러한 分類에는 統一된 基準이 없으므로 筆者는 『産業聯關分析表』(韓國銀行)와 『産業生産年報』(經濟企劃院)의 方法을 중심으로 分類하였음.

이에 따라 〈表 7〉에 收錄된 결과를 보면, 먼저 加重平均集中率과 單純平均集中率이 各 分類別로 같은 趨勢를 나타내므로 產業別加重値의 차이로 인한 攪亂效果가 적다는 것을 안다. 다음으로 1970年의 集中率이 60% 미만인 低集中產業의 平均集中率은 상승하고 당시의 高集中產業의 集中率은 일반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앞서 본 〈表 6〉의 결과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生產財 產業의 平均集中率이 감소한 것은 1970年代 後半에 본격화한 重化學政策에 따라 새로운 業體가 다수 등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消費財 產業의 平均集中率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므로 이 部門은 生產財 產業에 비하여 成熟段階에 있는 安定的 市場構造를 유지한다고 보겠지만, 이를 세분하면, 耐久性 消費財 產業은 統計的 有意性은 적지만 약간의 集中率 저하를 나타낸 반면, 非耐久性 消費財 產業은 集中率이 有意性있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을 모색한다면, 耐久性 消費財는 衣服·家電製品 등 비교적 成熟度가 높고 輸出指向的인 產業임에 비하여 非耐久性 消費財는 飮·食料品처럼 주로 內需指向的이며 商品多樣化와 廣告集約度가 높아 上位業體群의 市場支配力을 증대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4. 非對稱度

上位 3個企業集中率(CR_3)은 企業間의 規模差異를 무시하므로 集中의 高低는 측정할 수 있지만 같은 수준의 集中率에서도 上位企業間의 相對的 規模가 다름에 따라 市場構造의 성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포착할 수 없다. 이러한 上位企業間의 規模差異를 하나의 指數로 표시하기 위하여 Shepherd(1960)는 不均等指數(index of disparity)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D=\frac{\sum_{i=1}^{n}|S_i-\bar{S}|/n}{0.1\bar{S}} \quad \cdots\cdots(1)$$

여기서, n : 考慮對象의 上位企業數

S_i : i 번째 企業의 市場占有率

$\bar{S}$: n 個企業의 單純平均 市場占有率

그러나 이 指數는 직감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우며, 더우기 上位 3個企業만을 대상으로 하면 CR_3를 알고 있을 때 上位 2個企業間의 規模差異만을 파악하여도 第3位企業의 相對

〈表 8〉 出荷集中率 階層別 上位 2大企業體의 出荷非對稱度

S_1/S_2 \ CR_3^S	0~20⁻%		20~40⁻%		40~60⁻%		60~80⁻%		80~100%		計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0~1.5⁻	7	11	19	25	21	25	14	12	10	11	71	84
1.5~2.0⁻	1	1	9	5	12	13	11	6	10	10	43	35
2.0~2.5⁻	2	2	6	3	7	3	4	9	6	1	25	18
2.5~3.0⁻			6	1	7	6	3	2	5	3	15	12
3.0~4.0⁻			1	2	3	5	4	2	2	2	10	11
4.0~5.0⁻			2	1	3	4	2	7	4	3	11	15
5.0⁺			1	2	3	6	8	3	17	18	29	29
計	10	14	38	39	56	62	46	41	54	48	204	204

註 : 比較對象產業은 213個產業中 兩年度에 完全獨占이므로 S_1/S_2가 定義될 수 없는 9個產業을 제외한 209個임.

的 規模가 판명되므로, 우리는 1位企業의 2位企業에 대한 規模倍數를 非對稱度(degree of asymmetry)로서 채택하며, 이를 1970年과 1977年의 出荷額集中率 階層別로 구한 결과는 〈表 8〉에 要約되어 있다.

이 表를 검토하여 보면, 集中率이 낮을수록 上位 2大企業間의 規模隔差가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S_1/S_2가 1.5 미만인 產業數의 비중은 集中率이 높을수록 저하하여, 예컨대, 1977年을 보면 CR_3^s가 20% 미만인 14個 產業中 11個에 있어서 S_1/S_2가 1.5 미만인 반면, CR_3^s가 80% 이상되는 48個 產業에서는 S_1/S_2가 1.5 미만인 것이 11個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集中率이 높을수록 S_1/S_2가 상승하는 경향을 가져 非對稱度가 5.0 이상인 產業 29個중에서 18個의 CR_3^s는 80% 이상이다.

이 결과가 함축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高集中產業에서는 壓倒的 市場位置를 갖는 企業이 존재하므로 準獨占 내지 極高位 寡占의 構造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비록 集中率이 높더라도 上位企業間의 市場位置가 대등하다면 市場構造上으로는 競爭의 潛在的 可能性이 많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可能性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兩年度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上位 2大企業間의 規模隔差가 축소되는 경향을 관찰하게 되는바, S_1/S_2가 1.5 미만인 產業數는 71個에서 84個로 증가한 일면 S_1/S_2가 1.5 이상 3.0 미만인 產業數는 83個에서 65個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上位 2大企業間의 競爭構造가 다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企業規模와 規模의 經濟와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條件이 같다고 할 때, 第1位企業의 第2位企業에 대한 出荷額 倍數가 雇傭倍數보다 적다면, 第1位企業이 規模의 經濟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며 生產의 效率性을 거두지 못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母資料를 보면 이러한 產業이 1970年에 91個, 1977年에 75個에 달하고 있다. 觀點을 바꾸어 第1位 出荷企業이 동시에 第1位 雇傭企業인 產業은 1977年에 130個이며, 이중에서 第2位 出荷企業이 第2位 雇傭企業인 產業은 67個에 불과하며 더우기 出荷額倍數가 雇傭倍數보다 큰 產業은 31個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第1位 雇傭企業이 年度中의 新設企業이거나 또는 나머지 企業에 비하여 資本集約度가 낮으며 勞動生產性이 우월하지 못하다는 등과 같은 現實的 可能性을 고려하더라도 이의 결과는 「規模의 經濟」라는 假說을 支持하지는 않는다. 또한 上位 2大企業間의 出荷와 雇傭의 순위를 무시하더라도 2大 出荷企業과 2大 雇傭企業이 같은 產業은 92個밖에 되지 않으므로 좀더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아도 企業規模(雇傭基準)가 클수록 規模의 經濟가 실현된다는 命題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5. 商品市場構造

市場構造를 理論的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論爭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10], 우리는 獨占, 複占, 寡占, 競爭으로 분류하며 이와 같은 分

10) 獨占的 競爭(monopolistic competition)이 獨立的인 市場類型으로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Chicage 學派와 Chamberlin 學派 사이의 論爭이 있지만 本稿에서는 이를 무시함. 이에 관한 代表的인 論議는 Archibald(1961, 1963)과 Stigler(1963) 참조.

類基準을 설정함에 있어서 需要나 供給의 彈力性보다도 市場內 企業의 相對的規模를 고려하는 입장을 취한다. 企業體數도 市場構造를 결정하는 중요한 要因이지만, 企業體數가 많더라도 最大企業이 壓倒的 市場位置를 보유하는 반면 다수의 餘他企業들이 限界的 位置밖에 유지하지 못한다면 市場은 사실상 有效獨占狀態가 되므로 企業體數는 上位企業과 餘他企業間의 相對的 規模를 결정한다는 간접적 측면에서만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外國에서 사용되는 分類方法과 달리[11], 우리가 獨占과 複占을 따로이 고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市場規模가 협소하여 실질적으로 1個 내지 2個의 企業만을 수용할 수 있는 商品市場이 많으므로 이들을 전형적인 寡占과 함께 묶는다면 分類 자체의 의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시도하는 市場分類는 構造的 性格에 중점을 두므로 上位企業群의 市場占有率과 上位企業間의 規模差異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확한 區分點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때때로 筆者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 恣意性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一般的 分類基準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獨占 : $CR_1^S \geq 80\%$, $S_1/S_2 \geq 10.0$

複占 : $CR_2^S \geq 80\%$, $S_1/S_2 < 5.0$, $S_3 < 5.0\%$

寡占 : $CR_3^S \geq 60\%$(獨占과 複占은 제외)

競爭 : $CR_3^S < 60\%$

이러한 基準을 중심으로 1970年과 1977年의 市場構造를 분류한 결과는 〈表 9〉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주요한 특징으로 抽出할 수 있는 것은 各類型別 商品數의 構成比에 有意性 있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市場構造의 競爭度가 높을수록 商品數의 構成比보다 出荷額의 構成比가 커진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예로써, 1977年을 調査한다면, 獨占商品의 數 및 出荷額構成比는 각각 31.6%와 16.3%인

〈表 9〉 商品市場構造

市場類型 / 年度	獨占		複占		寡占		競爭		計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1970	442 (29.6)	110 (8.7)	279 (18.7)	204 (16.3)	495 (33.2)	439 (35.1)	276 (18.5)	498 (39.9)	1,492 (100.0)	1,252 (100.0)
1977	667 (31.6)	2,264 (16.3)	425 (20.1)	1,536 (11.0)	674 (32.0)	4,716 (33.9)	343 (16.3)	5,404 (38.8)	2,109 (100.0)	13,920 (100.0)
0～ 10億원⁻	477 (43.3)	83 (28.2)	274 (24.9)	75 (25.4)	303 (27.5)	115 (39.0)	48 (4.4)	22 (7.5)	1,102 (100.0)	295 (100.0)
10～ 50億원⁻	107 (19.7)	241 (18.2)	89 (16.2)	199 (14.9)	228 (41.6)	565 (42.3)	124 (22.6)	332 (24.8)	548 (100.0)	1,337 (100.0)
50～100億원⁻	43 (24.6)	306 (27.3)	21 (12.1)	144 (12.9)	54 (30.9)	239 (21.4)	57 (32.6)	430 (48.4)	175 (100.0)	1,119 (100.0)
100億원⁺	40 (14.1)	1,634 (14.6)	41 (14.4)	1,118 (10.0)	89 (31.3)	3,797 (34.0)	114 (40.1)	4,620 (41.4)	284 (100.0)	11,169 (100.0)

註 : 1) 出荷額 單位는 經常 10億원.
2) 괄호안 數字는 占有率(%).
3) 1977年 以下의 內譯은 同年度의 市場類型을 出荷額區分別로 再分類한 것임.

11) 拙著(1977), p.87～89.

것에 반하여 競爭商品의 해당되는 構成比는 각각 16.3%와 38.8%가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競爭商品의 市場規模가 크다는 것을 뜻하는데, 1977年에 市場規模가 10億원 미만인 1,102個의 商品 가운데 獨占 및 複占商品數는 68.1%이며 競爭商品數는 4.4%에 불과하지만, 거꾸로 市場規模가 100億원 이상되는 284個 商品에 있어서는 獨占 및 複占商品이 28.5%이고 競爭商品이 40.1%에 달한다는 사실로써 例示되고 있다.

이것은 理論的으로 볼 때 市場規模가 적으면 獨占과 같은 高集中型 構造를 갖게 되지만 市場規模가 클수록 競爭이 용이하다는 一般的 結論과 부합한다. 물론 競爭型 市場에서는 定義上 企業數가 많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市場規模가 크겠지만 우리의 市場分類에서는 企業體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해당되지 않으며, 더우기 論理的으로도 市場構造가 市場規模를 결정한다는 逆關係는 타당성이 적다.

1977年의 商品數는 1970年에 비하여 617個가 증가하였는데, 各類型別 增分을 보면, 獨占 225個, 複占 146個, 寡占 179個, 競爭 67個로서, 이중에는 商品의 分割分類에 따른 것도 있지만 대체로 新規商品일 경우에는 원초적으로 獨占이 형성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表에서 보면 獨寡占商品이 總出荷額의 61.2%를 점유하지만 商品數에 있어서는 83.7%에 해당하므로 獨寡占이 문제로 대두되는 점은 規模에도 있지만 특히 個別商品市場에서 惹起시키는 價格構造의 歪曲化 등 非效率性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7年의 出荷額 100大商品은 〈附表 2〉와 같으며 이들이 製造業 總出荷額에서 점유하는 構成比는 55.9%에 이르고 있다. 그 內譯을 보면 競爭商品이 38個로서 100大商品 總出荷額의 37.9%를 점유하여 市場規模가 클수록 競爭商品일 경우가 많다는 앞의 결론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 表에서 보면, 競爭商品의 15個, 寡占商品의 16個, 複占商品의 13個, 獨占商品의 8個가 生產財이므로 集中率이 높을수록 生產財가 많은 것을 알게 된다.

Ⅳ. 財 閥

1. 財閥의 規模

앞서 指摘한 바 있듯이, 여러 개의 企業이 동일한 所有關係 아래서 經營되는 財閥이 있게 되면, 실제의 經濟力 集中은 단순한 集中率이 표시하는 것보다 높게 된다. 財閥의 生成過程과 그것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資本主義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12] 市場秩序的 側面에서도 여러가지 난점을 제기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13],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財閥의 構造的 現況만을 調査하기로 한다. 여기서 對象으로 하는 30大財閥은 1977年의 製造業部門 出荷額 順位로 選定하였으므로 다른 部門의 財閥은 제외되었으며, 또한 이들의 非製造業部門 活動도 고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2) 이에 관한 최근의 一般的 論議는 Leff(1979)를 참조. 司空壹(1980)은 우리나라의 46大 財閥에 의한 經濟力의 集中과 經濟成長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지만, 本稿에서는 財閥의 生成過程보다도 商品市場에 있어서 財閥들이 갖는 市場力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좀 더 微視的인 接近方法을 채택함.

13) 筆者의 近刊豫定, 『獨寡占規制와 公正去來政策』.

우리나라의 財閥은 과거에 政府의 經濟成長政策에 힘입어 그 規模를 확장시켜 왔는데 이들의 全産業分野에 걸친 企業結合의 추이는 〈表 10〉과 같다[14]. 즉, 30大財閥은 지난 5年間 系列企業數를 2倍로 증가시킨 결과 현재 財閥當 平均 20個의 系列企業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財閥問題의 심각성을 즉시 간파할 수 있다.

製造業部門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30大財閥은 337個의 企業(事業體로는 497個)을 보유하여 出荷額, 附加價値, 雇傭의 각각 34.1%, 31.6% 및 20.5%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의한 經濟支配力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上位 5大財閥은 압도적 위치를 가져 出荷額, 附加價値, 雇傭에서 각각 15.7%, 14.5%, 9.1%를 차지하고 있다.

〈表 10〉 30大財閥의 全産業部門 企業結合

1974年 系列 企業數	1975~79年間 企業結合				財閥內 合併, 賣却	1980年 系列 企業數
	新設	引受	合併	合作		
304	152	173	13	17	38	608

2. 財閥의 多邊化

財閥은 多數企業의 複合體(conglomerate)이므로 系列企業의 數와 産業性格에 따라 財閥의 多邊化(diversification)한 정도를 側定할 수 있다. 多邊化를 側定하는 指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는 아래의 네 가지가 있다.

① 出荷 商品數 또는 參與 産業數 : 이것은 絶對數에 의존하므로 商品間 또는 産業間의 相對的 比重을 무시하게 된다.

② 主産業特化度의 逆數(reciprocal of industry specialization: *RIS*): 이 指數도 앞의 것과 같이 財閥活動의 規模分布를 고려할 수 없는 결점을 갖고 있다.

③ Herfindahl 指數의 變型(H^*) : Herfindahl 指數(H)를 多邊化 指數로 활용하면 參與産業間의 相對的 規模가 參與産業數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參與産業의 規模分布를 파악하게 하는 利點이 있다[15]. 그러나 이 指數는 規模分布가 균등할수록 그 값이 적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指數値가 클수록 多邊化 程度가 큰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H^*=1-H \quad \cdots\cdots(2)$$

로 변형하여 이용한다.

④ 重力指數(gravity index: G) : 이것은 H 指數의 屬性과 財閥의 參與産業數間의 非類似性을 결합하려는 것으로서, H 指數를 변형하여 관계가 먼 産業일수록 加重値가 크게끔 調整한 것이다[16]. 즉, 財閥總出荷額中 産業 i의 占有率을 Z_i, 産業 i와 産業 j의 거리를 d_{ij}로 하면, 重力指數는

$$G=\sum_{i=1}^{n}\left[Z_i\sum_{j=1}^{n}d_{ij}(Z_j)\right] \quad \cdots\cdots(3)$$

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 指數가 사용하는 加

14) 〈表 10〉의 資料는 本硏究院의 李在享, 徐鎭敎, 姜聲潤 세 硏究員이 調査·整理한 것임.

15) H 指數는 원래 市場構造指數로서 고안된 것인데, n 個의 企業이 있는 市場에서 i 번째 企業의 市場占有率을 S_i로 되면,

$$H=\sum_{i=1}^{n}S_i^2$$

16) Honeycutt-Zimmerman(1976)에 의하면 加重値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결정된다.

産業 i:	31111	31111	31111	31111	31111
産業 j:	31111	3111x	311xx	31xxx	3$xxxx$
加重値(d_{ij}):	0	1	2	3	4

重値는 産業分類에 의존하므로 分類體系에 내재된 난점이 그대로 移延되어 있다.

이상의 指數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30大財閥의 多邊化를 특정하면, 먼저 이들은 平均的으로 18個의 細細分類産業에 참여하여 32個의 商品을 出荷하므로 일견 多邊化 程度가 높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參與産業間의 相對的 規模를 고려하는 나머지 3個 指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이들 指數는 각각 屬性이 다르므로 각 指數가 결정하는 多邊化度의 순위가 다르게 마련인데 〈表 11〉에 정리된 指數別 財閥의 多邊化 順位에는 큰 차이가 없다[17].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의 모든 財閥에 있어서 主産業의 比重이 크고 副産業과의 關聯性이 크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RIS*를 비교하면 명백하게 된다.

30大財閥의 *RIS*를 산출한 결과, 單純平均은 1.66, 標準偏差는 0.58이며, 指數의 分布에 있어서는 *RIS*가 1.5 미만인 財閥이 14個, 1.5 이상 2.0 미만이 10個, 2.0 이상 3.0 미만이 5個, 3.0 이상은 1個이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財閥은 主宗産業의 비중이 절대적인 一邊的(monolithic) 複合企業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으며, 따라서 財閥規模의 원천은 다수의 産業에 참여한 것에 있지 않고 主宗産業의 規模와 市場占有率에 있다고 하겠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多邊化度와 財閥規模와는 相關關係가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본 順位間의 相關係數(rank correlation coefficient)는 0.32에 불과하다. 이 결과에서 우리가 誘導할 수 있는 假說은, 多邊化度가 상대적으로 높은 下位財閥은 參與産業의 성장에 따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多邊化度가 낮은 中位나 上位財閥들에 비하여 規模擴張이 빠를 것이므로 財閥間의 相對的 規模에는 앞으로 변화가 클 것이라는 것이다.

〈表 11〉 30大財閥의 多邊化 順位

多邊化指數	多邊化順位
RIS	3, 5, 20, 4, 16, 18, 14, 1, 21, 10 11, 29, 2, 9, 26, 25, 28, 17, 15, 27 6, 30, 7, 24, 8, 12, 19, 23, 13, 22
*H**	3, 5, 20, 4, 16, 18, 14, 1, 10, 11 21, 9, 29, 2, 26, 28, 25, 15, 17, 27 6, 30, 7, 24, 8, 12, 19, 23, 13, 22
G	3, 4, 20, 5, 14, 10, 18, 11, 21, 1 28, 16, 9, 15, 29, 2, 26, 17, 27, 25 7, 24, 30, 8, 6, 23, 13, 12, 19, 22

註 : 30大 財閥은 財閥의 固有名稱 대신에 財閥의 規模順位로서 表記함. 따라서 예컨대 "3"으로 指稱된 財閥의 경우는 出荷額規模 3位의 財閥이 多邊化 順位는 1位라는 것을 나타냄.

17) *RIS*는 小分類, *H**와 *G*는 細細分類基準으로 算出함.

3. 財閥의 參與産業과 市場力

30大財閥의 産業參與度를 小分類産業基準으로 정리하면 〈附表 3〉과 같다. 總 411個의 細細分類産業中 217個의 産業에 참여하는데, 小分類産業別로 參與産業數가 많은 것은 纖維, 電氣機械, 食料品, 機械 등이며, 商品基準으로는 2,118個의 製造業 商品 가운데 578個의 市場에 出荷하며, 出荷商品數가 많은 産業은 電氣機械, 纖維, 機械, 第1次鐵鋼 등이다.

이들 財閥의 出荷額占有率이 높은 産業은 運輸裝備, 木材品, 고무製品, 其他 非鐵金屬鑛物製品, 組立金屬製品 등인데 이러한 결과는 商品을 基準으로 하여도 차이가 없다. 財閥의 市場占有率은 이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商品市場만을 대상으로 하면 44.7%가 되어 製造業 全體에 대한 占有率 34.1%보다 훨씬

높게 된다. 參與財閥數가 많은 產業은 纖維, 組立金屬製品, 機械, 衣服, 產業用化學物, 電氣機械 등이며, 30大財閥의 總出荷額에서 各 產業이 차지하는 構成比로 보면, 纖維, 運送裝備, 石油精製, 電氣機械, 第1次鐵鋼, 食料品 등의 순서가 된다.

이상의 관찰을 1974年의 것과 비교하면[18], 纖維를 우리나라 財閥의 主產業으로 代表할 수 있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化學, 鐵鋼, 金屬, 機械 등 重化學產業分野에 이들의 參與度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위에서는 30大財閥을 하나의 集團으로서 이들의 전체적 성격을 조사하였지만 財閥問題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財閥이 개별적으로 各 商品市場에서 保有하는 市場力(market power)이다. 먼저 市場占有率(market share)의 觀點에서 보면 〈表 12〉에서와 같이, 어느 한 財閥의 占有率이 60% 이상되는 商品은 30大財閥이 出荷하는 延 968個 중에서 140個로 전체의 26.2%에 불과하다. 또한 財閥別 加重平均 市場占有率의 分布는 10% 미만의 財閥이 6個, 10~20%가 14個, 20~30%가 8個, 30% 이상이 2個이므로 占有率로 보면 財閥의 個別的 市場力은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市場力을 좀더 정확하게 側定하려면 占有率보다도 市場位置(market position)를 나타내는 占有率의 順位가 타당할 것이다. 〈表 12〉를 다시 보면, 어느 한 財閥이 市場에서 1位를 占有하는 商品이 314個로서 전체의 32.4%이고 3位까지의 商品은 595個로 61.5%에 해당하므로 財閥의 市場力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表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高集中商品數의 비중과 市場占有率이 財閥의 규모와 관계없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下位財閥들도 다수의 商品市場에서 獨寡占的 位置를 保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또한 財閥間의 競爭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4. 財閥間의 市場競爭

이제까지 調査한 우리나라 30大財閥의 特徵을 要約한다면 財閥에 의한 高度의 經濟力 集中, 企業結合을 통한 財閥規模의 擴大, 낮은 수준의 多邊化, 商品市場에 있어서의 獨寡占的 位置라고 하겠다. 財閥의 規模가 크더라도 財閥 相互間에 競爭關係가 普遍的으로 존재한다면 財閥에 의한 獨寡占的 市場力을 상당히

〈表 12〉 30大財閥의 市場力

財閥順位	出荷商品數	市場占有率別商品數					市場占有率 順位別 商品數			
		0~20-%	20~40-%	40~60-%	60~80-%	80~100%	1位	2位	3位	小計
1~10	498	300	80	46	23	49	158	88	51	297
11~20	287	176	45	23	14	29	93	54	35	182
21~30	183	105	28	25	8	17	63	32	21	116
計	968	581	153	94	45	95	314	174	107	595

註 : 商品數는 財閥別 該當商品數의 單純合計이므로 같은 商品이 重複計算된 것도 있음. 財閥을 10個씩 묶은 것은 個別財閥別로 하더라도 전체적 특징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임.

18) 拙著(1977), p.5.

완화시킬 수 있지만, 各財閥이 全體市場을 商品別로 分占하고 있다면 그러한 可能性마저도 없어지게 된다.

〈表 13〉에서 보면, 30大財閥이 다소간에 出荷하는 578個 商品의 65%인 375個의 市場에서는 財閥間의 競爭이 없으며 이들 商品은 30大財閥 總出荷額의 27.3%에 해당한다. 또한 財閥들의 市場占有率 合計가 40% 미만인 商品은 333個인 반면 總出荷額에서는 18.7%를 占有하고 있으므로, 30大財閥은 出荷商品의 57.6%에 있어서 財閥間보다는 餘他企業들과 競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商品이 財閥의 활동에서 갖고 있는 比重은 미미한 것이다. 관점을 바꾸어 보면, 2個 이상의 財閥이 참여하면서 이들의 市場占有率이 40% 이상인 商品은 96個로 全體出荷商品의 16.6%에 머물고 있지만 財閥 總出荷額의 59.3%에 해당한다. 즉, 商品市場에 있어서 財閥間의 競爭이 적은 반면[19] 競爭關係가 존재하는 市場은 大規模市場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政策的 結論은, 첫째, 財閥은 多數의 市場에 있어서 餘他의 財閥이나 獨占企業에 대하여 壓倒的 市場位置를 갖고 獨占的 孤立地帶(monopolistic enclave)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市場에 대하여는 他企業에 대한 進入障壁(barriers to entry)을 구축하지 않게끔 해야 되며, 둘째, 1個의 財閥만이 參與하되 그 市場占有率이 낮은 것이 많은데(예로써, 40% 미만인 것은 226個) 이 경우에 財閥은 他市場의 系列企業에 集積된 經濟力을 이용하여 市場支配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橫的補助(cross subsidization)와 價格 및 利潤壓搾(squeeze)을 배제해야 하며, 세째, 財閥間의 競爭關係가 있는 市場은 少數이지만 그 規模가 크므로 오히려 財閥間의 交互購入(reciprocal buying)이나 談合(collusion)을 통하여 다른 企業에 대하여 市場封鎖(foreclosure)를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市場의 硬直化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表 13〉 30大財閥間 競爭度

競爭關係財閥數	商品數	參與財閥의 市場占有率 合計				
		0~20⁻%	20~40⁻%	40~60⁻%	60~80⁻%	80~100%
1	375 (27.3)	161(2.4)	65 (2.8)	36 (3.2)	32 (3.8)	81(15.1)
2	116 (17.2)	45(1.1)	20 (2.7)	24 (5.0)	12 (3.6)	15 (4.8)
3	60 (35.8)	13(2.1)	14 (2.9)	13(10.7)	4 (4.2)	16(15.8)
4	18 (9.3)	4(0.3)	4 (1.2)	3 (1.0)	5 (6.2)	2 (0.6)
5	4 (1.1)	1(0.0)	3 (1.1)			
6⁺	5 (9.3)	1(0.6)	2 (1.4)	1 (1.9)	1 (5.4)	
計	578(100.0)	225(6.6)	108(12.1)	77(21.8)	54(23.2)	114(36.4)

註 : 괄호안 數字는 該當商品의 出荷額 合計가 30大財閥의 總出荷額에서 차지하는 構成比(%).

19) 〈表 13〉에서 어느 한 財閥의 占有率이 5%에 미달할 경우, 이것을 競爭關係財閥數에서 제외시키면 다음과 같게 되므로 이 結果는 한층 뚜렷해진다.

競爭關係財閥數	1	2	3	4	計
商品數	381	73	27	2	483

끝으로, 多數의 財閥이 참여하는 商品과 財閥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普通外衣(11), 合成纖維 紡績絲(11), 鑄型(7), 純綿絲(6), 合成纖維織物(6), 와이셔츠(5), 羅王木材·角材(5), 羅王木材·板材(5), 라디오·TV 및 其他音響裝置部品(5) 등으로서 앞서 검토한 〈表 13〉의 결과와 같으며, 우리나라 財閥中 多數가 纖維, 衣類, 電子產業을 母體로 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부합한다.

V. 結　　言

이제까지 우리는 1970年과 1977年의 두 해를 중심으로 製造業部門의 成長過程과 이에 따른 產業組織의 변화 및 그 특징을 檢討하였는데 政策的 觀點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를 간략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製造業은 1970年代에 고도의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企業體數에 있어서는 별다른 증가가 없었으므로 결국 企業의 大型化를 통하여 이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小企業의 상대적 정체를 誘發하였지만, 동시에 中規模 내지 準大規模 企業의 比重을 높여 集中率은 다소 저하하였다. 그렇지만 1977年의 50大企業이 製造業 總出荷의 29.4%를 차지하며, 產業別로 보더라도, 213個 細細分類產業 가운데 94個는 上位 3個企業의 出荷占有率이 60% 이상되며 製造業全體의 上位 3個企業 加重平均 出荷集中率은 41%에 달하므로 產業組織은 여전히 高集中狀態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高集中이 規模의 經濟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면 論理的 妥當性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獨占不可避論에 근거를 줄 수 있겠지만 1977年의 資料를 보면 그러한 論據가 희박하다.

우리나라 製造業의 高集中現象은 商品市場을 관찰대상으로 하면 더욱 명백하게 된다. 즉, 2,109個의 商品中 83.7%에 해당하는 1,766個가 獨寡占 商品이며 이들의 出荷額도 製造業 總出荷額의 61.2%에 달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商品市場의 構造는 1970年에 비하여 統計的 有意性은 적지만 다소간에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新規商品은 최소한 원초적으로 獨占을 享有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獨寡占構造의 恒續性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또한 個別市場이나 產業의 獨寡占을 초월하여, 財閥이라는 거대한 經濟力의 結集體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30大財閥은 1975年 이래 系列企業數를 倍加하여 현재 財閥當 20個(製造業部門에는 11個)의 企業을 保有하며, 製造業 總出荷額의 34.1%, 出荷商品市場의 44.7%를 점유하는데, 이들이 出荷하는 968個의 延商品數中에서 595個에 있어서는 어느 한 財閥의 市場位置가 3位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30大財閥은 總體的인 經濟力뿐만 아니라 個別商品市場의 支配力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비록 財閥의 규모가 크더라도 財閥間의 競爭이 치열하다면 財閥의 市場效果가 상당히 완화되겠지만, 이들이 참여하는 578個 商品市場 가운데 375個는 하나의 財閥만이 出荷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財閥은 대체로 商品別로 市場을 분할하여 獨占力을 증대시키면서 經濟力을 확장시켜 온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製造業部

門의 産業組織은 獨寡占的 市場構造와 財閥의 經濟力集中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은 産業資本主義의 發展過程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인데 그러한 추세가 방치된다면 궁극적으로 資本主義體制의 基底마저도 잠식하기 때문에 이의 規制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래 産業組織의 최종결과인 價格은 規制하였지만 그 實效가 없으므로 企業結合과 같은 構造的 原因을 직접 規制해야 하며 現行 公正去來法은 이러한 방향으로 改定되어야 할 것이다.

〈附表 1〉 小分類 産業別 業體數·雇傭·出荷額 趨移

(단위 : 業體數=個, 雇傭=千名 / 出荷額=經常價格 10億원)

小分類産業	業體數		雇傭		出荷額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食料品	3,351(13.9)	2,891(10.8)	76.2 (8.8)	128.2 (6.7)	144.0(11.0)	1,418.8 (9.3)
飮料品	1,796 (7.4)	1,211 (4.5)	30.2 (3.5)	26.0 (1.4)	79.3 (6.1)	501.4 (3.3)
담배	9(0.04)	23 (0.1)	11.0 (1.3)	15.0 (0.8)	69.3 (5.3)	497.7 (3.3)
纖維	2,923(12.1)	4,176(15.6)	207.2(24.1)	402.6(20.1)	192.7(14.7)	2,102.1(13.8)
衣服	3,050(12.6)	2,777(10.4)	52.4 (6.1)	208.3(10.9)	46.0 (3.5)	794.3 (5.2)
가죽및毛皮製品	95 (0.4)	346 (1.3)	3.4 (0.4)	26.9 (1.4)	2.9 (0.2)	175.9 (1.2)
가죽신	325 (1.3)	192 (0.7)	4.5 (0.5)	20.0 (1.0)	3.6 (0.3)	97.7 (0.6)
製材및木製品	1,109 (4.6)	1,282 (4.8)	36.2 (4.2)	56.3 (2.9)	65.5 (5.0)	453.2 (3.0)
家具및裝置物	899 (3.7)	886 (3.3)	9.0 (1.0)	14.2 (0.7)	4.3 (0.3)	40.2 (0.3)
종이및종이製品	544 (2.3)	800 (3.0)	19.1 (2.2)	42.2 (2.2)	36.8 (2.8)	380.3 (2.5)
印刷및出版	1,184 (4.9)	1,208 (4.5)	30.3 (3.5)	42.4 (2.2)	28.0 (2.1)	196.1 (1.3)
産業用化學製品	247 (1.0)	640 (2.4)	23.4 (2.7)	41.6 (2.2)	67.8 (5.2)	749.3 (4.9)
其他化學製品	424 (1.8)	507 (1.9)	26.2 (3.0)	46.8 (2.4)	52.2 (4.0)	525.4 (3.5)
其他石油精製	17 (0.1)	43 (0.2)	3.2 (0.4)	3.9 (0.2)	83.2 (6.4)	1,317.7 (8.7)
其他石油및石炭製品	695 (2.9)	318 (1.2)	12.5 (1.5)	11.3 (0.6)	32.7 (2.5)	173.8 (1.1)
고무製品	172 (0.7)	284 (1.1)	27.3 (3.2)	98.3 (5.1)	28.8 (2.2)	415.4 (2.7)
其他 플라스틱 製品	168 (0.7)	591 (2.2)	9.0 (1.0)	36.5 (1.9)	14.2 (1.1)	212.9 (1.4)
陶磁器및土器	378 (1.6)	300 (1.1)	7.9 (0.8)	12.8 (0.7)	2.3 (0.2)	26.2 (0.2)
유리및유리製品	80 (0.3)	124 (0.5)	8.8 (1.0)	14.6 (0.8)	9.3 (0.7)	87.5 (0.6)
其他 非鐵金屬 鑛物製品	1,820 (7.5)	1,321 (4.9)	34.6 (4.0)	50.3 (2.6)	54.4 (4.2)	500.6 (3.3)
第1次 鐵鋼	259 (1.1)	438 (1.6)	26.6 (3.1)	58.3 (3.0)	61.7 (4.7)	988.5 (6.5)
第1次 非鐵金屬	85 (0.4)	226 (0.8)	4.9 (0.6)	12.7 (0.7)	10.7 (0.8)	162.3 (1.1)
組立金屬製品	1,362 (5.6)	1,584 (5.9)	35.2 (4.1)	80.3 (4.2)	32.0 (2.4)	373.3 (2.5)
機械	1,040 (4.3)	1,395 (5.2)	26.5 (3.1)	72.0 (3.7)	21.2 (1.6)	376.0 (2.5)
電氣機械器具	496 (2.1)	1,164 (4.4)	39.4 (4.6)	188.8(19.8)	53.6 (4.1)	1,151.8 (7.6)
運輸裝備	891 (3.7)	756 (2.8)	43.1 (5.0)	95.6 (5.0)	73.6 (5.6)	1,084.0 (7.1)
其他專門, 科學裝備	110 (0.5)	256 (1.0)	5.5 (0.6)	32.0 (1.7)	4.9 (0.4)	163.2 (1.1)
其他	575 (2.4)	981 (3.7)	48.2 (5.6)	81 (4.2)	31.9 (2,4)	242 (1.6)

〈附表 2〉 上位 100大商品의 市場構造

市場類型	商品數	總出荷(10億원)	商品名
獨占	9	1,088	필터 담배, 一般貨物船, 構造物, 熱延廣幅帶鋼, 重板·合金鋼, 鐵道機關車, 제트油, PVC, 폴리프로틸렌
複占	18	825	熱延簿板, 黑白 TV 受像機, 모터 가솔린, 라면, 通信線 및 케이블, 冷延廣幅帶鋼, 尿素肥料, 麥酒, 重油, 電力線 및 케이블, 自動電話交換機, 精鍊銅, 글루타민酸소다, 크라프트紙, 耕耘機, 合成纖維, 레미콘, 껌
寡占	35	2,916	방카 C油, 普通시멘트, 輕油, 貨物車, 混紡合纖織物, 運動靴, 燒酒, 複合肥料, 精糖, 電氣熔接鋼管, 異型鐵筋, 乘用車, 自動車 타이어, 나프타, IC 回路, 人形, 버스, 고무장화, 밀가루빵, 트랜지스터, 家庭用冷藏庫, 混紡毛織物, 既成服, 燈油, 비스켓, 아이스크림, 新聞用紙, 스레트, 冷延簿板, 圓型鐵筋, 潤滑油, 模造紙, 파일 및 셔닐織物, 紛乳, 유리병
競爭	38	2,947	合纖紡績絲, 合板, 配合飼料, 合纖織物, 純綿絲, 九孔炭, 밀가루, 普通外衣, 와이셔츠, 男子用外衣, 소가죽, 男子用가죽衣服, 濁酒, 플라스틱신발, 生絲, 錄音器, 골판지箱子, 브라우스, 絹織物, 冷凍물고기, 酒精, 가방, 角材(羅王木材), 綿內衣, 書籍, 핸드백, 女子用 外衣, 固定蓄電器, 角材(美松木材), 灰주물, 라디오受信器, 골판지原紙, 마닐라板紙, 日刊新聞, 抗生劑, 男子用短靴, 가발, 壁타일.

〈附表 3〉 30大財閥의 製造業市場參與度

小分類産業	細細分類産業數	財閥參與産業數	財閥出荷/産業出荷(%)	商品數	財閥參與商品數	財閥出荷/參與商品出荷(%)	參與財閥數	財閥出荷中占有率(%)
食料品	34	22	21.7	165	41	41.8	11	6.8
飮料品	13	5	10.4	24	8	32.3	3	0.4
담배	2	—	—	5	—	—	—	—
纖維	37	25	29.2	158	61	39.6	16	13.5
衣服	9	7	20.8	48	25	25.9	15	3.6
가죽 및 毛皮製品	7	5	18.9	22	7	17.3	6	0.7
신발	4	2	18.9	12	4	42.2	3	0.4
나무 및 나무와 콜크製品	15	4	48.9	60	9	59.2	6	4.9
家具 및 裝置物	5	2	14.4	30	12	19.7	1	0.1
종이 및 종이製品	17	8	14.8	55	14	23.7	8	1.2
印刷 및 出版	8	2	3.8	24	3	16.8	2	0.2
産業用化學物	21	11	29.3	195	42	55.3	15	4.8
其他化學製品	26	12	21.3	107	31	33.4	9	2.5
石油精製	3	3	38.5	24	17	46.1	6	11.2
其他石油 및 石炭製品	2	1	3.9	13	3	53.9	3	0.2
고무製品	7	4	46.4	41	13	62.9	8	4.3
달리 分類되지 않는 플라스틱製品	5	3	37.4	10	6	34.7	5	1.8
陶器, 磁器 및 土器	5	—	—	17	—	—	—	—
유리 및 유리製品	7	2	21.6	24	4	44.5	3	0.4
其他非金屬鑛物製品	16	8	45.6	55	16	55.4	6	5.0
第1次鐵鋼	8	7	34.5	95	47	46.1	7	7.5
第1次非鐵金屬	4	3	23.7	56	9	54.2	4	0.8
組立金屬製品	25	15	45.6	176	32	52.9	16	3.8
機械	35	21	20.2	294	51	32.2	16	1.7
電氣機械器具	26	22	34.6	158	73	39.1	13	8.8
運輸裝備	15	9	54.6	72	26	79.2	5	13.1
專門·科學·測定製品	19	6	7.2	75	10	30.9	7	0.3
其他	21	8	21.6	103	13	30.0	7	1.2
全製造業	411	217	34.1	2,118	578	44.7	30	100.0

▷ 參 考 文 獻 ◁

司空壹, 「經濟成長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 1980年 봄號.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⑱, 1977.

Archibald, G.C., "Chamberlin versus Chicago", *Review of Economic Studies,* October 1961.

Bain, J. S., "Changes in Concentr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1954~1966", *Review of Economic Studies,* November 1970.

Ghosh, A., "Japanese 'Zaibatsus' and Indian Industrial Hous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merican Journal of Economic and Sociology,* July 1974.

Hart, P.E., "Business Concentration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Part 2, 1960.

Honeycutt, T.C. and D.L. Zimmerman, "The Measurement of Corporate Diversification: 1950~1967", *Antitrust Bulletin,* Spring 1976.

Mason, E.S., *Economic Concentration and Monopoly Problem,*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Prais, S.J., "A New Look at the Growth of Industrial Concentration", *Oxford Economic Papes,* July 1974.

Pashigian, P., "Market Concent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October 1969.

Pryor, F.L.,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ncentration Ratio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72.

Shepherd, W.G., "Trends of Concentration in Americ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47~1958",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64.

_____, *Market Power and Economic Performance,* Skokie, Ill.: Rand McNally, 1970.

Stigler G.J., "Archibald versus Chicago", *Review of Economic Studies,* February 1963.

White, L.J.,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Economic Power in Pakist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韓國製造業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役割과 生産函數

金 栽 元

▷ 目 次 ◁

Ⅰ. 序 論
Ⅱ. 中小企業의 經濟的 意義 및 法律的 定義
Ⅲ. 經濟政策的 側面에서 본 中小企業
Ⅳ. 中小企業의 現況
Ⅴ. 企業의 規模와 市場制約 및 技術의 選擇
Ⅵ.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生産函數
Ⅶ.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中小企業이란 開發途上國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큼 中小企業을 위한 政策은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經濟政策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經濟의 형편에 따라서는 그 樣相을 달리하게도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아마도 지금이 中小企業政策의 중요성을 가장 높이 認識하고 있는 기간인 듯하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자세히 論議되겠지만 그 중요성의 認識度에 대한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우선 新憲法 第124條의 ②項과 ③項이 그것인데 同條 ②項은 「國家는 中小企業의 事業活動을 保護·育成하여야 한다」. 그리고 ③項에 「國家는 農民·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育成하여야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한다」고 規定하여 中小企業 育成을 위한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中小企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표시해 주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企業體質强化를 위한 9.27措置에서도 中小企業 保護를 위한 政府의 政策的 意志가 표시되어 있다. 同措置에서는 大企業으로 하여금 「中小企業型 系列企業을 최우선 處分토록」 하고 있으며, 會社整理制度를 보완하여 大會社가 會社整理法에 의거하여 會社整理節次를 밟고 있을 때, 下請零細中小企業의 債權이나 근로자의 퇴직금 등은 債務保全處分對象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中小企業의 專門化를 가로막고 있던 法律上의 허점

筆者：韓國開發硏究院 主任硏究員

을 보완하는 중요한 措置이다. 또한 앞서 7月 29日 發表된 「中小企業資金支援綜合對策」[1]에서도 첫째, 금년 하반기 중 1,200億원의 특별자금을 조성하여 從業員 20人 미만, 資産規模 3億원 미만의 零細中小企業(製造業)에 支援하며, 둘째, 企業銀行과 保證基金에 각각 投資部를 신설하여 650億원 規模의 財源으로 中小企業들이 발행하는 株式 및 長期社債를 인수케 하고(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의 設立), 세째, 中小企業銀行의 授權資本金을 1千億원에서 3千億원으로 늘리고, 네째, 信用保證基金의 中小企業信用保證限度를 5千9百億원에서 6千8百億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經濟政策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中小企業者 스스로의 企業精神 발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中小企業의 육성발전은 保護나 庇護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競爭을 바탕으로 生成을 거듭하며 發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과거 20년간 급속한 經濟發展과 더불어 大企業의 成長·發展은 눈부신 바 있었으나, 中小企業은(相對的 意味에서) 침체해 있었다.

製造業의 경우를 보면 1960年代와 1970年代를 걸쳐서 全體附加價値 중에서 大企業의 比率이 오히려 증가한 반면에 中小企業의 그것은 감소하여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大企業이 經濟內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位置를 점하게 되고 짧은 期間內에 새로운 大企業의 출현을 보게 되며 특히 小數의 財閥企業에 經濟力이 집중되는 것 등이 中小企業育成政策의 不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大企業의 育成을 위해서는 稅制·金融, 기타 여러 가지 政治的 經濟的 특혜가 주어졌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大企業의 成長·發展을 政策的으로 뒷받침해 온 배경에는 그럴 만한 國民的 要請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우리 나라에는 人口가 過密한 반면에 自然資源의 賦存은 빈약하여 經濟의 成長과 發展을 위하여서도 開放經濟體制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시 말해서 輸入代替와 輸出增大가 成長政策의 핵을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성공적 開放經濟政策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國際競爭力이라는 制約條件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따라서 새롭고 能率的인 技術을 요하는 資本集約的 生産方法을 택하게 되었으며 또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 效果를 얻기 위해 大規模企業建設에 政策의 우선순위가 놓여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開放經濟政策이 수반하는 經濟的 현상은 對外的으로(國內市場이 아닌) 國際市場을 그 販路의 對象으로 삼을 것을 前提로 하여, 國際市場에서 다른 競爭者들과 相應하는 競爭力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며, 이것을 위하여 稅制·金融은 물론 外換 및 國際信用 등에서 절대적 支援을 提供하여 國際規模의 企業建設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한편 對內的으로 雇傭을 늘리고 새로운 生産技術의 導入으로 生産要素의 生産性을 向上시키며, 生産의 增加와 輸入代替 및 輸出促進을 통하여 國際收支의 改善 및 自立經濟 달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현실 經濟面에서 볼 때 1970年代 이

1) 서울經濟新聞, 1980年 7月 30日字 참조.

후(특히 석유파동 이후) 國際經濟秩序의 교란으로 인한 先進工業國들의 保護貿易政策의 擴大, 所得增加에 따른 國內賃金의 上昇, 技術蓄積보다는 企業의 量的擴大에 치중한 企業運營方式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效果가 실현되지 못했으며, 國際市場에서의 據占 確保가 여의치 못한 이들 大企業들은 國內市場 浸蝕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國內中小企業의 침체 및 압박현상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一定率의 輸出用 原資材 損耗를 인정하는 制度, 低利의 輸出金融, 輸出金融의 優先配分, 輸出企業의 利潤保障을 위한 輸入配當(quota)을 주는 制度 등은 國內中小企業發展에 沮害要因이었음은 自明한 일이다.

本稿에서는 中小企業이 經濟內에서 效率을 높일 수 있는 方式과 中小企業의 實態를 大企業과 비교해 가며 論議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 節에서는 中小企業이 經濟內에서 갖는 意義와 中小企業基本法에 規定된 우리 나라에서의 法律的 中小企業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Ⅲ節에서는 過去의 經濟政策과 中小企業의 存立環境에 대하여 설명하고 Ⅳ節에서는 최근의 中小企業의 現況을 要約하고자 한다. Ⅴ節에서는 企業의 規模가 市場條件이나 技術條件에 의해 갖는 制約에 관해서 각각 論하고, Ⅵ節에서는 우리 나라 製造業에 있어서의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生產函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Ⅴ節에서의 설명을 좀더 論理的으로 分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中小企業은 運輸業, 建設業, 其他 都小賣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本稿에서는 우선 製造業에 국한하였음을 밝혀둔다.

2) World Bank, *Employment and Development of Small Enterprise*, Sector Poliey Paper, Feb. 1978.

끝으로 Ⅶ節에서는 지금까지 論議된 바의 結論을 要約하였다.

Ⅱ. 中小企業의 經濟的 意義 및 法律的 定義

開發途上國에서 中小企業의 發展이 强調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中小企業이 일반적으로 勞動集約的이어서 資本蓄積의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둘째는, 低所得으로 인해 市場의 購買力이 적으므로 大企業에 의한 利點(規模의 經濟)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小企業은 經濟內에서 生產要素의 效率을 增進시킴으로써 存在의 意義를 갖게 된다. 따라서 資本力의 부족으로 막연히 작은 規模의 生產組織을 갖는 것이 곧 中小企業이라는 前提 아래, 갖가지 保護措置의 대상이어서는 안된다. 여러 가지 保護措置의 方向은 資本主義가 갖는 缺點을 補完하는 정도이어야 하며 經濟全體의 效率性을 무시해서는 안됨을 意味한다. 따라서 中小企業이 經濟內에서 갖는 역할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2].

첫째, 大企業들의 관심밖에 있는 限定된 市場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고, 둘째, 企業家的 素質을 길러내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產業育成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며, 세째, 競爭을 통해 經濟內에 活力을 불어 넣어 주게 되고, 네째, 地域經濟의 안정을 提高하며, 다섯째, 좀 더 많은 人口로 하여금 經濟에 能動的으로 참여케 하는 것 등

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中小企業이란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나 外部經濟(externalities)의 效果가 적은 部門 또는 生產組織에서 經濟에 참여하는 經濟單位가 本質的 意味에서의 中小企業이다. 따라서 外形的으로 볼 때 從業員의 數가 적거나 資產規模가 작고, 또 이들의 대부분 경우 前近代的 生產方式을 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勞動의 資本에 대한 代替가 비교적 容易하게 된다[3]. 그렇기는 해도 中小企業들은 非熟練勞動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經濟의 效率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 先進國의 경우에는 中小企業間의 치열한 경쟁이 새로운 技術開發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4]. 우리 나라는 中小企業에 관한 範圍를 中小企業基本法에 〈表 1〉과 같이 規定해 놓고 있다[5]. 다만 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의 第2條, 例外規定에 해당하는 業種에서는 當時 從業員數 500人 이하까지를 中小企業範疇에 속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와 같이 中小企業의 範圍를 法律로 정하여 놓은 까닭은 中小企業에 내려지는 直接·間接의 갖가지 혜택 때문이다[6].

〈表 1〉 中小企業의 法律的 범위

業種	基準	
	常時從業員數	資產總額
鑛業	300人 以下이거나	5億원 以下
製造業	300人 以下이거나	5億원 以下
運輸業	300人 以下이거나	5億원 以下
建設業	50人 以下이거나	5億원 以下
商業·서비스業	20人 以下이거나	5,000萬원 以下
小賣業	20人 以下이거나	5,000萬원 以下
都賣業	20人 以下이거나	2億원 以下

Ⅲ. 經濟政策的 側面에서 본 中小企業

中小企業이 大企業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더 勞動集約的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開發途上國에서는 資本集約的인 大企業的 生產方式을 選好하는 경우를 본다. 이 점에 대해서 生產者, 消費者, 그리고 政策當局이 모두 책임을 느낄 일로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7].

첫째, 先進技術을 사용한다는 자부심

둘째, 다른 生產方式 開發에 대한 無誠意

세째, 消費者들의 輸入品과 類似한 製品에 대한 選好

네째, 勞動의 未熟練

다섯째, 여러가지 形態의 政府政策 등이다.

이 중에서 政府의 政策과 企業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開發途上國에서는 開發의 初期段階에 資本蓄積에 몰두함을 본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年間의 經濟成長 중 資本形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이와 같은 급격한 資本蓄積과 大企業 建設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또한 生產要素의 非效率도 뒤따르

3) 生產技術의 選擇과 中小企業에 관해서는 Ⅵ節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4) R&D도 中小企業에서 오히려 더 效果的이라는 硏究結果도 나와 있다(Arnold Cooper, 1964).

5)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1978.12.5 改正).

6) 예를 들어, 中小企業資金을 전담하는 中小企業銀行이나 國民銀行 외에도 一般市中銀行은 總貸出額의 30% 以上(지방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40%)을 中小企業에 우선 貸出하여야 하며, 信用保證基金도 總保證限度의 40%를 中小企業에 配定하여야 한다. 그 밖에 法人稅, 所得稅法上에도 中小企業에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고 있다.

7) World Bank, 前揭書.

〔圖 1〕 經濟政策面에서 본 中小企業 環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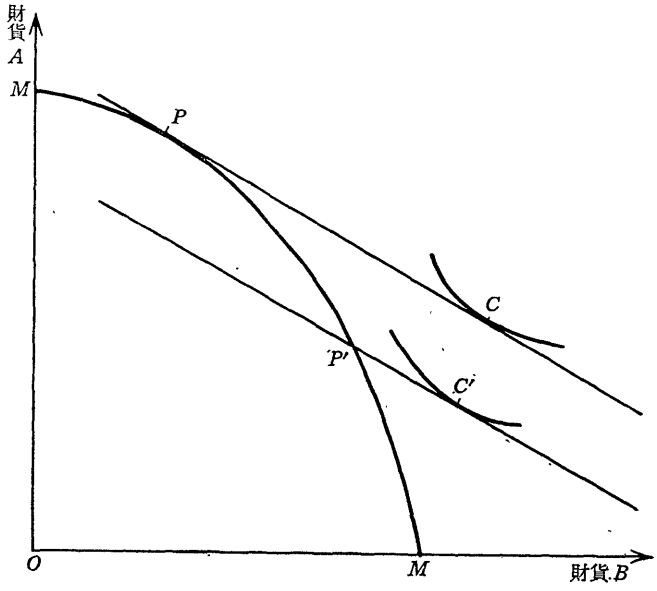

게 된다. 〔圖 1〕은 資本集約的인 大企業建設過程에서의 中小企業發展의 不利益(生產要素市場에서의 攪亂에 의한 生產量의 변화)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다. 曲線 MM은 한 나라의 生產可能曲線(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을 표시하며 財貨 B는 財貨 A에 비하여 더 資本集約的이라고 假定한다. 만약 國內外市場이 完全競爭狀態라면 生產과 消費는 각각 P點과 C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frac{MU_A}{MU_B}=\frac{P_A}{P_B}=\frac{dB}{dA}$ 또는 限界代替率=價格比率=限界生產代替率). 그러나 만일 資本蓄積에 대한 직접·간접의 補助(subsidy)를 통하여 資本使用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지게 되면(예, 市場利子率보다 낮은 公金融機關의 利子率) 限界代替率이나 두 財貨의 價格比率이 限界生產代替率보다 크게 된다($\frac{MU_A}{MU_B}=\frac{P_A}{P_B}>\frac{dB}{dA}$, 여기에서 財貨 B가 더 資本集約的이라는 假定에 留念하기 바람). 이것은 〔圖 1〕에서 生產과 消費의 均衡點이 각각 P'과 C'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圖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資本集約的인) 財貨 B의 生產이 늘어나고 (勞動集約的인) 財貨 A의 生產이 줄게 된다. 또는 資本集約的인 產業에서의 輸入代替가 용이해짐과 동시에 中小企業의 發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現象은 과거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다.

Ⅳ. 中小企業의 現況

韓國型 中小企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1) 零細 小企業

(2) 中間(또는 中堅) 企業

(3) 專門化 企業

우리 나라 中小企業基本法에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 없지만, 企業의 生產活動 차이에 따라서 위와 같은 구분이 가능하다.

小企業의 경우는 單一生産品의 生産이 일반적인 경향인 데 반하여 中間企業에서는 生産의 多樣化를 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規模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中間企業에서는 大企業과의 차이가 별로 없는 셈이다[8]. 이에 대해서 專門化企業은 都給에 의한 生産을 그 특징으로 한다. 中小企業과 大企業이 都給을 통해 分業의 利를 취하는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形態가 있다. 첫째는, 商業的 都給(commercial sub-contracting)이고 둘째는, 企業의 分業的 都給(industrial sub-contracting)이다. 商業的 都給은 製品의 販賣網을 가지고 있는 商業資本家가 生産者로 하여금 製品生産만을 委任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예가 극히 드물고, 美國의 경우 「시어스」(Sears & Roebuck)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9]. 이에 대해서 企業分業的 都給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下請을 뜻하는 것으로 系列化나 專門化 企業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Watanabe 敎授(1970)는 先進國(특히 日本)에서 企業分業的 都給이 盛行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大企業쪽에서 볼 때) 資本과 勞動을 절약할 수 있고, 둘째, 中小企業의 값싼 勞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세째, 下請業者들의 專門化된 技術을 사용할 수 있고, 네째, 景氣沈滯의 局面에서도 불필요한 資本量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景氣變動에서 오는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 中小企業의 中分類別 競爭現況은 〈表 2〉가 보여 주는 바와 같다. 國家專賣事業인 담배를 제외하고 볼 때 1977年의 경우 全體企業體(製造業)數의 평균 95.9%가 中小企業에 속하고 全體從業員數의 52%가 中小企業에 雇傭되어 있으며 附加價値로는 32.4%가 中小企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가 附加價値를 中分類産業別로 보

〈表 2〉 **中小企業 競爭現況**(産業中分類別)

(1977年)

	全製造業			中小企業의 比重 (%)		
	事業體數	從業員數	附加價値 (百萬원)	事業體數	從業員數	附加價値
全製造業	26,726	1,918,931	5,596,717	95.9	46.0	32.4
飮食料品 및 담배製造業	4,131	169,153	1,068,782	97.6	52.0	30.8
纖維·衣服 및 가죽工業	7,491	657,847	1,095,347	95.1	46.6	36.8
製材·나무製品 및 家具製造業	2,168	70,404	138,233	98.8	45.5	41.8
종이·종이製品 및 印刷出版業	2,008	84,581	232,456	97.3	64.1	46.1
化學·石油·石炭·고무 및 플라스틱製品製造業	2,383	238,425	1,026,701	94.8	36.5	42.3
非金屬鑛物製品製造業 (石炭 및 石油製品 제외)	1,745	77,743	291,642	70.2	58.5	53.5
第1次 金屬製造業	664	70,982	326,006	94.0	84.4	20.2
金屬製品·機械 및 裝備製造業	5,155	468,653	1,312,377	95.1	42.3	27.1
其他 製造業	981	81,143	105,168	93.8	53.6	51.4

資料: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 1977.

8) 企業의 規模나 生産樣式에 관해서는 V節, VI節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이다.
9) 우리 나라 섬유업계에서 유행하는 「賃織」, 綜合貿易商社를 통한 中小企業製品의 輸出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非金屬鑛物製品製造業과 其他 製造業에서는 中小企業이 當該產業 附加價値의 50% 이상을 生產함으로써 中小企業이 競爭的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반해서 飮食料品 및 담배製造業, 第1次金屬產業 및 組立金屬製品機械·裝備製造業 등은 中小企業이 當該產業 全體附加價値 중에서 30% 이내만을 生產함으로써 大企業 中心產業임을 알 수 있게 된다. 全製造業에서 본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의 관계를 中小企業이 가장 잘 발달된 日本과 비교하여

〈表 3〉 全體製造業에 대한 中小企業의 比重

	韓國		日本	
	附加價値(%)	從業員數(%)	附加價値(%)	從業員數(%)
1967	39.3	58.8	52.0	68.8
1968	35.7	54.1	51.9	68.0
1969	28.7	51.8	51.0	67.9
1970	28.5	49.0	51.2	67.5
1971	28.0	46.2	52.4	67.9
1972	28.0	45.3	53.9	69.5
1973	34.0	46.6	54.0	69.0
1974	31.2	44.8	54.6	69.2
1975	31.7	45.7	57.2	70.7
1976	30.0	44.1		
1977	32.4	46.0		

註 : 1) 우리 나라는 從業員規模 4人 이하 企業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日本은 4人 이하 企業도 포함되었음.
2) 우리 나라는 1972年까지는 從業員規模 199人 이하가 中小企業이며 1973年부터는 299人 이하로 變更된 반면, 日本은 全期間을 통해 從業員規模 299人 이하가 中小企業임.

資料 : 1)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 各年度.
2) 日本中小企業廳, 『中小企業白書』, 昭和 52年(1977年).

10) 우리 나라에서는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은 規模別資本/勞動의 비율 또는 附加價値/資本의 比率에 대한 資料가 없기 때문에 〔圖 2〕를 그 대신으로 사용하였다.

11) $\text{勞動裝備額} \times \text{設備投資效率} = \frac{\text{固定資產} - \text{建設假計定}}{\text{勞動人口}} \times \frac{\text{附加價値}}{\text{固定資產} - \text{建設假計定}}$

보기로 한다. 〈表 3〉은 中小企業의 附加價値와 從業員數가 全體製造業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日本의 경우를 보면 附加價値와 從業員數에 있어서 1966~75年 기간 동안 그 比率이 매우 안정적이거나 中小企業이 약간 늘어나는 趨勢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의 다소 안정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간동안 中小企業의 比率이 약간 減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賃金의 側面에서 살펴볼 때, 우리 나라의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관계는 非合理的임을 발견한다. 〈表 4〉는 中小企業과 大企業에 있어서의 平均賃金, 1人當 附加價値 및 1人當 人件費를 1975년 不變價格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을 다시 指數化한 〈表 5〉를 보면 中小企業에서는 1966~77년 期間동안에 1975년 不變價格으로 본 賃金이 3.3배의 上昇을 보인 데 반해서 大企業에서는 같은 期間 동안에 2.1배의 上昇에 그쳤다. 이렇게 되어 1977년의 年間 平均賃金額이 大企業에서는 68萬3千원, 中小企業에서는 52萬3千원의 隔差로 좁아지고 있다. 〔圖 2〕는 우리 나라 製造業에 있어서의 勞動裝備額과 設備投資效率을 中小企業과 大企業別로 비교하여 본 것이다[10]. 만일 우리 나라의 勞動市場이 매우 競爭的이고 彈力的이라면 賃金은 1人當 附加價値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또 定義에 의해서 勞動裝備額이나 設備投資效率이 높아지면 1人當 附加價値가 높아져서 賃金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11]. 〔圖 2〕는 中小企業에 있어서 勞動裝備額이나 設備投資效率이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는 있으나(勞動裝備額은 大企業에서 더 급격히 上昇하고 있음) 平均賃金이 〈表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中小企

〈表 4〉 中小企業・大企業間 平均賃金, 1人當 附加價値 및 1人當 人件費 比較
(1975年 不變價格)[1)2)] (단위 : 千원)

	平 均 賃 金		1人當 附加價値		1人當 人 件 費	
	中小企業	大 企 業	中小企業	大 企 業	中小企業	大 企 業
1966	157.7	329.5	1,291.1	1,400.8	356.6	366.2
1967	209.9	298.7	934.0	1,335.7	338.3	413.1
1968	232.0	346.3	1,012.5	1,424.5	444.7	434.6
1969	276.8	396.5	652.0	1,421.9	353.2	514.2
1970	299.7	459.0	800.9	1,509.4	469.0	595.2
1971	330.5	490.7	778.0	1,604.6	483.5	671.7
1972	341.9	480.5	764.1	1,612.4	490.3	634.6
1973	408.3	530.7	885.2	2,030.6	530.5	724.8
1974	365.3	484.1	748.1	1,733.1	448.1	648.1
1975	384.1	503.8	1,000.1	1,567.0	543.0	512.0
1976	434.9	577.9	1,235.3	1,768.0	680.6	772.5
1977	522.7	683.1	1,326.5	1,623.8	801.1	850.2
1978			1,341.6	1,789.8	974.1	1,070.8
1978			1,448.9	1,869.7	1,090.0	1,097.4

註 : 1) 平均賃金은 韓國의 國民所得(韓國銀行, 1978)에서 GNP Deflator를 算出・사용하였음.
2) 1人當 附加價値는 主要經濟指標(經濟企劃院, 1980)의 GNP Deflator를, 1人當 人件費는 都賣物價指數(WPI)를 사용하였음.
* 平均賃金은 全期間을 통하여 從業員規模 199人 以下가 中小企業, 1人當 附加價値・1人當 人件費는 1976年부터 299人 以下를 中小企業으로 基準이 변경되었음.

資料 : 1) 平均賃金 :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 各年度.
2) 1人當 附加價値・1人當 人件費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表 5〉 中小企業・大企業間 平均賃金, 1人當 附加價値 및 1人當 人件費 比較(指數 1966年=100)

	平均賃金指數		大企業에 대한 中小企業의 平均賃金 (%)	1人當 附加價値指數		大企業에 대한 中小企業의 1人當附加價値 (%)	1人當 人件費指數		大企業에 대한 中小企業의 1人當人件費 (%)
	中小企業	大企業		中小企業	大企業		中小企業	大企業	
1966	100	100	47.9	100	100	92.2	100	100	97.4
1967	133	90	70.3	72	95	69.9	94	112	81.9
1968	147	105	67.0	78	101	71.1	124	119	101.9
1969	175	120	69.8	50	101	45.9	98	140	68.7
1970	190	139	65.3	61	107	53.1	131	162	78.8
1971	209	148	67.4	60	114	48.5	135	183	72.0
1972	216	145	71.2	59	115	47.4	137	173	77.3
1973	258	161	76.9	68	144	43.6	148	197	73.2
1974	231	146	75.5	57	126	43.2	125	176	69.1
1975	243	152	76.2	77	111	63.8	152	139	106.1
1976	275	175	75.3	95	126	69.9	190	210	88.1
1977	331	207	76.5	102	115	81.7	224	232	94.2
1978				103	127	75.0	273	291	91.0
1979				112	133	77.5	305	299	99.3

〔圖 2〕 製造業 生產性指標의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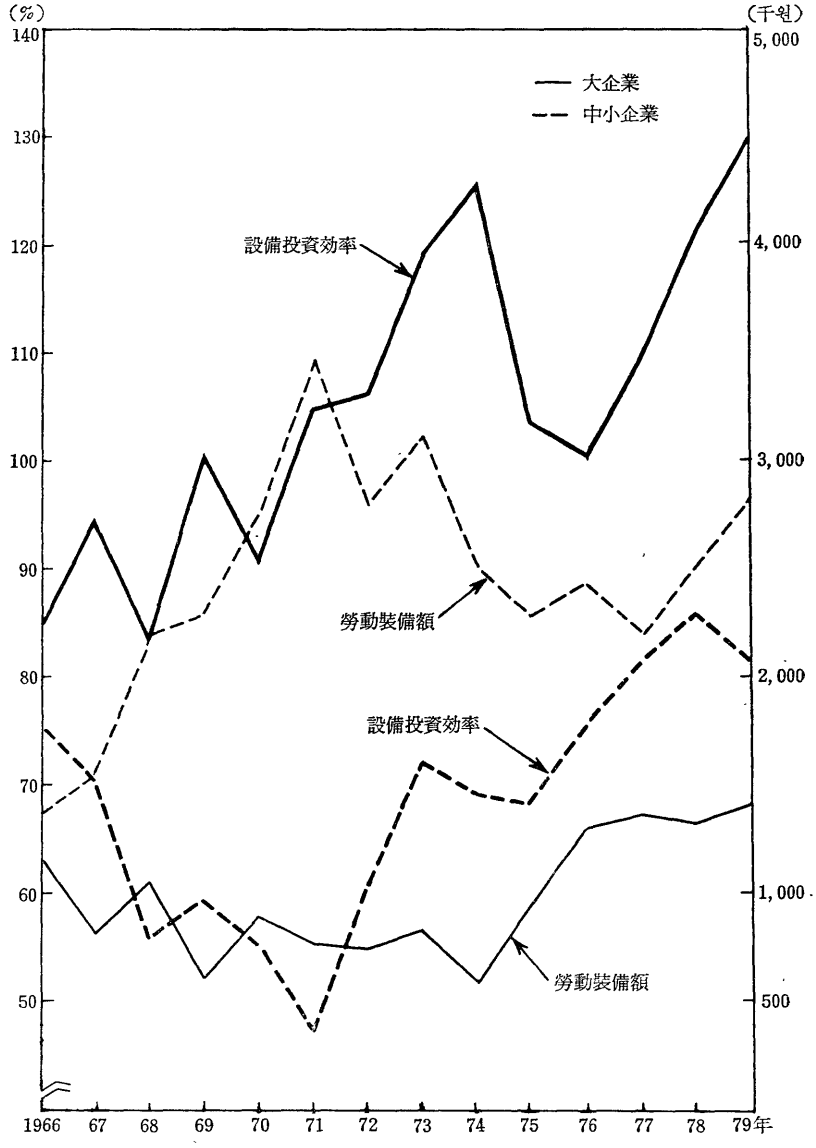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各年度.

業의 大企業에 대한 賃金比率이 1966년의 47.9%에서 1977년의 76.5%로 급격히 上昇하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賃金隔差가 줄어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中小企業들이 속해 있는 勞動市場이 매우 경직적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大企業의 企業活動이 中小企業과 크게 구별되지 않음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日本과 비교하여 보면 日本의 경우는 中小企業과 大企業關係가 잘 定立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中小企業이 매우 안정적 發展을 하여 오고 있

음을 본다. 우선 〈表 6〉에서는 企業間의 都給去來關係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發見하게 된다. 첫째, 日本은 企業의 規模와 관계없이 全企業이 50% 이상의 都給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는 企業의 規模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둘째, 日本과 우리 나라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나라는 企業分業을 통한 都給關係가 매우 미미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日本 中小企業의 안정적 發展狀況을 살펴보기로 하자. 〈表 7〉은 1957년과 1966년의 10年 사이에 資本과 勞動의 比率(勞動裝備率), 그리고 附加價値와 資本의 比率(資本의 效率) 등이 從業員 規模로 본 企業의 規模에 따라 어떻게 변하여 왔나를 보여준다.

日本의 경우에는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의 資本과 勞動의 比率의 격차가 축소하고 있으며

〈表 6〉 從業員規模別 都給去來實績

	韓國(1978)		日本(1967)	
	事業體數	都給業體(%)	事業體數	都給業體(%)
1～ 3人	—	—	214,879	52.3
4～ 9人	—	—	194,112	53.7
5～ 9人	9,731	8.3	—	—
10～ 19人	5,903	17.9	80,219	54.8
20～ 29人	—	—	27,415	54.5
30～ 49人	—	—	21,839	55.6
20～ 49人	5,208	29.8	—	—
50～ 99人	2,414	27.4	15,449	50.9
100～199人	1,716	25.1	6,643	56.6
200～299人	659	23.7	1,852	55.5
全製造業	25,631	18.2	565,581	53.6

資料：1) 商工部, 中小企業銀行, 『中小企業實態調査報告』, 1978.
2) Watanabe, S., International Subcontracting, Employment and Skill Promotion", *International Labor Review*, 1972.

이것과 보조를 맞추어 資本效率(附加價値와 資本의 比率)도 그 격차가 축소하여 가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中小企業도 資本裝備

〈表 7〉 製造業의 從業員規模別 生產構造(日本의 경우)

	1957			1966		
	K/L 指數	Y/K 指數	w 指數	K/L 指數	Y/K 指數	w 指數
1～ 9人	31	122	61	43	105	79
10～ 19人	30	180	69	44	145	83
20～ 29人	32	196	75	47	155	86
30～ 49人	35	193	75	48	157	88
50～ 99人	41	173	81	56	145	90
100～199人	65	148	88	67	135	94
200～299人	81	136	100	78	132	99
300～499人	120	113	106	98	114	104
500～999人	158	96	119	126	101	111
1,000人 以上	242	74	156	200	78	121
全製造業	100	100	100	100	100	100

註：K/L=勞動에 대한 資本의 比率
Y/K=資本에 대한 附加價値의 比率
w =平均賃金(W/L)

資料：Ohkawa, Kazushi and Tajima, Mutsuo, *Small-medium Scale Manufacturing Industry: A Comparactive Study of Japan and Developing Nations*,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er of Japan, 1976.

率의 增加(capital deepening)를 통해 近代化하여 가는 過程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비교되는 資料가 發表된 바 없지만 〔圖 2〕는 中小企業이 近代化하여 가는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고 있지는 못하다.

V. 企業의 規模와 市場制約 및 技術의 選擇

企業의 規模에 관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本質的으로 小規模인 경우도 있고(도자기, 家具, 가죽, 모피, 전통세공품 등) 또 본질적으로는 大企業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大企業도 小企業도 아닌 中間規模의 企業도 있다. 企業規模란 對內的으로는 企業의 經濟力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對外的으로는 市場의 크기에도 制約을 받게 된다. 市場의 크기란 그 企業이 속해 있는 國家(또는 地域)의 人口 및 所得의 크기에 의존하는 것으로 企業規模決定에 중요한 要素이다. 企業의 適正規模를 결정하는 樣式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f(m,\ p_f,\ P,\ T)$

o : 企業의 規模

m : 市場의 크기

p_f : 生產要素의 相對價格

P : 生產物의 相對價格

T : 生產 技術

즉, 生產技術(T)과 生產物의 相對價格(P)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면(競爭的인 生產物市場을 가정), 企業의 規模는 결국 市場의 크기(m)나 生產要素의 相對價格(p_f)에 달려 있다. 같은 財貨의 生產일지라도 大都市와 地方에 따라 서로 다른 生產組織과 規模를 갖는 것은 서로 다른 市場條件과 生產要素의 相對價格 때문이다. 이와 같은 市場條件은 價格上의 適正規模와 技術上의 適正規模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발생하게 한다. 中小企業 育成에는 이러한 점들이 신중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경우 市場의 크기에 의한 制約條件이나 生產要素의 相對價格보다는 規模의 經濟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先進技術의 直導入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企業의 規模나 生產組織의 形態(生產技術의 選擇)는 生產要素의 相對價格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또한 원칙이다. 우리는 이것을 技術上의 效率(efficiency in technology)과 價格上의 效率(efficiency in price)은 항상 서로 一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圖 3〕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John Page, 1979).

먼저 模型을 單純化하기 위하여 우리가 論議하고자 하는 企業이 一次同次의 生產函數(linear homogeneous production fonction)를 가졌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式이 成立하게 되는데 이때 資本과 勞動의 價格은 競爭的 市場에서 決定된 價格이라고 假定한다.

$Q=rK+wL$

Q : 生產物

K : 資本投入量

L : 勞動投入量

r : 資本의 利廻率

〔圖 3〕 技術의 選擇과 生產要素의 相對價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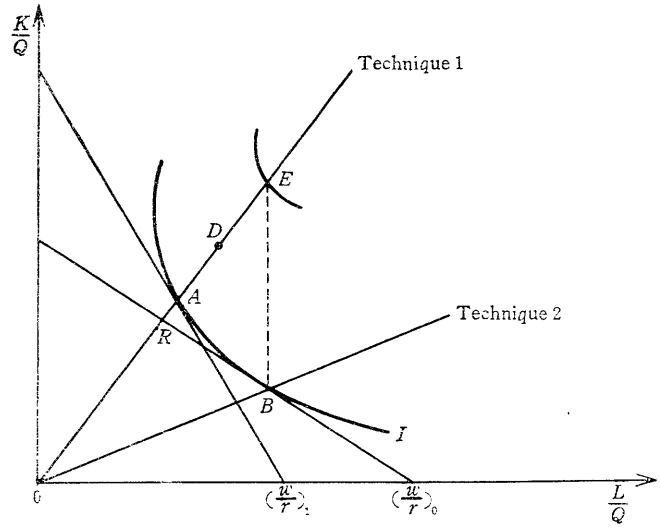

w : 賃金率

양변을 Q로 나누어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frac{K}{Q}=\frac{1}{r}-\frac{w}{r}\frac{L}{Q}$이 된다. 이것은 〔圖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財貨 1단위 生產에 필요한 豫算制約(budget constraint)을 말한다. 〔圖 3〕에서 I는 어떤 財貨 1단위 生產을 표시하는 等量曲線이다. 우리는 〔圖 3〕에서 서로 다른 2個의 豫算制約曲線을 본다. $\left(\frac{w}{r}\right)_1$으로 표시된 豫算制約曲線은 $\left(\frac{w}{r}\right)_0$으로 표시된 豫算制約曲線에 비하여 資本勞動의 價格이 상대적으로 낮은(높은) 경우를 말해 주고 있다. I는 財貨 1단위를 生產함에 있어 技術的으로 效率的인 資本과 勞動의 組合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 A와 企業 B는 技術的으로 가장 效率的인 生產方式(technically efficient production method)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다시 부언해서 설명하면 企業 A와 企業 B는 企業 D에 비해서 技術的으로 더 效率的인 生產方式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生產要素의 相對價格이 $\left(\frac{w}{r}\right)_1$와 같이 주어지면 企業 B는 企業 A에 비해서 價格面에서 非效率的(price inefficient)이 된다. 이는 資本의 相對價格이 낮은 경우에는 企業 A와 같은 生產技術(Technique Ⅰ)을 택하는 것 즉, 資本集約的인 生產方式을 택하는 것이 價格面에서 유리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많은 中小企業에는 $\left(\frac{w}{r}\right)_0$와 같은 豫算制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나라 中小企業의 生產樣式이 大企業과 구별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特定製品의 生產에는 非熟練勞動(unskilled labor)이 필요하지만 大企業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賃金을 지불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또 中小企業에 信用을 제공할 때는 위험부담을 相殺하기 위하여 더 높은 利子率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또 大企業은 안정적이고 利子率이 낮은 公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專澤을 받는 데 비해 中小企業은 利子率이 높고 非安定的인 私債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같은 私債

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中小企業에는 높은 利子率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것이다. 〔圖 3〕에서 $\left(\frac{r}{w}\right)_0$로 표시되는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반영한 中小企業에 주어진 相對價格이다. 이런 경우에는 勞動集約的인 生産方式(Technique Ⅱ)을 사용하는 企業 B가 技術 및 價格의 양면에서 가장 效率的이 된다. 이와 같이 똑같은 生産物의 生産에 있어서도 大企業과 中小企業은 그 生産方式이 다를 수 있다.

이상의 分析은 中小企業에 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첫째, 技術的인 面에서의 效率性도 중요하지만 經濟狀況에 따라서 또는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에 따라서 價格面에서도 效率的인 生産方式을 택하는 것이 經濟效率의 增加를 위해 중요하며, 둘째, 價格面에서의 效率的인 生産方式을 택하더라도 企業 E와 같이 技術面에서의 非效率的인 企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새로운 技術의 習得 및 同和(technical assimilation)가 未備하거나 老朽한 生産施設을 가진 경우이다. 이를 위해서는 生産技術의 指導나 施設의 近代化를 위한 支援이 필요하게 된다. 産業政策的인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할 점을 요약하면, 첫째, 市場規模에 制約이 없는 國家基幹産業(例：製鐵, 精油産業 등)이나 輸出産業은 技術上의 適正規模(technically efficient firm size)가 중요시되고, 둘째, 일반적으로 市場規模에 制約이 있는 內需産業이나 地方特化産業은 價格上의 適正規模(efficient in price)를 택하는 것이 國家經濟全體의 效率(macro economic efficiency)을 提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Ⅵ.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生産函數

이제 위에서 관찰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綜合해 가면서 製造業에 있어서의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生産函數를 推定해 보고자 한다. 製造業의 生産函數를 推定하는 것은 간단한 作業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生産函數의 推定이 시도된 바는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다. 本稿에서는 製造業部門에 있어서의 資本과 勞動의 代替彈力度를 推定해 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代替彈力度에 관하여는 여러 나라를 模型으로 推定이 시도된 바 있지만 그 크기에 관한 産業別 順位가 硏究結果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産業에서는 代替彈力度가 높고, 어느 産業에서는 그것이 낮은지를 일반적으로 規定짓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David Morawetz, 1976). Morawetz 敎授는 이와 같은 硏究結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아마도 代替彈力度는 각 나라마다 크게 다르고, 같은 나라에서도 時間에 따라서 다를지 모른다.

둘째, 産業의 中分類는 너무나 異質的인 産業의 集合이어서 産業別 比較가 불가능할지 모른다.

세째, 理論과 推定의 方式, 그리고 資料의 問題는 代替彈力度의 中分類 産業別 推定이 부적당할지도 모른다.

이상의 問題點들에 대하여 우선 첫번째와

세번째 問題를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우리나라 製造業의 代替彈力度를 推定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製造業을 中分類別로 나누어 이를 다시 地域別로 본「크로스 섹션」資料(cross section data)를 사용하였다. 地域은 各道別 11個地域으로 나눈 것을 다시 1975년, 1976년, 1977년 3년간의 資料를「풀링」(pooling)하였다[12].

둘째, 全製造業을 中分類別로 區分하고 이를 다시 中小企業과 大企業으로 나누어 生產函數를 推定하였다. 〈表 8〉은 常時 從業員數가 199人 이하인 경우를 中小企業으로 하고, 그 이상을 大企業으로 區分한 것이며 〈表 9〉는 常時從業員數가 299人 以下인 것을 中小企業으로 區分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代替彈力度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만약 代替彈力度가 크다면 이것은 外的 變化에 적응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代替彈力度가 크다면 國際石油값이 등귀할 때 資本 사용을 쉽게 勞動 사용으로 代替하여 장래의 持續的 經濟成長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의 回歸分析을 위한 基本模型은 다음과 같이 유도되었다. 먼저 CES 生產函數의 一般式은 다음과 같다. (Minasian, J.R., 1961; Katz, J.M., 1967; O'Herlihy, S. St. J., 1972)

$$Y=\gamma[\delta K^{-\rho}+(1-\delta)L^{-\rho}]^{-\frac{\nu}{\rho}} \cdots\cdots\cdots\cdots (1)$$

Y : 生產物의 總量

γ : 效率性(efficiency) 파라미터

ρ : 代替(substitution) 파라미터

δ : 配分(distribution) 파라미터 (技術의 資本集約度를 測定)

ν : 同次性(homogeneity)의 級數

그리고 어느 特定產業에서의 利潤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pi=pY-wL-rK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2)$$

π : 利潤

p : 生產物의 價格

w : 平均賃金

L : 勞動投入物

r : 資本에 대한 利廻率

K : 資本投入物

式(2)에서 勞動投入物에 대한 利潤極大條件을 표시하면

$$\frac{\partial\pi}{\partial L}=p\frac{\partial Y}{\partial L}+Y\frac{\partial p}{\partial Y}\times\frac{\partial Y}{\partial L}\cdots\cdots\cdots (3)$$
$$-w-L\frac{\partial w}{\partial L}=0$$

이다.

이것을 勞動生產性에 대하여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Y}{\partial L}=\frac{w}{p}\left(\frac{1+E_{wL}}{1+E_{pY}}\right)\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4)$$

$E_{wL}=\frac{\partial w}{\partial L}\frac{L}{w}$: 賃金의 雇傭彈力度

$E_{PY}=\frac{\partial p}{\partial Y}\frac{Y}{p}$: 價格의 生產彈力度

이제 式(1)를 L에 대하여 偏微分하면

$$\frac{\partial Y}{\partial L}=\nu(1-\delta)L^{-\rho-1}Y[\quad]^{-1}\cdots\cdots\cdots (5)$$

이 된다. 또한 式(1)을 다시 정리하면

$$Y^{\frac{\rho}{\nu}}\gamma^{-\frac{\rho}{\nu}}=[(1-\delta)L^{-}+\delta K^{-\rho}]^{-1} \quad \cdots (6)$$

이 된다. 그러므로 式(6)을 式(5)에 넣고 다

12) 11個 地域은 서울, 釜山,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江原, 濟州임.

시 정리하면,

$$\frac{\partial Y}{\partial L}=\nu\gamma^{-\frac{\rho}{\nu}}(1-\delta)\left(\frac{Y}{L}\right)^{1+\rho}Y^{\rho\left[\frac{1-\nu}{\nu}\right]} \quad (7)$$

이다. 式(4)와 式(7)에 의하여

$$\frac{w}{p}\left[\frac{1+E_{wL}}{1+E_{pY}}\right]=\nu\gamma^{-\frac{\rho}{\nu}}(1-\delta)\left(\frac{Y}{L}\right)^{1+\rho}Y^{\rho\left[\frac{1-\nu}{\nu}\right]}$$

가 된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left(\frac{Y}{L}\right)^{1+\rho}=\frac{w}{p}\left[\frac{1+E_{wL}}{1+E_{pL}}\right]\left[\nu\gamma^{-\frac{\rho}{\nu}}(1-\delta)\right]^{-1}Y^{-\rho\left(\frac{1-\nu}{\nu}\right)} \cdots\cdots\cdots(8)$$

이 된다. 양변에 「로그」(log)를 취한 후 다시 정리하면

$$(1+\rho)\log\left(\frac{Y}{L}\right)=\log\left[\nu\gamma^{-\frac{\rho}{\nu}}(1-\delta)^{-1}\right.$$
$$+\log w-\log p+\log\left[\frac{1+E_{wL}}{1+E_{PY}}\right]$$
$$-\rho\left(\frac{1-\nu}{\nu}\right)\log Y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9)$$

이다. 여기서 $\frac{1}{1+\rho}=\sigma$ (σ=代替彈力度)임을 염두에 두고 式(9)를 다시 정리하면,

$$\log\left(\frac{Y}{L}\right)=A+\sigma\log w-\sigma\log p+\sigma\log M+S\log Y \cdots(10)$$

이 된다. 이때,

$$A=\sigma\log\left[\nu\gamma^{-\frac{\rho}{\nu}}(1-\delta)\right]^{-1}$$

$$M=\frac{1+E_{wL}}{1+E_{pY}}$$

$$S=(1-\sigma)\frac{\nu-1}{\nu}$$

이다. 만약 우리가 不變價格을 사용한다면 $p=1$이어서 $\log p$ 項이 없어지게 되고, 또 勞動市場과 生産物市場이 경쟁적이라면($E_{wL}=E_{PY}=0$) $\log M$ 項도 없어지게 되어 결국 우리의 回歸分析模型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log\left(\frac{Y}{L}\right)=A+\sigma\log w+S\log Y \cdots(11)$$

$\frac{Y}{L}$: 1人當 平均附加價値

A : 常數項

σ : 資本과 勞動間의 代替彈力度

w : 平均賃金

일단 R이 推定되면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 ν)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hat{\nu}=\frac{1-\hat{\sigma}}{1-\hat{\sigma}-\hat{S}}$$

우리의 위와 같은 回歸分析模型은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生産函數中에서 資本에 대한 項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生産函數에 대한 간접적인 推定方式임을 표시하고 있고,

둘째, 生産物市場과 勞動市場은 競爭的으로 보는 반면에 資本市場은 不完全競爭으로 간주하고 있다. 만약 資本市場도 競爭的이라고 가정한다면 $S=0$이어야 한다[13]. 이제 이 模型을 우리에게 주어진 資料(11個 地域으로 나누인 3년간의 資料)로 生産函數를 推定할 수 있도록 共分散(covariance) 模型으로 다시 쓰면 式(12)와 같다[14].

---

13) 모든 市場이 完全競爭的이라면 式(2)에서 $\pi=0$ 일 것이고 이것이 $\nu=1$ 즉, 規模에 대한 收益不變을 의미하게 된다.

14) 時後列資料와 「크로스-섹션」 資料를 「풀링」(pooling) 할 때는 보통 共分散(covariance) 模型이 널리 쓰인다. 이것은 時差에 따라 다른 常數項의 값을 줌으로써 좀 더 정확한 推定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그 論理는 다음과 같다(Pindyck, R.S. and Rubinfeld, D.L., 1976 참조).

우선 式(11)을 各産業別로 다시 쓰면,

$$\log\left(\frac{Y}{L}\right)_i=A_i+\sigma_i\lg w_i+S_i\,\mathrm{loog}\,Y_i \cdots\cdots(11)'$$

$$\log\left(\frac{Y}{L}\right)_{it}=A_i+\sigma_i\log w_{it}+S_i\log Y_{it}+m_1D_1+m_2D_2\cdots\cdots(12)$$

$$D_1=\begin{cases}1:1976\text{년}\\0:\text{其他年度}\end{cases}$$

$$D_2=\begin{cases}1:1977\text{년}\\0:\text{其他年度}\end{cases}$$

生產函數의 推定結果는 〈表 8〉, 〈表 9〉, 및 〈表 10〉에 要約되어 있는데 그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5].

첫째, 中小企業의 法律的 定義에 중요한 問題點을 제기한다. 〈表 8〉에서 常時從業員數 199人 이하를 中小企業으로, 그리고 〈表 9〉에서는 299人 이하를 中小企業으로 分類하여 大企業과의 生產組織 및 形態上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16].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常時從業員規模 199人을 基準으로 中小企業과 大企業을 구분하였을 때는, 非金屬鑛物製品을 제외한 全產業에서 中小企業과 大企業은 다른 生產形態(서로 다른 代替彈力度와 規模에 대한 經濟)를 갖고 있는 데 반해서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9人을 基準으로 中小企業과 大企業을 구분하였을 때에는 몇가지 產業(例 : 종이, 종이製品 등)을 제외한 全產業에서 동일한 生產形態를 갖는 것으로 推定됨으로써 從業員規模 200～299人을 갖는 中間規模의 企業들이 生產組織의 일반적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企業群임을 알게 된다. 따라

---

i : 中分類別 產業

이때 우리는 서울·경기·경북·경남 등 11個 地域에서의 中分類別 平均附加價値$\left(\frac{Y}{L}\right)$, 平均賃金(W) 등을 3년(1975, 1976, 1977)에 걸쳐서 年度別 資料만 가지고 있게 된다. 이 관계를 연도별로 따로 분리하여 쓰면,

$$\log\left(\frac{Y}{L}\right)_{it}=A_i+\sigma_i\log w_{it}+S_i\log Y_{it}\cdots(11)''$$

$$t=1975,\ 1976,\ 1977$$

이 된다. 즉, 中立的인 技術變化를 假定하고 있으므로, 時差에 따른 技術의 增加가 기본적으로 回歸曲線의 기울기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曲線만 이동(shift)한다고 假定하는 것이다. 이것을 「더미」(dummy)變數를 사용하여 다시 表示한 것이 式(12)이다. 式(12)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975년 $\log\left(\frac{Y}{L}\right)_i=A_i+\sigma_i\log w_i+S_i\log Y_i$

1976년 $\log\left(\frac{Y}{L}\right)_i=(A_i+m_1)+\sigma_i\log w_i+S_i\log Y_i$

1977년 $\log\left(\frac{Y}{L}\right)_i=(A_i+m_2)+\sigma_i\log w_i+S_i\log Y_i$

즉, 技術의 增加가 발생하게 되면 기울기에는 變化가 없고 回線 全體가 위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15) 資料는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經濟企劃院, 1975～77年)을 사용하였음.

16) 여기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回歸分析模型이 비록 서로 다른 係數(coefficient)는 가졌더라도 統計的으로 동일한 回歸分析模型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Fisher, Franklin M., 1970).

먼저 式(12)를 각 產業別 中小企業群과 大企業群으로 표시하면

$$y_j=X_j\beta_j+\varepsilon_j\cdots\cdots(13)$$

$$j=\begin{cases}1:\text{中小企業}\\2:\text{大 企 業}\end{cases}$$

(33×1) ε_j : 誤差項(error term)

(33×1) $y_j=\log\left(\frac{Y}{L}\right)'_{it}$

(33×5) $X_j=[1,\ \log w_{it},\ \log Y_{it},\ D_1,\ D_2]'$

(5×1) $\beta_j=\begin{bmatrix}A\\\sigma_i\\S_i\\m_1\\m_2\end{bmatrix}'$

이때 우리는 $\beta_1=\beta_2$인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두 回歸分析模型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4) $y=\begin{bmatrix}y_1\\y_2\end{bmatrix}=\begin{bmatrix}X_1&o\\o&X_2\end{bmatrix}\begin{bmatrix}\beta_1\\\beta_2\end{bmatrix}+\begin{bmatrix}\varepsilon_1\\\varepsilon_2\end{bmatrix}$
$=X^*\beta+\varepsilon$

만약 우리의 假說($\beta_1=\beta_2$)이 진실이라면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하여 쓸 수 있다.

(15) $y=\begin{bmatrix}X_1\\X_2\end{bmatrix}\beta_1+\varepsilon=X\beta_1+\varepsilon$

위의 두 模型 (14)와 (15)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X=X^*\begin{bmatrix}I\\I\end{bmatrix}$$

이렇게 되면 우리의 假說을 검증할 테스트統計値(Statistics)를 다음과 같이 유도하게 된다.

먼저 U^*는 式(14)에서 계산된 殘差項(calculated residual)이고, U는 式(15)에서 계산된 殘差項이라고 한다면,

$$F=\frac{(U'U-U^{*\prime}U^*)/5}{U^{*\prime}U^*/(33+33-2\times5)}$$

은 F分布(5, 56의 自由度를 가짐)를 보여서 이것이 곧 우리의 테스트統計値가 된다. 만일 F의 값이 一定의 留意水準을 넘어서면 우리의 假說($\beta_1=\beta_2$)은 버려지고 그 水準 以下면 받아들여지게 된다.

〈表 8〉 製造業의 規模別

産業(製造業)分類	中小企業					
	A	$\log w$	$\log Y$	D_1	D_2	R^2
飮食料品 및 담배製造業	0.1936 (0.2743)	0.8812 (5.8576)	0.1414 (2.1788)	−0.2407 (−3.1251)	−0.3064 (−3,6967)	0.7479
纖維, 衣服, 가죽工業	0.3080 (−0.7065)	0.4891 (2.4062)	0.0736 (2.9789)	−0.0519 (−1.0000)	−0.0129 (−0.1726)	0.7745
製材業, 나무製品 및 家具製造業	−0.8301 (−4.0577)	0.0101 (0.2109)	0.0954 (3.9701)	0.1805 (3.7427)	0.2719 (5.3288)	0.6834
종이, 종이製品 및 印刷出版業	−1.0407 (3.1712)	0.25899 (1.8299)	0.1586 (4.8534)	0.0925 (1.0703)	0.1569 (1.5373)	0.6475
化學, 石油, 石炭, 고무 플라스틱製品	1.0009 (1.8338)	0.8901 (3.4465)	0.0508 (1.2411)	−0.3178 (−2.1571)	−0.1778 (−1.0333)	0.6023
非金屬鑛物製品製造 (石油, 石炭 製品 제외)	−1.4214 (−1.3053)	0.3771 (0.6546)	0.3044 (4.0308)	0.1019 (0.4747)	0.1729 (0.5883)	0.6460
第1次 金屬製造業	0.1232 (1.0004)	0.7242 (7.0364)	0.0892 (5.11734)	−0.1925 (−1.7771)	−0.1915 (−1.8445)	0.7422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製造業	−0.5397 (−1.8732)	0.2061 (2.1292)	0.0911 (3.3730)	−0.0143 (−0.1354)	0.0565 (0.5208)	0.4811
其他製造業	−0.6534 (−1.8639)	0.5871 (4.0661)	0.1619 (6.5363)	−0.1502 (−1.6002)	−0.0405 (−0.3558)	0.8605

註 : 1) 사용된 變數의 定義 및 資料出處에 관해서는 本文을 참조하고 괄호 안의 숫자는 t값을 나타냄
2) ✲는 有意水準 90%에서 $H_1(\beta_1 \neq \beta_2)$를 채택한 것임.

〈表 9〉 製造業의 規模別

産業(製造業)分類	中小企業					
	A	$\log w$	$\log Y$	D_1	D_2	R^2
飮食料品 및 담배製造業	0.5620 (0.6999)	0.9535 (4.9161)	0.115 (1.6602)	−0.2244 (2.5102)	−0.2622 (−2.4669)	0.7160
纖維, 衣服, 가죽工業	−1.1142 (−1.9038)	0.2461 (0.8969)	0.1302 (3.9146)	0.1004 (1.2009)	0.0475 (0.4622)	0.6412
製材業, 나무製品 및 家具製造業	0.9513 (1.8880)	1.0681 (4.1927)	0.0290 (0.91104)	0.0341 (0.5188)	−0.0983 (−0.9550)	0.7588
종이, 종이製品 및 印刷出版業	−0.9774 (−3.0379)	0.3118 (2.1502)	0.1595 (5.2455)	0.1334 (1.3232)	0.2192 (1.1330)	0.6695
化學, 石油, 石炭, 고무 플라스틱製品	1.0049 (1.6258)	0.9673 (3.3090)	0.0605 (1.3381)	−0.3206 (−1.9334)	−0.1705 (−0.8784)	0.6325
非金屬鑛物製品製造 (石油, 石炭 製品 제외)	−1.5383 (1.2502)	0.2674 (0.4078)	0.2922 (3.5758)	0.1784 (0.8558)	0.2340 (0.7536)	0.6178
第1次 金屬製造業	0.0743 (0.6160)	0.6836 (6.0558)	0.0874 (5.8858)	−0.1014 (−1.0632)	−0.1314 (−1.4132)	0.6904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製造業	0.9066 (2.0316)	1.094 (4.0307)	0.0192 (0.7752)	0.0379 (0.2767)	−0.0205 (−0.1293)	0.6752
其他製造業	0.7781 (2.4191)	1.1860 (9.0652)	0.0533 (2.2210)	−0.1461 (−2.4403)	−0.0977 (−1.3649)	0.9348

註 : 〈表 8〉의 註 참조.

生　産　函　數　(199人 基準)

大		企		業		F 값
A	$\log w$	$\log Y$	D_1	D_2	R^2	
0.0291 (0.0480)	0.8184 (4.3686)	0.2380 (5.3761)	−0.3459 (−1.0806)	−0.5198 (−1.6390)	0.7655	4.9095*
0.1094 (0.8659)	1.2588 (7.2548)	0.1214 (8.3930)	−0.0733 (−0.8415)	−0.1606 (−1.6388)	0.7491	5.80303*
−0.0382 (−0.3672)	0.0563 (0.5374)	0.0527 (3.8691)	0.0245 (0.1906)	0.0930 (0.7091)	0.4223	3.8620*
0.0521 (0.2932)	1.0870 (5.0674)	0.1472 (7.3862)	−0.0094 (−0.0598)	−0.1159 (−0.7261)	0.7399	4.5699*
0.3748 (1.2406)	1.6119 (8.2391)	0.1787 (10.5557)	−0.3002 (−0.8657)	−0.4869 (−1.2978)	0.8121	4.86530*
−0.1678 (−1.0325)	0.9692 (6.7717)	0.1806 (9.2784)	0.1381 (0.9636)	−0.0228 (0.1528)	0.8203	2.91446
0.1068 (0.81115)	0.7537 (4.1125)	0.1444 (10.8406)	−0.1023 (−0.6759)	0.2238 (−1.4302)	0.8134	8.79532*
−0.0176 (−0.1787)	0.8163 (9.8191)	0.1081 (11.4603)	0.0167 (0.2990)	0.0353 (0.6015)	0.8730	9.42660*
−0.0259 (−0.4898)	0.4709 (4.7818)	0.0660 (5.4452)	0.0540 (1.0003)	0.0400 (0.7412)	0.5638	5.006228*

生　産　函　數　(299人 基準)

大		企		業		F 값
A	$\log w$	$\log Y$	D_1	D_2	R^2	
1.07874 (1.2092)	0.5184 (1.8103)	0.0799 (1.2259)	−0.0932 (−0.1891)	−1.8564 (−3.0452)	0.5432	−6.375
0.1233 (0.9491)	1.5027 (9.3617)	0.1421 (10.1109)	−0.0724 (−0.8396)	−0.2144 (−2.2290)	0.8263	1.040258
0.0587 (0.4360)	0.4149 (3.5268)	0.0673 (4.1319)	−0.0776 (−0.4675)	−0.0842 (−0.4877)	0.7749	0.93814
0.0735 (0.5559)	1.0978 (4.9669)	0.1451 (8.8282)	−0.0311 (−0.2198)	−0.1193 (−0.8161)	0.7749	4.37869*
0.3206 (1.0596)	1.5538 (7.5547)	0.1805 (9.7848)	−0.2436 (−0.7000)	−0.4642 (−1.2544)	0.8034	3.8407*
−0.1984 (−1.0597)	0.8652 (6.3683)	0.1827 (7.8906)	0.1562 (1.0127)	0.0241 (0.1522)	0.8022	1.07342
0.1180 (0.9391)	0.7774 (4.0616)	0.1472 (11.4764)	−0.1151 (−0.7642)	−0.2347 (−1.4664)	0.8290	4.7170*
−0.1432 (−0.6997)	0.8247 (4.7419)	0.1291 (6.7498)	−0.08072 (−0.5926)	−0.2225 (−1.5686)	0.6810	3.0844
−0.0569 (−1.2568)	0.1607 (1.8094)	0.0347 (2.7369)	0.1030 (1.9851)	0.1436 (1.9305)	0.3695	8.13445*

서 우리는 中小企業의 育成問題가 從業員規模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中小企業의 保護育成政策은 中小企業의 近代化·系列化를 통하여 經濟全體의 效率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從業員規模 200~299人을 가진 企業은 法律上 中小企業이면서 大企業과 區別되지 않는 生產形態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日本의 경우를 보면 1963년부터 1966년 사이에 重工業의 눈부신 成長을 기록한 바 있고, 같은 期間동안에 從業員規模 1,000人 이상의 大企業에서 雇傭의 增加가 가장 빨랐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같은 期間동안에 從業員規模 20人 미만의 小企業에서의 고용증가율이 두번째로 많았다는 것이다[17]. 이것은 中小企業의 均衡있는 發展을 단적으로 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더미(dummy) 變數는 技術進步의 정도를 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推定結果로는 우리 나라의 製造業에서 中小企業이나 大企業을 막론하고 技術의 進步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KDI의 다른 硏究結果[18]로도 밝혀진 사실인데 이것은 앞으로의 經濟政策 수립에 중요한 課題를 던져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高度成長이 量的 팽창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資源의 效率的 이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일이며 이는 또한 中小企業發展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한다.

세째, 우리 나라는 大企業에서 오히려 代替彈力度가 높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서, 하나는 우리 나라의 大企業이 生產方式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여 주는 小企業的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

〈表 10〉 產業別 代替彈力度와 規模의 經濟性

產業(製造業)分類	(199人 基準)				(299人 基準)			
	中小企業		大企業		中小企業		大企業	
	σ	ν	σ	ν	σ	ν	σ	ν
飮食料品 및 담배製造業	0.8812	−5.2566	0.8184	−3.2198	0.9535	−0.6700	0.5184	—
纖維, 衣服, 가죽工業	0.4891	1.1683	1.2588	0.6809	0.2461*	1.1496	1.5027	0.7796
製材業, 나무製品 및 家具製造業	0.0101*	1.1054	0.0563*	1.0556	1.0681	1.00*	0.4149	1.1299
종이, 종이製品 및 印刷出版業	0.2589	1.2722	1.0870	0.3714	0.3118	1.3016	1.0978	−2.0676
化學·石油·石炭·고무플라스틱製品	0.8901	1.00*	1.6119	0.8455	0.9763	1.00*	1.5538	1.4835
非金屬鑛物製品製造(石油·石炭 製品 제외)	0.3771*	1.4376	0.9692	0.2506	0.2674*	1.4128	0.8652	−2.8141
第1次 金屬製造業	0.7242	1.4780	0.7537	2.4170	0.6836	1.3816	0.7774	2.9522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製造業	0.2061	1.1296	0.8163	2.4298	1.094	1.00*	0.8247	3.7943
其他製造業	0.5871	1.6450	0.4709	1.1425	1.1860	0.7772	0.1607	1.043

註 : 90% 留意水準에서 $\sigma=0$, $\nu=1$을 의미함.
σ : 代替彈力度, ν : 同次性의 級數

17) Watanabe, S. (1970).
18) 金迪敎(1973).

는 우리 나라의 中小企業이 前近代的이어서 (특히 199人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近代化가 절실히 요청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財閥企業들이 많은 中小企業들을 쉽게 거느리게 되는 것이다.

네째, 〈表 10〉에 요약된 바와 같이 規模에 대한 經濟性(ν)을 보면 中小企業은 일반적으로 規模에 대한 收益이 일정함을 보여 주는 반면에 中小企業型이라고 인정되는 一部產業(例 : 음식료품, 종이제품, 非金屬鑛物製品등)에서의 大企業은 規模에 대한 收益이 減小(ν<1)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섬유, 의복, 가죽공업, 종이, 종이製品 및 印刷出版業, 非金屬鑛物製品 등과 같이 規模에 대한 收益이 1보다 작은 產業에서는 大企業들을 中小企業으로 專門化, 系列化하는 經濟政策이 經濟全體의 效率增加를 위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Ⅶ.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 製造業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의 役割 및 그 現況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또한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生產函數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제 그 內容과 結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는 過去 輸入代替와 輸出增加를 통한 高度成長이 經濟政策의 핵을 이룸으로써 大企業의 伸張은 눈부신 바 있었으나 中小企業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둘째, 오일쇼크가 主導한 國際經濟秩序의 攪亂과 美國을 위시한 各國의 保護主義政策의 팽창은 大企業들로 하여금 國內市場 침투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中小企業問題의 根源을 이루게 되었다.

세째, 그러나 中小企業의 育成·發展은 大企業建設過程에서 보여 주었던 바와 같이 保護나 庇護에 의한 方式으로는 불가능하고 競爭을 바탕으로 한 生成을 거듭하면서 發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政策의 基本目標이어야 한다.

네째, 우리는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賃金이 大企業과 比較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빨리 上昇하였음을 發見하였다. 1966~77년 기간동안에 199人을 基準으로한 中小企業에서는 平均賃金이 3.3倍나 上昇한데 반하여 大企業에서는 2.1倍 增加하였다. 中小企業의 大企業에 대한 賃金比率이 1966년에 47.9%(大企業=100)이던 것이 1977년에는 76.5%로 上昇하였으며 이것은 日本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隔差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生產要素의 效率的 이용과 經濟의 效率을 提高하기 위하여서는 技術上의 效率(technical efficiency)과 價格上의 效率(efficiency in price)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大企業의 生產方式과 中小企業의 生產方式이 구분되는 指標이다. 中小企業에서는 일반적으로 勞動의 費用이 저렴한 대신에 資本의 費用이 높으므로 勞動集約的인 生產方式을 택하는 것이 價格面에서 더 效率的이다.

여섯째, 우리 나라의 製造業을 中小企業基本法이 定하는 바와 같이 299人을 基準으로 하여 中小企業과 大企業을 區分한 후 이들의 生產函數를 推定하여 보면, 서로 구별이 안될 정도로 中小企業과 大企業은 生產 및 生產方

式이 유사하다.

일곱째,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大企業에서는 資本과 勞動의 代替彈力度가 높고 中小企業에서는 낮음으로써(199人을 基準으로 하였을 때) 大企業의 生產活動이 오히려 더 유연함을 알게 된다. 이것은 한편 우리 나라의 일부 大企業이 中小企業的(中小企業 業種)임을 大規模로 경영하는 경우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서 우리 나라의 中小企業은 前近代的임을 의미한다.

여덟째, 우리 나라의 企業은 大企業 및 中小企業을 막론하고 技術의 增加가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 經濟가 양적 팽창에 치우치고 海外로부터 導入된 技術의 同和, 技術의 開發, 技術의 蓄積에는 미약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過去 經濟環境은 中小企業發展에 불리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高度成長過程에서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비교적 잘 발달된 大企業, 잘 敎育된 풍부한 勞動力 등 우리 나라의 現與件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의 中小企業의 展望은 상대적으로 밝다고 보여진다. 다만 中小企業의 발전은, 過去 大企業 育成方式과는 달리 競爭을 바탕으로 한 企業家精神을 발휘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 各年度.

金迪敎, 「우리 나라 製造業의 生產性 分析」, 『韓國開發硏究』, 1979. 3.

서울經濟新聞, 1980. 7. 30.

中小企業振興工團, 『法規集』, 1979.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Cooper, Arnold, "R & D is more Efficient in Small Companies", *Harvard Business Review*, 1964.

Harper, Malcolm, "The Employment of Finance in Small Busines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975.

Hart, Keith, "Small Scale Entrepreneurs in Ghana and Development Planning",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970.

Hoselitz, Bert F. "Small Industr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1959, Reprinted in Economic Policy for Development ed. by Livingstone, Penguin Books, 1971.

Katz, Jorge M., *Production Functions, Foreign Investment and Growth*, North-Holland, 1969.

Minasian, Jora R.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and Constant Output Demand Curves for Lab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61.

Morawety, David,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in Industry: What do we learn from Econometric Estimates?", *World Development*, 1976.

Motai, Shokichi and Ohkawa, Kazashi, *Small Scale Industries, A Study of Japan's 1966 Manufacturing Census*,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er of Japan, 1978.

O'Herlihy, C. St. J., "Capital-Labor Substitu-

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A Problem of Measure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72.

Ohkawa, Kazushi and Tajima, Mutso, *Small-medium Scale Manufacturing Industry: A Comparative Study of Japan and Developing Nations*,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er of Japan, 1976.

Page, John M. Jr., *Small Enterprise in African Development: A Survey*, World Bank(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363), 1979.

Pindyck, R.S. and Rubinfeld, D.L.,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Analysis*, McGraw-Hill, 1976.

Staley, Eugene and Morse, Richard, *Modern Small Industry for Developing Countries*, McGraw-Hill, 1965.

Tajima, Mutsus, *Small-medium Scale Manufacturing Industry: Further Discussion in A Comparative Study of Japan and Developing N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er of Japan, 1978.

Watanabe, Susumu, "Entrepreneurship in Small Enterprise in Japanese Manufacturing", *International Labor Review*, 1970.

_____, "Sub-contracting, Industrialization and Employment Criterion", *International Labor Review*, 1971.

World Bank, *Employment and Development of Small Enterprises*, Sector Policy Paper, Feb. 1978.

韓國産業의 輸入代替 對 輸出의 相對的 誘因率 構造

南 宗 鉉

▷ 目 次 ◁

Ⅰ. 序 論
Ⅱ. 産業別 誘因率 推定方法과 資料
Ⅲ. 相對的 實効誘因率 構造와 評價
Ⅳ.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2次 世界大戰 이후 지난 30餘年間 開發途上國이 採擇해 온 經濟開發政策의 成果를 比較分析한 硏究結果에 의하면 대체로 輸出指向的 즉, 對外指向的 成長政策이 輸入代替를 통한 成長政策보다 훨씬 優越하였다는 것은 거의 立證된 事實이라고 하겠다[1].

對外指向的 政策의 相對的 優越性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유로는 먼저 對外指向的 政策下에서는 産業化의 初期段階에서 비교적 그 나라에 比較優位가 있는 産業이 우선적으로 開發될 수 있기 때문에 效率的인 資源配分을 기할 수 있다는 利點, 그리고 企業들이 國際市場을 相對로 生産·販賣함으로써 規模經濟를 최대한 活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國際競爭을 통하여 生産技術 및 經營의 合理化 내지는 向上을 계속 追求하게 된다는 利點 등을 들 수 있다. 더우기 輸入代替를 위한 支援政策은 대체로 産業間에 差等的으로 適用되는 데 반해, 輸出指向政策에 의한 支援은 모든 産業間에 비교적 中立的으로 適用되어 價格歪曲에 따른 經濟費用이 相對的으로 적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2].

그러나 輸出指向政策의 相對的 優越性이 곧 그 絶對的 優越性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生産·分配活動이 外部經濟와 不確實性으로 인한 制約을 받지 않는다고 假定한다면 經濟福祉는 自由貿易下에서 가장 높아질

筆者 : 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1) Little, Scitovsky and Scott(1970), Balassa and Associates(1971, forthcoming). Bhagwati and Krueger(1973), Bhagwati(1978) 그리고 Krueger (1980) 등 참조.

2) 輸出指向政策과 經濟成長의 相互聯關性에 대한 理論的 假說에 대해서는 Krueger(1980) 참조.

〔圖 1〕 經濟福祉와 交易集約度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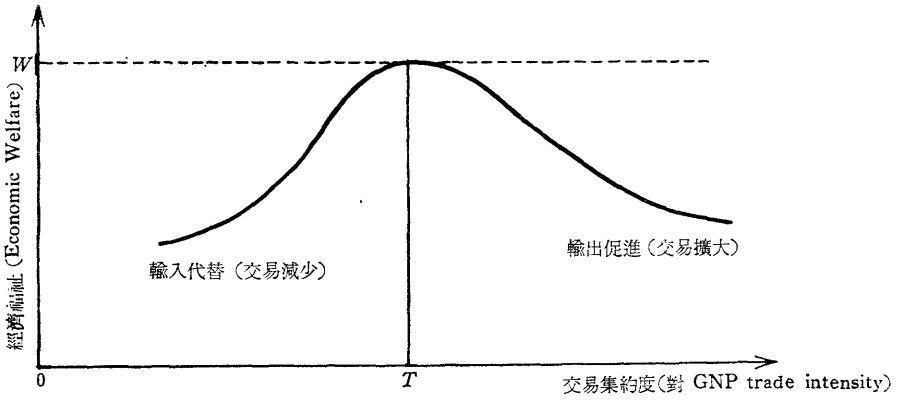

것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輸出指向政策은 어디까지나 窮極的으로 自由貿易體制를 確立하기 위한 하나의 過程이라는 點에서 그 理論的 妥當性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圖 1〕은 한 나라의 經濟福祉水準과 交易集約度(對 GNP trade intensity)의 關係를 表示한 것인데, 縱軸은 經濟福祉水準을, 그리고 橫軸은 交易集約度를 各各 表示한다[3]. 〔圖 1〕에서 w^*와 T^*는 各各 自由貿易下에서 얻어지는 經濟福祉水準과 交易集約度를 나타내며, 自由貿易으로부터의 離脫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交易減少, 즉 T^*로부터 左側離脫이고 다른 하나는 交易擴大 즉, T^* 이상으로 交易이 增加하는 右側離脫이다. 여기에서 前者는 輸入關稅, 數量規制, 輸入禁止 등과 같은 주로 輸入代替政策에서 惹起되며 後者는 輸出에 대한 直接補助 혹은 租稅減免 등의 惠澤을 賦與함으로써 交易이 最適水準(T^*) 以上으로 擴大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經濟開發政策은 지난 1960年代 上半期를 前後하여 輸入代替로부터 輸出指向的으로 轉換되었고 이를 계기로 급속한 貿易의 擴大와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음은 周知의 사실이다[4]. 그러나 그동안 輸入自由化가 극히 不振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韓國은 실제로 1960年代 이후 輸出促進과 輸入代替를 동시에 추구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1970年代에 들어와서부터 적극적으로 推進되고 있는 重化學工業의 育成은 적어도 現在까지는 輸入代替의 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다[5]. 그 결과 1970年代末 現在 우리 나라의 產業誘因政策은 지극히 複雜한 構造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誘因策들이 複合的으로 全產業과 個別產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把握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硏究가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本硏究에서는 1978年度 現在 韓國의 諸產業

3) 〔圖 1〕은 第11次 太平洋貿易開發會議(1980年 9月 1~4日, KDI)에서 R. Findlay 敎授가 提示한 것이며 經濟福祉曲線이 T^*를 中心으로 반드시 對稱이 될 필요는 없다.

4) 1964~78國間 輸出은 年平均 29.1%, GNP는 10.0%로 各各 上昇하였으며 對 GNP 輸出比重은 1964年 4.4%에서 1978年에는 41.8%로 上昇하였다. Nam (1980) 참조.

5) 最近 韓國의 產業 및 貿易政策에 대해서는 Westphal and Kim(1978), Hong(1979), 그리고 Nam(1980) 참조. 특히 Nam(1980, p.22)에 의하면 1968~78年間 韓國의 全產業 平均 名目保護率이 14%에서 18%로 上昇한 것으로 推定되었음.

誘因策들이 輸入代替와 輸出에 어느 정도의 誘因率을 各各 賦與하고 있는가를 産業別로 計測評價함으로써 向後 産業誘因政策의 合理化에 基礎資料를 提示하려는 데 그 主目的을 두고 있다[6].

本稿의 內容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Ⅱ節에서는 輸入代替(國內販賣)에 대한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 그리고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을 産業別로 計測하는데 사용된 基本資料와 計測方法論에 대해서 言及하고 있다. 그리고 Ⅲ節에서는 그 計測結果를 主要産業別, 貿易類型別, 그리고 輸入代替와 輸出에 대한 相對的 誘因率 構造를 計測評價하고 있으며, 끝으로 Ⅳ節에서는 本硏究의 結果를 要約하여 提示하고 있다.

Ⅱ. 産業別 誘因率 推定 方法과 資料

1. 輸入代替(國內販賣)에 대한 誘因率

일반적으로 輸入代替에 대한 實效誘因은 國內販賣에 대한 名目保護率 以外에도 主要産業에 대한 租稅減免 및 金融支援 등 多樣한 政府支援策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특히, 1970年代에 推進된 第3, 4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에서 소위 戰略産業으로 選擇된 重化學工業은 여러 가지 支援施策을 포함하고 있는 個別産業育成法에 의해서 保護를 받고 있으며 또한 이 産業들은 대부분 아직 輸入代替産業의 範疇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7]. 그러나 이와 같은 支援政策에 의한 實質的인 保護度를 計量化하기에는 아직 充分하고 詳細한 資料가 없기 때문에 本硏究에서는 이에 대한 1次的인 接近方法으로 國內市場保護의 제일 중요한 決定要因이라고 할 수 있는 名目保護率을 計測하고 이에 의한 産業別 實效保護率을 推定함으로써 輸入代替에 대한 實效誘因率 構造로 代用하고자 한다.

가. 名目保護率

名目保護率은 어떤 동일한(homogeneous) 品目에 대한 國內價格과 國際價格(border price)의 차이를 後者의 百分率로 표시한 것이다. 本硏究에서 名目保護率 推定의 對象品目으로는 1975年度 韓國銀行 産業聯關表의 392個 基本産業分類中 第1, 2次 産業部門인 318個 部門을 구성하는 總 1,855個 品目中 가능한 한 各部門의 生産比重이 60% 이상이 되도록 總 537個의 代表品目을 選定하였다. 그리고 各各의 代表品目에 대해서 法定關稅率, 實績關稅率 그리고 潛在關稅率을 推定하였으며 各品目의 名目保護率은 이 세가지 候補 가운데 하나를 選擇하는 方法을 사용하였는데, 이 때에 그 選擇 根據로는 各品目의 輸出入比重, 輸出入에 대한 數量規制의 有無와 方法, 國內 市場에서의 價格規制 有無, 그리고 그 商品의 特性 등이 參考資料로 이용되었

6) 筆者는 이미 國內市場保護에 대한 産業誘因政策을 檢討하고 그에 따른 影響을 大分類 産業別로 計測하여 그 結果를 「韓國開發硏究」(1980, 여름호)에 發表한 바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 부문에 대한 仔細한 說明을 省略함으로써 重複을 피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혀 둔다.

7) 重要産業의 個別育成法에 의한 支援은 주로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의 8項에 의한 租稅特例와 關稅法 28條에 의한 主要産業의 關稅減免 그리고 國民投資基金, 産業合理化資金, 外資導入 등과 같은 財政金融上의 支援, 그 밖에 行政支援과 工團造成 등을 通한 支援을 그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다.

다[8]. 이렇게 推定된 537個 品目의 名目保護率은 産業聯關表의 分類에 따라 318個部門으로 合成되었으며 이때에 加重値로는 各品目의 國際價格基準 國內販賣額이 사용되었다.

나. 輸入代替(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어떤 商品의 生産過程에서 交易可能한 中間財가 投入되는 경우, 國內生産者에게 實際로 賦與된 保護度는 諸産業誘因策이 生産者의 附加價値에 미치는 영향을 計測함으로써 推定해 볼 수 있다. 즉,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은 各投入·生産物에 대한 名目保護率과 産業聯關表에서 얻을 수 있는 國際價格基準 投入係數를 사용하여 推定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다음과 같은 假定이 必須的으로 도입된다. 즉, (1) 中間投入物과 生産要素間의 代替彈力性이 零이고, (2) 生産規模의 變化에 關係없이 投入係數는 不變이며 (3) 輸出入에 대한 價格彈力性이 無限大라는 假定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産業聯關表의 産業分類中 電力, 가스, 用水 등 輸送費의 負擔 때문에 실제로 交易이 불가능한 品目이 多數 存在하는바, 實效保護率은 이러한 非交易財의 處理에 따라 Corden 方法과 Balassa 方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Corden 方法에서는 中間財로 投入된 非交易財로 그 最終生産品과 동일한 實效保護를 받는 것으로 假定하는 반면, Balassa 方法에서는 中間財로 投入된 非交易財의 實效保護率은 零으로 假定한다[9]. 이상과 같은 假定下에서 本硏究에서는 1978年度 産業別 名目保護率과 392個部門으로 分類된 1975年度 韓國銀行 産業聯關表를 이용하여 實效保護率을 推定하였는데 이 때에 사용된 推定方程式은 다음과 같은 部分均衡模型으로 表示할 수 있다[10]. 즉,

$$EP^B = T[I - A_{ij} - R_{in}A_{nj}][I - \widehat{1^\circ A_{ij}} - \widehat{1^\circ A_{nj}}]^{-1} \quad \cdots\cdots(1)$$

$$EP^C = T[I - A_{ij} - R_{in}A_{nj}][I - \widehat{1^\circ A_{ij}} - \widehat{1^\circ A_{nj}} + \widehat{1^\circ R_{wn}A_{nj}}]^{-1} \quad \cdots\cdots(2)$$

단, EP^B, EP^C = 318 交易部門에 대한 Balassa와 Corden 方式에 의한 實效保護率을 各各 列「벡터」로 表示한 것.

T : $[T_1, T_2, \cdots, T_{318}]$ 즉, 318 交易部門의 名目保護率을 列「벡터」로 表示한 것.

A_{ij} : 318 交易部門 $j(j=1, 2, \cdots, 318)$ 生産에 대한 交易部門 i $(i=1, 2, \cdots, 318)$의 投入係數를 國際價格基準의 行列式으로 表示한 것[11].

R_{in} : 非交易部門$n(n=318, \cdots, 392)$에 대한 交易部門 i $(i=1, 2, \cdots, 318)$의 直·間接 總投人係數의 行列.

8) 여기서 實績關稅率은 輸入額에 대한 關稅徵收額을 百分率로 표시한 것이며 이 때에 輸出用 原資材는 關稅還給이 許容되므로 輸入額은 內需用 輸入을 意味한다. 또한 潛在關稅率은 그 對象品目에 대한 國內·國際價格을 直接 比較하여 推定한 것으로 이는 關稅 以外의 輸入規制 및 價格規制가 存在할 경우 가장 적합한 名目保護率의 指標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價格比較의 對象品目間에 質的인 差異가 存在할 경우 그 正確性이 問題가 된다. 結果的으로 537個 品目의 名目保護率의 選定基準으로는 法定關稅率이 48個, 實績關稅率이 86個, 潛在關稅率이 202個 品目에 各各 適用되었고, 나머지 201個 品目에는 零의 名目保護率이 假定되었다.

9) 따라서 非交易財를 그 生産에 直·間接으로 投入된 交易可能한 中間財部分과 附加價値部分으로 나눌 때 Balassa 方法에서는 이 附加價値를 最終製品의 直接附加價値에 포함하지 않으나, Corden 方法에서는 이를 포함한다는 差異點이 있다.

10) 實效保護率의 推定方法과 그 制約性에 대해서는 Balassa(1971) 그리고 Balassa and Schydlowsky(1974) 등을 參照.

11) 여기서 國內價格基準 産業聯關表를 國際價格基準으로 換價하는 方法은 Kim(1978)이 使用한 方法과 거의 同一한 方法에 依存하였다. 약간의 差異點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임.

A_{nj} : 交易部門 j에 대한 非交易部門 n의 投入係數 行列.

R_{wn} : 非交易部門 n의 生產比重 直·間接 總附加價値의 比率을 對角行列(diagnol matrix)로 表示한 것.

$1°$: 모든 要素가 1인 列「벡터」.

$\widehat{1°A_{ij}}$: $1°A_{ij}$의 列「벡터」를 對角行列로 表示한 것.

$\widehat{1°A_{nj}}$: $1°A_{ij}$의 列「벡터」를 對角行列로 表示한 것.

$\widehat{1°R_{wn}A_{nj}}$: $1°R_{wn}A_{nj}$의 列「벡터」를 對角行列로 表示한 것.

2. 輸出에 대한 誘因率

輸出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에 相應하는 槪念으로서 소위 實效補助率의 槪念에 의해서 推定되었다.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은 諸輸出支援政策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補助를 總體的으로 計量化하여 이를 輸出生產에서 發生한 國際價格基準 附加價値에 대한 百分率로 表示한 것이다. 즉, 이것을 式으로 表示하면,

$$ES^B = S[I - \widehat{1°A_{ij}} - \widehat{1°A_{nj}}]^{-1} \quad \cdots\cdots\cdots(3)$$

$$ES^C = S[I - \widehat{1°A_{ij}} - \widehat{1°A_{nj}} + \widehat{1°R_{wn}A_{nj}}]^{-1} \cdots\cdots\cdots(4)$$

단, ER^B, ES^C : 318 交易部門에 대한 Balassa 및 Corden 方式에 의한 輸出補助率의 列「벡터」.

S : 318 交易部門에 대한 輸出補助額의 列「벡터」.

위의 式 (3)과 (4)에서 사용된 S는 輸出生產에 賦與된 모든 支援政策 즉, 金融 및 稅制上의 支援, 原資材 輸入에 대한 減耗許容, 輸出入「링크」制, 公共料金割引 등으로부터 發生하는 모든 補助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本硏究에서는 이들 支援策中 그 比重으로 보아 가장 重要한 支援政策인 金融 및 稅制上의 補助만을 計量化가 試圖되었으며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단히 言及하고자 한다[12].

가. 金融上의 補助

우리 나라의 輸出支援金融은 1960年 中半이후 이룩한 急速한 輸出伸張과 더불어 계속 量的으로 擴大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種類도 상당히 複雜化되었다. 〈表 1〉은 1966~78年間 우리 나라 輸出支援金融의 體制와 融資實績을 要約한 것이다. 〈表 1〉에서 短期輸出支援金融이라 함은 그 融資期間이 1年 이내의 것을, 中長期輸出支援金融은 그 이상의 것을 意味한다[13]. 輸出支援金融은 1966年 60億원에 불과했으나 1966~78年間 年平均 名目輸出增加率 39%를 훨씬 上廻하는 67%씩 增加하여 1978年에는 무려 1兆 6,597億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民間與信總額에 대한 總輸出支援金融의 比重이 1966年의 5.1%에서 1978年에는 20.5%로 增加하였다. 또한 同期間에 總輸出支援金融中 長期輸出支援金融의 比率이 20%에서 47%로 크게 提高되어 그동안 施設資金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높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12) 1960年代 이후 韓國의 產業 및 貿易政策, 특히 輸入代替와 輸出誘因政策에 대한 歷史的 槪要에 대해서는 Nam(1980) 참조.

13) 短期輸出支援金融中 輸出金融은 원래 生產集荷資金, 完製品購買資金, 原資材購買資金 및 原資材輸入資金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1972年 3月에 統合하여 輸出金融으로 改稱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財務部(1979) 참조.

〈表 1〉 輸出支援金融 融資實態

(단위 : 10億원)

分類 \ 年度	1966	1970	1974	1976	1978
1. 短期輸出支援金融	4.8	57.3	359.5	582.5	883.5
輸出金融	3.6	48.8	267.9	457.0	836.7
外貨表示供給金融	1.2	4.5	50.2	75.7	18.3
農水產物 輸出準備 資金	—	4.0	41.4	49.8	28.5
2. 中長期輸出支援金融	1.2	25.6	247.0	311.3	776.2
延拂輸出支援資金	—	—	4.3	56.2	164.6
外貨貸出	—	21.4	166.6	179.0	556.1
中小企業輸出產業化資金	1.2	4.2	9.8	9.1	15.9
輸出產業設備金融	—	—	66.3	67.0	39.6
3. 合計 (1+2)	6.0	82.9	606.5	893.8	1,659.7
4. 民間部門國內與信	118.8	919.4	2,862.5	4,381.4	8,082.5
5. 總輸出額(百萬달러)	250.3	882.2	4,515.1	7,814.6	12,710.6
2/3 (%)	19.7	30.9	40.7	34.8	46.8
3/4 (%)	5.1	9.0	21.2	20.4	20.5
3/5 (원)	24.0	94.0	134.3	114.4	130.6

資料 : 韓國銀行

〈表 2〉 輸出支援金融의 金利 및 利子補助金

(단위 : %, 10億원)

	1966	1970	1974	1976	1978
1. 短期輸出支援金融					
輸出金融	6.5	6.0	8.9	7.4	9.0
外貨表示供給金融	6.5	6.0	8.9	7.4	9.0
農水產物 輸出準備 資金	—	8.8	6.0	7.4	9.0
2. 中長期輸出支援金融					
延拂輸出支援資金	—	8.0	8.2	7.4	7.0
外貨貸出	—	9.0	12.2	10.1	13.7
中小企業輸出產業化資金	12.4	12.0	10.0	10.0	16.0
輸出產業設備金融	—	—	12.0	12.8	16.0
3. 加重平均金利[1]	7.7	7.2	10.0	8.4	10.6
4. 一般貸出金利	26.4	24.0	15.5	18.0	19.0
5. 總利子補助金[2]	4.1	13.9	32.3	88.5	139.5

註 : 1) 當該年의 融資實績을 加重値로 하였음.
2) 〈表 1〉의 融資實績에 (4-3)을 乘算하여 求했음.

資料 : 韓國銀行

輸出支援金融에 의한 利子補助額은 輸出支援金融 年末殘額에 輸出優待金利와 一般貸出金利間의 차이를 乘算하여 推定하였으며, 〈表2〉는 1966~78年間 輸出優待金利와 一般貸出金利 및 總利子補助額을 보여 준다. 즉, 1978年度 現在 一般貸出金利는 19%이었던 것에 비해 加重平均된 輸出優待金利는 10.6%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總利子補助額도 1966年 41億원인 데 비해 1978年度에는 무려 1,395億원에 이르고 있다. 더우기 韓國에서는 一般貸出金利 역시 自由市場金利에 훨씬 未達하는 一種의 優待金利로 看做할 수 있어, 本稿에서 推定한 利子補助額은 상당히 過小推定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즉, 1978年度 現在 私債市場金利는 42%, 그리고 製造業의 1972~75年間 年平均 資本의 收益性은 43%이었음이 報告된 바 있어 만약 自由市場金利를 一般貸出金利와 私債市場金利의 中間쯤인 30% 정도로 假定할 경우 위와 같이 推定된 利子補助額은 100% 정도 過小推定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14].

輸出支援金融에 의한 産業別 利子補助額의 推定은 輸出支援金融의 産業別 配分資料가 없어 다음과 같은 間接的인 方法에 의존하였다. 즉, 輸出支援金融中 輸出金融과 外貨表示供給金融의 産業別 配分은 當該年의 各産業의 輸出額에 比例한다고 假定하였다. 그리고 農水産物輸出準備資金과 延拂輸出金融은 各各 融資對象에 包含된 産業들의 輸出額에 比例하여 配分하였으며 그 외의 中長期輸出支援金融은 個別産業의 輸出額에 比例한다고 假定하였다[15].

나. 稅制上의 補助

輸出産業에 대한 稅制上의 支援은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關稅減免, 間接稅免除, 그리고 諸直接稅 減免을 그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嚴密한 意味에서 볼 때 關稅減免과 間接稅減免은 自由貿易을 基準으로 해서 볼 때 純粹補助라고 할 수 없으므로 本硏究에서는 直接稅減免에 의한 補助를 稅制上의 補助로 看做하였다.

政府는 1973年 外貨獲得事業에서 發生한 所得에 대한 法人稅 혹은 所得稅의 直接減免制度를 廢止하고 그 대신 海外市場開拓準備金, 輸出損失準備金 그리고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制度와 加速減價償却制度를 導入하였으며, 1976年에는 價格變動準備金의 損金算入制를 新設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16]. 그러나 本硏究에서는 上記 支援策中 加速減價償却 그리고 海外市場開拓準備金과 輸出損失準備金에 의한 産業別 補助額만을 다음과 같은 間接的인 方法에 의해서 推定하였다[17]. 즉, 加速減價償却에 의한 補助額은 1975年度 産業聯關表의 一般償却에 의한 資本消耗充當金을 우선 1978年度 産出額基準으로 擴大推定한 후 産業別로 加速減價償却의 規定에 따라 算出하였

14) 私債利子率과 製造業의 資本收益에 대한 資料는 各各 Cole and Park(1979, p.161) 및 Hong(1979, pp.176~205) 참조.

15) 輸出金融 및 外換表示供給金融은 "外貨收入의 美貨「달러」當 x원" 또는 "輸出을 위한 所要資金의 y%"로 規定하고 있다. 또한 農水産物輸出支援資金은 양잠, 해태, 굴 등 13個 品目을 그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延拂輸出金融은 船舶, 産業設備, 鐵道車輛, 機械類 등을 그 對象品目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韓國貿易協會의 輸出支援制度(1978), 財務部의 韓國의 金融政策(1979) 참조.

16) 仔細한 內容은 韓國貿易協會의 『貿易便覽』(1979) 參照.

17) 海外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은 海外投資額의 10%, 그리고 價格變動準備金의 損金算入은 年末 現在 在庫資産額의 5%로 規定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資料不足은 물론 額數面에서도 相對的으로 微少할 것으로 推測되어 本硏究에서는 計量에서 除外되었다.

다[18]. 또한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 損金에 의한 補助額은 모든 企業이 法定許容限度額인 當該年度 輸出額의 1%를 완전히 海外市場開拓에 消盡한 것으로 假定하여 算出했으며 그리고 輸出損失準備金의 損金은 法定許容限度額이 輸出의 1%이지만 輸出業者가 실제로 輸出에 의한 損失이 없는 것으로 假定하여 그 損金의 償還時까지 發生하는 利子額을 現在價値로 換算하여 推定하였다[19].

〈表 3〉은 이상에서 說明한 方法에 의해서 1978年度 現在 輸出産業에 賦與된 金融 및 稅制上의 輸出補助額을 推定하여 11個 大分類 産業別로 提示한 것이다. 同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8年度 現在 全産業에 賦與된 輸出補助額은 3,260億원에 달하는 것으로 推定되었으며 그중 43%인 1,395億원이 金融上의 補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金融上의 補助額은 自由市場金利 대신 一般貸出金利와 輸出支援金融金利間의 差를 基準으로 하여 算出한 것이므로 상당히 過少推定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指摘한 바 있다.

Ⅲ. 相對的 實效誘因率 構造와 評價

前節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한 産業에 대한 實效誘因率을 測定한다는 것은 自由貿易條件下에서 存在할 生産者의 附加價値에 諸産業誘因政策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計量化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計測된 實效誘因率의 經濟的 意味를 明

〈表 3〉 1978年度 輸出補助金 現況

(단위 : 百萬원)

	利子補助金 (1)	直接稅補助金				輸出補助金 (1)+(2)	(1)/(2) (%)
		特別加速償却	海外市場開拓準備金	輸出損失準備金	合計 (2)		
1. 農林水産業	7,068.2	21,366.1	3,253.9	1,303.5	25,923.5	32,991.7	21.4
2. 加工食品	4,052.2	1,567.4	1,865.5	747.3	4,180.2	8,232.4	49.2
3. 飮料및煙草	327.7	308.7	150.9	60.4	520.0	847.7	38.7
4. 鑛業및에너지	774.3	1,860.6	356.5	142.8	2,359.9	3,134.1	24.7
5. 建築材料	1,920.5	4,186.7	884.2	354.2	5,425.1	7,345.6	26.1
6-A. 第1中間財	12,419.4	9,284.7	5,717.5	2,290.3	17,292.5	29,711.9	41.8
6-B. 第2中間財	27,659.0	25,431.6	12,527.7	5,018.4	42,977.7	70,636.7	39.2
7. 非耐久消費財	43,227.9	22,804.5	19,900.7	7,971.9	50,677.1	93,905.0	46.0
8. 耐久消費財	22,713.3	12,363.4	7,331.2	2,936.8	22,631.4	45,344.7	50.1
9. 機械類	5,074.7	3,033.5	1,537.2	615.8	5,186.5	10,261.2	49.5
10. 輸送裝備	14,292.1	3,144.9	4,329.2	1,734.2	9,208.3	23,500.4	60.8
全産業總計	139,529.4	105,352.1	57,854.4	23,175.4	186,381.9	325,911.3	42.8

18) 加速減價償却은 그 規定에 따라 輸出額의 總收入額의 50%를 超過하는 경우 一般償却의 30%, 그리고 50%에 未達한 경우에는(一般償却×0.3×輸出額/總收入額)×2의 式에 의해서 算出되었다. 仔細한 稅에 대해서는 玄岩社(1978) 參照.

19) 損失이 없는 경우 그 損金을 1年据置 3年均等分割償還原則에 의해서 그 補助額을 다음과 같은 式에 의해 算出하였다.

$$\text{補助額}=\frac{L\cdot r}{1+r}+\frac{L\cdot r}{(1+r)^2}+\frac{(2/3)L\cdot r}{(1+r)^3}+\frac{(1/3)L\cdot r}{(1+r)^4}$$

단, L=準備金의 損金算入額, r=當該年의 利子率

確하게 把握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어떤 理想的인 條件下에서 어느 特定産業이 正의 實效誘因率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超過利潤(economic profit)의 發生, 非效率的 生産에 대한 補償, 혹은 이 두 가지의 混合을 意味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모든 産業의 生産函數가 國家間에 동일하다고 假定할 때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産業에 대해 正의 實效誘因率을 賦與한다는 것은 곧 그 産業에 超過利潤을 發生케 할 것이며 이것은 또한 어느 정도 그 産業으로의 産業誘因效果를 誘發시키는 指標로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現在의 産業誘因體制가 모든 産業이 長期均衡에 이를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生成·變遷되어 온 하나의 歷史的 産物이라고 假定한다면 現在 各産業에 賦與되고 있는 實效誘因率은 各 産業의 生産效率性에 따라 適正利潤(normal profit)이 保障될 수 있도록 保護(혹은 非保護)를 해 주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에 正의 實效誘因率은 그 生産에 投入된 國內資源費用(domestic resources cost)이 國際價格基準 生産額보다 그만큼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20].

또한 여기서 强調해야 할 것은 本硏究에서 推定된 産業別 혹은 販賣市場別 實效誘因率은 그 絶對値보다는 어디까지나 産業間 혹은 販賣市場間의 相對的 側面에서 評價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이것은 輸入代替 혹은 輸出産業과 같은 交易部門에 대한 實效誘因率이 換率의 過小 혹은 過大評價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換率의 過小 혹은 過大評價는 各各 交易部門의 非交易部門에 대한 相對的 保護(protection) 혹은 非保護(deprotection)를 意味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볼 때, 本 硏究에서 推定된 實效誘因率은 그 經濟的 意味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産業間 혹은 販賣市場間에 實效誘因率의 隔差가 存在한다는 것은 必然的으로 國內·國際價格의 歪曲에 의한 經濟的 福祉損失은 물론 非效率的 生産의 補償에 따르는 資源 浪費 등을 招來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産業別 實效誘因率 推定結果를 檢討해보고자 한다.

1. 輸入代替(國內販賣)와 輸出에 대한 相對的 誘因率構造

〈表 4〉는 1978年度 現在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 그리고 全體販賣에 대한 平均實效誘因率의 318個 産業別 推定結果를 11個 大分類 産業群으로 合成하여 要約한 것이다[21]. 여기서 産業群別 實效保護率과 實效補助率의 加重平均値 算出에는 1978年度 現在 個別産業의 國內販賣와 輸出을 위한 生産에서 誘發된 國際價格基準 附加價値가 各各 加重値로 사용되었으며, 平均實效保護率의 算出에는 國內販賣와 輸出의 附加價値 比率이 加重値로 사용되었다.

〈表 4〉에서 最大 關心事는 물론 1978年度 現在 우리 나라의 産業誘因體制가 과연 輸入代替와 輸出産業中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 偏奇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 하겠다. 먼저 全産業을 平均的으로 볼 때, Corden 方式

20) 따라서 本硏究에서 計劃된 實效誘因率의 經濟的 意味를 正確히 把握하려면 各産業의 實效誘因率에 相應하는 超過利潤의 發生與否 그리고 生産函數의 國際比較 등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21) 1978年度 主要産業別 推定結果는 1968年度 推定値와 對比하여 〈附表 1〉에 提示되고 있다.

에 의한 實效誘因率이 輸出은 16%인 데 비해 國內販賣는 24%로 나타나 1978年度 現在 우리 나라 產業誘因政策이 대체로 輸出보다 輸入代替에 相對的으로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全產業을 1次產業과 製造業으로 分離하여 相對的 誘因率 構造를 살펴보면 완전히 對照的인 結果를 보여 주고 있다. 즉, 1次產業에서는 輸出 對 國內販賣의 相對的 實效誘因率이 14% 對 59%로 輸入代替에 크게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는 반면, 製造業에 있어서는 4% 對 16%로 輸出에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全產業의 平均誘因率에 의해서 우리 나라의 產業誘因政策이 輸入代替에 相對的으로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다고 判斷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結論임을 알 수 있다. 즉, 1次產業에서는 國內市場에 대한 높은 保護로 交易減少를, 그리고 1978年度 우리 나라 總輸出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製造業에서는 輸出促進으로 交易擴大를 各各 招來하였을 것인바, 結果的으로 볼 때 輸入代替效果가 支配的으로 作用하여 우리 나라의 交易集約度가 〔圖 1〕에서 提示한 바 있는 最適貿易集約度 T^*의 左側에 位置할 것이지 혹은 輸出促進效果가 支配的으로 作用하여 T^*의 右側에 位置하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게 判斷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우기 個別產業群의 相對誘因率 構造를 보면, 農林水產業, 飮料 및 煙草, 非耐久性 消費財, 耐久性 消費財, 그리고 機械類와 輸送裝備部門에서는 國內市場이 輸出보다 높은 保護를 받고 있는 반면, 鑛業 및 에너지, 加工食品, 第1中間財, 第2中間財, 그리고 建設資材部門

〈表 4〉 產業別 輸出 및 內需販賣에 대한 相對的 實效誘因率 構造(1978)

(단위 : %)

	輸出 實效補助率		國內販賣 實效保護率		全體販賣 實效誘因率	
	Balassa	Corden	Balassa	Corden	Balassa	Corden
1. 農林水產業	16.6	14.9	77.1	73.4	72.7	69.1
4. 鑛業 및 에너지	12.1	10.8	−25.7	−23.8	−23.6	−21.8
第 1 次產業合計	16.1	14.4	61.9	58.7	58.6	55.5
2. 加工食品	51.2	18.1	−29.4	−16.0	−21.0	−12.4
3. 飮料 및 煙草	18.2	13.2	28.0	22.8	27.9	22.6
5. 建設材料	20.5	15.7	−15.0	−11.9	−10.3	−8.3
6-A. 第 1 中間財產業	22.8	16.9	−37.9	−27.4	−31.5	−22.7
6-B. 第 2 中間財產業	30.7	19.8	7.9	5.3	13.0	8.6
7. 非耐久消費財	17.9	12.7	31.5	21.9	24.3	17.0
8. 耐久消費財	42.5	25.3	131.2	81.0	85.5	52.3
9. 機械類	29.7	19.5	47.4	33.2	44.2	30.7
10. 輸送裝備	19.4	14.4	135.4	73.8	84.3	4.77
製造業合計	24.1	16.4	5.3	3.7	10.1	6.9
全產業總計	22.8	16.2	30.6	24.1	28.9	22.4
第 1 次產業 (加工食品包含)	18.4	15.0	55.5	50.0	52.5	47.2
製造業 (飮料 및 煙草除外)	24.1	16.4	2.7	1.9	8.3	5.7
製造業(飮料煙草와 加工食品 除外)	23.7	16.4	5.1	3.5	10.3	7.1
全產業 (飮料 및 煙草除外)	22.8	16.2	30.8	24.2	29.0	22.4

에서는 輸出이 國內市場보다 相對的으로 높은 保護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個別産業群들에 대한 相對的 實效誘因率이 각기 交易減少 혹은 交易擴大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히 分析하기 위해서는 各産業의 誘因率에 대한 供給彈性値의 分析이 이뤄져야 할 것이나 이는 本硏究의 範圍를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表 3〉에서 提示된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理由로 상당히 過小推定된 것임을 밝혀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첫째, 輸出支援金融에 의한 利子補助額 推定에 있어서 一般貸出과 輸出支援金融間의 金利差 代身에 自由市場金利(30%로 假定)와 輸出支援金利間의 差를 적용할 경우 利子補助額이 100% 정도 增加한다는 것은 이미 2節에서 指摘한 바 있다. 만약에 利子補助額이 100% 增加한다면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의 全産業 平均은 16%에서 23%로 上昇하여 國內販賣에 대한 全産業 平均 實效保護率 24%에 거의 接近한다[22]. 둘째,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産業에 있어서 輸出을 補助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國內市場에 대한 높은 實效保護와 獨寡占形態의 市場構造를 許容하는 一種의 「링크」(Link) 씨스템을 사용하여 왔다. 예를 들면 主要輸出品目인 電子電氣製品과 輸出의 初期段階에 있는 自動車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세째, 輸出促進을 위한 政府行政能力의 動員, 情報提供, 隘路事項의 迅速한 處理 등과 같은 갖가지 非公式的인 政府支援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支援事項의 實質的 重要性을 計量化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國內販賣에 비해 輸出에 상당히 有利하게 사용되어온 支援政策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諸支援事項을 考慮한다면 1978年度 現在 우리 나라의 産業誘因 政策은 대체로 輸入代替보다는 오히려 輸出에 다소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지 않았을까 推測된다. 물론 이때에 輸入代替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名目保護率에 의한 國內市場保護를 반영할 뿐 輸入代替를 目的으로 하는 重化學工業에 대한 投資支援 등을 전혀 考慮되지 않았을 경우이다.

또한 〈表 4〉에 提示된 産業別 實效誘因率 構造를 보면,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은 第1中間産業의 −27%에서 輸送裝備産業의 74%까지 産業間에 상당히 큰 偏差를 보여 주고 있는 반면,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은 鑛業 및 에너지産業의 11%에서 耐久性消費財産業의 25%까지 비교적 均等한 分布를 보여 주고 있다[23]. 이러한 結果는 輸出支援政策이 모든 産業에 비교적 中立的으로 適用된 反面, 國內市場保護政策은 産業間에 매우 差等的으로 適用되어 이에 따른 相對的 經濟費用(economic costs)이 훨씬 크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78年度 現在 國內市場에서 高率의 實效保護率을 받고 있는 個別産業으로는 家庭用電子製品(366%), 合成纖維製品(266%), 化粧

22) 利子補助額을 一般貸出金利 19%와 自由市場金利 30%(假定)를 基準으로 했을 때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의 比較

	一般貸出金利基準		自由市場金利基準	
	Balassa	Corden	Balassa	Corden
第1次産業	16.1	14.4	19.6	17.5
製造業	24.1	16.4	35.0	23.9
全産業	22.8	16.2	32.6	23.1

23) 특히 國內販賣에 대해서 鑛業 및 에너지(−24%), 食品加工(−16%), 建設資材(−12%), 그리고 第1中間財(−27%) 産業에서 「負」의 實效保護率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1978年度에 강력하게 施行된 國內價格規制政策에 基因한 바가 크다. Nam(1980) 참조.

品 및 齒藥(110%), 自動車(97%), 米穀(81%), 蓄産 및 養蠶(66%) 등 農産物과 消費財産業製品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심한 負의 實效保護率을 받고 있는 産業으로는 「타이어」(−78%), 鋼管(−65%), 合板(−66%), 綿絲(−56%), 시멘트(−41%) 그리고 無煙炭(−47%) 등 에너지 및 中間素材産業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24].

2. 製造業의 貿易類型別 誘因率 構造

지금까지는 輸入代替와 輸出에 대한 相對的 誘因率을 各個別産業의 國內販賣와 輸出에 賦與된 誘因率을 중심으로 檢討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時點에서 個別産業을 대충 그 輸入 및 輸出比率에 따라 몇 가지 貿易類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 때에 各貿易類型에 賦與된 平均誘因率 構造를 檢討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表 5〉는 製造業部門에 있어서 諸産業誘因政策의 效果를 貿易類型別로 平均하여 要約한 것이다. 同表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흥미있는 事實들을 觀察할 수 있다. 첫째, 1978年度 現在 輸出産業과 非競爭輸入産業은 그 法定關稅率이 各各 47%와 51%로서 輸入競爭 및 輸出競爭産業의 25%와 33%에 비해, 高率의 關稅에 의한 保護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名目保護率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反對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즉, 輸出産業 및 非競爭輸入産業의 名目保護率이 各各 4%와 5%로서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産業의 21%와 15%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記錄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1978年度 現在 우리나라의 關稅構造가 輸出産業 및 非競爭輸入産業中 상당수 品目에서 輸入禁止的 性格을 띠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둘째로, 國內市場에 대한 實效保護率 역시 輸出産業과 非競爭輸入産業이 各各 −1%와 −13%로 가장 낮은 반면,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産業의 實效保護率은 各各 35%와 26%로서 輸出에

〈表 5〉 製造業의 貿易類型別 誘因率構造 : 1978

(단위 : %)

	$X^{1)}$	$IC^{1)}$	$NIC^{1)}$	$XIC^{1)}$	全製造業平均
國內販賣					
法定關稅率	47.4	25.4	50.8	33.1	41.4
名目關稅率	3.6	20.8	5.4	15.0	10.0
實效保護率	−0.5	35.2	−12.8	26.2	3.7
輸出					
實效補助率	15.6	23.2	13.9	17.2	16.4
全體販賣					
實效誘因率	6.3	34.7	−12.4	22.1	6.9

註 : 1) 貿易類型의 定義는 Westphal and Kim(1977)의 方法에 따른 것이다. 즉,

輸出産業 (X) : 國內總産出額中 輸出分이 10% 以上.

輸入競爭産業 (IC) : 國內 總供給額中 輸入分이 10% 以上.

輸入非競爭産業 (NIC) : 輸出産業도 아니며 또한 國內總供給額中 輸入分이 10% 미만.

輸出入競爭産業 (XIC) : 輸出 및 輸入分이 모두 10%를 超過하는 것이다.

또한, 〈附表 1〉에서 제시된 主要産業을 貿易類型別로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즉,

輸出産業 : 「시멘트」, 綿絲, 合板, 線織物, 「타이어」 및 「튜브」, 電線 및 「케이블」, 合成樹脂製品, 메리야스製品, 衣服 및 裝飾品, 고무靴類, 貴金屬製品.

輸入競爭産業 : 調味料 및 動食物性油脂, 「合成纖維 및 化學纖維, 유리製品, 銑鐵, 製鋼, 洋紙, 無機基礎化學製品, 醫藥品, 原動機, 工作機械, 自動車.

輸入非競爭産業 : 酪農品, 淸凉飮料, 煙草, 粘土 및 「콘크리트」製品, 煙炭, 「아세크」炭, 化粧品 및 齒藥, 家庭用電氣器機.

輸出入競爭産業 : 유리製品, 毛織物, 合成纖維織物, 鐵鋼壓延製品, 鋼管, 非鐵金屬 1次製品, 玩具및運動用品, 家庭用電子製品, 電子部品, 纖維機械, 一般産業用機械, 發電機 및 發動機, 送配電器機, 電子通信器機, 鋼鐵製船舶, 鐵道車輛.

24) 主要産業別 實效誘因率 構造는 〈附表 1〉 참조.

대한 實效補助率을 훨씬 上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輸出入競爭産業의 實效保護率이 높은 것은 合成纖維織物, 家電製品, 그 밖에 機械類 및 鐵道車輛等의 産業에서 輸出擴大에 따른 不利를 國內販賣에 대한 保護로 補償하려는 政策과 聯關性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5]. 세째로,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은 比較的 모든 産業에 重立的으로 適用되었으므로 輸出과 國內販賣에 대한 貿易類型別 平均實效誘因率은 대체로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 즉, 輸出産業과 非競爭輸入産業의 實效誘因率은 各各 6%와 −12%로서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産業의 35%와 22%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만약에 産業間의 實效誘因率 構造가 어느 정도 「리카디안」(Ricardian) 意味에서의 比較優位를 나타내는 指標가 될 수 있다면, 1978年度 現在 韓國에서는 輸出産業과 非競爭輸入産業의 生産效率이 높은 반면에,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産業의 生産效率은 相對的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部門에 대한 投資擴大는 상당한 注意를 要한다고 하겠다.

Ⅳ. 要約 및 結論

過去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 經驗에 비추어 볼 때, 輸出指向的 成長政策이 輸入代替를 통한 成長政策보다 相對的으로 優越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立證된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輸出指向政策의 相對的 優越性은 어디까지나 開發途上國이 自由貿易體制로 接近하는 過程에 있을 때 그 妥當性을 認定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지나친 輸出促進에 의한 過度한 交易擴大는 輸入代替政策에 의한 交易減少와 마찬가지로 經濟福祉의 損失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1970年代의 韓國의 産業誘因政策은 대체로 輸出促進과 輸入代替의 誘因策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複合的으로 個別産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把握해 보는 것은 상당히 重要한 課題라 하겠다.

本硏究의 主目的은 1978年度 現在 韓國의 諸産業誘因策이 輸入代替와 輸出에 相對的으로 미치는 영향을 計測評價하는 데 두었다. 특히 本硏究에서 推定한 輸入代替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530餘個 品目에 걸쳐 試圖된 國內·國際價格의 直接比較資料를 土臺로 算出하였으며 輸出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輸出支援金融과 租稅減免에 의한 補助額을 計量化하여 算出하였다. 또한 産業別 國內販賣 및 輸出에 대한 國際價格基準 附加價値는 1975年度 韓國銀行의 産業聯關表를 사용하여 算出하였다.

本硏究의 推定結果에 의하면 1978年度 現在 韓國의 産業誘因政策이 과연 輸入代替와 輸出中 어느 쪽에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明確한 結論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判明되었다. 즉, 1978年度 現在 全産業實效誘因率은 國內販賣가 24%인데 비해 輸出은 16%로 推定되었으나, 輸出補助額의 算出에 있어서 좀더 現實的인 利子補助額 推定結果를 사용할 경우 輸出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23%로 上昇하여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誘因率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더우기 韓國에서는 輸出産業의 初期 輸出擴大에서 오는 不利를

25) 主要産業의 貿易類型分類 및 誘因率構造는 〈附表 1〉 참조.

國內市場에 대한 높은 保護 및 獨寡占의 許容을 통해 補償하는 政策을 종종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莫大한 政府 行政力이 輸出促進에 動員되었던 點 등을 考慮해 볼 때 1978年度 現在 韓國의 產業誘因政策은 대체로 輸入代替보다 輸出에 다소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지 않았을까 推測된다. 그러나 輸入代替와 輸出에 대한 相對的 誘因率 構造는 個別產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바, 특히 農業, 輸送裝備, 耐久性 消費財 등의 部門에서는 輸入代替에 相對的으로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는 반면, 鑛業 및 에너지, 建設資材, 그리고 中間素材部門에서는 輸出에 相對的으로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產業別 相對的 誘因率 構造는 주로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誘因率이 產業間에 상당히 큰 隔差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輸出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비교적 均等하게 分布되어 있는 事實에 크게 基因한다. 즉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第1中間財產業의 −27%에서 農業 및 輸送裝備產業의 약 74%까지 큰 隔差를 보여주고 있으며 輸出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鑛業 및 에너지產業의 11%에서 耐久性 消費財產業의 25%까지 비교적 均等한 分布를 보여준다. 따라서 過去 우리 나라의 產業誘因政策은 輸出支援政策에 의해서보다는 國內市場保護政策에 의해서 훨씬 큰 國內消費 및 生產「패턴」의 歪曲과 資源의 浪費를 招來하였을 可能性이 높으며, 이의 改善에 의해서 資源의 生產效率性을 높일 수 있는 餘地도 그만큼 더 크다고 하겠다. 또한 여기서 注目하여야 할 事實은 1978年度 現在 全產業을 平均的으로 볼 때 輸入代替와 輸出 등 交易部門이 모두 비슷한 수준인 24% 정도의 實效誘因率을 받고 있는바, 이는 앞으로 適切한 換率政策의 運營으로 現行產業支援體制는 大幅 單純化 내지는 縮小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韓國產業의 貿易類型別 平均 實效誘因率 推定結果에 의하면 1978年度 現在 韓國의 輸出產業과 非競爭輸入產業의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各各 −1%와 −13%로서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產業의 35%와 26%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國內販賣와 輸出에 대한 平均 實效誘因率도 이와 비슷한 趨勢를 보여준다. 따라서 產業間의 實效誘因率 構造가 어느 정도 「리카디안」(Ricardian) 意味에서의 比較優位를 反映한다면, 1978年度 現在 韓國에서는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產業의 生產效率이 輸出產業과 非競爭輸入產業에서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部門에 대한 投資擴大는 상당한 注意를 要한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南宗鉉, 「韓國의 貿易政策과 產業保護構造」, 『韓國開發硏究』, 여름호, KDI, 1980.

貿易協會, 『輸出支援制度』, 1978.

_____, 『貿易便覽』, 1979.

財務部, 『韓國의 金融政策』, 1979.

玄岩社, 『稅法』, 1978.

Balassa, B., ed., *The Structure of Proto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71.

Balassa, B., *Development Strategies in Semi-industrial Countries*, World Bank, forthcoming.

Balassa, B. and D.M. Schydlowsky, "Indicators of Protection and of Other Incentive Measures," in N.D. Ruggles, ed., *The Role of the Computer in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 Latin Americ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4, pp.331~346.

Bhagwati, J., *Foreign Trade Ro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Anatomy and Consequences of Exchange control Regim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Ballinger, 1978.

Bhagwati, J. and A.O. Krueger, "Exchange Control, Liberalization Attempts,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3, May 1973, pp.419~427.

Cole, D.C., and Y.C. Park,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 1945~7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9.

Hong, Wontack,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9.

Kim, K.S., *Deflation of Korea Input-Output Data into 1968 Constant Pric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8.

Krueger, A.O.,"Export-Led Industrial Growth Reconsider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0.

Little, I., T. Scitovsky, and M. Scott, *Industry and Trade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Nam, C.H.,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and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0.

Westphal, Larry E. and K.S. Kim,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Korea,"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63, Washington D. 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ugust, 1977.

〈附表 1〉 主要産業別 名目 및 實效誘因率[1](1968年과 1978年)

(단위 : %)

産業分類[2] (152部門)	貿易類型		國內販賣[4]				輸出[4]	全體[4] 販賣
			名目保護率		實效保護率		實效 補助率	實效 誘因率
	1968[3]	1978	1968[3]	1978	1968[3]	1978	1978	1978
Ⅰ. 農林水産業								
1. 米穀	NIC	NIC	14.2	66.9	14.5	81.1	5.2	80.7
11. 畜産및養蠶	NIC	IC	0.0	47.2	−12.9	66.2	8.6	65.4
13. 林産物, 肉林, 其他 林産物	NIC	NIC	5.7	4.7	4.4	4.0	4.7	4.0
14. 水産漁獲 및 養殖業	NIC	X	0.0	0.8	−4.2	−1.7	21.7	4.7
Ⅱ. 加工食品								
16. 酪農品	IC	NIC	17.4	27.1	22.7	−5.9	9.1	−5.8
25. 調味料 및 動植物性 油脂	NIC	IC	11.1	23.4	−18.3	−34.9	9.3	−33.5
Ⅲ. 飮料및煙草								
29. 淸涼飮料	NIC	NIC	3.2	0.0	−14.5	−13.9	13.7	−11.8
30. 煙草	NIC	NIC	−13.5	57.2	−40.8	157.7	10.8	157.5
Ⅳ. 鑛産物및에너지								
31. 無煙炭, 土炭, 褐炭	NIC	NIC	10.0	−40.0	4.5	−46.9	9.9	−46.9
33. 重石鑛石	X	X	0.0	0.0	−5.8	−0.9	12.0	4.7
Ⅴ. 建設資材								
45. 시멘트	NIC	X	3.1	−20.1	−12.8	−40.8	16.4	−30.5
46. 粘土및콘크리트製品	NIC	NIC	7.1	4.6	−1.4	11.9	13.7	12.0
Ⅵ-A. 中間財生産(Ⅰ)								
48. 綿絲	NIC	X	0.0	−10.4	−15.0	−55.6	19.2	−40.3
55. 合板	X	X	0.0	−15.7	−82.4	−65.8	15.5	−11.9
57. 合成纖維및化學纖維	IC	IC	36.8	36.2	37.1	126.0	34.4	122.0
58. 石油製品	NIC	IC	−26.2	−3.0	−66.2	−24.6	20.0	−22.0
59. 煙炭·마세크炭	NIC	NIC	18.9	−51.2	27.6	−69.0	0.0	−69.0
61. 유리製品	IC	XIC	9.2	2.9	−4.9	2.1	10.9	3.0
62. 銑鐵	IC	IC	15.2	−2.0	28.9	14.9	13.7	14.9
63. 製鋼	NIC	IC	11.8	−0.8	−12.2	−3.1	7.7	−3.1
Ⅵ-B. 中間財生産(Ⅱ)								
66. 綿織物	X	X	31.7	−10.6	169.5	−19.8	17.4	−14.3
68. 毛織物	X	XIC	47.7	54.0	15.3	139.9	19.8	121.5
71. 合成纖維織物	XIC	XIC	42.7	91.1	17.6	266.1	18.0	110.4
75. 洋紙	IC	IC	15.3	11.2	14.8	5.1	12.5	5.4
77. 타이어및튜우브	NIC	X	0.0	−39.8	−44.3	−79.5	10.8	−39.1
79. 無機基礎化學製品	IC	IC	24.0	−16.0	22.1	−34.9	17.6	−33.0
91. 鐵鋼壓延品	IC	XIC	30.6	−10.8	138.7	−26.4	26.7	−18.3
92. 鋼管	IC	XIC	127.6	−33.6	-3,417.7	−64.5	14.8	−36.2
95. 非鐵金屬 1次製品	XIC	XIC	9.8	13.6	−17.7	18.7	11.9	17.1
100. 電線및케이블	IC	X	79.5	17.3	1,654.8	26.4	20.1	25.6
101. 合成樹脂製品	NIC	X	0.0	0.0	−31.1	−4.0	14.6	−0.8

産業分類 (152部門)	貿易類型		國內販賣				輸出	全體販賣
			名目保護率		實效保護率		實效補助率	實效誘因率
	1968	1978	1968	1978	1968	1978	1978	1978
Ⅶ. 非耐久性消費財生産								
103. 메리야스製品	X	X	28.7	2.4	31.0	0.5	14.4	9.1
104. 衣服및裝飾品	X	X	11.8	20.5	−24.7	28.0	13.2	18.2
110. 고무靴類	X	X	0.0	0.0	−42.8	−2.2	13.2	5.0
111. 醫藥品	NIC	IC	4.5	40.0	−9.3	68.1	13.7	65.7
113. 化粧品및齒藥	NIC	NIC	22.7	46.0	16.1	110.0	14.5	109.8
119. 貴金屬製品	NIC	X	61.1	0.0	88.3	−7.9	6.5	−5.6
121. 玩具및運動用品	XIC	XIC	5.6	0.0	−14.3	−4.3	8.6	6.7
Ⅷ. 耐久消費財								
126. 家庭用電子製品	XIC	XIC	72.2	102.8	114.0	365.5	39.0	126.5
127. 電子部品	XIC	XIC	112.3	22.2	39.2	15.0	20.4	17.5
128. 家庭用電機機器	IC	NIC	113.7	28.7	558.9	70.2	21.3	68.2
Ⅸ. 機械類								
131. 原動機	IC	IC	20.7	21.3	3.8	38.0	15.7	36.4
132. 工作機械	IC	IC	4.5	9.7	−10.6	18.4	14.8	18.2
136. 纖維機械	IC	XIC	0.6	18.2	−16.8	47.3	14.9	43.4
138. 一般産業用機械	IC	XIC	9.4	12.6	−5.2	30.4	19.8	29.0
142. 發電機및發動機	IC	XIC	20.1	18.6	28.5	34.6	17.0	32.6
143. 送配電機器	XIC	XIC	89.0	7.8	225.2	12.2	17.5	13.2
145. 電子通信機器	IC	XIC	45.7	21.2	64.5	23.4	21.6	22.9
Ⅹ. 輸送用機械								
148. 鋼鐵製船舶	IC	XIC	16.5	0.0	4.5	−2.4	13.4	15.2
150. 鐵道車輛	IC	XIC	55.1	22.7	202.4	49.6	21.1	46.2
151. 自動車	IC	IC	90.5	32.9	247.7	96.6	43.6	92.9

註 : 1) 本表에 提示된 産業分類는 Westphal and Kim(1977)의 1968年度 推定値와 對比가 可能하도록 1978年度 318個 部門에 걸쳐 推定된 諸誘因率을 152個 部門으로 統合한 것임.

2) 152個 産業部門中 本 〈附表〉에서 主要産業으로 提示된 51個 産業은 可能한 限 各 11個 大分類産業의 國際價格基準 附加價値의 60% 以上 되도록 比重이 높은 것을 優先的으로 選擇한 것임 (단, 加工食品과 飮料 및 煙草部門은 例外).

3) Westphal and Kim(1977), Table 2A and 2B. 參照.

4) 實效誘因率은 Corden 方式에 의해서 推定된 것임.

에너지節約型 輸送體系로의 轉換

林 浩 奎

▷ 目 次 ◁

Ⅰ. 序 論
Ⅱ. 韓國의 에너지消費와 主要外國의 事例
Ⅲ. 輸送部門의 에너지 消費現況
Ⅳ. 公路部門의 에너지 節約對策
Ⅴ. 鐵道部門의 에너지 消費現況과 對策
Ⅵ. 公路에서 鐵道輸送으로의 轉換對策
Ⅶ.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에너지源은 輸送機能遂行上 불가결의 要素로서 輸送手段의 發展에 큰 役割을 담당하여 왔다. 우리 나라 과거 數十年間의 交通技術은 에너지源이 蒸氣에서 電力으로, 石炭에서 石油로 變化함에 따라 發展하여 왔으며 특히 電力은 鐵道輸送速度를 高速化시키고 石油는 各種 輸送手段에 革命的인 變化를 招來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產油國間의 政治的 利害對立, 石油資源의 偏在와 獨占化 경향에 따라 에너지源의 核心的인 要素인 原油供給이 不安定하게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中東地域의 政治的 不安定과 地域間의 緊張이 계속됨에 따라 國際原油輸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D.A. Rostow 敎授[1]는 產油國間에 緊張이 계속되면 「파이프 라인」(pipe line) 輸送[2] 및 「스웨즈」運河 經由의 原油輸送을 단절시키고 신뢰받는 유일한 輸送手段으로서 希望峰航路의 大型 탱커輸送만을 殘存시키게 된다고 原油輸送의 隘路性을 指摘하고 있다.

이렇듯 國際的 原油供給이 不安定한 상황하에서 우리 나라가 長期的으로 安定된 輸送活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長期的인 관점에서의 에너지需給의 가능성 評價나 輸送部門에의 効率的인 에너지 供給對策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工業·民生部門의 에너지節約對策과 관련된 輸送部門의 에너지節約方案을 마련하여

筆者：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1) D.A. Rostow, *Oil Imports and National Interest*, Petroleum Industry Research Foundation Inc., 1971, 3.

2) 石油 이외의 石炭, 土砂 등은 분말 상태에서 물과 혼합하여 「슬러리」(泥狀)化하여 이것을 「파이프」로 수송하는 시스템임.

야 할 것이다. 輸送部門의 에너지消費는 우리 나라 經濟規模의 擴大나 所得, 生活水準의 向上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增加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輸送部門에 있어서는 輸送手段의 利用者인 國民의 서비스要求를 충분히 감안하여 各輸送手段間의 균형있는 경쟁관계를 誘導시키고 効率的인 에너지 輸送節約對策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輸送部門 總油類 消費量의 約 70%를 차지하고 있는 陸上輸送(公路와 鐵道)의 効率的인 分擔配分對策이 필요하므로 이들 對策은 앞으로 우리 나라의 輸送에너지 消費節約의 核心的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公路와 鐵道輸送의 에너지 消費節約對策을 중심으로 論述한 후 이와 연관된 公路輸送에서 鐵道輸送으로의 轉換對策을 論述하고자 한다.

Ⅱ. 韓國의 에너지 消費와 主要外國의 事例

우리 나라와 主要外國의 部門別 에너지消費構成을 비교하여 보면 〈表 1〉과 같이 産業部門이 50.4%, 民生部門 30.9%, 交通部門이 10.8%, 기타가 7.9%의 消費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消費構成比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 나라는 産業部門과 民生部門의 比率이 가장 높고, 交通部門의 比率은 네덜란드

〈表 1〉 우리 나라와 主要國의 部門別 에너지 消費構成

(단위 : %)

	部門別構成比				
	産業部門	交通部門	民生部門	기타	計
韓國	50.4	10.8	30.9	9.9	100.0
美國	27.7	23.1	25.0	24.2	100.0
英國	30.2	13.8	24.8	31.2	100.0
西獨	37.4	12.2	25.3	25.1	100.0
프랑스	35.0	15.0	26.6	23.4	100.0
伊太利	39.4	13.6	23.2	23.8	100.0
네덜란드	38.4	11.3	30.1	20.2	100.0
日本	48.3	11.9	16.7	23.1	100.0

資料 : 1) OECD, *Energy Balance of OECD Conutries*, 1960~74.
2) 韓國數値는 1977年 韓國熱管理試驗硏究所, 『에너지』, 1980年 2月, p.7.
3) 韓國 이외의 나라 數値는 1974年.

(11.3%)와 日本(11.9%)과 同水準의 構成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産業部門의 消費構成比率이 높은 것은 第1次에서 4次 經濟開發5個年 計劃에 이르기까지의 高度經濟成長要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韓國의 輸出主導型의 産業政策은 輕工業部門의 적극적인 近代化投資의 促進뿐 아니라 重化學工業部門의 지속적인 發展을 促進시킴으로써 産業部門에서의 에너지消費를 대폭적으로 擴大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民生部門, 交通部門의 에너지 消費構成도 그간의 4次에 걸친 급속한 經濟成長과 이에 對應되는 國民生活의 量的·質的 變化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部門別 에너지消費構成과 유사한 나라로는 네덜란드(産業部門 38.4%, 交通部門 11.3%, 民生部門 30.1%), 이탈리아(産業部門 39.4%, 交通部門 13.6%, 民生部門 23.2%) 등이 있으며 특히 産業部門과 交通部門의 比率의 合計(61.2%)[3]가 일본(60.2%)[4]과 同

3) 韓國 : 産業部門 50.4%+交通部門 10.8%=61.2%
4) 日本 : 産業部門 48.3%+交通部門 11.9%=60.2%

〔圖 1〕 貨物自動車의 運賃原價比率(6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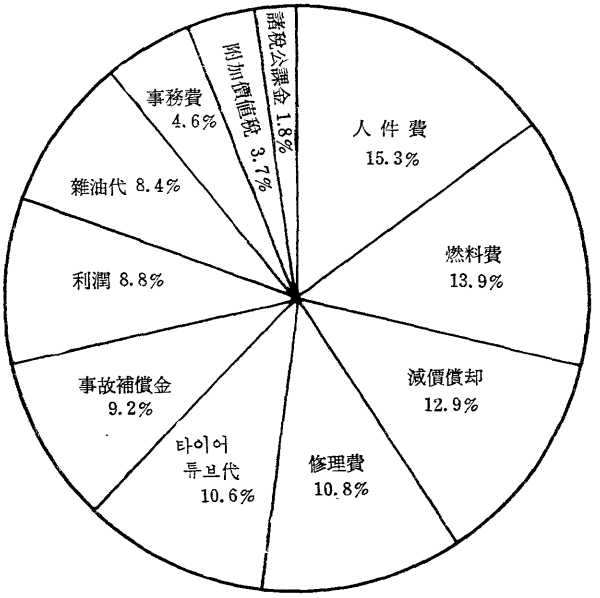

資料 : 서울商工會議所, 『7.10 油價引上措置 이후의 運送業界의 動向과 問題點』, 1979.

一水準인 것이 主目된다.

이중 우리 나라의 交通部門의 에너지 消費比率은 10.8%이지만 과거의 實績으로 보면 自動車臺數의 增加에 따라 에너지消費量이 대폭 增加되는 경향이 보이므로 交通部門에 대한 에너지 消費節約對策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Ⅲ. 輸送部門의 에너지 消費現況

輸送手段의 에너지源은 石油系燃料에 依存

〈表 2〉 輸送手段別 油類消費實績 推移

(단위 : 千 kl, (%))

	鐵 道	公 路	海 運	航 空
1970	230.9 (9.4)	1,116.4(45.6)	659.9(26.9)	437.5(17.8)
1971	218.1 (7.7)	1,484.4(52.6)	750.7(26.6)	367.5(13.0)
1972	229.3 (6.4)	1,709.0(48.2)	732.2(20.6)	468.0(13.2)
1973	229.8 (6.1)	2,219.9(58.9)	904.1(24.0)	413.1(10.9)
1974	277.3 (6.3)	3,070.6(70.2)	649.4(14.8)	372.7 (8.5)
1975	308.6 (8.9)	2,493.8(72.4)	300.2 (8.7)	339.2 (9.8)
1976	457.6(11.5)	2,733.8(69.0)	435.2(11.0)	458.9(11.6)
1977	606.5(13.5)	2,973.9(66.3)	570.2(12.7)	578.6(12.9)
1978	225.3 (5.4)	2,624.3(63.2)	1,020.4(24.6)	281.2 (6.8)
平 均	(8.4)	(60.7)	(18.9)	(11.6)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9.
動資部, 『에너지利用構造實態調査』, 1979.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速度가 빠른 비행기나 自動車 등의 運賃原價에 占하는 燃料費 比率이 높다. 〔圖 1〕은 우리 나라 貨物自動車(6톤 기준)의 運賃原價比率이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燃料費의 比率(13.9%)은 人件費(15.3%) 다음으로 많고 다른 運賃原價로는 減價償却費 12.8%, 修理費 10.8%, 타이어 튜브代 10.6%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高比率의 燃料費는 公路輸送의 油類消費實績에 큰 영향을 미쳐서 總油類消費의 約 60%를 차지하고 있다(表 2 참조). 즉, 公路輸送의 油類消費量은 1970年의 45.6%에서 1978年에는 63.2%로 17.6%가 증가되고 있으며 반대로 鐵道輸送은 9.4%에서 5.4%로 4%가 減少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都市間 貨物輸送을 에너지効率面[5]에서 보면 船舶, 鐵道, 트럭, 航空機의 順으로 나쁘게 되어 있으며 특히 트럭輸送은 船舶輸送의 4倍, 鐵道輸送의 3.4倍의 에너지를 消費하고, 航空輸送은 船舶輸送의 約 70倍의 에너지를 消費하게 된다(表 3 참조).

〈表 3〉 都市間 貨物輸送의 에너지効率(美國)

갤 론 當	톤-마일	톤-마일當B.T.U.
파이프라인	300	450
船 船	250	540
鐵 道	200	680
트 럭	58	2,340
航 空 機	4	3,700

註 : 갤론=4.546l(영국) 마일=1.609km
B.T.U.=0.263kcal(영국 열량)

資料 : 吉本秀幸, 『エネルギー資源』, 經林書房, 1974, p.47. 이러한 에너지効率에 대하여 歐州의 輸送手段別 에너지需要를 소개한 論文으로서는 W.G. Jensen, *Erergy in Europe 1945~80*, G.T. Foulies & Co, Ltd., 1967, pp.124~125가 있다.

따라서 輸送部門의 에너지消費節約對策으로는 公路와 鐵道輸送의 節約을 基軸으로 하는 綜合的인 에너지節約對策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交通部門中 에너지 消費가 제일 많은 公路部門의 에너지 消費對策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Ⅳ. 公路部門의 에너지 節約對策

公路輸送의 중심인 自動車는 직접, 간접으로 自動車의 資材, 原材料 生產段階→自動車製造段階→使用段階에 이르기까지 많은 에너지를 消費하게 된다. 따라서 公路部門의 에너지節約對策을 論述하기 위해서는 自動車의 上記 3段階[6]의 에너지消費現況과 이에 관련된 節約對策이 檢討되어야 한다.

1. 自動車의 에너지 効率化 現況

自動車에 관련되어 消費되는 에너지 總量을 熱量으로 換算하여 단계적[7]으로 살펴보면, 資料와 原材料를 100으로 하였을 때 製造段階 95, 使用段階 1,030이므로 使用段階에서의 消費가 壓倒的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에너지種別로 보면 電力은 原料段階 55%, 生產段階 45%이며 石油는 使用段階 91%, 原料段階 5.3%, 生產段階 3.9%이다. 그러므로 에너지消費의 節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製造段階의 에너지節減뿐 아니라 消費段階의 에너

5) 吉本秀幸, 『エネルギー資源』, 經林書房, 1974, p.48.
6) 韓國熱管理試驗硏究所, 『에너지』, 1980, 第2號, pp. 25~31.
7) 綜合開發硏究機構, (株) 三菱綜合硏究所, 『產業部門におけるエネルギー消費効率化の定量的分析』, 1976, Ⅵ-4.

지消費 効率化를 고려한 設計理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自動車의 消費原材料는 普通鋼, 特殊鋼, 鑄物, 非鐵金屬 및 非金屬으로 構成되어 있다. 普通鋼中에는 熱延薄板, 冷延薄板, 鋼管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冷延薄板의 資源消費가 압도적으로 많다.

特殊鋼에는 炭素鋼, 構造用合金鋼, 스프링鋼, 軸受鋼 등이 있으며 특히 스프링鋼이 많이 消費되고 있다. 鑄物의 中心 原材料는 銑鐵이며 非鐵金屬으로는 銅, 鉛, 亞鉛, 錫, 알루미늄, 니켈 등이 있고 鉛과 알루미늄의 消費가 비교적 많다. 또한 非金屬에는 塗料, 고무, 石綿, 板유리, 製品유리, 安全유리, 樹脂 및 나이론纖維 등이 있고 이중 고무의 消費量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와 같은 構成原材料를 토대로 하여 自動車 1臺[8]를 生産하기 위해서는 動力用 에너지가 1.560×10^3kcal(石油換算 0.17kl) 정도 消費된다. 또한 自動車部品으로서 사용되는 鋼材, 알루미늄, 플라스틱, 合成고무 및 기타 諸部品을 生産하기 위해서는 8.780×10^3kcal(同 0.93kl)의 에너지가 간접적으로 投入되고 있다. 따라서 乘用車 1臺 生産에 필요한 에너지量은 10.340×10^3kcal, 石油換算으로 1.1kl가 된다. 현재 乘用車 1臺當 年間 가솔린消費量은 1.3kl로서 乘用車의 耐用年數를 5年으로 하면 乘用車 1臺當 總 에너지消費量은 年平均 約 1.5kl가 된다. 또한 乘用車 臺數의 증가는 道路建設을 필요로 하므로 自動車 生産으로 인하여 誘發되는 에너지消費量은 앞으로 일층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4〉는 우리 나라의 自動車 保有臺數를 예측한 것이다. 乘用車는 1979年의 241,422臺에서 1996年에는 約 6.2倍인 1,500,260臺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럭은 206,822臺에서 約 5.5倍인 1,145,350臺로, 버스는 37,697臺에서 約 2.2倍인 86,211臺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車種別로 推定된 豫測式은 다음과 같다.

1) 乘用車:

$$\log TX = \underset{(-8.834)}{-8.36560} + \underset{(17.117)}{2.20561} \times \log GNP - \underset{(-3.441)}{0.540912} \times \log GA$$

$R^2=0.974$ $D.W.=1.377$

2) 트 럭:

$$\log TR = \underset{(-12.948)}{-6.64670} + \underset{(25.085)}{1.91949} \times \log GNP - \underset{(-2.546)}{0.265713} \times \log DL$$

$R^2=0.992$ $D.W.=1.503$

3) 버 스:

〈表 4〉 全國 自動車保有臺數의 豫測

(단위 : 臺)

	1979(A)	1982	1986	1996(B)	B/A(倍數)
乘 用 車	241,422	318,814	538,664	1,500,260	6.2
트 럭	206,822	264,522	428,431	1,145,350	5.5
버 스	37,697	35,346	45,176	86,211	2.2
合 計	485,941	618,682	1,012,271	2,731,821	5.6

資料 : 韓國開發研究院.

8) 日本エネルギー經濟研究所 編, 『日本エネルギー讀本』, 1977, p.63.

〔圖 2〕 製造部門에 있어서 工程別 에너지使用比率(석유消費 에너지換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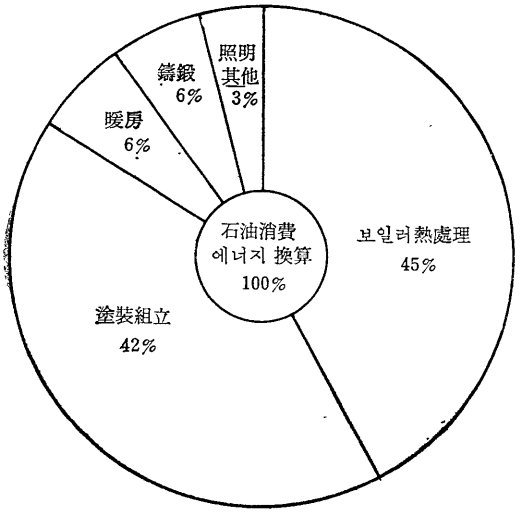

資料：綜合研究開發機構外，『産業部門におけるエネルギー消費効率化の定量的分析』，1976. 9，Ⅵ-2.

〔圖 3〕 製造部門에 있어서 工程別 에너지使用比率(에너지使用 熱量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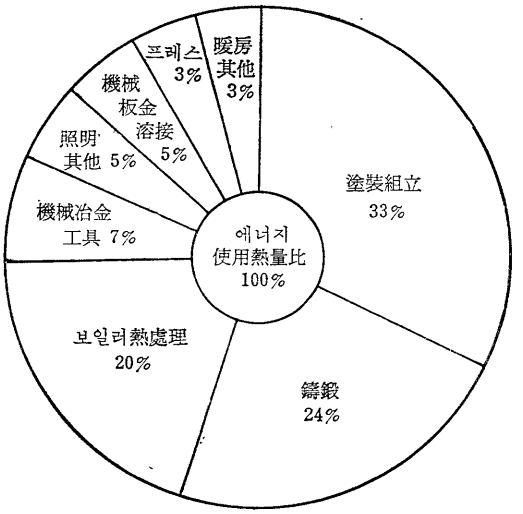

資料：前揭書，Ⅵ-2.

$$\log BS=(1-\rho)\times 1.70139+0.840206\times\log GNP-0.840206\times\rho\times\log GNP(-1)+\rho\times\log BS(-1)$$

(4.720) (22.621)

$R^2=0.993$ $D.W.=1.489$

$\rho=0.414385$

여기서, TX : 全國 乘用車臺數

TR : 全國 트럭臺數

BS : 全國 버스臺數

GA : 휘발유價格／1975年 기준 都賣物價指數

DL : 輕油價格／1975年 기준 都賣物價指數

위의 豫測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國의 自動車保有臺數의 總合計는 1979年의 485,941臺에서 1996年에는 約 5.6倍인 2,731,821臺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公路部門의 에너지消費節約對策이 各段階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最近의 自動車産業의 에너지使用 特性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自動車産業에서는 鐵鋼, 알루미늄, 플라스틱스(plastics)와 같이 에너지消費가 많은 資料를 原材料로 하기 때문에 이들 資材가 製造原價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높다(比率이 80% 정도). 그러므로 資源節約과 資材節約이 에너지나 企業體의 原價節減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2) 製造段階에 있어서는 生産의 合理化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에너지 절약은 기대할 수 없다.

3) 對需要者, 使用者의 意向이 製品圖面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原油, 電力, 가스引上 등에 따라 使用段階에 있어서 에너지消費節約型 製品의 開發이 期待되고 있다.

4) 製品과 原材料가 多樣하기 때문에 個個의 工程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곤란하다.

〔圖 2〕 및 〔圖 3〕은 石油消費 에너지換算과 에너지使用 熱量比에 의한 製造段階에 있어서의 에너지使用比率이다.

〔圖 2〕의 石油消費에너지 換算에 있어서는 보일러(boiler) 熱處理의 使用比率이 45%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塗裝組立이 42%, 鑄鍛 6%, 暖房 6%의 順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 使用熱量比로 보면 塗裝組立이 33%, 鍛鑄 24%, 보일러 20%, 機械冶金工具 7%, 機械板金溶接 5%의 에너지使用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使用比率을 에너지消費節約의 관점에서 合理化시키기 위해서는 自動車重量의 輕量化나 機關効率의 改善 등이 적극적으로 檢討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自動車의 에너지節約對策

自動車의 原料段階의 에너지節約對策으로는 ① 部品의 簡素化 ② 材料의 節減 ③ 製品資源의 再循環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部品의 簡素化에 있어서 구체적인 對策으로서는 自動車裝飾部品의 簡素化, 塗色數의 節減, 部品의 共通化와 一體化, 製品種類의 節減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材料의 節減에 있어서는 自動車重量의 輕減, 不良率의 低下, 入手가 용이한 材料로의 轉換이나 新材料의 開發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製品資源의 再循環에서는 互換性部品의 再循環 등이 구체적인 對策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製造段階에 있어서는 ① 에너지의 節減 ② 직접·간접材料의 節減 ③ 製造資源의 再循環의 세가지 角度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에너지節減面에서는 自動車 生産工程의 改善, 廢熱回收, 管理强化 등이 實施되어야 하며 직접·간접材料의 節減으로서는 使用材料의 選定問題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製造資源의 再循環에서는 鑄造砂再循環이나 鋼材, 鋼板의 産生率(yield rate)이 向上되어야 한다. 한편 에너지消費가 가장 많은 使用段階에 있어서는 低燃費[10]設計나 新燃料, 新機關의 開發 등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즉, 低燃費設計에서는 運轉方法의 改善, 保守點檢車輛의 輕量化, 小型車의 開發, 耐久性의 追究 등이 검토되어야 하여 新燃料, 新機關의 開發에서는 複合엔진, 電氣自動車 등의 導入을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車輛의 輕量化問題는 重要課題의 하나이다. 自動車의 경우[11] 車體의 重量과 燃料消費量은 거의 比例關係에 있어 同型의 車라도 가벼운 쪽이 燃料가 節約된다. 그러므로 自動車의 燃料消費節約對策 가운데 車體의 輕量化 對策이 가장 重視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알루미늄合金 등의 輕金屬을 非構造部位의 材料로 이용하여 車體의 重量을 감소시켜서 엔진에 대한 負荷를 輕減시키는 對策이 推進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알루미늄 合金製造에 요하는 에너지를 相殺하더라도 10~20%의 에너지節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輕量化에 의하여 自動車의 生産價格은 높아지지만 燃料消費의 節約에 의하여 全體코스트는 낮아진다. 時速 60km를 가정하는 경우 가솔린消費量은 輕自動車(엔진容量 360 cc, 重量 600kg)가 小型自動車(1,200~1,500 cc, 1,000kg)에 비하여 約 20%가 절약된다. 그러나 輕量化에 따라 燃費는 절약되지만 高速性이나 安全性面에 있어서는 뒤떨어지므로 消費者의 購買意慾減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10) 가솔린 1l로 走行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11) 韓國原子力硏究所, 『에너지총람』, 1976, pp.233~234.

생각된다.

한편 自動車의 機關効率의 改善에 있어서 自動車의 推進機關[12]은 「카르노사이클」理論에 의하면 熱効率을 대폭 改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低速走行時의 効率改善 등으로 어느 정도의 改善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自動車의 경우 NOx 등의 排出規制 强化에 따라 觸媒式 排氣가스[13] 制御裝置의 併設, 燃料規制에 의한 燃燒溫度의 低下 등에 의해 推進機關의 効率이 낮아지는 傾向이 있다. 또한 自動車엔진의 効率改善과 大氣汚染因子의 排出制御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는 진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乘用車엔진의 平均排氣容量은 증가되고 環境對策上 鉛의 含有率이 抑制되는 方向에 있기 때문에 「옥탄」價(Octane)[14]가 낮아지고 燃料効率도 低下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排氣가스 規制가 일층 强化됨에 따라 새로운 엔진의 開發이나 新規機器의 設置 등에 의하여 燃費가 上昇하는 것을 防止하여야 할 것이다. 自動車엔진의 効率改善과 동시에 排氣가스規制를 制度化하여 成功한 日本의 排氣가스規制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5〉는 日本의 乘用車에 대한 排氣가스規制이다. 表에서 알 수 있듯이 日本에서는 1973年 規制, 1975年 規制, 1976年 規制로 段階的으로 規制値[15]가 强化되었다. 그러나 1976年[16] 規制는 自動車製造業體의 기술상의 곤란을 事由로 후퇴하여 NOx[17]의 中間規制, 暫定規制가 되었다. CO[18], HC[19] 등의 規制方法은 같은

〈表 5〉 日本의 排出가스 規制(乘用車)

規制方法		1973		1975		1976
		重量制限				
試驗方法(排氣가스測定法)		10모우드		10모우드	11모우드	10모우드
가솔린車 (4사이클 엔진)	CO g/km	26.00(18.40)	—	2.70 (2.10)	85.00(60.00)	—
	HC g/km	3.80 (2.94)	—	0.39 (0.25)	9.50 (7.00)	—
	NOx g/km	3.00 (2.18)	—	1.60 (1.20)	11.00 (9.00)	(0.25)
LPG 車	CO g/km	18.00(10.40)	—	同 上		同 上
	HC g/km	3.20 (2.34)	—			
	NOx g/km	3.00 (2.19)	—			
가솔린車 (2사이클 엔진)	CO g/km	26.00(18.30)	—	2.70 (2.10)	85.00(60.00)	同 上
	HC g/km	22.50(16.60)	—	0.39 (0.25)	9.50 (7.00)	
	NOx g/km	0.50 (0.30)	—	0.50 (0.30)	4.00 (2.50)	

註 : 1) 規制値는 最高値, 괄호 안의 數値는 平均値基準을 나타내는 數値임.
2) 1976年 規制는 最終目標値임.
3) 資料는 日本自動車工業會, 白澤照雄, 『自動車業界』, 敎育社新書, 1975.

12) 前揭書, p.233.
13) 排氣가스 規制는 排氣가스中의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의 농도규제를 의미한다.
14) 燃料의 耐爆性을 나타내는 수치임.
15) 排氣가스의 허용한도를 의미함.
16) 日本自動車工業會, 白澤照雄, 『自動車業界』, 敎育社新書, 1975, pp.18~22.
17) NOx는 질소산화물.
18) CO는 일산화수소.
19) HC는 탄화수소.

〔圖 4〕 排氣가스節減의 硏究開發投資(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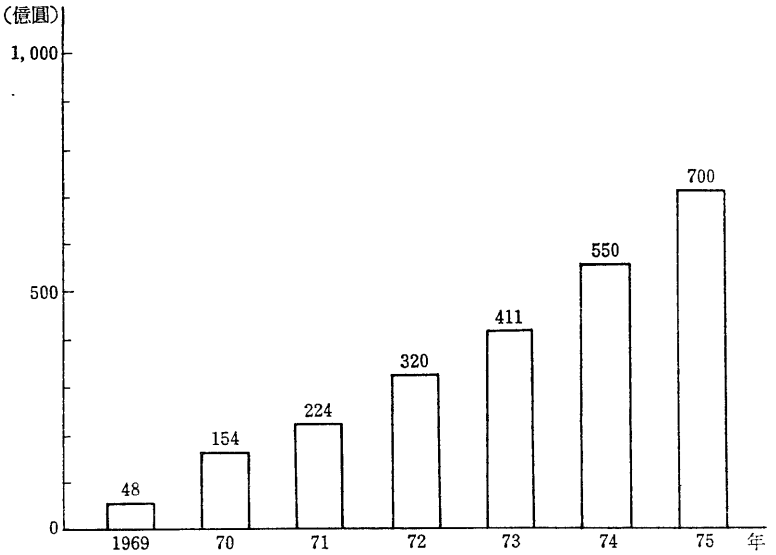

資料 : 日本自動車工業會, 白澤照雄, 『自動車業界』, 敎育社新書, 1975, p.26.

〔圖 5〕 日本의 排氣가스 節減効果 實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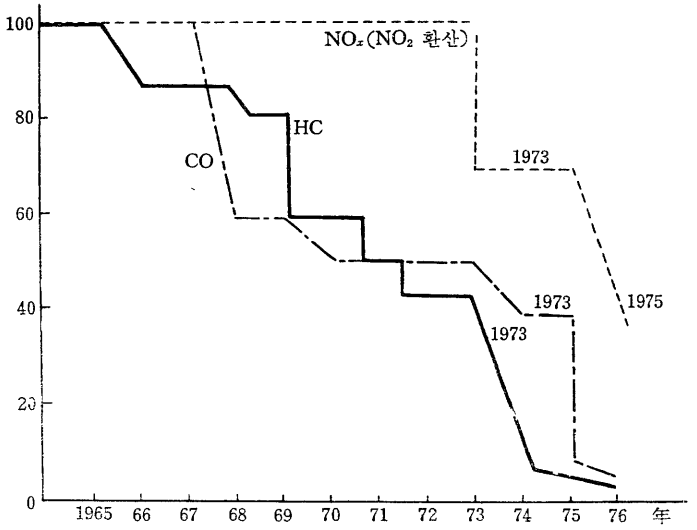

資料 : 前揭書, p.21.

乘用車이지만 가솔린車와 LPG 車, 4사이클엔진과 2사이클엔진에 따라 차이가 있다.

〔圖 4〕는 日本의 TOYOTA, 日産, 東洋工業, 本田技硏 등 主要 自動車製造會社 全體의 排氣가스 節減을 위한 硏究開發投資實績이다. 排氣가스節減을 위한 硏究開發投資는 1969年의 48億圓에서 1975年에는 約 14倍인 700億圓으로 대폭[20]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大規模硏究

20) 당시 排氣가스 절감을 전문적으로 硏究하기 위해 약 5,000名의 硏究員이 投入되었다.

〈表 6〉 鐵道動力車 保有現況

(단위 : 臺)

	1974	1975	1976	1977	1978
디젤機關車	336	386	386	384	404
蒸氣機關車	88	87	68	68	50
動車	126	128	123	121	120
電氣機關車	66	66	65	89	89
暖房車	140	140	140	148	147
電動車	126	126	128	171	215

資料 : 鐵道廳, 『오늘의 철도』, 1979.

〈表 7〉 動力機關車의 1km 當 에너지消費量

	1臺當 消費量		1 톤 當 消費量 (kcal/톤-km)
	燃料	에너지 (kcal/km)	
電氣機關車	電力 238kwh	58,332	72
蒸氣機關車	石炭 591kg	324,984	409
디젤機關車	輕油 165l	152,016	181

資料 : 鐵道廳, 『한국철도』, 1980. 4 및 NRI.

〈表 8〉 經濟開發計劃 1次에서 4次까지의 交通部門投資

事業內容		第 1 次 (1962~66)					第 2 次 (1967~71)				
		內資	外資	合計	政	民	內資	外資	合計	政	民
鐵道	鐵道建設	6,561	378	6,939(14.57)							
	車輛導入	536	6,300	6,836(14.35)							
	驛構內 및 線路能力保强	5,774	—	5,774(12.12)							
	線路 및 構造物改良	2,202	127	2,329 (4.89)							
	車輛 補修 製作 施設	—	—	—							
	通信 能力 施設 改良	—	—	—							
	기타	—	—	—							
	計	15,073	6,805	21,878(45.74)			29,753	16,694	46,477(31.28)		
公路	乘用車	2,437	—	2,437 (5.12)							
	버스	4,204	—	4,204 (8.83)							
	貨物車	5,606	—	5,606(11.77)							
	기타車輛	28	—	28 (0.06)							
	道路事業	2,155	—	2,155 (4.52)							
	橋梁建設	2,629	—	2,629 (5.52)							
	기타	—	—	—							
	計	17,059	—	17,059(35.82)			38,889	18,886	57,775(38.89)		
海運	船舶導入	3,197	—	3,197 (6.71)							
	航路標示施設	270	52	322 (0.68)							
	船質改良	168	44	212 (0.45)	136	32					
	航灣事業	3,568	—	3,568 (7.49)							
	기타	—	—	—							
	計	7,203	96	7,299(15.33)			16,541	17,471	34,012(22.89)		
航空	航空機導入	188	789	977 (2.05)							
	航空施設	412	—	412 (0.87)							
	計	600	789	1,389 (2.92)			4,670	5,638	10,308 (6.94)		
	合計	39,935	7,690	47,625 (100)			89,853	58,689	148,572 (100)		

註 : 2次와 3次의 公路, 海運, 航空은 모두 計劃値임, 4次는 全部門이 計劃値임.
資料 : 經濟企劃院, 「第1次 經濟開發報告書」; 經濟企劃院,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經濟企劃院, 「第3次 經濟開發 5個

投資의 결과 自動車 1臺當 CO, HC 排氣量은 1960年과 비교해 볼 때 CO는 60%, HC는 70% 감소되었다(圖 5 참조). 日本에서는 排氣가스를 生産段階에서 防止하기 위해 一般生産工程以外에 엔진라인에 酸化觸媒裝置, 排氣管內淨化裝置, 完成車의 排氣가스量 測定作業 등이 附加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大氣汚染防止 및 自動車의 輸出促進面에서 이와 같이 排氣가스 節減을 위한 대폭적인 硏究投資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原料, 資材製造段階의 에너지節約對策 이외에, 製造段階에 있어서는 自動車生産工程의 에너지節約對策을 實施하여 生産性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自動車의 生産工程은 크게 ① 主型製作·中子製作部門 ② 成型「프레스」材料切斷, 鍛造部門 ③「보디 섀시라인」部門(Body Chassis Line)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主型·中子製作部門에 있어서는 「큐폴라」(Cupola), 鑄入, 塗

(단위 : 百萬원)

第 3 次 (1972~76)					第 4 次 (1977~81)				
內 資	外 資	合 計	政	民	內 資	外 資	合 計	政	民
14,228	2,329	16,557 (3.02)	16,557	—	10,436	—	10,436 (0.39)		
19,497	24,217	43,714 (7.97)	43,714	—	91,302	50,343	141,645 (5.31)		
13,964	93	14,057 (2.56)	14,057	—	103,803	13,185	116,988 (4.38)		
9,230	9,730	18,960 (3.46)	18,960	—	45,620	29,550	75,170 (2.82)		
3,435	2,084	5,519 (1.00)	5,519	—	20,075	12,288	32,363 (1.21)		
5,950	877	6,827 (1.24)	6,827	—	10,930	1,046	11,976 (0.45)		
—	—	—	—	—	7,747	5,753	13,500 (0.51)		
66,304	39,330	105,634(19.27)	105,634	—	289,913	112,165	402,078(15.07)		
					71,602	—	71,602 (2.68)		
					195,988	—	195,988 (7.35)		
					473,594	—	473,594(17.75)		
					—	—	—		
184,093	30,102	214,195(39.08)	152,181	62,104	169,304	73,166	242,470 (9.09)		
12,900	—	12,900 (2.36)	12,900	—	5,059	—	5,059 (0.19)		
					222,324	—	222,324 (8.33)		
		227,095(41.43)	—	—	1,137,871	73,166	1,211,037(45.39)		
63,836	78,546	142,382(25.97)			385,832	374,422	733,254(27.48)		
1,788	—	1,788 (0.32)			1,935	—	1,935 (0.07)		
1,713	—	1,713 (0.31)			—	—	—		
52,560	4,993	57,553(10.50)	54,657	2,896	192,456	58,792	251,248 (9.42)		
739	—	739 (0.13)			6,138	3,481	9,619 (0.36)		
120,636	83,539	204,175(37.25)			559,361	436,695	996,056(37.33)		
					4,200	—	4,200 (0.16)		
10,221	930	11,151 (2.03)			47,176	7,488	54,664 (2.05)		
					51,376	7,488	58,864 (2.21)		
—	—	548,055 (100)			2,083,521	629,514	2,668,035 (100)		

年計劃」; 經濟企劃院, 「輸送部門計劃」.

裝, 乾燥, 機械加工, 熱處理作業이 主體가 되며 成型「프레스」, 材料切斷, 鍛造部門에서는 엔진組立(熱處理, 塗裝), 機械加工作業 등이 主體가 된다. 主型製作, 中子製作의 機械加工, 熱處理作業과 成型「프레스」 材料切斷鍛造의 機械加工作業을 互換機械(transfer machine)에 연결시키고 車軸을 組立한다. 또한 「보디 새시라인」에 있어서는 車體部分의 薄板을 「프레스」加工하여 車體組立한 후 塗裝한다. 이것을 車軸組立과 연결시켜서 總合組立을 實施하게 된다. 이와 같은 自動車生產工程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消費量이 많은 工程은 鍛造, 鑄造, 熱處理機械加工, 塗裝工程으로서 이들 工程에 대한 에너지消費對策이나 代替, 再生利用對策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使用段階의 에너지消費節約 對策으로서는 自動車 使用者의 가솔린消費節約 努力이 필요하며 自動車의 低燃費設計開發[21]과 新燃料와 新輸送手段의 開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自動車의 燃料消費率은 發進, 停止가 많은 경우와 高速走行하는 경우에 惡化되므로 이러한 燃料消費 惡化要因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一方通行과 交通規制强化 등을 통하여 交通의 「플로우」(flow)를 改善하고 經濟的인 走行을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自動車의 에너지消費節約對策을 實施하기 위해서는 原料, 製造, 使用段階의 消費節約努力과 동시에 綜合的인 公路輸送體系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V. 鐵道部門의 에너지消費 現況과 對策

트럭輸送의 3.4倍의 에너지效率을 가지고 있는 鐵道輸送에 있어서는 蒸氣機關車의 撤收와 電鐵化, 디젤化가 促進되고 있다. 〈表 6〉은 우리 나라의 動力車 保有現況이다. 蒸氣機關車는 1974年의 88臺에서 1978年에는 50臺로 감소된 반면에 디젤機關車는 336臺에서 404臺로, 電動車는 126臺에서 215臺로 各各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 動力機關車의 1km 當 에너지消費量을 비교해 보면 〈表 7〉과 같다. 電氣機關車는 1臺當 電力 238kwh, 에너지 58,332 kcal/km를 消費하고, 蒸氣機關車는 石炭 591 kg, 에너지 324,984kcal/km, 디젤機關車는 輕油 165*l*, 에너지 152,016kcal/km를 消費하게 된다. 또한 1톤當 消費量은 電氣機關車가 72 kcal/톤-km, 蒸氣機關車가 409kcal/톤-km, 디젤機關車가 181kcal/톤-km이다. 이러한 鐵道機關車自體의 撤收와 電鐵化에 의한 에너지消費節約 이외에도 技術的인 면의 節約方法으로서 鐵道의 電力回生制動機化[22]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종래 熱이 大氣로 放散됨에 따라 오는 減速時의 運動에너지를 直流電氣로써 回收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앞으로 回生制動機化가 보급되면 鐵道用 에너지의 節約을 도모할 수 있다.

鐵道輸送은 大量流通物資인 무연탄[23], 시멘

21) 低燃費設計에 있어서는 運轉方法의 改善과 補修點檢, 車輛의 輕量化, 小型車의 活用對策 등이 필요할 것이다.

22) 電車에 있어서 回生「브레이크」(brake)化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적 에너지 절약방법 이외에 鐵道車輛의 알루미늄化에 의한 輕量化도 있다(鐵道廳, 『한국철도』, 1980. 4, p.17).

23) Resources for the Future, *U.S. Energy Policies an Agenda for Research*, A Staff Report, Resources for the Future Inc., 1968, p.74. 여기서는 석탄수송의 원가에 대하여 특히 논술하고 있다.

트, 油類 등의 輸送에 적합하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적합성의 연구. 검토가 에너지節約對策과 동시에 병행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Ⅵ. 公路에서 鐵道輸送으로의 轉換對策

〈表 8〉은 우리 나라 經濟開發 5個年計劃(第1次에서 4次까지)에 있어서 交通部門에 대한 投資額이다. 公路部門에 대한 投資額은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1962~66), 17,059百萬원(全交通部門投資의 35.82%)에서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1977~81), 1,211,037百萬원(45.39%)로 대폭 증가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鐵道部門에 대한 投資는 第1次의 21,878百萬원(45.74%)에서 第4次의 402,078百萬원(15.07%)로 約 30% 정도 減少되었다. 이러한 相反現象은 과거 20年間의 自動車 保有臺數의 증가 및 輸出促進에 따른 公路輸送量의 대폭적인 증가 및 鐵道輸送量의 대폭적인 減少에 起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公路輸送이 公路輸送體系의 특징인 短·中距離輸送 이외에 鐵道輸送의 특징인 長距離輸送의 分野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公路와 鐵道와의 경쟁관계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公路와 鐵道의 경쟁관계를 平均輸送距離로, 韓·日間의 비교를 보면 〈表 9〉와 〈表 10〉과 같다.

〈表 9〉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公路貨物平均輸送距離는 1963年의 23.8km에서 1978年에는 47.1km로 증가된 반면 日本의 경우에는 1963年의 21.6km에서 1975年에는 29.5

〈表 9〉 公路貨物 平均輸送距離의 韓日比較

	韓國		日本	
	實績(km)	指數	實績(km)	指數
1963	23.8	102.1	21.6	73.5
1964	27.3	117.2	21.4	72.8
1965	20.9	89.7	22.1	75.2
1966	22.7	97.4	24.5	83.3
1967	23.0	98.7	24.8	84.4
1968	23.1	99.1	26.6	90.5
1969	23.1	99.1	28.8	98.0
1970	23.3	100.0	29.4	100.0
1971	44.7	191.8	29.7	101.0
1972	42.5	182.4	29.5	100.3
1973	43.5	187.6	28.7	97.6
1974	43.9	188.4	29.9	101.7
1975	45.5	195.3	29.5	100.3
1976	46.6	200.0	—	—
1977	47.4	203.4	—	—
1978	47.1	202.1	—	—

資料：交通部,『交通統計年報』, 1971~79.
運輸省大臣官房情報管理部 編,『運輸經濟統計要覽』, 1977.

〈表 10〉 鐵道貨物 平均輸送距離의 韓日比較

	韓國		日本	
	實績(km)	指數	實績(km)	指數
1963	229.5	93.9	237.9	95.9
1964	222.6	91.1	231.3	93.3
1965	225.4	92.3	227.0	91.5
1966	226.5	92.7	223.9	90.3
1967	225.2	92.2	230.7	93.0
1968	237.9	97.4	236.3	95.3
1969	239.1	97.9	242.0	97.6
1970	244.3	100.0	248.0	100.0
1971	245.4	100.5	247.7	99.9
1972	229.5	93.9	248.7	100.3
1973	227.5	93.1	254.9	102.8
1974	226.8	92.8	254.9	102.8
1975	217.3	88.9	256.7	103.5
1976	223.0	91.3	—	—
1977	220.6	90.3	—	—
1978	220.0	90.1	—	—

資料：前揭書.

km로 7.9km가 증가되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나라의 公路輸送距離는 日本보다 16km (1975年)나 더 긴데 이는 우리 나라의 公路輸送이 中·長距離輸送分野로 해마다 擴大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鐵道貨物平均輸送距離(表 10 참조)는 1963年의 229.5km에서 1978年의 220km로 9.5km가 감소되었으나 日本은 1963年의 237.9km에서 1975年에는 256.7km로 18.8km가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長距離輸送需要 分擔을 公路에서 鐵道輸送으로 轉換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效率이 나쁜 公路輸送에서 에너지效率이 좋은 鐵道輸送으로 輸送需要分擔을 유도시키고 鐵道本來의 특징인 長距離, 大量高速性을 최대한 發揮할 수 있는 방향으로 陸上輸送對策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輸送部門의 에너지效率化[24]를 促進시키기 위해서는 輸送의 基本要因인 安全性, 確實性, 高速性, 快適性, 經濟性을 감안하여 公路輸送의 比率을 억제시키고 鐵道를 기축으로 하는 公共輸送手段을 整備·擴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對策[25]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個別 輸送手段의 에너지 消費原單位[26]의 改善

2) 輸送需要自體를 에너지節約的인 方向으로 移行操作

1)의 對策은 주로 輸送用機器의 「하드웨어」的인 에너지效率向上, 走行條件의 改善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2)의 對策은 주로 輸送欲求와 輸送需要의 中間에 있는 非效率性의 제거를 의도하며 구체적으로는 運輸業에 있어서 各種合理化 對策, 個別輸送手段에서 大量輸送手段으로의 需要의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現在까지의 輸送部門에 있어서 技術開發은 다음 세 가지의 段階를 經過하고 있다.

첫째는, 高速化, 大型化, 專用化 등에 의한 輸送效率을 추구하는 段階

둘째는, 승용차에 있어서 安全性과 快適性을 추구하는 段階

세째는, 環境保存의 관점에서 公害防止를 추구하는 段階

이러한 各段階는 社會의 欲求에 대응되어 발생하므로 輸送部門에 있어서 에너지節約이라는 새로운 社會的 欲求와 調和를 이루기 위한 技術開發이 앞으로의 課題가 되고 있다. 한편, 輸送需要自體를 에너지節約的인 方向으로 移行操作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個別輸送手段을 억제시키고 鐵道나 버스 등의 大量輸送手段의 比率을 증가시키는 對策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公路의 에너지消費比率은 매년 높아지는 반면, 鐵道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에너지節約型 輸送 시스템의 構築 및 輸送體系의 效率化를 위하여 이러한 個別輸送手段의 에너지消費體系를 再編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輸送體系의 再編成은 各輸送手段의 發展段階와 크게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各輸送手段의 發展段階의 展開過程을 충분히 감안하여 輸送體系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4) 鐵道廳, 『한국철도』, 1980. 4, p.20.

25) 綜合研究開發機構, 野村綜合研究所, 『輸送部門におけるエネルギー消費効率化の定量的分析』, 1976, pp.139~141.

26) 에너지의 消費動向把握 등을 作成하는 指標이며 거시적으로는 GNP 또는 IIP(鑛工業生産指數)當 에너지消費量으로 표시한다. 個別分析에 있어서는 條鋼生産當, 乘用車 1臺當, 各機器當, 에너지消費量 등, 物量原單位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美國과 日本의 各輸送手段의 發展段階를 表示하면 〈表 11〉과 〈表 12〉와 같다. 美國의 경우 旅客鐵道, 電車는 1920年代부터 쇠퇴기에 들어가고 自動車輸送은 1940年부터 성숙기에 들어갔으며 한편 日本의 경우는 鐵道輸送은 1930年代에, 自動車輸送은 1973年부터 성숙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先進國의 예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公路와 鐵道輸送의 發展段階는 鐵道輸送이 성숙기 全般에, 自動車輸送은 急速發展期 후반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陸上輸送에 있어서는 鐵道輸送의 성숙기와 自動車輸送의 急速發展期의 各種 要因을 감안하여 經濟成長의 단계에 따라서 陸上輸送體系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効率的인 使用 및 公路와 鐵道輸送의 특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陸上輸送體系가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對策으로서는 高燃費車의 規制, 택시의 規制, 버스優先對策, 都心의 駐車規制, 自動車進入規制 및 一般通行規制의 强化 등이 있고 이러한 規制를 기조로 하여 自動車燃費의 高率化促進, 自動車의 輕量化에 의한 大型化 경향의 방지 및 디젤車의 普及促進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積載効率의 향상을 위하여 協同輸送體制(Intermodal transportation)[27]의 促進, 택시의 合乘制, 트럭輸送의 効率化가 檢討되어야 한다. 한편 大量輸送手段의 强化나 輸送條件의 改善面에 있어서는 運賃體系의 檢討, 燃料價格體系의 檢討와 大

〈表 11〉 輸送手段의 發展段階(美國)

	實驗期	初期發展期	急速發展期	成熟期	衰退期
河川汽船	1795~1815	1815~1839	1839~1850	1850~1870	1870~
海洋汽船	1810~1830	1830~1860	1860~1916	1916~	
旅客鐵道	1829~1850	1850~1870	1870~1890	1890~1924	1924~
電車	1881~1890	1890~1900	1900~1910	1910~1922	1922~
自動車	1884~1908	1908~1928	1928~1940	1940~	
航空機	1903~1925	1925~1935	1935		

資料 : 通商產業省 機械情報產業局 自動車課 編, 『昭和60年の自動車產業』, 日刊工業新聞社, 1975, p.160.

〈表 12〉 輸送手段의 發展段階(日本)

	實驗期	初期發展期	急速發展期	成熟期	衰退期
沿岸水路	1830~1880	1880~1895	1895~1945	1945~	
旅客鐵道	1872~1885	1885~1895	1895~1932	1932~	
電車*	1903~1912	1912~1923	1923~1932	1932~	
自動車	1918~1923	1923~1958	1958~1973	1973~	
航空機	1912~1925	1925~1960	1960		

註 : 路面電車, 通勤電車 포함.
資料 : 前揭書, p.160.

27) 둘 이상의 다른 輸送手段을 使用하여 荷主의 門前(door)에서 荷受人의 門前(door)까지 一貫的으로 輸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物理的인 一貫性뿐만 아니라 全輸送區間의 責任의 一貫性 및 運賃의 一貫性이 施行되어 실제적인 協同一貫輸送이 되는 것이다.

量輸送手段에 대한 稅負擔의 輕減이 검토되어야 하고 個別輸送手段對策으로서는 自家用保有稅의 强化 등이 實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規制와 誘導體系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投資面의 協調體制가 동시 병행되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投資對策으로서는 低燃費, 低公害輸送手段에 관한 技術開發投資, 디젤乘用車, 電氣自動車, 輸送用 新에너지技術開發投資가 있고 施設面의 投資로서는 택시, 停車場의 整備, 大·中量輸送網의 整備建設投資, 鐵道, 트럭터미널의 整備擴充投資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規制, 誘導策, 投資對策에는 다음과 같은 巨視的 陸上輸送對策이 그 前題條件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公路輸送에 있어서는 「소프트」 및 「하아드」 兩面의 技術革新에 의하여 앞으로의 輸送需要에 대한 公路輸送의 가능성을 추구해야 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經濟規模의 擴大나 地域構造의 變動 등에 의하여 公路輸送의 近代化가 要請된다. 따라서 에너지消費節約型 輸送體系에 적합한 公路輸送의 近代化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協同一貫輸送에 알맞는 車輛의 大型化 및 物的流通 시스템化, 에너지節約 情報網[28] 등이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鐵道輸送에 있어서는 鐵道線路의 改良이나 電鐵化, 操車場의 改良 및 現代化, 車輛基地의 整備 및 綜合自動信號化와 CTC(列車集中 制御裝置化)를 촉진하고 全國的인 鐵道輸送網의 能力擴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對策과 더불어 輸送業務에 적합하도록 輸送設備를 改善하고 새로운 輸送시스템의 開發에 계속 노력한다면 앞으로는 鐵道輸送의 優位性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鐵道輸送의 특징인 大量輸送性이나 高速性을 최대한 活用한 大型貨物輸送과 長距離輸送의 施設을 대폭 擴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公路輸送體系의 특징이나 에너지効率, 輸送環境條件, 施設投資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公路輸送에서 에너지消費節約型 輸送手段인 鐵道輸送으로 輸送分擔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8) East-West Resources Systems Institute, *Report on the Asia-Pacific Energy Studies Conference*, East-West Center, 1978, p.57 참조 및 鐵道廳, 『한국철도』, 1980.4, p.20 참조.

Ⅶ. 要約 및 結論

1. 要　約

앞으로도 自動車化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交通環境下에서 우리 나라의 輸送體系는 에너지의 効率的 活用이나 國土·都市空間의 効率的 利用을 도모할 수 있는 輸送手段과의 調整, 交錯輸送의 解消, 輸送手段에 대한 技術硏究投資 등에 의하여 에너지節約型 輸送體系를 構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論文에서 展開해 온 우리 나라의 에너지節約型 輸送體系의 主要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輸送部門에 있어서는 國民의 서비스要求를 충분히 감안하여 輸送手段間의 균형있는 경쟁관계를 誘導시키고 効率的인 에너지消費節約 對策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輸送手段의 에너지源은 주로 石油系 燃料이며 특히 속도가 빠른 비행기나 自動車의 경우 運賃原價에 차지하는 燃料比率이 더 높

다. 우리 나라의 경우 公路輸送部門의 油類消費實績이 輸送部門의 總油類消費實績의 約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自家用乘用車 抑制措置 등의 公路輸送에 대한 重點的인 에너지消費節約 對策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公路輸送의 중심이 되고 있는 自動車는 原料段階, 製造段階, 使用段階에 이르기까지 직접·간접으로 많은 에너지를 消費하고 있다. 따라서 公路部門의 에너지消費節約을 위한 적절한 對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4) 自動車의 에너지消費節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製造段階에 있어서의 에너지節減뿐 아니라 消費段階에 있어서 에너지消費効率化를 고려한 設計理念이 필요하다.

5) 自動車産業에서는 鐵鋼, 알루미늄, 플라스틱스와 같은 에너지消費가 많은 資材를 사용하는데 이들 資材가 製造原價에 차지하는 比率이 約 80%나 된다. 따라서 自動車産業에 있어서는 資源節約, 資材節約의 관점에서 이러한 原材料 및 資材의 原價節減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 部品의 簡素化, ② 材料의 節減, ③ 製造原價의 再循環의 세가지 接近方法이 필요하다.

6) 自動車의 경우 車體의 重量과 燃料消費量은 거의 比例關係에 있어서 同型의 車라도 가벼운 쪽이 연료가 節約된다. 그러므로 自動車의 燃料消費節約對策 가운데 車體의 輕量化對策이 가장 중시되고 있다.

7) 自動車 엔진効率의 改善과 大氣汚染因子의 排出制御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에너지消費節約의 技術開發과 더불어 大氣汚染防止 및 自動車의 輸出促進面에서 排氣가스 節減을 위한 대폭적인 硏究投資가 實施되어야 한다.

8) 鐵道輸送에 있어서는 종래 熱이 大氣로 放散됨에 따라서 오는 減速時의 運動에너지를 直流電氣로써 回收하는 動力回生制動機化를 技術的인 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9) 鐵道輸送은 大量流通物資인 무연탄, 시멘트, 油類 등의 輸送에 적합하므로 앞으로는 物資輸送의 鐵道輸送에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에너지節約對策과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對策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鐵道機關車 自體(蒸氣機關車 등)의 撤收와 電鐵化에 의한 에너지消費節約對策이 實施되어야 한다.

2. 結　論

1) 최근에는 公路輸送이 公路輸送 本來의 특징인 短中距離輸送 이외에 鐵道輸送의 특징인 長距離輸送의 分野에까지 擴大되어 公路와 鐵道輸送과의 경쟁관계가 한층 심각하게 되어 왔다. 이러한 陸上輸送의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鐵道가 가지고 있는 長距離, 大量高速性의 長點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方向으로 陸上輸送對策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輸送部門의 에너지節約効率化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輸送의 基本要因인 安全性, 確實性, 高速性, 快適性, 經濟性을 감안하여 輸送體系에 있어서 公路輸送의 比率을 억제하고 에너지効率이 가장 좋은 鐵道를 기축으로 하는 公共大量輸送手段을 整備擴充할 필요가 있다.

3) 輸送部門의 에너지消費節約對策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① 個別輸送手段의 에너지消費原單位의 改善, ② 輸送需要自體를 에너지節約的인 方向으로 移行操作하는 두 가지의 接近

方法이 필요하다. ①의 對策은 주로 輸送用機器의 「하드웨어」的인 에너지效率向上, 走行條件의 改善을 의미하며 ②의 對策은 주로 輸送欲求와 輸送需要의 中間에 있는 非效率性의 제거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運輸業에 있어서 各種 合理化對策, 個別輸送手段에서 大量輸送手段으로의 需要의 誘導 등을 들 수 있다.

3) 輸送體系의 再編成問題는 各種 輸送手段의 發展段階와 크게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各輸送手段의 發展段階를 충분히 감안하여 輸送體系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輸送部門 全般의 에너지消費節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① 交通規制 ② 貨物積載效率의 向上 ③ 投資面의 協調體制가 필요하다. ①의 구체적인 對策으로는 高燃費車의 規制, 택시의 規制, 버스優先對策, 都心의 駐車規制 및 一般交通規制의 강화 등이 있고, 이러한 規制를 기조로 하여 自動車燃費의 高率化 促進, 디젤車의 보급촉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②의 積載效率의 向上에 있어서는 協同一貫體制의 촉진이 필요하며 ③의 投資面의 協同體制에 있어서는 輸送用 新에너지技術開發投資나 大·中量輸送網의 整備, 擴充投資가 필요하다.

5) 이러한 輸送部門의 에너지消費節約對策은 國土·技術開發計劃, 즉, 全國 主要都市와 地方開發據點都市의 상호연결에 의한 輸送機能의 재배치, 地方都市機能의 充實化計劃과 더불어 國民生活의 向上과 經濟發展에 기여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消費節約型 輸送體系計劃을 經濟計劃과 國土·都市計劃 및 地域開發計劃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國土의 開發效果가 상승적으로 波及되도록 輸送體系를 整備, 構築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林浩奎,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㉓, 1979.

_____,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㉟, 1980.

動力資源部, 韓國開發研究院, 『에너지 利用構造實態調査』, 1978.

韓國熱管理試驗研究所, 『에너지』, 1980, 第2號.

韓國原子力研究所, 『에너지 총람』, 1976.

_____, 『長期에너지 需給體系化 研究』, 1978.

鐵道廳, 『한국철도』, 1980. 4.

_____, 『오늘의 철도』, 1978, 1979.

岡本隆三, 『石油業界』, 教育社新書, 1975.

吉本秀幸, 『エネルギー資源, 現況とこれからの展望』, 經林書房, 1974.

白澤照雄, 『自動車業界』, 教育社新書, 1975.

松井賢一, 『エネルギー經濟論』, 日本工業新聞社, 1975.

運輸省 編, 『運輸白書』, 運輸省, 1977.

日本エネルギー經濟研究所編, 『日本エネルギ讀本』, 1977.

日本產業技術振興協會, 『2000年の エネルギー構造ー LP モデルによるシコミレーション結果』, 1977.

綜合研究開發機構, 三菱綜合研究所, 『產業部門におけるエネルギー消費効率化の定量的分析』, 1976.

綜合研究開發機構，工業開發研究所，『石炭，原子力を含めた新エネルギー供給可能性の分析と その技術的・經濟的 評價に關する研究』，1976.

綜合研究開發機構，野村綜合研究所，『輸送部門におけるエネルギー消費効率化の定量的分析』，1976.

通商產業省 編，『日本のエネルギー問題』，1974.

通商產業省 機械情報產業局 自動車課 編，『昭和 60年の自動車產業』，日刊工業新聞社，1975.

_____，『轉換期の自動車產業』，日刊工業新聞社』，1976.

East-West Resource System Institute, *Report on the Asia-Pacific Energy Studies Conference,* East-West Center, 1978.

Gorden, Richard L., *The Evolution of Energy Policy in Wesern Europe,* Praeger Publisher Inc., 1970.

Jensen, W.G., *Energy in Europe: 1945～1980,* G.T. Foulies & Co. Ltd., 1967.

Lovejoy, W.F. and Homan, P.T., *Economic Aspects of Oil Conservation Regulation,* The Johns Hopkins Press, 1967.

McDonald, S.L., *Petroleum Conserv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 Economic Analysis,* Resources for the Future Inc., 197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 1960～74.*

Resources for the Future, *U.S. Energy Policies:An Agenda for Research,* A Staff Report, Resources for the Future Inc., 1968.

Rostow D.A., *Oil Imports and National Interest,* Petroleum Industry Research Foundation Inc., 1971.

公的扶助事業의 現況과 改善方向

徐 相 穆

▷ 目 次 ◁

Ⅰ. 序 論
Ⅱ. 生活保護事業
Ⅲ. 其他 公的扶助事業
Ⅳ. 改善方向

Ⅰ. 序 論

한 國家經濟의 成長이나 發展의 目的이 國民 全體의 福祉를 增進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면 全國民에게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限의 生活水準을 保障하며 나아가서는 經濟水準向上에 상응하는 國民의 生活水準을 維持시키는 것은 現代國家의 社會·經濟政策의 매우 중요한 目標라 할 수 있다. 公的扶助制度는 이와 같은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直接的이며 最終的인 政策手段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憲法 第32條에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規定하고 있어 公的扶助事業을 통한 貧困의 解消는 國家의 義務임을 明示하고 있다.

公的扶助는 國民의 最低生活水準의 確保가 基本目標로서 生活의 不安을 해소하려는 社會保險과 比較하여 볼 때 前者는 短期的이고 處方的인데 반해 後者는 長期的이고 豫防的인 特徵을 지니고 있다. 또한 公的扶助對象者의 選定에는 受惠者의 所得·財產狀態는 물론 自活能力 등이 고려되며, 이에 필요한 財源은 國家나 地方政府의 一般財政에서 충당되는 것이 通例이다. 이 반면에 社會保險은 被保險者의 범위가 公的扶助에 비해 훨씬 넓으며 대체로 財政은 이를 위한 特殊財源에서 調達되며 또한 被保險者에게 支給되는 給與水準과 費用負擔(保險料)間에는 相關關係를 갖게 된다. 各種 社會保險制度가 잘 발달되어 있는 先進國에서는 公的扶助(또는 社會扶助라고도 함)는 社會保險의 補完的인 制度로서의 役割과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保險制度

筆者：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가 貧困解消의 主要政策手段으로 發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現在 우리나라와 같이 社會保障制度實施의 初期段階에서는 公的扶助의 役割이 相對的으로 중요하게 된다.

우리 나라 公的扶助制度의 沿革을 三國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기도 하나 이들 대부분이 部分的이고 斷片的인 救貧事業에 지나지 않았고 또한 日帝植民地下에서의 救貧事業도 名目的인 것에 불과하였다[1]. 1944年에 朝鮮救護令에 의거하여 救護活動이 필요에 따라 實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體系的이며 本格的인 公的扶助制度가 確立된 것은 5·16 革命 以後 日帝下의 遺物인 朝鮮救護令을 代替하고 救護對象者에 대한 보다 適切하고 合理的인 生活保護를 위해 1961年에 生活保護法이 制定·公布된 때부터다. 또한 同年에 軍事援護報償法, 1962年에 災害救護法 및 國家有功者 및 越南歸順者·特別保護法, 1965年에 自活指導事業에 관한 特別措置法, 1977年에 醫療保護法 등을 制定·公布함으로써 公的扶助事業의 法的 基礎를 마련하였다.

現在 實施되고 있는 公的扶助事業은 크게 (1) 生活保護事業, (2) 零細民 就勞事業, (3) 罹災民 救護事業, (4) 軍警援護事業으로 分類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公的扶助事業의 核心인 生活保護事業을 중심으로 그 現況의 파악은 물론 問題點을 指摘하고 이 分野의 長期計劃을 세우기 위한 基本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1) 具滋憲(1970) 참조.

Ⅱ. 生活保護事業

生活保護事業은 現在 實施되고 있는 公的扶助制度의 核心이 되고 있는데 이는 老齡, 疾病 기타 勤勞能力의 喪失로 인하여 生活維持의 능력이 없는 者에 대해 居宅保護, 또는 委託保護를 통하여 그들이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生活을 維持할 수 있도록 保障하여 社會福祉의 向上에 기여하고자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運營, 實施하는 扶助制度이다.

1. 生活保護法

社會의 深層部에 깔린 貧困階層의 保護를 國家的 次元에서 制度的으로 保護해야 된다는 社會的 要求에 의하여 1961年 12月 30日 法律第913號로 生活保護法이 制定되었다. 그러나 法實施를 위한 施行令은 8年後인 1969年 11月 10日에 와서야 公布되었으며(大統領令 第4218號), 그후 다시 1976年 12月 30日 大統領令第8320號로 改正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生活保護法은 이와 같이 被保護者들에게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生活을 維持하게(同法 4條) 한다는 最低生活保障의 基本原理가 適用되고 있으며, 保護對象者의 選定基準으로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扶養義務者가 있어도 扶養할 能力이 없는 경우의 者(同法 3條)로 規定하고 있어 選定基準으로 世帶單位가 아닌 個人單位의 原則이 適用되며, 國家는 매년 要保護者의 實態를 把握할 義務(同法 17條)를 가지며 또한 保護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要保護者와 그

親族 기타 關係人은 要保護者의 保護를 管轄 保護機關長에게 申請할 수 있게 하는 申請保護의 原則(同法 18條)을 適用하고 있다. 이 밖에도 保護水準은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生活保護法의 기본 성격은 다른 國家의 生活保護法 내지는 關聯法規와 비교할 때 公的扶助事業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는 法自體의 原理原則이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 事業을 위한 强力한 推進力을 잃고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日本의 生活保護法에는 生存權保障의 原理는 물론 無差別平等의 原理, 補足性의 原理, 自立助長의 原理, 國家責任의 原理 등이 條文化되어 生活保護事業이 보다 强한 推進力과 實行力을 가지고 있다.

生活保護法(同法 5條)에 의한 生活保護의 종류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① 被保護者에 대하여 衣服, 飮食 기타 日常生活의 需要를 充足하기에 필요한 金品을 給付하여 그 生計를 維持하게 하는 生計保護

② 診療, 醫學的措置, 手術, 기타의 治療와 施術, 藥劑 또는 治療材料의 給付, 病院 또는 診療所에의 收容, 看護, 移送, 運搬, 기타 醫療目的의 達成을 위한 措置와 保護를 實施하는 醫療保護

③ 助産, 分娩前後의 必要한 措置와 保護를 실시하는 解産保護

④ 被保護者의 死亡時 屍體의 運搬, 火葬 또는 埋葬 등 기타 喪葬에 필요한 措置를 행하는 喪葬措置 등이다.

2. 保護對象者의 選定方法

生活保護對象者의 범위는 生活保護法 第3條에 의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扶養義務者가 있어도 扶養할 能力이 없는 者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즉 ① 65歲 이상의 老衰者, ② 18歲 未滿의 兒童, ③ 姙産婦, ④ 不具, 癈疾, 傷痍 其他 精神 또는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 勤勞能力이 없는 者 및 ⑤ 其他 保護機關이 本法에 의한 保護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者 등이다. 여기서 扶養義務者가 扶養能力이 없다고 함은 扶養義務者가 ① 男子로서 65歲 이상일 때, ② 婦女子로서 50歲 이상일 때 및 ③ 心身障碍로 인하여 勤勞能力이 없을 때를 말한다(生保法施行令 1條). 이 밖에 18歲 미만의 兒童을 保護하는 경우에 그의 養育上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兒童과 함께 그의 母를 保護할 수 있게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칙적인 保護對象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依據하여 保社部는 매년 일정한 住居를 갖고 있는 要保護對象者 選定基準을 各 市道에 시달하여 生活保護對象者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生活保護對象者는 生活無能力者(生保對象者 1, 2, 4號에 해당)와 零細民(生保對象者 3, 5號에 해당)으로 구분하고 있다. 生活無能力者는 居宅保護 또는 收容保護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國家에서 無賞으로 保護를 하지 않으면 生計가 곤란한 경우를 말하고, 零細民은 生活保護對象者 3號 및 5號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耕作地, 財産, 所得 등이 一定水準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每年 保社部에서 그 기준을 各市道에 示

達하고 있다(表 1 참조).

生活保護法 第17條에 의해 서울特別市長, 市長 또는 郡守는 每年 1回 이상 管割區域內의 要保護者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保健社會部(保護課)는 每年 2月에 生活保護對象者調査와 策定基準을 결정하여 3月까지 生活保護對象者調査를 위한 지침 및 敎育內容을 各市郡에 示達하고 있다. 各市郡은 이에 따라 4月 1日부터 30日까지 保護對象者調査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6月末까지 上級機關에 報告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保護對象者의 確定을 위해 保社部는 報告받은 調査結果 對象人員에 따라 이에 필요한 所要豫算要求를 經濟企劃院에 要請하여 審議를 거쳐 經濟企劃院으로부터 確定豫算의 通報를 받게 된다. 保社部는 이 確定된 豫算에 따라 被保護人員을 確定하여 各道를 통해 市郡에 通報하게 되어 있으며 市·郡은 이에 따라 그 地域의 受惠者를 確定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調査된 生活保護對象者의 推移를 보면 1965~75年間에는 계속 下落勢를 보였으나 1975年 이후에는 약간씩 증가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表 2 참조). 이처럼 零細民을 포함한 生活保護對象者가 감소한 것은 그동안의 經濟成長으로 인해서 所得이 향상되었

〈表 1〉 生活保護對象者 選定基準

	月所得(人當)		耕作地(家口當)		不動產		動產	
	都市	農村	都市	農村	都市	農村	都市	農村
	(원)	(원)			(원)	(원)	(원)	(원)
1965	600	400	3段步 미만	3段步 미만				
1970	900	800	3段步 미만	3段步 미만				
1975	3,500	2,900	3段步 미만	3段步 미만	300,000	200,000	300,000	200,000
1976	4,400	3,600	3段步 미만	3段步 미만	400,000	300,000	400,000	300,000
1977	8,000	7,000	3段步 미만	3段步 미만	440,000	330,000	—	—
1978	15,000	13,000	3段步 미만	3段步 미만	500,000	400,000	—	—
1979	20,000 (大都市) 18,000 (中小都市)	16,000	3段步 미만	3段步 미만	700,000 (大都市) 600,000 (中小都市)	500,000	—	—
1980	26,000 (大都市) 23,000 (中小都市)	20,000	—	3段步 미만	철폐	철폐	—	—

資料 : 保健社會部 保護課.

〈表 2〉 生活保護對象者 推移

(단위 : %)

	生活保護對象者(千名)					生保者 總人口	生活無能力者 總人口	零細民 總人口
	生活無能力者			零細民	合計			
	居宅保護	施設保護	小計					
1965	288	72	359	3,563	3,922	13,8	1.3	12.6
1970	306	63	369	2,116	2,486	7.9	1.2	6.7
1975	375	52	427	904	1,331	3.8	1.2	2.6
1979	282	47	329	1,500	1,829	4.9	0.9	4.0

資料 : 保健社會部 保護課.

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生活保護對象者가 減少한 원인이 生活無能力者의 減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零細民의 減少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간의 經濟成長이 어느 정도 貧困解消에 寄與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1975年 이후에는 生活保護對象者 選定基準인 所得上限線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生保對象者의 數도 증가하여 1979年에는 全人口의 4.9%에 이르고 있다.

生活保護對象者調査와 關聯된 이와 같은 保社部의 選定基準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 조사는 調査日을 기준으로 그 對象者를 조사하기 때문에 調査日로부터 그 다음 調査日 사이에 新規로 生活保護對象者의 범주에 속하게 되거나 또는 그 반대로 保護事由가 消滅되는 경우 및 保護對象者의 移動現象 등을 末端行政機關에서 動態的으로 把握·對處하는 行政業務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즉, 必要即應의 原則이 缺如되어 필요에 따른 신속한 保護措置가 아쉽다. 또한 調査日을 기준으로 일정한 住居를 갖고 있는 者만을 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住居가 일정하지 않은 要保護者에 대해서는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 못해 土幕, 天幕 등 假屋居住者와 露宿者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要保護者에 대한 實態把握은 保護行政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靜態的인 保護行政에서 動態的으로 그 實態를 파악하는 行政措置가 필요하다.

또한 保社部가 各 市·道에 每年 示達하는 選定基準도 그것이 어느 정도 合理的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提起된다. 生活保護對象者를 選定하는 策定基準은 그것이 最低生活水準을 나타내는 最低生計費가 되어야 하는 것이 合理的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現在 保社部에서 生保對象者 選定에 사용하고 있는 所得上限線을 推計된 最低生計費와 비교해 보면 1975年까지는 所得上限線이 最低生計費를 크게 미달하였으나 최근에는 最低生計費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所得上限線 設定에 一貫性이 缺如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 참조).

〈表 3〉 生保對象者 所得上限線과 最低生計費의 比較

	生保對象者 所得上限線		最低生計費[1]	
	都 市	農 村	都 市	農 村
1965	600	400	1,700	1,400
1970	900	800	3,200	2,700
1975	3,500	2,900	8,000	6,700
1979	20,000 (大 都 市) 18,000 (中小都市)	16,000	15,300	12,800
1980	26,000 (大 都 市) 23,000 (中小都市)	20,000	19,600	16,400

註 : 1) 徐相穆(1979, 여름호)
資料 : 保健社會部 保護課.

3. 生計保護

生計保護는 要保護者에 대하여 最低限의 生活維持에 필요한 衣服, 飮食 其他 日常生活의 需要를 充足하기에 필요한 金品을 國家가 無償으로 給付하여 그 生計를 維持하도록 하는 중추적인 保護方法이다. 이 生計保護는 被保護者의 住居에서 행하는 居宅保護를 原則으로 하는데 被保護者가 住居가 없거나 住居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保護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때와 被保護者가 특히 希望할 때에는 被保護者를 適當한 保護施設에 保護하는 收容保護나 個人의 家庭에 委託하여 保護하는 委託保護를 행할 수도 있다.

또한 生計保護는 金錢給付에 의해 행함을 原則으로 하는데 이에 의할 수 없거나 適當하지 않다고 認定될 때에는 現物給付를 행할 수 있다. 또한 保護金品은 1月分 이내를 限度로 前渡하는데, 단, 그것이 곤란할 때에는 1月分을 超過하여 前渡할 수도 있다. 그리고 保護金品은 被保護者에게 직접 交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收容保護나 委託保護의 경우에는 保護施設 또는 保護를 委託받는 자에게 이를 交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收容保護의 保護施設은 ① 要保護者가 老衰로 인하여 獨立해서 日常生活을 營爲할 수 없는 要保護者를 收容하여 生計保護를 행하는 養老施設, ② 年少者로서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있어도 扶養할 수 없기 때문에 生活할 수 없는 者를 收容하여 保護하는 養育施設, ③ 身體上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인하여 獨立해서 日常生活을 營爲할 수 없는 要保護者를 위한 保護施設, ④ 身體上 또는 精神上의 障碍가 있는 者로서 再活할 수 있는 要保護者를 收容하여 醫療, 再活 및 職業輔導 등을 행하는 再活施設 등이 있다.

生活保護法 第6條에 근거하여 保健社會部는 每年 生計保護의 保護水準을 決定하고 있다.

〈表 4〉 生計保護水準(1人/1月)

	食費補助內容(1人 1日)		金額換算(1人1日)		最低生計費(1人1日)	零細民
	居宅保護	施設收容	居宅保護	施設收容		
1965	밀가루 250g	쌀 115g 보리쌀 304g 부식비 3원	244	519	도시 1,720 농촌 1,441	
1970	밀가루 250g	쌀 216g 보리쌀 207g 부식비 10원	259	1,065	도시 3,233 농촌 2,714	
1975	밀가루 300g	쌀 216g 보리쌀 207g 부식비 54원	1,010	4,424	도시 8,030 농촌 6,733	
1980	쌀 288g 보리쌀 138g 부식비 2,500원(1가구1월) 연료비 2,500원(1가구1월)	쌀 432g 보리쌀 138g 부식비 220원 연료비 2,500원(5인/월)	6,292	14,390	도시19,600 농촌16,400	연료비 2,500원 중학수업료 전액면제
1981	쌀 288g 보리쌀 138g 부식비 3,000원(1가구1월) 연료비 3,000원(1가구1월)	쌀 432g 보리쌀 138g 부식비 360원 연료비 3,000원(5인/월)				

資料 : 保健社會部 保護課.

〈表 5〉 生計保護實績

	居宅保護				收容保護			
	人員(千名)	保護財政(百萬원)			人員(千名)	保護財政(百萬원)		
		計	國庫	地方		計	國庫	地方
1965	283	840	646	194	49	610	556	54
1970	283	892	685	207	70	900	646	254
1975	330	3,731	2,877	854	48	2,465	1,570	895
1979	318	16,925	10,073	6,852	48	6,404	3,757	2,647
1980[1]	282	25,395	16,783	8,612	48	8,145	4,896	3,249

註 : 1) 推計値임.
資料 : 保健社會部 保護課.

保護水準은 同法 第4條에서 밝힌 대로「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生活」을 維持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는데 現行 保護水準은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最低限의 生計를 保障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生活保護法이 規定하고 있는 保護費用으로는 保護業務에 필요한 人件費, 行政事務費 그리고 保護實施를 위한 保護實施費用 등이 있는데 이중 保護實施費用에 대하여는 國家가 80%, 當該道가 10% 이상, 市·郡이 10% 이내를 負擔해야 하며, 서울特別市의 경우는 國家가 50% 이내, 서울市 自體가 50% 이상을 負擔하고 있다. 그리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保護費用의 財源을 充當하기 위해 일정한 金額과 年限을 정하여 保護基金을 積立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財源을 발판으로 지금까지 實施되어온 生計保護의 實績은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醫療保護

醫療保護는 醫療를 필요로 하는 要保護者에 대해서 診療, 醫學的 措置, 手術과 其他의 治療와 施術, 藥劑 또는 治療材料의 給付, 病院 또는 診療所에의 收容, 看護, 移送, 運搬, 기타 診療目的의 達成을 위한 措置 등에 該當하는 保護를 행하는 것이다.

醫療保護事業은 1976年까지 生活保護法에 근거를 두고 주로 無料診療를 取扱하는 救療事業을 實施해 왔다. 이 救療事業은 生保對象者에게 家口別로 生活保護診療券을 發付해서 保健支所, 保健所 및 管轄 市·道立病院에서 生保者의 診療를 專擔하도록 해서 通院治療 및 入院措置 등의 醫療救護를 實施하였다. 그러나 低所得者에 대한 醫療施惠를 擴大 强化하기 위해 1977年 1月 4日 「醫療保護에 관한 規則」을, 1977年 12月 31日에는 따로 醫療保護法(法律 第3076號)이 制定되고 이어 1978年 5月 23日 醫療保護法施行令(大統領令 第9029號)과 醫療保護法施行規則(1978. 9. 1 保社部令 第606號)이 公布됨에 따라 生活保護法에 의한 종래의「醫療保護에 관한 規則」은 폐지되고 1979年 1月 1日부터 이 새로운 醫療保護法에 의한 본격적인 醫療保護事業이 擴大 實施되고 있다.

醫療保護法에 의하면 醫療保護對象者는 주로 生活保護法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들이고 그 외에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收容者, 災害救護法의 規定에 의한 罹災者, 國家有功者 등 特別援護法 및 軍事援護法의 適用對象者와 그 家族 및 越南歸順勇士 特別報償法에 의한 越南歸順勇士와 그 家族으로서 援護處長의 要求로 保健社會部長官이 醫療保護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者,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지정된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 및 그 家族으로서 醫療保護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 및 其他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거나 生活이 어려운 者로서 大統領이 정하는 者 등이다. 1980年의 경우 生活保護對象者가 醫療保護對象者의 88%로 大宗을 이루고 있다(表 6 참조).

이상과 같은 醫療保健對象者 중 零細民(生保法 4條 1項 5號에 해당하는 者)을 제외한 모든 對象者는 外來와 入院이 全額 無料診療이며 零細民에 대해서는 1次診療는 全額을 醫療保護基金에서 2次診療(入院 또는 特殊診療에 의한 加療)는 50%를 本人이 負擔하고 나

머지는 基金에서 負擔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本人이 支拂能力이 없을 경우 國家가 代拂할 수 있는데 代拂된 金額은 1~3年에 걸쳐 本人이 無利子로 元金만 分割償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81年부터는 從前의 醫療保護對象者 외에 準零細民(生活保護對象者가 아닌 低所得者) 158萬名에 대해 外來診療는 全額無料, 入院은 50%를 國庫에서 支援하고 나머지 30%는 3年 分割償還으로 融資하며 20%는 現金 負擔하도록 하여 醫療保護對象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計劃이다.

第1次診療機關이 행하는 醫療保護의 範圍(醫療保護法施行規則, 15條)는 ① 간단한 外科的 처치, 其他 通院診療가 가능한 疾病의 診療, ② 長期治療를 요하는 慢性疾患으로서 入院을 필요로 하지 않는 疾病의 診療, ③ 疾病狀態, 移送距離 및 時間 등으로 移送을 하여서는 患者의 生命에 위험이 초래될 경우의 緊急入院手術, ④ 第2次診療機關으로부터 회송받는 患者에 대한 診療 등이다.

第2次診療機關이 행하는 醫療保護의 범위는 ① 入院手術을 필요로 하는 診療, ② 合併症으로 인하여 入院을 필요로 하는 重症患者의 診療, ③ 救護患者에 대한 診療, ④ 기타 第1次診療機關에서 행할 수 없는 處治 및 診療 등으로 되어 있다. 入院診療의 경우 入院期間은 2週內로 限定하고 있지만 계속 入院加療가 필요한 때에는 入院期間의 延長을 申請할 수 있는데 道知事는 醫療保護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生活保護法에 근거를 둔 醫療保護事業은 1976年까지 極貧者에 대해서만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77年 이후에는 새로운 醫療保護法의 制定에 따라 대상범위를 零細民(5號)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제로 醫療保護의 惠澤을 받는 者는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히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診療實績의 增加趨勢와 관련하여 醫療保護對象者의 醫療利用實績을 보면 〈表 8〉에서와 같이 1977~79年間에 醫療保護對象者 1,000名當 月間 實利用人員(또는 實利用率)은 물론 延利用人員(또는 延利用率)이 外來와 入院 모두 매년 增加하고 있다. 이러한 醫療利用率의 增加趨勢는 一般醫療保險患者의 利用率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이

〈表 6〉 醫療保護對象者 現況

	1977	1978	1979	1980
合計	2,095,251	2,095,251	2,134,122	2,141,690
無料對象者	369,204	440,725	510,447	641,732
生活保護對象者 및 追加對象者 (1號~4號)	318,204	289,109	368,371	327,883
施設收容者	51,000	54,584	56,630	53,024
越南歸順者	—	2,225	1,840	2,330
人間文化財	—	800	628	775
援護對象者	—	65,940	58,662	97,770
罹災者	—	28,067	24,316	160,000
一部有料對象者 (5號)	1,726,047	1,654,526	1,623,675	1,499,958

資料 : 保健社會部 醫政局.

한 것은 外來의 경우 醫療保護의 延醫療利用率이 醫療保險의 延利用率보다 대체로 높고, 醫療保護의 無料入院利用率 역시 醫療保險의 入院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樣相은 醫療保護對象者 특히 生活無能力者(1, 2, 4號 對象者)의 屬性이 대부분 老年層 아니면 身體的으로 缺陷이 있는 者들로서 一般醫療保險對象者들보다는 病勢도 重症으로 治療日數가 높은데서 起因된 것으로 풀이된다. 〈表 9〉는 醫療保護患者의 治療日數를 보여 주고 있는데 外來나 入院 모두 醫療保險患者의 治療日數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醫療利用率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醫療保護對象者중 一部有料對象者인 零細民의 入院利用率이 一般醫療保險의 入院利用率보다 월등히 낮다는 점인데 이는 零細民의 現行 醫

〈表 7〉 醫療保護 診療實績

	無料對象者(千名)				一部有料對象者(千名)				計			
	實人員		延人員		實人員		延人員		實人員		延人員	
	外來	入院	外來	入院	外來	入院	外來	入院	外來	入院	外來	入院
1977	487	14	1,961	128	648	19	2,389	154	1,134	33	4,350	282
1978	869	22	3,629	258	713	20	3,113	187	1,583	42	6,742	445
1979	1,040	42	4,998	549	998	31	4,691	249	2,038	73	9,689	798

資料 :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報』, 1979 ; 『主要保健社會統計』, 1980.

〈表 8〉 醫療保護對象者의 醫療利用率 推移

(단위 : 對象者 1,000名當, 月間)

		1977[1]		1978		1979	
		實利用人員	延利用人員	實利用人員	延利用人員	實利用人員	延利用人員
醫療保護	外來	45.1	173.0	63.0	268.2	79.6	378.4
	入院	1.3	11.2	1.7	17.7	2.9	31.2
	(無料)	(3.2)	(28.9)	(4.2)	(48.8)	(6.9)	(89.7)
	(一部有料)	(0.9)	(7.4)	(1.0)	(9.4)	(1.6)	(12.8)
醫療保險	外來	42.5	109.7	57.0	145.8	87.2	234.4
	入院	2.5	18.3	3.0	18.1	2.6	18.7

註 : 1) 1977年은 7月1日~12月31日間의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
資料 : 保健社會部, 『統計年報』, 1979; 『主要保健社會統計』, 1980.

〈表 9〉 醫療保護患者의 平均治療日數

(단위 : 日)

	外來	入院		醫療保險	
		無料	一部	外來	入院
1977[1]	4.7	9.1	8.1	2.6	7.4
1978	4.3	11.7	9.4	2.6	6.1
1979	4.7	13.4	8.0	2.7	7.2

註 : 1) 1977年 7月1日~12月31日間.
資料 :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報』, 1979; 『主要保健社會統計』, 1980.

療酬價의 負擔比率 50%가 이들에게 여전히 過重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하여 주목할 만하다.

醫療保護財政의 負擔은 醫療保護法 第10條 規定에 의해 保護基金 所要財源의 80%를 國庫에서 負擔(서울은 50%)하고 나머지는 各道와 該當市(서울, 부산)의 出捐金으로 充當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保護基金의 全般的인 管理와 指導監督은 保健社會部長官의 所管이며 道知事는 當該道의 基金을 管理하기 위해 所屬 公務員 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基金의 用途는 醫療保護費用의 負擔 또는 償還을 조건으로 醫療費用을 代拂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基金에서 支出되는 醫療保護의 診療酬價는 醫療保護法 第6條 4項 규정에 의해 保健社會部長官이 決定·告示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表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5. 解產保護와 喪葬措處

解產保護는 生活保護法 第11條에 의해 要保護者에 대해 助產, 分娩前과 分娩後의 필요한 解產措置와 保護를 하는 것으로 保護方法은 生活保護法 第12條에 의해 一般醫療保護의 방법을 準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生活保護對象者중 姙產婦는 一般醫療受惠者와 같은 資格으로 해당 醫療施設에서 解產保護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解產保護는 生活保護法上으로는 保護內容이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內容面에서 볼 때 醫療保護와 크게 다를 바 없고 保護當局의 豫算編成過程에서도 解產保護項目을 따로 設定하지 않고 있어 姙產婦를 위한 現行의 解產保護方法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姙產婦는 產母와 胎兒의 健康을 위해 특별한 營養管理가 要求되고 出產에 따른 幼兒用品 등이 필수적인데 現行의 法規定에는 이와 같은 保護內容을 規定하지 않고 있어 解產保護를 위한 方法 및 保護水準面에서 改善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表 10〉 醫療保護基金

	計	國 庫	地方費
1977	4,884	4,189	695
1978	7,410	5,660	1,750
1979	8,774	6,717	2,057
1980	10,711	8,171	2,540

資料 : 保健社會部 醫政局.

〈表 11〉 一日治療單價

(단위 : 원)

	1977	1978	1979	1980
外 來	400	500	600	750
入 院	5,000	6,500	7,000	8,000

資料 : 保健社會部 醫政局.

喪葬措處는 生活保護法 第12條에 의해 要保護者가 死亡하였을 때 初喪과 葬禮의 措置를 행하는 것으로서 死體의 檢案, 運搬, 火葬 또는 埋葬 및 기타 喪葬에 필요한 措置를 內容으로 하고 있다. 喪葬給付는 現金給付를 原則으로 하나 이것이 適當하지 않다고 認定될 때에는 喪葬措置를 행하는 者에게 現物給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喪葬措處에 대한 費用의 標準은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 1980年의 葬儀費 基準額은 50,000원으로 1979年의 20,000원에 비해 대폭 인상되었다. 所要豫算面에서는 1979年까지는 地方財政에 의존하였으나 1980年부터는 國庫와 地方費로

充當하게 되었다.

6. 敎育扶助

敎育扶助制는 生活保護對象者 中學校課程授業料支援規定(1979. 8. 31 大統領令)에 의해 生活保護對象者로서 中學校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 在學하는 者에 대한 授業料를 支援하기 위해 1979年 9月 1日부터 施行되고 있다.

이 制度의 保護對象은 生活保護法 第3條 1項(生活無能力者 및 零細民)에 해당하는 者 또는 保護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者로서 中學校, 技術學校, 高等公民學校, 特殊學校(中學校課程) 및 이와 유사한 中學校課程學校에 在學하는 者(入學을 포함)에 대하여 學校授業料全額을 扶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敎育扶助의 保護對象者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在學하는 學校長에게 生活保護對象者證明書 또는 保護施設收容者證明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學校의 長은 이들에게 免除해 준 授業料를 일정한 절차를 밟아 政府로부터 交付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간의 敎育扶助實績을 보면 〈表 12〉에서와 같다.

이러한 敎育扶助制는 保護內容이 授業料免除에 그치고 있어 敎育用品이나 敎材 등의 支援策이 缺如되어 있어 그 改善策이 요구되고 있다.

〈表 12〉 敎育扶助實績(中學生授業料支援)

	扶助人員	支援額 (人/年)	所要豫算額
	(千名)	(千名)	(百萬원)
1979	112	36	3,672
1980	114	84	9,565

資料 : 保健社會部 保護課.

Ⅲ. 其他 公的扶助事業

1. 零細民 就勞事業

零細民 就勞事業은 要保護者에 대하여 無償保護와는 별도로 勤勞能力이 있는 者에 대한 生活安定策을 講究하기 위해 遊休勞動力을 農業用水, 農路開發, 小河川整備, 砂防事業 道路補修事業 등에 就勞케 하여 勞動力提供을 前提로 勞賃을 支拂하여 要保護者의 生計를 支援하는 自立保護方式의 公的扶助事業이다.

이 事業은 1964年부터 自助勤勞事業의 명칭으로 援助糧穀과 國庫를 財源으로 實施되어 오다가 1968年 自活指導事業에 관한 臨時措置法(法律 第2309號)이 制定되면서 그 명칭을 自活指導事業으로 바꾸어 계속 실시해 왔다. 그러나 1972年의 美國公法(PL 480號)에 의한 糧穀支援이 中斷됨에 따라 同事業에 필요한 財源調達이 어렵게 되어 就勞機會를 喪失한 零細家口의 生計支援策이 要求되었다. 이에 따라 1974年 1月 14日 大統領 緊急措置 第3號(國民生活安定)에 의거 零細民就勞事業이 再開되었으며 1975年부터는 그 명칭을 새마을勞賃所得事業으로 변경, 現在에 이르고 있다.

就勞對象은 生活保護法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를 原則으로 하되 각종 災害罹災民, 極貧救護對象者, 火田整理民 등 救護가 필요하다고 市長·郡守가 認定하는 生活이 困窮한 者에 대해서도 就勞를 許容하고 있다. 이러한 就勞對象者는 一線機關長의 책임하에 世帶當 1人을 기준으로 就勞證을 發給하여 就勞케 하

되 1世帶 2人 이상의 就勞希望者가 있을 경우에는 事業量 및 生活程度 등을 고려하여 1人을 추가하여 就勞證을 해당 洞事務所를 통해 發給하고 있다. 事業의 總括 및 財政計劃은 保健社會部 福祉課가 관장하며 事業의 선정 및 細部計劃과 推進은 道·市 및 郡에서 地域事情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對象事業의 選定은 그 地域住民의 所得增大 내지는 落後마을 開發, 都市周邊環境整理事業 등 住民宿願事業을 선정하되 事業의 經濟的 效果보다는 救護效果에 치중하여 가능한 한 勞動集約的인 事業으로 當該年度內에 完決지을 수 있는 事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國庫補助額 중 資材代 사용은 都市 30% 기타 地域 20% 이내로 制限되어 있지만 地方費로 資材代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制限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事業設計를 할 때 零細民이 就勞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正常人夫建設품셈의 60%에 해당하는 作業量을 책정하고 있다.

就勞勞賃水準은 1980年에 1日當 男子 2,500원, 女子 2,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特殊技術勞賃은 政府勞賃單價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며 勞賃은 地域實情에 따라 週給 또는 10日 등의 간격으로 支給하되 就勞者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就勞當日 現場에서도 支給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간의 就勞勞賃單價의 推移는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就勞勞賃單價는 政府建設勞賃單價나 農村賃料金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就勞事業은 事業設計부터 就勞者의 勞動의 質을 正常人夫建設품셈의 60%로

〈表 13〉 就勞勞賃單價推移

	就勞勞賃(원)		對政府 建設 勞賃 單價(%)		對農村賃料金單價 (%)	
	男	女	男	女	男	女
1978	1,500	1,200	49	44	44	48
1979	2,000	1,500	67	85	39	39
1980	2,500	2,000	66	88	38[1]	41[1]

註 : 1) 1980年 5月 기준.
資料 : 保健社會部 福祉課; 農協中央會, 『農協調査月報』(1980. 7).

〈表 14〉 年度別 就勞事業實績

	財源		事業場數 (個所)	勞賃支給額 (億원)	就勞延人員 (千名)	對象家口當平均	
	國費 (億원)	地方費 (億원)				勞賃所得 (원)	就勞日數 (日)
1974	137	14	9,703	118	15,504	26,477	34.7
1975	200	40	11,254	151	15,910	33,806	35.6
1976	150	46	10,136	122	13,078	27,354	29.3
1977	100	32	4,570	82	7,376	17,696	16.0
1978	100	50	4,854	83	6,104	16,718	12.3
1979	293	50	12,435	241	11,149	25,963	12.0
1980[1]	250	40	8,300	18,750	8,340	57,600	25.6

註 : 1) 推定値.
資料 : 保健社會部 福祉課.

잡고 있지만 就勞事業 자체가 公的扶助의 性格을 띠고 零細家口의 生活安定에 目的을 두고 있는 한 正常人夫의 勞賃과 너무 많은 隔差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간의 就勞事業 實績과 財源은 〈表 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1979年의 경우 약 1萬 2千餘 就勞事業場에서 延人員 11百萬名이 就勞하여 總 248億원의 勞賃이 支給되었다. 그리고 對象家口當 平均就勞日數는 12日로 1974年의 34日보다 월등히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就勞日數가 감소한 것은 地方費를 포함한 政府의 財源不足으로 零細民에 대한 就勞機會를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財源의 增額調整을 통한 就勞機會의 확대는 平均所得面에서 就勞對象家口의 所得水準이 都市勤勞家口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생각할 때 零細家口의 所得向上을 위해서도 필요한 施策이라고 본다.

이밖에 1979年의 就勞事業 種類別 財源配定과 投入된 就勞人員의 分布를 보면 〈表 15〉에서와 같이 全體事業實績의 약 50%가 小河川整理事業에 偏重되어 있어 道路와 農路는 약 25%로 비교적 單純事業에 중점적으로 財源을 投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表 15〉 1979年의 就勞事業 種類別 分布

(단위 : %)

	財源	就勞延人員	完工事業場數
都市土木	5.2	4.4	2.4
小河川整理	54.8	48.7	41.6
道路및農路	22.6	26.3	27.0
農業用水	6.9	8.1	9.4
砂防造林	3.5	4.6	4.3
環境衛生	2.4	3.2	2.2
開墾	0.4	0.4	7.9
其他	4.1	4.3	5.4
計	100.0	100.0	100.0

註 : 1) 國費의 地方費를 포함한 總財源.
資料 : 保健社會部 福祉課.

2. 罹災民 救護事業

罹災民 救護事業은 1962年 3月 20日 災害救護法이 制定되어 非常災害가 발생할 때 應急的인 救護를 행함으로써 災害의 復舊 및 罹災民의 保護와 社會秩序의 維持를 목적으로 旱害, 風害, 水害, 火災, 기타의 非常災害로 인해 救護가 필요한 罹災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救護를 행하고 있다.

① 收容施設의 提供, 給食, 衣類, 寢具, 學用品 및 기타 生活必須品의 給與

② 醫療 및 助產

③ 罹災者의 救出

④ 罹災者住宅의 應急修理

⑤ 生業에 필요한 資金, 器具 또는 資材의 給與 및 代與

⑥ 生業斡旋

⑦ 葬事

⑧ 기타 필요한 경우에 現金給與

이러한 救護事業은 保健社會部의 主管으로 罹災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 또는 道가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救護機關은 災害救護事業의 企劃, 調査, 기타 救護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는 中央災害對策委員會를, 서울特別市 및 道에는 地方災害救護對策委員會를 設置運營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들 救護機關은 필요에 따라 救護業務의 一部를 大韓赤十字社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救護費用의 負擔은 國庫에서 70%를, 나머지는 地方自治團體가 災害救護基金을 積立하

여 필요한 救護費用을 負擔하고 있다.

災害가 발생하여 救護를 받고자 하는 罹災者는 書面 또는 口頭로 家族數와 被害程度 및 救護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救護機關에 신고해야 하며, 다만 緊急을 요하는 경우에는 救護機關은 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7日 이내에 救護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給食 및 기타 救護品의 給與限度나 損失補償範圍 등의 救護水準은 일정한 規定에 따라서 실시되는데 특히 罹災住宅의 應急修理의 경우 住宅의 破損이나 燒失 등의 정도에 따라 差等을 두어 補助하고 있다. 罹災民救護事業實績은 〈表 1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Ⅳ. 改善方向

貧困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公的扶助制度의 改善方向으로 旣存制度의 問題點을 보완하는 短期的 改善策은 물론 向後의 福祉社會建設을 위한 長期的인 改善策이 아울러 提示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1. 生活保護事業

現行의 生活保護對象者 策定方式은 保健社會部에서 마련한 일정한 지침에 따라 每年 4月 1日을 기준으로 調査한 資料에 근거하고 있다. 이 調査는 調査日을 기준으로 對象者의 實態를 파악하기 때문에 調査日로부터 그 다음 調査日 사이에 新規로 生活保護對象者 범주에 속하게 되거나 또는 保護事由가 消滅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措置가 缺如되어 있다. 때문에 要保護者에 대한 實態를 보다 動態的으로 파악하기 위해 調査빈도를 늘리거나 要保護者가 自進申請하도록 계몽을 강화하여 年中 어느 때고 保護가 필요한 경우 被保者로 선정될 수 있는 行政業務가 필요하다고 본다(必要即應의 原理). 또한 保護對象者의 크기를 좌우하는 生活保護對象者 選定基準인 所得上限線이 客觀性을 잃고 있어 保護對象者의

〈表 16〉 災害發生現況

(1979. 12. 31. 現在)

	罹災民(千名)	人命被害(名)				住宅被害(棟)			總救護金額(千원)
		計	死亡	失踪	負傷	計	全破	半破	
1969	478	1,548	731	207	610	23,359	10,000	13,159	122,263
1970	255	1,255	549	57	649	11,474	5,254	6,220	171,610
1975	30	202	150	12	40	807	200	607	27,351
1976	15 (16)	601 (469)	195 (121)	347 (263)	59 (85)	736 (561)	413 (315)	323 (246)	857,295 (1,964,263)
1977	79 (47)	2,194 (1,937)	369 (259)	90 (43)	1,735 (1,635)	3,970 (2,459)	1,851 (1,324)	2,119 (1,135)	398,829 (1,279,186)
1978	29 (22)	302 (1,487)	155 (144)	46 (185)	101 (1,158)	2,986 (2,135)	918 (811)	2,168 (1,324)	491,567 (979,072)
1979	38 (59)	554 (460)	327 (222)	107 (117)	120 (121)	4,698 (4,435)	2,377 (2,649)	2,321 (1,786)	1,604,844 (4,972,876)

註 : 괄호 안의 數値는 實調査値임.
資料 : 保健社會部 保護課.

變動狀況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最低生計費를 計測하여 이를 生活保護對象者 選定에 適用하는 客觀的인 選定基準이 필요하다고 본다(最低生計費의 計測).

保護水準面에서 現行의 生活保護水準이 生保護法에 規定된「健康하고 文化的이 最低生活」을 維持할 수 있는 水準에 未達하므로 科學的인 방법에 의한 最低生計費에 근거를 두고 保護水準을 決定하는 것이 要望된다. 또한 保護額은 對象家口의 實質所得과 관계없이 一律的으로 決定되기 때문에 對象家口間 所得水準의 衡平이 缺如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對策이 필요하다(補足性의 原理).

또한 保護內容 및 方法에 있어서도 現在 보리쌀 등 現物을 직접 配給하는 데에는 運搬費, 倉庫費等 諸費用이 많이 들 뿐 아니라 運營上의 煩雜이 招來되므로 準現金과 같은 證書를 支給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醫療保護事業

1980年에 비해 1981年에는 醫療保護對象者의 범위가 확대되어 總 370萬에 이를 것으로 豫想되는데 이들에 대한 醫療酬價의 負擔比率은 이들에게 아직도 높은 것으로 思料되며 특히 就業家口員의 長期入院의 경우 全家族이 生計에 위협을 받게 되므로 外國의 例와 같이 이들에 대한 短期生活保護策이 아울러 要望된다.

3. 就勞事業

現行의 生活保護事業에서는 居宅保護者에게만 食糧과 副食費 또는 煙炭費條로 保護費用이 支給되고 있고, 기타의 生活保護者인 零細民階層에게는 一定額의 煙炭費와 子女의 學校授業料만을 免除해 주는 실정이다. 따라서 就勞事業의 對象이 되는 이들 居宅保護者나 零細民은 多數가 勤勞能力을 가진 貧困層이므로 短期的으로 이들의 生計를 保護해 주는 最適의 方法이 就勞事業이다. 특히 不景氣에 기인한 就勞機會의 相對的인 隘路를 감안할 때 就勞事業이 零細民에게 주는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여겨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政府의 就勞事業 豫算額은 차츰 減少하는 추세인데 이들 零細民에 대한 職業訓練이나 就勞斡旋이 短期的으로 어려움에 비추어 이 事業에 대한 豫算額의 上向調整이 필요한 것으로 思料된다. 現在와 같은 家口當 年間 就勞日數가 15日 정도로는 零細民의 所得保障策에 미흡하다고 본다. 특히 금년과 같이 農產物의 作況이 그 어느 때보다 나쁘다는 事實로 미루어 앞으로 실시될 農村地域의 絕糧農家에 대한 糧穀貸與와 아울러 기타 生計費의 不足을 充足시킨다는 의미에서도 就勞事業의 확대 실시는 필요하다.

4. 職業訓練 및 職業安定網

居宅保護者나 零細民중에는 상당수가 勤勞能力者들인데 이들을 위한 零細民 就勞事業은 短期的인 生計保護策이므로 生計保護者가 항구적인 職場을 가질 수 있도록 職業訓練을 실시하고 職業斡旋을 해주는 것은 직접적인 公的扶助事業에 못지 않게 중요한 貧困解消策이라고 본다.

現在 우리 나라의 職業訓練은 주로 勞動廳

이 主管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職業訓練을 政府뿐이 아니고 民間企業도 自體의 努力으로 訓練施設을 갖추어 폭넓은 職業訓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生活保護者에 대한 職業訓練은 그들이 生活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는 法的 근거의 확립이 필요하다.

現在 職業斡旋業務의 「체널」은 勞動廳과 私設職業紹介所, 學校나 學院 또는 매스컴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데 특히 이들 중 民間「체널」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零細民은 대부분 未熟練의 勞務者로 就業戰線에서 競爭力이 약하므로 相對的으로 就勞機會가 적게 주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求人者가 求職者를 찾을 경우 현재처럼 公開採用이 적은 상황하에서 零細民은 就業情報面에서도 열세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效率的인 職業斡旋業務를 위해 全國的인 職業安定網을 확립하여 就業斡旋業務를 관장하게 하고 특히 低所得層에 대한 就業斡旋을 相對的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5. 行政體系

現行의 生活保護法 및 기타 公的扶助 關聯法規에 의한 保護行政體系는 保健社會部를 頂點으로 各道와 保護行政의 企劃·調整등을 관장하고 말단조직인 下部行政機關에서 保護對象者選定 및 保護實施業務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行의 公的扶助 行政體系는 上部下達式의 垂直的인 조직으로서 下部行政機構인 面事務所나 洞事務所에는 實務職員으로서 한두명의 社會擔當係員이 保護對象者의 實態把握과 糧穀給付業務, 診療證交付, 就勞證交付 및 就勞管理 등의 業務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公的扶助事業을 長期的인 次元에서 改善·發展시키기 위해서는 現在의 公的扶助 行政體系보다는 全般的인 社會福祉關係를 劃一的으로 취급하는 專門行政機構의 新設이 要望된다고 하겠다.

先進諸國의 경우 公的扶助事業은 所得調査(means test)를 전제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 이러한 業務는 各地區의 福祉事務所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 事務所는 소위 生活保護法 등 福祉六法에 관한 주된 行政業務를 담당하는 第一線機關이다. 이와 같은 福祉事務所는 1977年 現在 日本 全國에 1,148個所나 되며 現業員만도 全國에 10,145名에 이르고 있다. 現業員의 資格은 大學에서 社會福祉關係科目을 履修한 者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公的扶助事業도 앞서 언급된 改善策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우리 실정에 맞는 福祉事務所의 設置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現在와 같은 公的扶助 行政體系와 人的資源으로는 公的扶助의 전제조건인 所得調査(means test)를 效率的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福祉事務所는 諸般 社會福祉 關係法(老人福祉法, 兒童福祉法 등)에 의한 各種業務를 종합적으로 擔當하는 社會福祉行政의 第一線機關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保護豫算

1979年의 生活保護事業中 居宅保護와 零細民 就勞事業에 支給된 實行豫算額은 519億원으로 GNP의 0.2% 中央政府支出額의 0.9%였다. 한편 生活保護對象者(居宅保護 및 零細

民)의 平均所得水準과 最低生計費의 隔差를 근거로 하여 算出한 1979年의 總必要豫算額은 1,087億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必要豫算額은 保護對象者(居宅保護者 및 零細民)를 現在의 選定基準에 의해 추계된 1,769千名으로 하였을 경우의 所要金額이다. 따라서 生活保護者에 대한 이와 같은 政府의 實行豫算額과 推定된 必要豫算額間의 큰 差異로 보아 政府는 生活保護事業에 대한 豫算을 과감히 增額調整하여 貧困解消를 위한 政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줌이 바람직하다.

▷ 參 考 文 獻 ◁

具滋憲, 『韓國社會福祉史』, 韓國社會福祉研究所, 1970.

保健社會部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社會保障의 現況』, 1976. 12.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研究』, 1979, 여름호.

_____, 「우리나라 貧困의 決定要因」, 『韓國開發研究』, 1979, 겨울호.

援護處, 『韓國의 援護政策』, 1980.

鄭慶均, 「絶對貧困과 生活保護」,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朱鶴中編, 韓國開發研究院, 1979)

日本社會福祉調査會, 『保護のてびき』, 1979. 4.

Aaron, Henry J., *Why is Welfare so Hard to Reform?*,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3.

Haveman, Robert H., *A Decade of Federal Antipoverty Programs*, Academic Press, 1977.

Henderson, Ronald F., *Poverty in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1975.

家族規模의 決定要因과 旣婚女性의 經濟活動

具 成 烈
李 淑 民

▷ 目 次 ◁

Ⅰ. 序 論
Ⅱ. 資料와 分析方法
Ⅲ. 家族規模의 決定要因과 家族計劃의 實踐
Ⅳ. 超過出產과 經濟活動
Ⅴ. 結 論

Ⅰ. 序 論

최근의 社會·經濟發展으로 한국은 人口變遷(demographic transition)의 마지막 局面을 빠르게 지나고 있다. 出產力(合計)[1]의 수준은 1966年의 4.8에서 1975年의 3.5로 현저히 低下되었으며 그 결과 人口의 自然增加率은 2.7%에서 1.9%로 減少하였다(Hong, 1978).

社會·經濟發展의 效果는 人力部門에도 波及되어 旣成人口의 經濟活動과 成長人口의 就學率도 顯著한 增加現象을 보였다. 특히 女子의 經濟活動率은 31.5%에서 45.7%로 크게 增加하였고 中·高校水準 就學率은 39.3%에서 60.9%로 크게 伸張하였다.

出產力이 鈍化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社會·經濟發展에 隨伴된 家族規模觀의 變遷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家族計劃 實踐力의 伸張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女性人口 특히 旣婚女性의 經濟活動率과 이들 子女의 就學率이 提高된 것은 出產力 추세와 관련지어 볼 때 出產力 低下에 따라 家事活動의 必要性이 低下된 점과 子女養育에 있어서 量的인 面에서 質的인 面으로 轉換한 때문이라고 假定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때 人口變遷의 基底를 이루고 있는 家族規模觀과 그 實踐이 어떤 要因의 支配를 받으며 旣婚女性의 經濟活動과 이들의 子女에 대한 敎育熱이 家族規模의 결정에 어떤

筆者 : 具成烈—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李淑民—韓國開發硏究院 主任硏究員

1) 어느 한 時點의 年齡別出產率이 계속된다는 假定下에 한 女性의 全可姙期間中 낳게 되는 總子女數를 말함. 따라서 年齡別 出產率(*ASFR*)의 合計로 표시됨 ($TFR=\Sigma ASFR$).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分析은 앞으로의 人口 및 人力政策에 상당한 示唆點을 提示할 것으로 看做된다. 왜냐하면 人口政策의 觀點에서 傳統的 男兒選好觀, 可姙期 人口의 增大, 結婚年齡의 停滯, 避姙受容率의 停滯 등은 出產力調節政策의 遂行上 加重的 어려움을 招來하고 있으며, 한편 人力政策의 側面에서는 成長爲主의 經濟政策이 分配 내지 雇傭爲主의 政策으로 轉換됨에 따라 가장 큰 潛在勞動力을 形成하고 있는 旣婚女性의 經濟活動에 대한 理解는 필요불가결하다. 또한 그간 지속적 壓迫要因이 되어 온 高等敎育에서의 超過需要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한 側面에서 限定된 分析이나마 앞으로의 問題點 把握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最近 出產力의 급격한 變化에 발맞추어 이에 대한 硏究도 多樣하게 진전되어 왔다(KIFP, 1977, pp.10~28, 42~45, 166~169). 그러나 子女數의 希望과 實際出產行爲, 그리고 實際子女數가 旣婚女性의 經濟活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一貫된 分析을 한 예는 全無한 實情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비추어 家族規模의 決定要因과 實際家族規模가 旣婚女性의 經濟活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分析코자 한다.

第Ⅱ節에서는 資料와 分析方法을, 第Ⅲ節에서는 家族規模觀과 實際의 家族規模가 어떠한 要因의 支配를 받는가를 分析하였다. 第Ⅳ節에서는 家族規模觀의 成就與否에 따라 旣婚女性의 就業活動과 이들의 子女에 대한 敎育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檢討하였으며 第Ⅴ節에서는 分析結果를 要約하고 그 政策的 示唆點을 論하였다.

Ⅱ. 資料와 分析方法

使用된 資料는 1974年 世界出產力調査의 一環으로 韓國家族計劃硏究院과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實施한 韓國出產力調査中 15~49歲의 旣婚婦人 5,420名을 對象으로 하는 個人調査이다. 調査標本의 年齡別 分布는 「1970年 센서스」와 거의 一致하며 敎育·住居地域 등의 社會的 特性面에서 볼 때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全體人口의 特性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PB and KIFP, 1977, pp.56~65).

對象標本은 分析內容에 따라 限定되며 일단 分析內容에 따라 限定된 對象標本 중에서도 關心變數에 있어서 불확실한 應答을 보이는 標本은 分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만큼 代表性이 喪失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分析結果가 지나치게 歪曲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分析方法은 圖表를 통하여 關心變數間의 대체적인 傾向을 把握하는 叙述的 方法과 回歸分析方法을 竝用하였다. 回歸分析에 있어서는 分析內容의 相互同時的 性格 때문에 二段階最小自乘法을 適用해 볼 필요가 있었으나 單純最小自乘法(OLS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特定分析에 한하여 從屬變數가 갖는 特性 때문에 Logit 分析方法[2]을 試圖하여 보았다. 使用된 變數의 記號는 다음과 같다.

REG ; 居住地域

(0) 都市 (1) 農村

2) Theil, 1971(pp.632~636) 참조. Computer program은 Rice University에서 개발된 SHAZAM Package를 利用하였다.

AGE；婦人의 年齡

(1) 24⁻ (2) 25～29 (3) 30～34

(4) 35～39 (5) 40～44 (6) 45～49

EDN；婦人의 敎育程度

(1) 國校中退以下(下)

(2) 國校卒(中) (3) 中卒以上(上)

DOM；結婚期間

(1) 4年 以下 (2) 5～9 (3) 10～14

(4) 15～19 (5) 20～24 (6) 25～29

(7) 30⁺

CHM；子女死亡率(＝1－生存子女數／出產子女數)

USE；避姙方法 使用經驗

(0) 전혀 없다. (.2) 土俗的 方法

(.5) 非效率的 方法 (1) 效率的 方法

DFC；現在希望子女數(下限)

DFM；結婚當時 希望子女數(下限)

EAC；子女에 期待하는 最高學歷

(1) 아들・딸 모두 高校以下

(2) 아들은 大學, 딸은 高校

(3) 그 以上

DWM；總就業期間

(0) 없음 (1) 4年以下 (2) 5～9

(3) 10～14 (4) 15～19 (5) 20～24

(6) 25～29 (7) 30～34 (8) 35～39

(9) 40⁺

LFP；現在 就業狀態

(0) 없음 (1) 就業中

FFY；家口總收入

(1) 下(3萬원미만) (2) 中(3～6萬원)

(3) 上(6萬원 이상)

WWY；婦人의 收入

(0) 없음 (1) 下(萬원미만) (2) 中(1～2萬원) (3) 上(2萬원 이상)

ORD；男便의 兄弟順位

(0) 其他 (1) 長男 또는 獨子

CEB；出產子女數

PPL；媤父母와의 同居與否

(0) 산 적 없다.

(1) 現在는 아니나 過去에 있다.

(2) 現在同居中

EXF；超過子女數(＝*CEB*－*DFC*)

FCD；可姙與否

(0) 婚姻狀態 不完全과 生理的 (先天的, 나이 등) 理由로 姙娠이 不可한 경우.

(1) 其他 姙娠이 가능한 경우.

Ⅱ. 家族規模의 決定要因과 家族計劃의 實踐

1. 家族規模觀의 一貫性과 實際 家族規模와의 關係

부모가 원하는 子女의 수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 社會・經濟的 與件과 취향이 변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調査當時에 그에 대한 應答은 實際子女의 數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는 우선 希望子女數가 時點의 다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며 希望子女數에 대한 應答이 實際子女數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가를 分析코자 한다.

資料가 許容하는 限度內에서 過去時點은 子女를 미처 갖지 못한 結婚當時이며, 最近時點은 標本 대부분의 경우 결혼 후 상당기간이 흐른 후인 應答時點이 된다. 調査標本에서 兩

時點에서의 希望子女數가 정확히 一致하는 率은 34.7%이며 그 차이가 ±1 範圍內에서 一致하는 率은 45.0%에 불과함을 보였다(表 1). 그러나 이는 全體標本의 51.1%가 結婚當時의 希望子女數에 대한 應答을 불확실하게 하였기 때문으로서 만일 이들을 제외하고 두 時點에 걸쳐 확실한 應答을 보이는 標本에 限定한다면 一致率은 各各 71.1%와 92.6%를 나타내고 있어 一貫性 여부가 거의 問題되지 않음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回歸分析에 보다 잘 나타나고 있다.

$$DFC = .916 + \underset{(40.56)^{3)}}{.624}\,DFM + \underset{(5.70)}{.174}\,REG + \underset{(3.60)}{.039}\,AGE$$

$$R^2 = .46 \qquad n = 2,633$$

各變數는 모두 1% 이상 수준에서 有意的임을 보이고 있으며 住居地(*REG*)와 年齡(*AGE*)으로 統制된 후 結婚當時의 希望子女數(*DFM*)의 回歸係數는 1에서 다소 거리는 있으나 극히 有意的으로, 希望子女數는 結婚當時에 비해 줄어드는 傾向을 보인다. 위 回歸分析의 意圖는 이들 兩者間의 一貫性의 檢定에 있으므로 그 크기의 정도에 대한 論議는 省略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一貫性에 대한 解析은 「出力產調査」가 각기 다른 時點에서 分離되어 수행된 두 調査가 아니고 同一時點에서 기억을 되살리는 調査였으므로, 結婚當時의 希望子女數에 대한 應答은 現在의 思考와 價値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의 문제가 남아 있다. 한편 實際的인 觀點에서 보면 이러한 一貫性 여부보다는 앞으로의 分析基礎가 될 應答時의 希望子女數가 實際子女數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實際子女數가 希望子女數의 應答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有意的이라는 說

〈表 1〉 **希望子女數의 分布**(全標本)

(단위 : %)

應答時點 \ 結婚當時	0	1	2	3	4	5	6	7	8	70~99	合 計
0		.1								.3	.4
1		.6	.4	.1						.6	1.7
2	.1	.4	10.9	3.0	.5	.4				8.9	24.2
3	.1	.2	2.8	15.3	1.4	.9	.1			20.1	40.9
4			.4	1.5	5.0	.5				11.4	18.8
5			.3	.5	.2	2.6				7.2	10.8
6						.1	.2			1.0	1.3
7										.3	.4
8									.1	.1	.2
9										.1	.1
10										.1	.2
70~79										1.0	1.0
合 計	.2	1.3	14.8	20.4	7.2	4.5	.3	.1	.1	51.1	100.0(5,397)[1]

註 : 1) 괄호 안의 숫자는 全體標本數임.

3) 괄호 안의 숫자는 *t* 統計値를 의미함.

(Hauser, 1967; Ryder, 1973)과 非有意的이라는 說(Ware, 1974)로 구구하게 나눠져 있다. 따라서 希望子女數의 決定要因, 나아가서는 希望子女數와 實際子女數의 차이로 나타나는 超過子女數(excess fertility)의 決定要因을 分析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希望과 實際間의 統計的 獨立性을 檢定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希望子女數와 實際子女數間의 獨立性에 관하여 嚴密한 意味에서의 統計的 檢定은 불가능하다[4]. 따라서 本文에서는 希望子女數와 實際子女數의 一致率, 혹은 希望成就率이 希望의 時點과 人口特性別로 나누어 볼 때 과연

〈表 2〉 希望子女數와 實際子女數의 一致率

		一致率[1]	準一致率[2]	標本數
希望子女數의 希望時點	結婚當時	26.2	67.2	2,463
	應答時點	24.6	34.0	5,088
地域別 (應答時點)	都市	29.5	66.3	2,565
	農村	20.1	51.2	2,523
年齡別 (應答時點)	25⁻	12.9	47.8	456
	25～29	31.8	52.0	1,098
	30～34	33.4	50.9	1,047
	35～39	28.5	53.3	1,010
	40～44	16.8	44.8	838
	45～49	13.0	40.5	648
教育水準別 (應答時點)	無學	17.9	41.9	1,090
	國校中退	21.8	50.5	571
	國校卒	27.0	62.8	1,990
	中校學	27.1	69.4	728
	高等校	28.9	70.2	547
	大學以上	38.0	72.7	153

註 : 1) 希望子女數가 實際子女數와 같은 標本의 對象全體標本에 대한 比率.
2) 希望子女數와 實際子女數의 差異가 ±1 이내인 標本이 對象全體標本에 대하여 갖는 比率.

4) 왜냐하면, 現實的으로 相當數의 부인이 希望하던 대로의 家族規模를 維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兩者의 獨立性을 단순히 相關關係가 높다고 하여 이를 排擊할 수도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相關關係의 전부를 「希望을 成就한 比率」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期待하는 패턴을 보이는가를 살펴보았으며(表 2), 그 결과 다음과 같은 理由로써, 「應答時點에서의 希望과 實際子女數에 대한 應答은 相互 獨立的인 것이다.」라는 結論을 내렸다.

첫째, 만일 實際子女數가 希望子女數에 대한 應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結婚當時의 希望에 대해서보다는 應答時點의 希望子女數에 더욱 영향을 미쳐 應答時點의 希望에 대한 成就率이 높아야 하나 이는 標本에서 正反對로 나타남을 보였다. 둘째, 住居地域別로 볼 때 都市가 社會·經濟·保健 등의 諸般與件에 있어서 農村보다 나으므로 成就率도 높을 것으로 期待되는바 標本에서는 都市 29.5, 農村 20.1의 成就率로서 이에 符合하였다. 세째, 年齡別로 볼 때 年少層은 希望子女數도 적은 대신 年齡上 出產이 完了되지도 않았으므로 나이에 따라 成就率이 上昇할 것이며 結婚期間이 충분히 지난 후의 老年層은 希望子女數도 많으나 家族計劃에 대한 知識과 實踐의 부족으로 인하여 나이에 따라 成就率이 오히려 下落될 것으로 豫想된다. 標本에서는 이와 符合하여 30～34歲를 頂點으로 하여 30歲 미만까지는 上昇, 35歲 이상부터는 下落하는 樣相을 보였다. 네째, 敎育水準別로 볼 때 역시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希望子女數는 낮으나 家族計劃에 대한 知識이 보다 豊富함으로써 成就率도 높아질 것으로 期待되는 바 分析結果에서 確認되었다.

지금까지의 分析結果는 應答時點에서의 家族規模觀이 實際家族規模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結婚當時와 現在의 家族規模觀이 확실한 標本을 두고 볼 때 家族規模觀의 一貫性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分析은 希望子女數의 一貫性

與否에 拘碍됨이 없이 應答時點에서의 家族觀이 確實한 標本을 對象으로 하기로 한다.

2. 家族規模의 決定要因

希望子女數는 年齡(*AGE*), 敎育水準(*EDN*)과 같은 個人的 背景에 의하여서뿐 아니라 個人이 속하는 家族, 나아가서는 住居地의 環境에 의하여서도 支配를 받는다. 家族環境은 媤父母와의 同居與否(*PPL*), 男便의 兄弟間 序列(*ORD*), 經濟的 與件(*FFY*)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居住地 環境은 居住地가 都市냐 農村이냐(*REG*)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겠다. 希望子女數는 이러한 背景變數(background variable) 이외에도 子女의 敎育水準 즉, 質的水準은 어느 정도 원하는가, 家事外의 經濟活動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行態變數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行態變數는 子女에 대한 希望敎育水準(*EAC*)과 經濟活動에서 얻을 수 있는 機會所得(*FFY*)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겠다[5]. 따라서 決定要因은 크게 ① 行態的 要因 ② 個人變數 ③ 家族變數 및 ④ 地域變數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各各의 決定要因이 希望子女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期待되는 方向(괄호 내의 符號)은 다음과 같다.

$$DFC=f(\underbrace{\overset{(-)}{EAC},\ \overset{(-)}{WWY}}_{①},\ \underbrace{\overset{(+)}{AGE},\ \overset{(-)}{EDN}}_{②},\ \underbrace{\overset{(+)}{PPL},\ \overset{(+)}{ORD},\ \overset{(+)}{FFY}}_{③},\ \underbrace{\overset{(+)}{REG}}_{④})$$

父母가 원하는 子女의 質的水準(敎育)은 子女敎育에 따른 直接費用이 되며 婦人이 子女養育에 따른 家事活動 대신 經濟活動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所得은 子女養育에 대한 機會費用(Mincer, 1963)이 됨으로써 負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看做된다. 應答者의 年齡은 年少層일수록 小規模家族觀을 가지는 것으로 期待되며 敎育水準은 負의 關係를 가질 것으로 期待된다.

마지막으로 家口所得[6]을 포함한 家族과 居住地의 環境에 대한 變數, 즉, 媤父母와의 同居與否, 男便이 長男 또는 외아들인가의 與否, 住居地가 都市인가 農村인가는 모두 大規模家族觀을 갖게 하는 要因으로서 看做된다. 즉, 媤父母와 同居하므로 希望子女數 決定에 있어서 媤父母의 傳統的 大家族觀의 영향을 은연중 받게 될 것이며, 男便이 長男 혹은 외아들인가의 與否는 家門의 代를 이을 男兒에 대한 選好思想이 支配的인 韓國的 與件下에서는 아직도 家族規模觀을 形成하는 데 있어서 主要變數로 看做되며 이러한 傳統的인 思考方

5) 원래 이러한 行態變數는 嚴密한 意味에서 希望子女數와 相互聯關되어 결정되어지므로 希望子女數의 決定要因에 대한 分析은 聯立方程式 體系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單一方程式을 적용하기로 한다.

6) 所得이 出產力에 대하여 미치는 效果에 대하여서는 1960年(Becker, 1960) 이래 줄곧 論難이 되어 왔다. 즉, Becker를 위시한 「시카고」學派에서는 子女의 養育費用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所得의 增大는 子女의 서비스가 劣等財가 아닌 한 出產力의 增大를 招來한다는 것이며, Duesenberry(1960), Leibenstein(1974) 등의 「하바드」學派에서는 子女의 養育費用은 所得이 增大됨에 따라 함께 增大되는 것이며 費用과 所得을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므로 出產力은 所得이 增加됨에 따라 減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理論上의 차이가 아니라 微視 對 巨視, 純粹經濟學派立場 對 社會·經濟學的 立場 등 人口變遷(demographic transition)을 說明하는 데 있어서의 觀點의 차이——즉 人口變遷을 순수한 經濟的 立場에서 說明해 보려는 立場과 이를 社會·經濟學的 立場에서 보아야 한다는——에서 基因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理論이 옳고 다른 理論은 그르다고 斷定지을 수가 없다. 위의 方程式에서는 測定에 있어 問題點이 있기는 하나 子女養育에 따른 直接·間接의 費用을 考慮함으로써 가급적 所得의 純粹效果만 測定하려고 하였으므로 希望子女數에 대한 所得의 效果는 正의 方向으로 期待된다.

式은 都市에서 보다 農村에서 더 支配的인 것이다.

希望子女數에 대한 方程式의 推定結果는 〈表 3〉의 上端에 提示된 바와 같다. 說明係數는 0.168로서 비교적 낮으나 回歸係數는 모두가 期待된 대로의 符號를 보여주고 있으며, 家口所得(*FFY*)과 男便의 兄弟間序列(*ORD*)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1%에서 有意的임을 보인다[7]. 한편, 偏彈力値[8]는 表에 提示된 바와 같이 年齡에 대하여 正의 方向으로 가장 큰 0.164를, 그리고 婦人의 敎育水準에 대하여 負의 方向으로 가장 큰 −0.131이며 그 다음으로 子女에 대한 希望敎育水準(*EAC*), 地域變數(*REG*), 家族關係變數의 順으로서 家族規模觀은 대체로 周邊關係에 의하여서보다는 個人의 特性과 行態에 따라 敏感하게 달라짐을 보인다.

3. 實際 및 超過出産의 決定要因

家族規模觀이 실제의 家族形成에 있어서 하나의 基準이 된다면 實際家族規模는 상당한 정도로 家族規模觀을 반영하여야 하며, 따라서, 비슷한 決定要因에 의하여 支配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실제의 家族規模를 결정하는 要因에는 家族規模觀에 더하여 첫째, 對象婦人이 바라던 家族規模를 實踐할 만한 身體條件을 具備하였으며(可姙與否), 이를 實踐할 수 있을 만큼 結婚生活을 營爲하였는가? 둘째, 만일 충분히 結婚期間이 경과하였다면 바라던 家族規模를 維持할 수 있을 만큼 家族計劃에 대한 知識이 있었는가?를 적절히 반영할 어떤 變數들을 考慮해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附加的인 事項은 여기서는

〈表 3〉 家族規模의 決定要因

被說明變數 \ 說明變數 구분		*EAC*	*WWY*	*AGE*	*EDN*	*PPL*	*ORD*	*FFY*	*REG*	R^2	*n*
DFC	*b*	−.096**	−.063**	.152**	−.213**	.072**	.033	.031	.328**	.168	4,252
	t	4.3	4.1	13.6	8.3	3.2	1.0	1.3	9.5		
	ε	−.070	−.011	.164	−.131	.019	.005	.018	.051		
CEB	*b*	−.251**	−.181**	.821**	−4.34**	.183**	−.030	.104**	.437	.542	4,252
	t	8.0	8.3	52.4	12.1	5.8	.7	3.1	8.9		
	ε	−.154	−.026	.754	−.227	.042	−.004	.051	.057		
EXF	*b*[1]	−.155	−.118	.678	−.221	.111	−.063	.073	.109		
	ε	−.623	−.110	4.031	−.756	.165	−.056	.235	.093		

註 : 1) *CEB*의 回歸係數에서 *DFC*의 回歸係數를 뺌으로써 구하였음.
2) * 5% 有意水準.
3) ** 1% 有意水準.
4) *b* 回歸係數
5) *t* 't' 統計値
6) *ε* 偏彈力値

7) 男便의 長男與否(*ORD*)는 媤父母님과의 同居與否와 비교적 높은 相關係數(單純相關係數=0.326)를 가지며 어느 한 變數를 제거할 때 다른 한 變數의 有意性이 크게 增加하는 등 多重共線關係(multicollinearity)에 있었다.

8) 偏彈力値의 크기는 決定要因과 希望子女數가 平均値를 취할 때 決定要因이 1% 변하면 希望子女數는 몇 % 변하는가? 즉, 가장 平均的인 女性의 家族規模觀이 決定要因의 變化에 어떻게 感應하는가를 測定한다.

考慮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째, 이미 方程式에 포함되어 있는 年齡 및 社會·經濟的 諸變數가 結婚期間 및 家族計劃 實踐에 있어서의 個人差를 상당히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는 確率分布를 보일 것으로 看做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기서 意圖하는 바는 實際子女數의 決定要因 그 自體뿐만 아니라 希望子女數와 實際子女數와의 차이로써 나타나는 超過出產子女數의 決定要因을 間接的으로 類推해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出產兒數에 대한 方程式의 推定結果는 〈表 3〉의 중간에 提示된 바와 같이 說明係數의 크기가 현저히 높아짐을 보인다. 回歸係數는 男便의 兄弟間 順位(*ORD*)를 제외하고는 모두 期待된 方向으로 1% 수준에서 有意的이며 係數의 크기가 希望子女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큰데 이는 주로 從屬變數의 變化幅이 다르기 때문이며 특히 年齡, 敎育水準 등 家族計劃의 實踐과 密接한 關聯을 갖는 變數가 推定된 回歸係數에 있어서 相對的으로 더 큰 增大를 보인다는 점은 注目할 만하다. 要因別 偏彈力値 역시 回歸係數가 커진 만큼 比例的으로 커졌으며 크기의 순서 역시 希望子女數와 마찬가지로 個人의 特性과 行態變數, 地域變數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의 下端은 위 두 方程式의 推定結果에 따라 要因別로 超過出產兒數에 대한 影響力을 類推해 본 것이다. 우선 要因別 係數를 볼 때 超過出產은 年齡이 높을수록, 媤父母와 同居하는 家口일수록, 그리고 農村에 居住할수록 增加하며 婦人의 敎育水準(*EDN*)이 높을수록, 子女에 대한 敎育熱(*EAC*)과 子女養育에 따른 機會費用(*WWY*)이 높을수록 減少함을 보인다. 한편, 偏彈力値를 보면 年齡과 敎育水準, 그 다음 子女敎育에 대한 期待水準(*EAC*), 媤父母의 同居(*PPL*), 住居地域(*REG*)의 順을 보이고 있다. 특히 年齡의 차이에 따른 超過出產의 變動幅이 壓倒的인데 이는 希望子女數의 貫徹에 있어서 結婚期間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는 事實에 더하여 家族計劃 知識의 世帶間 차이를 아울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看做된다.

이상의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家族規模는 주로 個人의 特性(年齡, 敎育水準)과 子女敎育熱에 따라 左右된다고 할 수 있다.

4. 超過出產과 家族計劃의 實踐

지금까지 家族規模觀에 대한 資料의 信憑性을 檢討하고 家族規模觀과 實際出產行態의 決定要因을 分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超過出產의 決定要因을 類推 分析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分析의 核心이 될 超過出產이 과연 실제의 家族計劃 實踐 努力에 비추어 볼 때 意味가 있는 것인가를 最終的으로 檢討하였다.

超過出產의 類型別 人口特徵은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結婚期間, 敎育水準, 男兒選好度의 모든 面에서 過少出產그룹이 適正出產이나 過多出產그룹에 비하여 젊고 보다 近代的인 世帶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家族計劃은 대체로 볼 때 知識에 있어서는 별차이가 없으나 使用經驗과 效果的方法 使用率, 人工流產經驗率에 있어서는 過少에서 適多로 옮겨짐에 따라 현저히 달라지며 이는 居住地에 관계없이 共通的임을 보인다. 따라서 超過出產, 나아가서는 家族規模觀이 實質的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結論은 年齡, 敎育

水準 등을 적절히 통제한 후의 分析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回歸分析을 試圖하였다.

回歸分析의 對象標本은 現在 婚姻狀態에 있으며 姙娠이 가능한 3,751 標本에 限定하였다. 從屬變數는 方法의 效率性을 考慮에 넣어서 過去 使用經驗을 變數로 취하되 變數의 값을, 科學的方法은 1, 非科學的方法은 0.5, 土俗的 方法은 0.2로 하였다[9]. 方程式의 設定은 〈表 3〉의 模型을 基礎로 하되 從屬變數의 다름에 비추어 出產子女의 死亡率과 超過出產의 數를 고려해 넣었는데 前者는 家族計劃에 대한 積極性을 잃게 함으로써 負의 方向으로, 後者는 正의 方向으로 家族計劃을 誘因할 것

〈表 4〉 超過出產 類型別 標本의 特性과 家族計劃의 實踐

	結婚期間	敎育水準	男兒[1] 選好度	效果的 方法 知悉率 (%)	現在使用 않으나 과거經驗 있음(%)	現在使用 (%)	不必要 (%)	效果的 方法 使用率 (%)	人工流產(%) 經驗率	人工流產(%) 2回以上／1回	標本數
全 國	3.22	1.95	6.36	97	25.0	34.3	5.9	52	32	89	5,052
過少	1.86	2.24	6.29	97	20.6	20.8	1.8	35	24	57	1,559
適正	2.82	2.09	6.27	98	22.8	44.0	4.1	57	35	90	1,241
過多	4.39	1.68	6.45	97	29.2	38.2	9.7	60	36	108	2,252
市 部											2,549
過少	1.80	2.46	6.16	98	22.2	22.0	2.1	38	30	58	864
適正	2.67	2.32	6.15	99	23.1	48.3	5.4	59	42	105	756
過多	4.15	1.99	6.26	99	27.7	42.6	10.2	62	48	159	929
郡 部											2,503
過少	1.94	1.97	6.44	95	18.6	18.0	1.4	32	16	56	695
適正	3.06	1.72	6.47	97	22.4	37.3	2.1	55	23	58	485
過多	4.56	1.46	6.58	96	30.3	35.2	9.4	59	27	67	1,323

註 : 1) Coomb의 Sex Preference Index.

〈表 5〉 家族計劃實踐에 대한 方程式의 推定結果(可姙女性)

	EXF	*EAC*	*WWY*	*CHM*	*DOM*	*EDN*	*PPL*	*FFY*	*REG*
OLS 推定係數	.051** [1]	.001	.025**	−.294**	.021**	.051**	−.011	.054**	−.0003
(*t*)	(9.34)	(.09)	(3.16)	(7.33)	(3.40)	(4.00)	(1.08)	(4.52)	(.00)
	R^2=.080, n=3,751								
Logit 推定係數[2]	.697**	—	.098**	−.606**	.150**	.300**	—	.245**	—
(*t*)	(12.25)		(2.46)	(6.16)	(2.39)	(5.03)		(4.22)	
	Likelyhood ratio=300.5, n=3,466								

註 : 1) ** 1% 有意水準
2) Logit 分析에서 再定義된 變數는 다음과 같다.
EXF : (1) 過少出產(−) (2) 適正出產(0) (3) 過多出產(+)
CHM : (0) *CHM*=0 (1) *CHM*>0
DOM : (1) 結婚期間 10年 이내 (2) 10年~20年 (3) 30年(+)
USE (從屬變數) : (0) 使用經驗 없음 (1) 있음(科學的, 非科學的, 土俗的 方法)

9) 科學的 方法은 臺灣의 경우에 비추어 IUD 0.9, Pill 0.7, Condom 0.6(OECD Development Center 1972, Measuring the Effect of FPP on Fertility, p.464) 등으로 細分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資料 事情上 考慮해 넣을 수 없었다.

으로 看做된다[10]. 한편, 男便의 兄弟間序列은 제거하였으며 「年齡」變數는 보다 適合한 「結婚期間」으로 代替하였다.

回歸分析은 單純最小自乘法[11]과 從屬變數가 갖는 特殊性을 考慮하여 Logit 分析方法의 두 가지 方法에 의하였으며 結果는 〈表 5〉와 같다. 單純最小自乘法을 適用한 경우 說明力의 크기는 앞서의 여러 結果에 비하여 극히 낮은 8%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推定回歸係數는 두 變數를 제외하고는 극히 有意的이며 期待된 대로의 方向을 보이고 있다. 특히 超過出產(*EXF*)은 다른 어떤 變數보다 有意的이며 그 다음 子女死亡率(*CHM*), 家口所得水準(*FFY*), 婦人의 敎育 및 所得水準(*EDN, WWY*)의 順을 보이고 있다.

Logit 分析에서는 컴퓨터時間을 節約하기 위하여 위의 結果에서 有意的인 說明變數만을 사용하여 보았으며 사용된 變數도 註記한 바와 같이 再定義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表 5〉의 下端에 收錄된 바와 같이 앞서의 결과와 별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超過出產이란 槪念이 實際的 意味를 갖으며 家族計劃의 實踐樣相은 所得·敎育水準 등의 間接的 要因보다는 超過出產, 子女死亡 등 家族規模觀의 成就에 關聯된 直接的 要因에 우선적으로 支配를 받는다고 結論지을 수 있겠다.

Ⅳ. 超過出產과 經濟活動

旣婚女性의 經濟活動은 家族規模, 즉, 대체로 볼 때 出產子女의 數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는 家族規模觀과 다른 모든 條件이 일정할 때 旣婚女性의 家族規模觀에 대한 成就率——즉, 超過出產의 水準——이 달라짐에 따라 그들의 經濟活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分析하였다. 經濟活動은 就業活動과 子女敎育에 대한 投資(期待)水準의 兩面에서 捕捉하였고 分析方法은 一次的으로 圖表를 통하여 槪略的 관계를 檢討한 후, 보다 엄밀한 關係分析을 위하여 人口·社會·經濟的 與件의 個人差를 考慮한 回歸分析을 試圖하였다.

1. 超過出產類型에 따른 그룹別 特性과 經濟活動의 樣相

超過出產이 旣婚女性의 經濟活動에 미치는 영향은, 希望子女數는 동일하나 子女數가 다른 그룹을 比較함으로써 分析할 수 있다[12]. 이에 따라 分析對象은 應答時點에서의 希望子

10) 家族計劃 實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는 「男兒選好」는 考慮해 넣지 않았다. 그 理由는 男兒選好가 家族計劃에 미치는 영향을 統制하기 위하여서는 「Coomb」의 性選好指數(sex preference index)나 生存男兒의 數를 考慮해 볼 수 있겠으나 標本全體를 통하여 「Coomb」의 性選好指數가 극히 사소한 차이를 보일 따름이며 生在男兒의 數 또는 生在子女의 性比는 標本의 數가 충분히 크므로 해서 正規分布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11) 超過出產과 避姙은 相互 同時的인 關係에 있다. 즉, 다른 條件이 일정한 狀態에서 超過出產이 많다면 避姙의 使用을 誘發할 것이며 한편 避姙의 사용이 增大된다면 같은 條件下에서 超過出產을 減少시킬 것이다. 따라서, 嚴密한 意味에서 超過出產이 家族計劃 使用에 대하여 가지는 效果를 보기 위하여서는 相互同時的인 體系下에서 推定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嚴密性은 지켜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家族計劃의 實踐樣相이 「超過出產」이란 槪念에 矛盾됨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데 主眼點이 있으며 聯立方程式 體系를 單一方程式으로 推定함에 따르는 誤差(simultaneity bias)의 크기가 지나쳐서 推定係數의 符號를 바꿀 정도로 深刻한 것으로는 看做되지 않기 때문이다.

12) 實際子女數는 같으나 希望子女數가 다른 그룹의 經濟活動을 比較하는 것도 한 方法이 된다. 그러나, 이 方法은 希望子女數가 實際子女數보다 小幅의 分散을 보이고 있으므로 本文의 方法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女數가 最頻値 세 子女인 標本에 限定하였고 우선 全體的인 경향을 보기 위하여 이들 標本 全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으로 年齡이 出産完了期에 놓여 있는 標本만을 對象으로 하였다. 標本그룹은 實際子女數의 希望子女數에 대한 超過與否에 따라 過少, 適正, 適多出産의 세 그룹으로 크게 分類하였다.

가. 全年齡 標本

〈表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全年齡標本의 그룹別 分布는 過少出産그룹 662, 適正出産그룹 493, 過多出産그룹 966, 合計 2,121로서 過多出産그룹의 比重은 45.5%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希望子女數가 3名이면서 過多出産을 한 婦人의 調査標本全體에 대한 比重은 18.6%에 이르고 있으며 現在 過少 및 適正그룹에 속하는 대부분의 標本이 아직도 可姙期內에 놓여 있고 出産을 完了하지 않은 標本의 比重도 상당히 크므로 對象標本이 전부 可姙期를 벗어날 무렵이면 過多出産그룹의 比重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룹別 特性은 다음과 같이 比較된다.

(1) 超過出産의 平均水準은 그룹別로 過多 2.3, 過少 −1.6으로서 平均出産兒數가 全體 3.6, 過多 5.3, 過少그룹 1.4임을 보인다. (2) 그룹間 年齡差異는 過少~適正그룹 약 4.5歲, 適正~過多그룹 약 6歲로서 前者에 비하여 後者가 약 1.5歲 많음을 보인다. 이는 子女의 出産을 위하여서 平均的으로 全體可姙期의 半에 未達하는 期間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3) 그룹間 차이는 敎育水準(*EDN*), 就業期間(*DWM*), 婦人所得(*WWY*), 家口所得(*FFY*)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過少~適正그룹간 차이가 근소한 데 반하여 適正~過多그룹間은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는 適正出産그룹이 社會·經濟的 特性面에서 比較的 選拔된 그룹임을 示唆하며 특히 家口所得(*FFY*)과 農村人口比(*REG*)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就業經驗의 類型은 過多出産그룹으로 옮아

〈表 6〉 出産類型別 標本의 特性과 經濟活動樣相

	全年齡標本			35~45歲 年齡標本		
	過少	適正	過多	過少	適正	過多
標本數	662	493	966	78	156	521
超過子女數	−1.6	0	2.3	−1.5	0	2.4
年齡	2.3	3.2	4.3	4.5	4.3	4.5
結婚期間	1.6	2.7	4.3	3.7	3.7	4.4
敎育水準	2.3	2.1	1.7	2.0	2.1	1.7
婦人所得	.50	.54	.60	.87	.83	.63
家口所得	1.90	1.92	1.75	1.71	1.99	1.75
農村居住率	.41	.35	.56	.33	.26	.59
就業期間	1.9	2.1	3.1	2.5	2.4	3.2
婚後就業經驗率	44.7	51.8	70.2	60.3	59.7	72.3
現在就業率	33.7	40.8	57.7	43.6	50.0	61.2
大卒子女希望率						
子	88.9	82.9	71.6	89.6	85.9	72.4
女	64.3	62.9	44.2	67.9	66.2	44.2

올수록 婚後就業經驗率이 커지며 婚後就業經驗에 있어서도 現在 就業中인 標本의 比重이 커짐을 보인다. 이는 平均年齡의 차이에 따른 就業露出期間(exposure period)의 차이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35~45歲 年齡標本에서 就業經驗이 전혀 없는 標本의 比重이 過少그룹보다 適正그룹이 큼을 볼 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한편 子女敎育에 대한 期待水準[13]의 그룹別 차이는 標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大卒以上 子女를 원하는 標本의 比率을 볼 때 男·女兒를 불구하고 모두가 過少·適正·過多 그룹의 順을 보이고 있다.

나. 35~45歲 標本

〈表 6〉의 右側에 제시된 바와 같이 35~45歲 標本의 그룹別 構成比는 全年齡을 對象으로 할 때보다 현저한 차이를 보여 過少그룹은 10.3%에 불과한 반면, 過多그룹은 69%를 차지하고 있다. 20.7%를 차지하는 適正그룹의 標本 중에서도 避姙의 失敗 등으로 앞으로 出産이 繼續될 可能性이 있으므로 이들이 可姙期를 완전히 벗어날 무렵에는 過多出産그룹의 比重이 7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35~45歲의 全體調査標本中 現在의 標本 755는 약 40%에 해당하므로 調査標本中 최소한 약 30%가 過多出産임을 示唆한다. 따라서 아직도 家族計劃 實踐의 增大를 통한 出産力 抑制의 餘地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年齡을 統制함에 따라 그룹間 平均年齡의 차이는 거의 없다. 敎育水準, 婚後就業經驗率에 있어서의 그룹間 차이는 상당히 減少되었으나 所得水準과 農村居住比率에 있어서는 오히려 增加하였다. 過少出産그룹의 就業經驗率은 全體年齡을 對象으로 할 때보다 최고 15.6%「포인트」增加하여 比較的 變化가 적은 過多出産그룹의 수준에 크게 接近하였다. 그러나 過多出産그룹으로 옮아갈수록 婚後就業經驗에 있어서 現在就業中인 標本의 比重이 커지는 점은 변함이 없다. 子女敎育, 특히 女兒敎育을 大學 이상 수준으로 期待하는 標本比率의 그룹間 차이는 다소 擴大됨을 보인다.

2. 回歸分析

위에서의 槪略的인 分析結果는 旣婚女性의 就業活動과 子女敎育에 대한 期待水準이 超過出産의 類型에 따라 다름을 보인다. 그러나 社會·經濟的 特性이 標本그룹別로 각기 다름을 보임으로써 超過出産의 純粹結果를 보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社會·經濟的 特性에서의 그룹別 차이를 統制할 필요가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그러므로 回歸分析模型은 가급적 많은 統制要因을 考慮하고 있는 〈表 3〉의 推定式을 다소 修正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子女敎育과 就業活動은 根本的으로 같은 統制要因의 支配를 받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變數는 相互關聯된 것으로 보고 各各을 서로의 說明變數로 導入하였다[14]. 둘째, 〈表 3〉 推定式의 統制要因中 男便의 兄弟間 序列은 無意味한 것으로 보고 除去하였으며 대신 超過出産, 避姙使用을 追加的인 變數로 導入하였다. 물론 超過出産에 대한 推定係數의 有意性과 크기가 觀心의 焦點이 되겠으며 避姙實踐은 家族規模觀의 確固

13) 期待水準이 어느 정도 實踐을 隨伴하는가에 대하여서는 論難의 여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14) 實際推定은 觀心의 초점이 相互聯關性의 分析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單純最小自乘法에 의하였다.

〈表 7〉 35～45歲 標本에 대한 模型의 推定結果

從屬變數 \ 說明變數	LFP	EAC	WWY	EXF	USE	AGE	EDN	FFY	PPL	REG	D_1 1)	D_2 2)	C	R^2	n
OLS 推定係數															
EAC	−.099 (1.45)	—	−.034 (1.15)	—	−.043 (.62)	.023 (.39)	.252** (5.65)	.225** (4.98)	.031 (.76)	−.280** (4.25)	.156 (1.41)	−.114 (1.55)	1.615	.247	613
	−.093 (1.37)	—	−.037 (1.25)	−.049** (2.63)	−.052 (.77)	.039 (.66)	.247** (5.51)	.216** (4.80)	.031 (.77)	−.268** (4.04)	—	—	1.577	.246	613
LFP	—	−.035 (1.45)	.191** (12.07)	—	−.085* (2.09)	−.045 (1.28)	−.123** (4.57)	−.015 (.54)	.036 (1.50)	.284** (7.42)	−.114* (1.72)	−.031 (.70)	.863	.308	〃
	—	−.033 (1.37)	.193** (12.15)	.020* (1.78)	−.089* (2.20)	−.060* (1.70)	−.115** (4.23)	−.010 (.35)	.032 (1.31)	.269** (6.96)	—	—	.852	.308	〃
Logit 推定係數															
LFP 3)	—	—	1.038** (8.78)	.100 (1.44)	−.451* (1.79)	−.413* (1.89)	−.843** (5.19)	—	—	1.663** (7.02)	—	—	.555	—	546
	likelyhood ratio=190.8														

註： * 5% 有意水準, 't'=1.65
** 1% 有意水準, 't'=2.33
1) D_1 : 過少그룹=1, 그 외는 0
2) D_2 : 過多그룹=1, 그 외는 0
3) Logit 分析에서 再定義된 變數는 다음과 같다.
USE : (0) 使用經驗 없음 (1) 있음(方法에 關係없이)
AGE : (0) 35～40歲 (1) 40～45歲

〈表 8〉 35～45歲 標本의 出產類型 그룹別 模型推定結果

出產그룹 \ 說明變數		LFP	EAC	WWY	EXF	USE	AGE	EDN	FFY	PPL	REG	C	R^2	n
EAC 1)	過少	−.070 (.40)	—	−.055 (.06)	−.265* (2.22)	.334 (1.33)	−.001 (−)	.271** (2.65)	.032 (.26)	.085 (.80)	−.155 (.89)	1.545	.320	64
	適正	−.004 (.03)	—	−.090* (1.66)	—	.074 (.55)	.090 (.69)	.267 (.72)	.211* (2.41)	.096 (1.20)	−.248* (1.75)	1.187	.253	136
	過多	−.110 (1.24)	—	−.029 (.73)	−.006 (.18)	−.093 (1.05)	.012 (.15)	.240** (4.11)	.259** (4.38)	−.002 (.04)	−.297** (3.49)	1.606	.207	413
LFP 2)	過少	—	−.043 (.40)	.167** (2.95)	−.061 (.62)	−.213 (1.34)	−.047 (.36)	−.060 (.71)	.014 (.14)	.074 (.89)	.237* (1.78)	.556	.338	64
	適正	—	−.002 (.03)	.202** (6.45)	—	−.186* (2.12)	.051 (.58)	−.130* (1.98)	−.007 (.12)	−.031 (.57)	.191* (2.04)	.500	.346	136
	過多	—	−.035 (1.24)	.190** (9.46)	.035* (1.99)	−.029 (.58)	−.098* (2.30)	−.116** (3.51)	−.017 (.51)	.048 (1.61)	.304* (6.60)	.913	.314	413

註： * 5% 有意水準, 't'=1.65
** 1% 有意水準, 't'=2.33
1) Chow Test $F^{10}_{\infty}=1.215$, (cf) $F^{10}_{\infty}=1.83$, $\alpha=5\%$
2) Chow Test $F^{10}_{\infty}=3.39$, (cf) $F^{10}_{\infty}=2.32$, $\alpha=1\%$

性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考慮하기 위하여 導入하였다.

推定은 35~45歲 標本에 限定하였으며 單純最小自乘法을 사용하되 就業活動에 대하여서는 變數의 性格上 Logit分析을 竝行하였다. 超過出產의 영향은 그룹間 平均的 차이와 個人의 出產水準別 차이의 두 가지 側面에서 포착해보고자 「그룹 더미」(group dummy)와 超過出產水準을 交代로 導入하였다[15].

推定結果(表 7 참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超過出產그룹間 子女敎育熱의 차이(D_1, D_2)는 5% 수준에서 非有意的이다. 그러나 子女敎育熱은 過少出產그룹에서 過多出產그룹으로 옮겨짐에 따라 一貫性있게 低下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一貫性은 그룹내(表 8 참조)에서도 지켜짐으로써 個別出產水準(EXF)이 子女敎育熱에 미치는 負의 效果는 1% 수준에서도 有意的임을 보인다.

둘째, 超過出產그룹間 就業活動의 차이는 一貫性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그룹平均(D_1, D_2)의 측면에서 볼 때 過少出產그룹은 適正出產그룹에 비하여 뚜렷이 낮은 경향(5% 有意水準에서 11.4%)을 보이고 있으나 過多出產그룹은 適正出產그룹에 비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룹내(表 8 참조)에서 볼 때도 出產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過少出產그룹은 非有意的이기는 하나 負의 就業傾向을 보이는 반면 過多出產그룹은 有意的으로 正의 就業傾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標本全體에 대하여 個別出產水準(EXF)이 갖는 有意的 效果(5% 水準)는 過少出產그룹이 餘他그룹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就業傾向을 갖는다는 사실에 더하여 相對的으로 標本에서의 比重이 큰 過多出產그룹의 出產水準에 따른 正의 就業傾向 때문으로 풀이된다. 標本全體에 대하여 나타난 이러한 關係는 分析方法을 바꾸어 Logit 分析을 하였을 때 有意性을 喪失하는 점으로 보아 確固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非確固性은 根本的으로 出產水準과 就業活動間의 非一貫性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結果는 그룹別로 볼 때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計劃에 未達된 過少出產은 經濟的 必要性을 감소시킴으로써 就業活動을 低下시키는 반면 子女의 數的選好를 質的 選好로 代替케 함으로써 子女敎育熱을 높이는 要因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過多出產은 子女의 質的選好를 數的選好로서 代替케 하는 한편 計劃되지 않은 子女養育의 追加的인 必要性에 따라 대체로 豫想했던 것보다 낮은 就業活動을 하게 하나 豫想치 않은 出產兒數가 增大될수록 經濟的 必要性에 따른 就業活動을 高潮시키는 要因이 된다.

V. 結　論

1. 要　約

家族規模觀은 結婚當時와 現在의 兩時點에서의 應答을 확실히 보인 標本에 관한 한 一貫

15) 물론 이 方法은 餘他 統制變數가 갖는 效果가 그룹間에 同質的이라는 점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表 8〉의 그룹別 推定結果에 提示된 바와 같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子女敎育方程式의 경우 Chow檢定値는 非有意的이며 就業方程式의 경우도 Chow檢定値는 有意的이나 有意的인 推定係數에 한할 때 그룹間 矛盾되는, 예컨대 推定係數의 符號가 반대인 결과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性이 있으며 實際家族規模가 家族規模觀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도 家族規模觀에 대한 應答의 實質的 意味를 喪失케 할 만큼 深刻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一貫性의 檢定에 있어서 家族規模觀에 대한 應答이 同一時點에서 記憶을 되살린 것이었으므로 그 有意性에 대한 問題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希望子女數, 實際子女數, 이에 따른 超過子女數의 決定要因에 대한 分析結果는 家族形成에 關聯된 이들 諸變數가 共通的으로 家族形態나 居住地 등 非個人的要因에 의해서보다는 年齡, 敎育水準, 子女敎育에 대한 期待水準, 機會費用水準 등 個人的 背景과 行態를 나타내는 要因에 의하여 左右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家族計劃을 實踐하려는 努力 즉, 避姙의 實踐率은 所得, 敎育水準 등의 間接的 要因보다는 超過出產, 子女死亡率 등 家族規模觀의 成就에 關聯된 直接的 要因에 의하여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超過出產, 나아가서는 家族規模觀과 이의 實踐努力이 相互關聯作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超過出產이 旣婚女性의 經濟活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다. 分析對象을 希望子女數가 셋인 標本에 限定하였을 때 過多出產 標本의 比重은 45.5%(35~45歲 標本에서는 69.0%)였으며 社會·經濟的 特性面에서의 그룹間 차이를 考慮하지 않았을 때 過少·適正·過多出產으로 옮아감에 따라 婦人의 就業率은 增加하는 반면 子女敎育熱은 뚜렷이 減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社會·經濟的 特性面에서의 標本間 差異를 고려해 넣은 回歸分析의 결과는 이렇게 명료한 것은 아니었다. 즉, 子女敎育熱은 그룹別 차이가 非有意的이기는 하나 過少에서 過多出產그룹으로 옮겨짐에 따라 低下됨을 보였으며 超過出產水準에 대하여서 一貫性있는 減少函數로 나타났다. 그러나 婦人의 就業率은 대체로 볼 때 超過出產水準에 대하여 增加函數로 나타났으나 그룹間 혹은 그룹내에서 본 超過出產과의 關係는 多少 一貫性을 缺하였다. 즉, 그룹間 차이를 볼 때 過少그룹은 適正그룹에 비하여 有意的으로 낮은 就業率을 보이나 過多그룹은 非有意的이기는 하나 適正그룹보다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룹내에서 볼 때도 過少그룹은 出產水準에 대하여 減少傾向을 보이는 반면 過多그룹은 增加하는 傾向을 보였다. 따라서 本硏究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解釋된다. 過少出產은 就業活動을 低下케 하는 반면 子女敎育熱은 높이는 傾向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過多出產은 子女敎育熱을 감소시키는 한편 希望子女數를 維持할 경우보다는 平均的으로 낮은 就業活動을 하게 되나 過多出產兒數가 많을수록 就業活動을 增大시키는 傾向이 있다.

2. 政策的 示唆

家族規模의 形成에 있어서 家族 및 住居地 環境보다는 個人의 背景과 行態的 要因이 더욱 중요한 役割을 한다는 것은 人口政策面에서 두 가지 점을 示唆한다. 하나는 家族計劃政策은 단순한 避姙器具의 보급보다는 家族觀에 대한 弘報活動을, 특히 低敎育層의 婦人에게 集中的으로 展開함으로써 一般 敎育水準의 차이에 따른 家族觀과 그 實踐力에 있어서의 차이를 緩和시키도록 함이 效果的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子女敎育에 따른 直接·間接의 費用(子女養育, 就業所得)이 家族觀과 이

의 遂行에 重要한 比重을 점하는 것으로 볼 때 誘引策과 沮止策(Incentive and Disincentive system)을 적절히 구사한 Beyond Family Planning이 충분히 效果를 거둘 餘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避姙器具의 供給을 위주로 한 家族計劃 政策을 中斷하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家族觀에 따른 出產努力은 다른 어떤 個人的 特性보다 出產子女의 數, 子女死亡率 등 家族規模觀의 成就에 直接 關聯된 要因에 의하여 보다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希望子女數를 이미 出產한 婦人들에게는 避姙器具의 저렴한 供給을 오히려 더욱 勸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人口政策의 적절한 遂行으로 出產率이 더욱 低下될 餘地가 앞으로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標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希望子女數가 셋이며 年齡이 35~45歲인 標本中 過多出產 標本의 比重이 약 69%나 되는데 보다 젊은 歲帶가 같은 年齡에 到達할 때는 一般的인 敎育水準의 向上과 이에 따른 直·間接의 子女養育費의 增加 등으로 希望子女數가 줄어들고 또한 過多出產의 比重도 현저히 減少될 것이기 때문이다. 小家族觀의 추세와 子女들에 대한 높은 敎育熱로 볼 때, 앞으로의 敎育政策은 過去의 基礎敎育 위주의 政策에서 脫皮하여 보다 高等敎育機會를 擴大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資料에서 본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標本이 大卒 이상의 子女敎育을 원하고 있으며 子女의 數와 質間에 뚜렷한 代替性向을 보임으로써 出產子女의 數가 저하될 것으로 期待되는 한 이들에 대한 高等敎育 需要는 늘어날 것이며 그간의 基礎敎育 擴大로 인하여 다소 鈍化된 學齡人口增加率이 基礎敎育에 주는 壓力은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期待되는 出產의 適正化 혹은 希望子女數의 成就率提高가 勞動力에 있어서 가장 큰 豫備供給源인 旣婚女性의 勞動供給에 대하여는 별다른 變動을 招來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就業活動에서 有意的인 차이를 招來케 하는 過少出產은 減少餘地도 적을 뿐 아니라 全體人口에서의 比重이 적으므로 이의 適正化를 통한 勞動供給의 增分은 微微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한편으로 減少餘地와 人口比重이 相對的으로 큰 過多出產은 適正出產에 比하여 勞動供給에서의 有意的인 차이를 招來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旣婚女性의 勞動供給이 增加 혹은 減少한다면 이는 여타의 社會·經濟的 側面에서의 與件變動에 基因한 것으로 解釋되어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Becker, Gary,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in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nference Series No.11,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Chandrasekaran, C. and A.I. Hermalin, ed., *Measuring the Effect of Family Planning*

Programs on Fertility, OECD Development Center, 1972. p.464.

Duesenbery, J., "Comment on Gary S. Becker,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in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nference Series No.11,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Economic Planning Board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First Country Report,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4.* Seoul Korea, 1977.

Hauser, P., "'Family Planning and Population Programs: a book review article," *Demography,* 4, 1967, pp.397~414.

Hong, Sawon *Population Status Report: Korea,* KDI, Seoul, Korea, 1978.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Bibliography on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in Korea,* KIFP, Seoul, Korea, 1977.

Leibenstein, H.,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2, 1974, pp. 457~479.

Mincer, J., "Market Prices, Opportunity Costs and Income Effects," in Carl F. Christ, ed., *Measurement in Economic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63, pp.68~92.

Ryder, N., "A Critique of the National Fertility Study," *Demography,* 10, 1973, pp. 495~506.

Theil H., *Princpiles of Econometrics,* John Wiley & Sons, Inc. 1971, pp.632~636.

Ware, H., *Ideal Family Size,* WFS Occasional Papers, No.13, WFS, 1974.

自動車關聯 課稅政策의 分析

金 榮 奉

▷ 目 次 ◁

Ⅰ. 序 論
Ⅱ. 自動車關聯 諸稅의 現況
Ⅲ. 需要抑制的 課稅政策의 分析
Ⅳ. 結 論

Ⅰ. 序 論

韓國과 같은 中進工業國에 있어서 自動車産業은 國民經濟에서의 중요성이 增大하는 生産部門이며 그 製品의 普及增大로 상당한 社會·經濟的 變化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部門의 産業政策과 이와 關聯된 諸般政策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兩者(産業政策 및 關聯政策)가 關聯部門에 미칠 효과를 勘案하여 一貫性있게 推進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韓國의 自動車製造産業은 아직 成長段階에 있기 때문에 이를 競爭的인 産業으로 發展시킬 것이 前提될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幼稚産業으로서의 保護育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은 規模의 經濟와 經驗에 의한 技術習得의 品質 및 生産性向上에 매우 중요한 役割을 하는 이 産業의 性格에 비추어 그 推進計劃과 政策에 國內市場에 의존한 質的 및 量的 成長이 主要內容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經濟 또는 社會政策的 見地에서 自動車의 普及抑制가 목표로 選定된다면 競爭力이 없는 自動車産業을 維持시킴으로써 발생되는 資源浪費와 供給增大壓力을 排除시키는 政策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이제까지 生産部門에서는 産業發展에 기여하는 역할을 기대하여 政策的으로 生産能力의 增大를 촉진하였으나 租稅와 價格政策을 통하여는 그 需要를 抑制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相違된 政策이 政策執行의 相對的 濃厚度에 따라 한가지 目標가 다른 하나의 目標보다 더욱 成就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으나 兩者의 相互關聯性 때문에 産業發展의 目標나 需要抑制의 目標를 추구함에 있어서 모두 효과적이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될 수 없음은 매우 自明하다.

本稿에서는 현재 韓國經濟의 與件上 自動車需要抑制政策이 發生시킬 수 있는 經濟的 效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自動車産業發展의 當爲性과 自動車普及의 經濟社會的 費用(또는 效果)을 비교하여 國家水準에서의 政策의 優先順位을 결정함이 課題가 아니며 단지 주어진 經濟與件에서 自動車關聯課稅政策이 갖는 合理性에 대하여 論及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經濟·社會的으로 自動車普及水準決定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諸般要素 즉, 輸送需要와 輸送能率, 道路與件, 所得水準 등을 考察하고 政府의 自動車育成政策(또는 國産化政策)을 旣定事實로 인정하여 規模經濟의 側面에서 自動車에 대한 重課稅政策에 의해 발생 가능한 영향을 分析하는 데 그친다.

Ⅱ. 自動車關聯 諸稅의 現況

自動車關聯 諸稅 및 公課內容은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車種, 車型, 地域, 用度에 따라 상당히 多樣하다. 또한 關稅, 附加價値稅 등 모든 財貨와 用役의 生産 및 流通過程에 적용되는 稅金, 安全과 保險을 위한 經費, 公課 및 手數料 등과 함께 公債의 義務的 購買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히 租稅 또는 需要抑制를 목적으로 하는 稅額 算出이 어렵다. 단지 분명한 것은 트럭 및 버스에 비해 乘用車가, 小型乘用車에 비해 大型乘用車가 事業用에 비해 非事業用이, 그리고 「디젤」 보다는 가솔린運行車輛이 높이 課稅되고 있다는 點이다.

〈表 1〉 自動車關聯 租稅 및 公課

1. 製造過程
   1) 關稅 : CIF 價格의 30%
   2) 關稅防衛稅 : CIF 價格의 2.5%
   3) 特別消費稅 : (乘用車에 限함. 工場度價格基準)
      1,500cc 以下 : 15%, 2,000cc 以下 : 20%
      2,000cc 以下(6氣通) : 30%
      2,000cc 以上 : 40%
   4) 特別消費防衛稅 : 特別消費稅額의 20%
   5) 附加價値稅 : (物品價格+特別消費稅+防衛稅)의 10%
   6) 印紙稅 : 販賣價格의 0.08~0.12%

2. 取得·登錄過程
   1) 取得稅 : 取得價格의 2%
   2) 登錄稅(非事業用 乘用車에 限함) : 取得價格의 5%
   3) 登錄防衛稅 : 登錄稅額의 20%
   4) 道路地下鐵, 上水道公債 : 車種, 車型, 用度, 地域에 따라서 다름.
      서울의 小型 自家用乘用車의 경우 : 325,000원 (地下鐵公債)
   5) 免許稅 : 乘用車 21,600원, 其他 16,200원
   6) 責任保險料 : 車種 및 用度에 따라 다름.
      非事業用乘用車의 경우 : 48,773원/2年

3. 利用過程
   1) 自動車稅 및 防衛稅 : 車種, 車型, 用度에 따라 다름.
      小型非事業用乘用車의 경우 : 292,500원/年
   2) 各種檢査費 : 車種, 車型 및 用途에 따라 다름.
      小型自家用乘用車의 경우 : 49,021원/年

4. 油類關聯稅
   1) 特別消費稅 : 油種에 따라 다름(工場度價格基準).
      揮發油 : 物品價格의 160%
      디젤油 : 物品價格의 7%
   2) 附加價値稅 : (物品價格+特別消費稅)의 10%

「포니」乘用車를 대표적으로 적용할 경우 生産, 購入 및 登錄過程에서 消費者가 負擔하는 租稅와 公課額은 車生産價格의 50.2%가 되며 公債買入을 이에 포함시키면 65.5%에 이른다(表 2 참조). 需要抑制의 目的이 뚜렷한 特別消費稅 및 이에 附加되는 防衛稅額은 車生産

價格의 18.8%에 이르나 이것은 附加價値稅, 登錄稅, 防衛稅, 取得稅 등의 課稅標準額을 引上시킴으로써 消費者의 特別消費稅關聯 實效負擔率은 22.4%로 上昇한다[1]. 車生產價格의 15.3%에 해당하는 義務公債購入額(서울의 경우)은 消費者의 購買行爲에 실질적으로 特別消費稅와 같은 作用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한 實質負擔增加額은 市場利子率과의 차이에 의하여 計算될 수 있으나[2] 短期的 豫算制約과 心理的 效果 등으로 中產層의 購買意慾은 그 이상으로 抑制될 가능성도 있다.

〈表 2〉 乘用車關聯稅金 및 公課[1]
(서울自家用「포니」 1,238cc의 경우)

區 分	金 額(원)	比率(%)
(1) 生 產 價 格	2,125,664	100.0
(2) 諸稅 및 公課(購入時)	1,066,787	50.2
生 產 過 程	680,936	32.0
購 入 過 程	85,980	4.0
登 錄 過 程	299,871	14.1
(3) 公 債	325,000	15.3
(4) 公債諸稅 및 公課(2/3)	1,391,787	65.5
(5) 運 行 過 程 (年)		
自動車稅 및 防衛稅	292,500	13.8
檢 査 費	49,021	2.3
가솔린關聯稅[2]	704,475	33.1

註 : 1) 各種 手數料, 保證 및 責任保險料, 豫備檢査費 포함.
2) 가솔린 普通 年 15,000km 運行, 10km/리터 燃料效率假定.

資料 : 商工部 資料에서 算出.

特別消費稅와 公債購入은 직접적으로 自動車 價格을 引上시키는 데 대하여 가솔린特別消費稅와 自動車稅는 車輛利用費用을 增大시켜 自動車購買를 抑制한다. 小型非事業用 乘用車의 年間自動車稅 및 防衛稅額은 年 292,500원이며 年間 150,000km의 走行을 假定할 경우 약 70萬원의 油類消費稅額이 消費者에 負擔된다. 이것은 「디젤」에 적용되는 7%의 油類消費稅와 10%의 附加價値稅 그리고 自動車稅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이 部門에서의 自動車運行費用이 3.1倍 增大함을 의미한다.

統計的 分析을 통하여 韓國에서 乘用車價格 上昇과 運行費用增大가 발생시키는 효과를 糾明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단지 資料의 立證없이 價格 및 費用의 上昇과 需要間에 逆比例關係에 있음을 認定할 수 있을 뿐이다[3]. 李徹熙[4]는 韓國의 消費者가 自動車(1,500cc 基準) 購買 및 運行時 日本의 경우에 비해 약 2倍 및 5倍의 課稅負擔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이 統計的으로 分析된 世界自動車普及패턴의 23%에 불과한 韓國의 自動車普及狀態를 대부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自動車 및 油類에 대한 課稅에서 물론 財政收入의 目的을 排除할 수 없으며 政府의 總租稅收入中 自動車關聯課稅의 比重은 상당히 높다[5]. 本稿에서는 오직 自動車關聯課稅의 消費

1) 포니乘用車(1,238cc)의 特別消費稅 및 防衛稅額은 399,791원이며 附加價値稅, 登錄稅, 防衛稅 및 取得稅의 合計는 479,673원으로서 課標引上에 의한 追加稅負擔額은 약 76,000원(上記稅額의 $\frac{118.8-100}{118.8}$)이 된다.

2) 이것은 消費者의 資產狀態나 貯蓄性向上에 따라 各個人에게 다르게 作用할 것이나 市場에서 額面價의 40% 以下로 割引됨이 常例이므로 車生產價格의 9% 정도의 課稅效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3) 現代自動車 등에서 乘用車需要의 價格彈力性과 油類價格上昇에 의한 彈力性을 計測 試圖한 바 있으나 모델 構成이나 統計的 有意性에 있어서 모두 問題가 있었다. 韓國의 경우 최근 4~5年間 自動車普及이 급격히 擴大되었으므로 충분한 時系列資料가 존재하지 않고 同期間에 自動車의 相對價格은 약간 下落하였으나 油類의 相對價格은 크게 上昇하여 有意한 符號와 絶對値를 가지는 係數가 計測되지 않는다.

4) 李徹熙, 『韓國의 自動車工業』, KDI 硏究調査報告, 80-05, 1980, p.18.

5) 1978年 및 1979年의 自動車關聯稅收(組立, 部品企業 및 消費者負擔의 諸稅와 휘발유稅 包含)는 同年度의 中央政府 및 地方政府의 總租稅收入(專賣收益 包含) 4兆 399億원과 4兆 7,269億원의 11.4% 및 12.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年度에는 自動車需要沈滯로 8% 미만이 될 것으로 豫想하였다(商工部 資料 및 EPB, 『主要業務指標』, 1980 參照). 諸負擔은 그 機能上附加値稅와 防衛稅는 稅收가, 公債는 收益者負擔

抑制目的에만 관심을 가지므로 政府가 意圖하는 自動車需要抑制만을 보면 ① 油類消費節約, ② 社會間接資本 增大壓力의 減少, ③ 기타 消費增大, 消費性向 上昇, 消費의 顯示化 등의 豫防이 될 것이다.

Ⅲ. 需要抑制的 課稅政策의 分析

自動車는 輸送手段 또는 生活便益手段의 機能을 가지는 한편 需要者에게는 購入 및 維持費用을, 그리고 國家에게는 社會間接資本增設의 負擔을 지운다. 한편 自動車關聯政策으로 製品의 質과 價格이 制約됨으로써 消費者는 주어진 供給條件 아래서 自動車의 效能과 費用을 비교하여 需要를 選擇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政策의 妥當 을 檢討함에 있어서는 그 社會的 效果와 費用이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政策에서 意圖되는 社會的 效果와 費用 즉, 에너지消費節約, 社會間接資本投資負擔減少, 消費節約, 輸送能率의 沮害, 其他의 效果 등을 數量化하거나 이들간에 優先順位를 賦與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別個의 硏究에서 試圖되어야 할 課題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政策이 惹起하는 영향을 단지 論理的으로 類推함에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本章에서는 먼저 政策의 效果가 資源配分의 側面에서 論及되고 輸送需要, 所得水準, 社會間接資本量과 비교된 自動車普及水準이 이 部門의 能率과 效能을 반영하는 尺度가 된다는 假定 아래 韓國의 相對的 普及水準을 分析한 다음 이 政策이 追求하는 其他 經濟 및 社會政策目標에 대하여 檢討한다.

韓國에서는 현재의 貿易 및 產業政策에 의하여 自動車의 國產供給이 前提되어 있다. 이것은 自動車의 供給價格이 需要規模에 依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規模의 經濟效果와 關聯하여 이 政策이 分析된다.

1. 價格歪曲과 資源配分

完全競爭下에서는 市場機能의 作用에 의하여 各輸送手段의 限界效用/限界費用이 일치하는 點에서 各輸送手段의 需要가 결정되고 輸送部門에서의 資源의 最適配分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輸送과 관련하여 發生되는 國際價格基準의 便益(社會間接資本投資를 포함하여 輸送手段 維持에 필요한 모든 物的 및 人的費用)이 國內資源費用을 반영한다고 假定할 경우 理論的으로 特定輸送手段에 대한 課稅는 社會的 輸送能率을 低下시키거나 資源浪費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特定輸送手段에의 課稅는 代替輸送手段에의 相對的 補助를 의미하기 때문에 兩輸送手段의 價格比率이 歪曲되고 效率(限界效用/限界費用)이 낮은 輸送手段이 選好됨으로써 非效率的인 輸送手段의 需要增大와 資源浪費가 초래된다.

圖示하면 課稅 및 補助가 없는 경우 輸送部門에 주어진 資源으로 AB의 輸送手段可用線(buget constraint)이 導出되고 이 線이 社會의 輸送效能無差別曲線 I 과 接하는 點(E_0)에서 均衡輸送手段의 組合이 決定된다. 그러나 課稅에 의하여 輸送手段可用線은 $A'B$로 轉換되며 새로운 均衡點 E_1에서 均衡輸送手段의

原則에 의한 財政支出負擔의 分散이, 그리고 特別消費稅는 稅收와 消費抑制가 目的이라고 볼 수 있는데 稅收增大效果에 있어서는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非彈力的임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圖 1〕 課稅 및 補助下에서의 輸送手段의 組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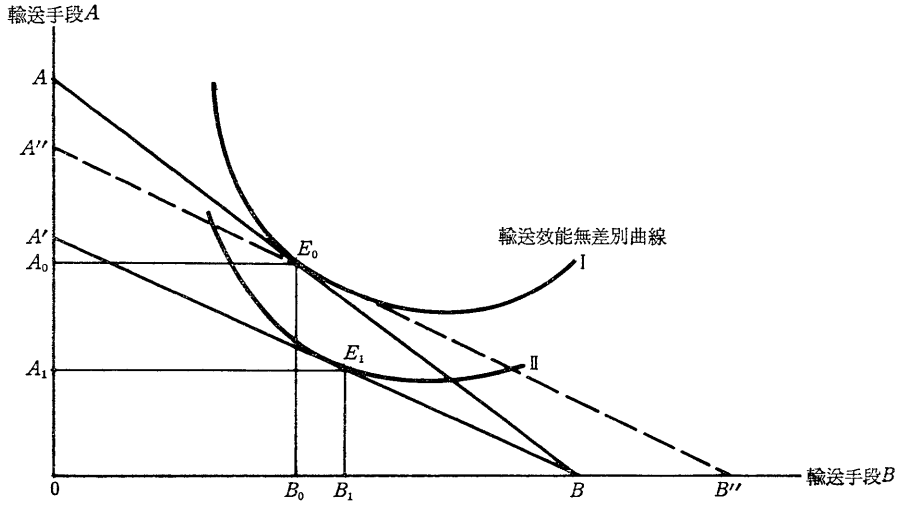

組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輸送手段 A의 需要은 A_0에서 A_1으로, B의 需要는 B_0에서 B_1으로 變化하는데 이 경우 無差別曲線이 正常的인 型態를 가지는 한 새로운 價格線 $A'B$는 無差別曲線 I 보다 低位이며 非效率的인 曲線 II와 E_1에서 接하게 된다. 換言하면 주어진 豫算條件($A'B$)에서는 輸送能力의 不足(I-II)으로 社會의 流通能率이 低下하거나 주어진 輸送需要(I)가 충족돼야만 할 경우에는 輸送部門에의 投入資源이 增大함으로써 ($OA'=OB \rightarrow OA''=OB''$)資源浪費가 초래될 수 있다.

6) 各 輸送手段은 各己 多樣한 에너지效率 및 社會間接資本投資의 負擔을 가진다.
輸送手段別 에너지效率은 다음과 같다.

輸送手段	平均搭乘人員(人)	人當에너지消費(Kcal/人, km)
택 시	3	680
乘用車(市內走行)	3	970
乘用車(市外走行)	3	440
都市버스	12	520
旅客列車	400	190

資料 : 林浩奎, 「鐵道輸送과 에너지節約型 輸送體系」, 『韓國鐵道』, 1980. 4.

韓國의 自動車政策은 특히 乘用車를 重課稅하고 其他 自動車는 餘他 輸送手段(例 : 鐵道)보다 높이 課稅된다. 乘用車, 其他 自動車 및 餘他 輸送手段의 投入資源要素 중 단지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실은 이들 輸送手段間의 에너지效率의 차이가 顯著하다는 點이므로[6] 이와 같은 政策은 社會·經濟政策上 매우 높은 에너지節約의 優先順位와 各 輸送手段別 積載物 또는 搭乘人員의 同質性을 認定할 경우 妥當性을 가진다.

韓國에서 原油는 모두 輸入에 依存하므로 에너지節約의 중요성은 인정되는 바이나 우리나라에서 매우 낮은 總油類消費 중 가솔린 消費比率(1978年 : 5.7%)과 各 石油製品의 精製比率이 技術的으로 制約된다는 點에 비추어 에너지消費節約에 絕對的인 優先順位를 賦與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진다. 또한 所得水準이 人間의 時間 및 餘暇에 대한 效用의 函數임을 고려할 경우 各 輸送手段(버스 및 乘用車) 利用者의 同質性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論

理에 비추어 韓國에서 類別히 높이 賦課되는 自動車關聯稅와 가솔린稅는 輸送效率 및 資源配分의 側面에서 利益보다는 損失이 크다고 推論된다.

2. 規模의 經濟와 生產效率

經濟規模의 膨脹에 따라 증대하는 輸送需要를 충족키 위해서는 國內生產에 의하건 輸入에 의하건 輸送手段이 供給돼야 한다. 韓國에서는 自動車의 國產化가 이미 정해진 政策方向이 되어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장래 輸出產業으로 育成, 發展시킬 것이 意圖되고 있다.

序論에서 指摘하엿듯이 自動車產業政策에 대한 전반적인 檢討는 이 論文의 主題가 아니다. 이것은 韓國의 經濟資源의 動態的 變化에 立脚하여 장래 世界市場에서 競爭的 產業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갖는지, 또는 外部經濟의 발생이 產業의 존재를 필요로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與否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別個의 產業硏究에서 다루어져야 할 課題인 것이다. 단지 확실한 것은 韓國經濟에서 占有하는 自動車製造產業의 중요성과 政府의 확고한 政策方向에 비추어 앞으로 自動車의 國內生產이 拋棄되지 않고, 더욱 國內產業保護를 위한 輸入制限이 계속될 것이라고 前提할 수 있다는 점이다.

自動車供給이 國內生產製品으로 制約될 경우 輸入製品과의 競爭이 排除됨으로써 需要者가 접하는 自動車의 價格과 品質은 國內自動車產業의 生產性과 技術에 의존하게 된다. 한편 規模의 經濟效果가 극히 중요한 自動車產業의 特性에 비추어 현재의 競爭力으로는 輸出能力이 전혀 없는 것으로 評價되는 韓國自動車產業이 規模擴大에 의한 生產性向上 效果를 오직 國內供給에 의존하게 될 것은 매우 당연하다. 높은 自動車關聯課稅는 이와 같은 見地에서 批判을 받게 된다.

自動車工業에 있어서의 規模經濟의 效果는 과거의 硏究와 企業經營을 통하여 상당히 큰 것으로 이미 立證되고 있다[7]. 韓國의 自動車工業에 있어서는 특히 이미 大規模化된 歐·美·日의 自動車製造企業에 비하여 아직 적은 規模로 操業되기 때문에 供給規模의 增大에 따라 規模의 經濟效果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豫想할 수 있다[8]. 이와 같은 點은 輸送

7) 規模의 經濟는 理論的으로 靜態的 條件下에 長期平均費用曲線이 下向하는 것으로 定義된다. 靜態的 條件(static condition)에 의하여 技術, 生產要素, 價格 및 外部經濟의 변화에 의한 生產性變化가 排除되기 때문에 特定時點, 地域 및 產業에 있어서 單一費用曲線의 導出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平均費用이 下向하는 要因으로는 주로 固定費用의 不可分性(indivisibilities of fixed costs), 大量處理에 의한 資源節減(economies of massed resources), 勞動 및 施設의 分業化 또는 專門化의 利益(economies from specialization of labor and plant), 物理的 空間經濟(economies of increased dimensions) 등이 提示되었다. C. Prattern and D. Dean, *The Economies of Large Scale Production in British Industry: An Introductory Stu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A. Silberston, "Economies of Scale in Theory and Practice" *Economic Jonrnal*, 82(1972) 등 參照.

8) 과거에 推定된 自動車產業에 있어서의 規模의 經濟는 거의 工學 및 經濟的 資料에 의하여 平均費用이 하락되는 규모와 規模의 效果과 消盡되거나 產出量의 限界增大에 대하여 單位費用의 節減效果가 아주 적은 規模만을 提示한다. 硏究者에 따라 兩規模는 다르게 推定되었는데 組立部門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平均費用의 하락이 시작되는 규모는 車型當 年產 25,000臺~100,000臺, 適正規模는 62,000臺~300,000臺이며 部品과 組立의 統合 경우에 있어서는 前者가 180,000臺~400,000臺, 後者가 360,000臺~2,000,000臺로 매우 多樣하다. 그러나 車型當 年生產 400,000臺 수준이 가장 普遍的인 最少適正 規模水準(이 以上에 있어서는 平均費用節減效果가 相對的으로 낮음)으로 알려졌다. H. Jurgesen and H. Berg, *Konzentation und Wettebewert im Gemeinsamen Markt; Das Beispeil der Automobilindustrie*, Vandenhoeck & Ruprechit, Gottingen, 1968, L.J. White, *The Automobile Industry since 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93; D.G. Rhys, *The Motor*

産業과 自動車産業의 發展을 위하여 規模의 效果增進을 위한 政策이 韓國에서 보다 効果的임을 示唆한다.

自動車에 대한 重課稅는 ① 課稅額만큼 自動車價格을 上昇시킴으로써 需要를 抑制하고 ② 需要가 抑制된 만큼 生産性向上 可能性을 抹消함으로써 이에 誘發되는 需要增大를 實現시키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만약 自動車租稅를 통한 財政收入이 自動車製造産業의 發展을 위한 支出로 쓰여진다면 이것은 매우 非合理的인 政策混合이며 주어진 輸送手段의 供給側面에서 볼 때는 國家的인 資源浪費와 生産性 向上의 沮害가 이의 複合的인 결과로 초래될 것이다.

3. 流通效率에 미치는 영향

社會的인 流通能率 및 效用은 輸送需要, 所得水準 및 社會間接資本量에 對比한 自動車普及水準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즉, 上記諸變數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普及된 車輛臺數는 輸送手段 및 生活便益手段으로서의 效率은 높이나 過度한 消費者剩餘를 발생시킴으로써 追加의 自動車普及으로 얻어지는 能率과 效用을 拋棄하는 결과가 된다.

車輛臺數／輸送量 比率을 車輛의 輸送效率의 指標로 삼을 때 韓國에서의 거의 모든 車種의 輸送效率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表 3〉에서는 단지 日本의 경우와 비교되었는데 1972年의 日本의 車輛臺數／輸送量 比率은 1979年의 韓國의 경우와 비교하여 乘用車에 있어서는 15.1倍, 버스는 3.1倍, 트럭은 2.1倍 높다. 이것은 韓國에서의 平均車輛의 過多積載, 過多走行時間과 距離, 높은 택시乘用車比率로 나타내는 現象이며 이에 따라 運轉事故의 增大와 車輛의 耐久年限 短縮이 초래될 것을 豫想할 수 있다.

〈表 3〉 單位輸送量當 車輛保有臺數

(단위 : 臺)

	韓 國[1]		日本[2]	C/A	B/A
	1972 (A)	1979 (B)	1972 (C)		
乘用車 (1億 人km當)	268	389	5,886	22.0	15.1
버스 (1億 人km當)	70	61	191	2.7	3.1
트럭 (1億 톤km當)	2,491	3,213	6,458	2.6	2.0

資料 : 1) 交通部, 『交通年鑑』(1980)에서 計算.
2) 日本 通産省, 『昭和 50年代의 機械産業』, 1975.

過多積載現象은 運轉士의 過勞가 容認되고 個人乘用車의 比率이 적은 데에 基因한 결과이기 때문에 위의 指標는 韓國과 所得水準이 비슷한 나라의 경우와 비교되어야 보다 適切할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公路輸送量의 對GNP 彈力性은 原油價上昇이 급격하였던 最近 期間에 매우 높은 것으로 計算되는데[9] 이것은 供給의 制約으로 輸送需要가 크게 抑壓되었던 基礎與件을 반영하며 따라서 韓國에는 아직 상당한 消費者剩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表 4 참조). 그러므로 현재의 낮은 車輛

Industry, London: Butter Worth, 1972, pp.280~95; C. Sicard, *Les Relation Cout:volume dans l'industrie Automobile* UNIDO 1970, p.4; C. Pratten, *Economies of Scale in Manufacturzing Jndust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p.132~49; R.O. Jenkins, *Dependent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1977) 등 참조. 韓國의 경우 車型當 最大生産實績은 1979年 「포니」의 65,000臺로 適正規模에 크게 미달함을 알 수 있고 과거의 硏究가 費用曲線의 形態(規模의 經濟크기)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의 生産量의 限界增大에 대한 費用節減效果를 알 수 없다.

9) 日本의 公路輸送需要의 對GNP 彈力性은 旅客의 경우 0.7, 貨物의 경우 1.1 수준으로 韓國에 比하여 상당히 낮다. 日本通産省, 『昭和 50年代의 機械産業』, 1975, pp.79~80.

臺數/輸送量 比率과 GNP 增加를 능가하는 輸送需要 增大壓力에 비추어 自動車交通手段에 대한 重課稅는 流通能率을 低下시키는 役割을 한다고 보여진다.

所得增大는 輸送需要를 增大시키는 한편 生活便益手段으로서의 乘用車의 相對的 位置를 侈奢性 消費로부터 必須生活財로 轉換시킨다. 특히 中產層의 增大와 이들이 占有하는 經濟活動 領域增大에 의하여 個人乘用車가 流通能率向上手段으로 廣範圍하게 요구된다.

1975～77年의 世界 20個國의 乘用車普及資料를 標本으로 하여 所得水準과 人口密度를 說明變數로 적용한 回歸分析結果에 의하면 1979年의 韓國의 所得水準에서 世界的 패턴으로 保有되는 乘用車臺數는 人口 千人當 27.7臺로 나타난다(表 6 참고). 그러나 實際 普及臺數는 이의 23%에 해당하는 6.4臺이며 버스 및 트럭의 普及臺數는 世界패턴의 63%에 이른다. 이것은 韓國에서 모든 車輛의 需要가 抑制되어 있고, 差別的인 課稅가 없을 경우 乘用車利用可能者의 3/4 以上이 大量交通手段을 이용하며, 交通 및 輸送需要가 抑制되거나 大量交通 및 輸送手段이 過多積載되고 있는 現象을 示唆한다. 이 경우에 社會的 流通能率의 下落과 生產性 및 效用의 下落이 초래됨은 당연하다.

道路延長은 自動車收容能力의 代表的 指標이며 國土의 耕地面積은 道路擴大의 制約要素

〈表 4〉 輸送需要의 對GNP 彈性値

	價 位	1972	1979	年平均增加率 (1972～79)	GNP彈性値 (1972～79)
旅 客	(10億 人km)	36.9	85.3	12.7	1.21
公 路		26.3(71.1)	62.0(72.1)	13.0	1.24
貨 物	(10億 톤km)	13.6	25.4	9.3	0.89
公 路		2.5(18.3)	6.7(29.9)	15.1	1.44

註：괄호 안의 數値는 公路輸送의 分擔率(%)임.
資料：交通部 資料에서 算出.

〈表 5〉 1979年의 自動車普及臺數와 世界패턴으로 推定된 普及臺數의 比較

	實際普及臺數[1] (A)	世界패턴[2] (B)	A/B (%)
乘用車(全國, 千臺)	241	1,042	23.1
(千人當保有臺數)	6.4	27.7	23.1
버스 및 트럭	245	389	63.0
合 計	486	1,431	34.0

資料：1) 商工部 資料에서 算出.
2) 筆者가 計測한 自動車普及函*에서 算出.
* 自動車普及函數：

$$\ln Ca = -5.966 + 1.278 \ln P\,\mathrm{GNP} - 0.180 \ln PLD \quad R^2 = 0.676$$
$$(-5.86) \quad (10.74) \quad (-3.08)$$

$$\ln Cb = -2.983 + 0.717 \ln P\,\mathrm{GNP} - 0.215 \ln PLD \quad R^2 = 0.409$$
$$(-2.74) \quad (5.63) \quad (-3.44)$$

( )의 數値는 t～value임.
Ca : 1,000人當 乘用車普及臺數
Cb : 1,000人當 버스 및 트럭普及臺數
PGNP : 1人當 所得(1975年 dollar)

가 된다. 이밖의 主要한 自動車收容能力의 決定要素로는 駐車場面積, 交通手段의 構成(大型車와 小型車의 比率, 버스, 트럭, 乘用車의 相對的 比率), 臺當 運行回數와 走行距離 등이 될 것이다.

〈表 6〉에서는 道路의 質的 差異(넓이, 傾斜, 舗裝與否)가 나타나지 않으나 이에 의하면 韓國의 道路 1km 當 車輛臺數는 美國 및 西歐諸國의 경우에 비하여는 크게 높은 반면 日本에 비하여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道路擴充의 可能性指標로 볼 수 있는 車輛臺數/國土面積 比率에 있어서는 歐美諸國에 비하여도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日本과 東京의 車輛/道路 比率은 韓國 및 서울의 경우의 3.1倍 및 4.4倍에 이르며 서울에서 이미 經驗하고 있는 交通滯症現象에 비추어 서울의 道路가 現在 車輛保有臺數의 4.4倍까지 擴大 收容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車輛普及增大로 豫想되는 交通手段의 構成變化, 臺當 運行回數와 走行距離의 減少 등을 勘案할 때 적어도 현재의 韓國의 道路與件이 都市 또는 全國水準에서 車輛增大로 인한 流通能率向上의 制約要因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其他 目的의 評價

消費抑制 및 所得隔差의 顯示化效果 防止는 經濟 및 社會政策的 見地에서 追求되는 自動車需要抑制政策의 目標로 보인다. 生活便益手段으로서의 乘用車普及擴大는 直接的인 購入 및 維持費用의 增大와 이에 의하여 誘發되는 消費性向의 上昇 등을 초래한다. 國內貯蓄增大 및 資源節約을 필요로 하는 현재의 韓國經濟與件上 自動車普及擴大는 消費節約이라는 觀點에서 政策的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낮은 率의 乘用車普及으로 극소수의 乘用車 所有者의 富가 浮刻되는 반면 普及率의 增大는 정도가 낮으나 廣範圍한 富裕層의 존재를 顯示한다. 그러나 아직 낮은 乘用車普及率에 비추어 普及이 一般化될 때까지 所得隔差의 顯示化 效果가 增大된다고 볼 수 있다.

〈表 6〉 主要國 및 都市의 道路交通指標

	車輛保有臺數 (千臺)	千人當 車輛保有臺數	面積 km² 當 車輛臺數	道路 km 當 車輛臺數
美國 (1972)	109,300	528	11.7	1.82
英國 (1972)	13,790	248	60.0	4.09
프랑스 (1972)	15,020	293	27.3	1.90
西獨 (1972)	16,820	284	67.6	4.03
日本 (1979)[1]	36,992	322	98.0	32.78
韓國 (1979)[1]	494	13	5.0	10.47
東京 (1979)[1]	3,068	262	1,432.0	1,431.0
서울 (1979)[1]	201	26	320.8	32.63

資料 : 1) 商工部 資料에서 算出.
2) E.S. Mills and B.N. Song *Urbanization and Urban Problems*, Harvard University, 1979.

國家財政收入의 側面에서 볼 때 總稅收增大效果는 自動車需要의 價格彈力性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前述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租稅가 발생시키는 分配效果도 留意된다. 높은 自動車關聯 稅負擔率은 高所得層에 대한 課稅와 低所得層에 대한 相對的 減稅를 의미한다.

그러나 社會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와 같은 論議가 自動車關聯 政策樹立에 留意되어야 할 論理는 부족하다. 즉, 이들은 餘他政策에서 분리되어 追求하여야 할 目標이며 目標貯蓄行爲(target saving behaviour), 資本主義經濟下에서 成就誘因의 중요성 등으로 얼마든지 反論이 가능한 論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自動車關聯政策의 樹立에 있어서 이 要因들이 중요하게 考慮됨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진다.

Ⅳ. 結　　論

韓國에서는 과거에 自動車가 產業發展에 寄與하는 役割을 기대하여 自動車產業이 政策的으로 育成되어 온 반면 여러가지 經濟·社會的 이유 때문에 消費抑制를 위한 課稅政策이 採擇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政策의 混合이 生產部門과 需要部門의 相互聯關性 때문에 產業發展의 目標나 需要抑制의 目標를 追求함에 있어서 效果的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生產, 登錄 및 購入過程에서 賦課되는 自動車關聯稅 및 公債購入義務와 가솔린消費稅는 특히 乘用車의 경우에 높으며, 이것이 韓國에서 自動車普及을 抑制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本稿에서는 經濟·社會與件과 自動車의 效用性을 비교하여 自動車關聯 諸稅政策의 效果를 分析한 結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보다 많은 것으로 推論된다. 自動車에 대한 重課稅政策은 에너지消費가 포함된 輸送效率 및 資源配分의 側面에서 非合理性이 論證되며 現存하는 輸送需要, 所得水準, 道路與件에 비추어 社會的 流通能率 및 效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分析된다. 단지 消費性向의 向上, 所得隔差의 顯示化效果, 分配政策 등의 見地에서 自動車 普及擴大는 否定視되었는데 社會一角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와 같은 論議는 여러 가지 이유로 政策樹立의 主基準이 될 수 없다. 그리고 韓國과 같이 輸送手段의 供給이 오직 國內產業에 의존하는 경우 이와 같은 政策은 저렴한 輸送手段의 供給을 沮害한다.

政策의 一貫性은 能率的인 政策의 必須要素라고 볼 수 있는데 韓國의 自動車關聯政策은 이 관계를 分析할 수 있는 좋은 資料가 될 것이다. 만약 需要抑制目的의 租稅收入이 적당한 經路를 통하여 自動車關聯產業의 育成을 위하여 補助된다면 이것은 매우 非合理的인 政策의 混合이 될 것이며, 그 결과 國家的인 次元에서 상당한 資源浪費가 초래될 것을 豫想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交通新報社, 『交通年鑑』, 1980.

李徹熙, 『韓國의 自動車工業』, KDI 硏究調査報告 80-05, 1980.

林浩奎, 「鐵道輸送과 에너지節約型 輸送體系」, 『韓國鐵道』, 1980. 4.

日本通產省, 『昭和 50年代의 機械產業』 1975. 6.

Jen Kims, R.O., *Dependent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New York: Praegers Publishers, 1977.

Jurgesen H. and H. Berg, *Konzentration und Wettebe Wert im Gemeinsamen Markt; Das Beispeil der Automobilindustrie,* Vandenhoeck & Ruprecht, Gottingen, 1968.

Mills E.S. and B.N. Song, *Urbanization and Urban Problem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ratten C., *Economies of Scale in Manufacturing Indust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ratten C. and R. Dean, *The Economies of Large Scale Production in British Industry: Introductory Stu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Rhys D.G., The Motor Industry London: Butter Worth, 1972.

Silberston A., "Economies of Scale Theory and Practice," *Economic Journal,* 82, 1972.

White L.J., *The Automobile Industry Since 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國別 外國人投資規模의 決定要因에 관한 分析

具 本 英

▷ 目 次 ◁

Ⅰ. 序 論
Ⅱ. 外國人投資規模의 決定要因
Ⅲ. 統計的 分析結果
Ⅳ. 政策的 意味

Ⅰ. 序 論

開發途上國에 대한 先進國의 直接投資는 여러가지 複合的 要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開發途上國의 自然資源을 開發·輸入하기 위하여 投資가 발생하기도 하고 自國內市場보다 높은 收益을 開發途上國市場에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投資가 발생하기도 한다. 혹은 既存 輸出市場이 貿易障壁이나 競爭企業의 대두로 상실될 가능성이 있을 때 海外投資가 발생할 수도 있다[1].

이와 같이 外國人 直接投資의 發生要因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分析方法 또한 다양하다. 投資하는 國家의 立場에서 資本의 海外進出要因을 分析할 수도 있고 資本導入國의 立場에서 資本流入의 原因을 分析할 수도 있다. 또한 全體投資規模의 變動要因을 分析할 수도 있고 産業別 投資「패턴」의 決定要因을 分析할 수도 있다. 理論的으로는 國際貿易理論을 근거로 比較優位, 原價構成要因 및 貿易障壁의 정도 등을 說明變數로 이용할 수도 있고 産業組織論을 근거로 産業의 獨占度, 投資企業의 規模, 商品分化程度 등을 說明變數로 이용할 수도 있다.

本稿는 開發途上國別 先進國의 外國人投資總規模를 결정짓는 要因을 分析하고 있다. 이러한 分析은 國別 外國人投資 總殘額을 가지고 행하여질 수도 있고 一定期間의 總流入額을 가지고 행하여질 수도 있다. 總殘額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蓄積期間이 國家別로 다르다는 短點과 總殘額이 보통 인프레 및 外換率의 변화를 감안치 않은 投資當時帳簿價格의 合計로 표시되어 있다는 短點이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外國人 直接投資의 發生要因에 관하여는 Dunning(1973)과 Hufbauer(1975) 참조.

있다. 그러나 一定期間의 總流入額을 이용할 경우에는 期間이 짧을수록 政治·經濟的인 與件變化에 國別 流入額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短點과 元金回收 및 利益金 再投資가 流入額에 보통 나타나지 않는다는 短點이 있다. 또한 어느 期間을 硏究의 對象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本稿에서는 資料問題上 國家別 外國人投資總殘額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았는바, 說明變數로 사용된 變數들의 國別 相對的 價値가 短期間內에 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國別 投資規模의 決定要因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政治·社會的 變數는 短期間內에 변할 수도 있겠으나 이곳에서는 經濟的인 變數만을 說明變數로 사용하고, 설명되지 않는 國別 差異(variance)는 政治·社會的 變數들의 영향으로 간주하였다.

本稿의 第Ⅱ節에서는 開發途上國의 總投資規模를 결정짓는 要因들로 판단되는 變數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第Ⅲ節에서는 이들을 이용한 統計的 分析結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第Ⅳ節에서는 政策的 意味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Ⅱ. 外國人 投資規模의 決定要因

本稿에서 分析對象으로 삼고 있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1976年末 現在 各開發途上國의 外國人投資 總殘額이다[2]. 일부 學者들은 1人當 外國人投資規模를 分析對象으로 삼고 있으나 本稿에서는 總人口數도 중요한 說明變數로 간주하여 總投資額을 分析對象으로 삼았다. 本節에서는 이러한 外國人 總投資規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變數들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고자 한다.

1. 市場規模

대부분의 外國人投資는 아직 輸出보다는 資本導入國 國內市場에서의 販賣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3]. 따라서 國內市場規模가 크면 클수록 外國人投資規模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市場規模는 또한 規模가 클수록 全產業에 걸쳐 經濟的規模의 工場建設을 가능케 함으로써 外國人投資를 促進시킨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國別로 所得水準, 產業構造, 消費構造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이들의 영향에 관하여는 다른 變數들로 일부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곳에서는 總市場規模의 獨自的 影響에 관하여만 언급하고자 한다.

外國人投資規模의 決定要因으로서의 市場規模의 重要性은 Balassa(1966), Krause(1968) 등에 의하여 이미 指摘된 바 있으며 Bandera and White(1968), Scaperlanda and Mauer(1969), Shapiro(1977), 그리고 Root and Ahmed(1979) 등에 의하여 統計的으로 檢證된 바 있다[4].

本稿에서는 市場規模를 나타내는 變數로 各國의 1976年 國民總生產(GNP)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外國人投資 總殘額을 從屬變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急成長을 한 國家

2) 1976年末 현재 國別 外國人投資 總殘額에 관하여는 〈附表 1〉 참조.

3) 日本의 外國人投資는 주로 資本導入國의 輸出產業育成에 補完的인 역할을 하여 왔다는 주장(Kojima, 1973)도 있으나 이는 일부 外國人投資에만 적용될 수

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豫想額이 過大評價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최근에 成長이 매우 低調했던 國家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豫想額이 過小評價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최근의 經濟成長率을 또 하나의 說明變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偏向은 별로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經濟成長率

成長이 빠른 國家일수록 장래의 市場展望이 밝을 것은 당연하고 外國人投資가 많을 것도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caperlanda and Mauer(1969)의 경우, 歐洲內 外國人投資를 對象으로 分析하여 보았을 때 經濟成長率은 별로 중요한 變數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Reuber(1973) 및 Shapiro(1977)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Root and Ahmed(1979)의 分析에 있어서는 經濟成長率이 중요한 變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相致하지 않는 결과는 각각의 分析對象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Scaperlanda and Mauer와 Reuber의 경우는 外國人 投資의 年度別 推移를 分析對象으로 삼았는 바, 그 해 혹은 前年度의 經濟成長率과 같은 短期的 要素는 當該年度 外國人投資에 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Shapiro의 경우도 1961~65年間 外國人投資平均流入額을 1961~65年間 平均成長率에 對比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成長率은 중요한 變數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Root and Ahmed의 경우는 1960~66年間의 平均成長率을 1966~70年間의 外國人投資 流入額에 對比시켰는 바, 이 경우에는 過去 상당기간의 成果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外國人投資規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本稿에서는 1976年末 현재 外國人投資 總殘額을 分析對象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1960~76年, 16年間의 年平均成長率을 說明變數로 사용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長期間에 걸친 成果는 분명 外國人投資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3. 賦存資源의 程度

우리가 分析對象으로 삼고 있는 國別 外國人投資 總殘額은 產業別로 區分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製造業에 국한한 分析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全產業에 걸친 外國人投資規模의 決定要因으로서 自然資源의 賦存程度를 포함시켜야만 하였다.

19세기부터 自然資源의 開發輸入을 위한 先進國의 海外直接投資가 활발하였음은 周知의 사실이나 2次大戰 以後 많은 植民地가 獨立國家로 전환됨에 따라 國有化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최근에 들어와 產油國들의 國有化 조치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國家의 경우에는 賦存資源의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근 國有化 조치가 많았던 產油國들은 本稿의 標本에서 제외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4) Bandera and White와 Scaperlanda and Mauer는 美國의 歐洲에 대한 直接投資 推移를 分析對象으로 삼고 있으며 Shapiro와 Root and Ahmed는 各國의 일정 기간의 外國人投資 流入額을 分析對象으로 삼고 있다. Root and Ahmed의 연구에 있어서는 1人當 流入額을 從屬變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NP는 重要한 變數로 나타나지 않고 1人當 所得이 重要한 變數로 나타나고 있다.

시켰다[5].

本稿에서는 自然資源의 賦存程度를 나타내는 變數로 1976年基準 總輸出額 중 SITC分類 06(설탕, 糖加工品 및 벌꿀), 07(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그 製品), 12(담배 및 담배製品), 23(생고무), 24(나무, 木材 및 콜크), 25(펄프 및 紙類), 28(金屬鑛 및 金屬부스러기) 및 3(鑛物性 燃料, 潤滑油 및 關聯物質)의 합계가 차지하는 比重을 사용하였다.

生産額이나 附加價値의 比重을 사용치 않은 것은 資料上의 問題도 있었지만 外國人投資의 決定要因으로서의 賦存資源의 정도는 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더 중요한 變數일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6].

4. 都市化率

都市는 市場이 集中되고 下部構造가 잘 발달된 地域이다. 따라서 國家의 都市化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商品의 流通, 販賣, 輸送 등이 그만큼 원활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外國人投資家의 立場에서 보면 都市化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投資與件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이 變數는 Root and Ahmed에 의하여 外國人投資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變數中 하나로 檢證된 바 있다. 本稿에서는 1975年 현재 總人口 중 都市에 사는 人口의 比率을 都市化率 變數로 사용하였다.

5. 其他의 變數

外國人投資規模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로 그 외에 資本輸出 및 輸入國의 誘引政策, 資本輸入國의 貿易 및 關稅制度, 下部構造의 發達程度, 政治的 安定度, 行政의 効率性, 資本輸出國들과의 歷史的 關係等 여러 變數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들에 관하여는 客觀的 資料를 구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고, 일부 變數들은 이미 言及된 4個의 變數들과 깊은 관계가 있어 獨立된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上記 4個의 變數들만을 外國人投資規模의 決定要因으로 分析에 이용하고 이들 變數들로 설명되지 않는 Residual은 其他 變數들의 複合的 影響으로 간주하였다[7].

Ⅲ. 統計的 分析結果

本稿에서는 OECD(1978)에서 發表한 1976年末 현재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國家의 開發途上國別 投資殘額을 說明對象變數로 이용하였다. 同資料에는 總 119個 開發途上國에 관한 外國人 投資殘額이 실려져 있었으나 前述한 産油國들과 說明變數 資料가 부족한 國家들을 제외하고 總 69個國만을 分析對象으로 이용하였다.

---

5) 産油國들의 1976年末 현재 外國人 投資殘額은 國有化조치로 인하여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6) 自然資源을 隣接國에서 原料상태로 輸入하여 原資材狀態로 加工輸出하는 國家의 경우에는 賦存資源의 정도가 實際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예 : 싱가폴의 石油製品輸出)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全體 回歸分析結果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7) 其他 變數들 중 특히 政治的 安定度와 資本導入國의 外國人投資政策은 外國人投資規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變數는 數量化하기가 매우 어렵고 「더미」處理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意味가 너무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經濟的 變數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外國人投資規模의 차이를 살펴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獨立的 硏究로 생각하여 非經濟的 變數들을 除外하였다.

〈表 1〉 國別 外國人投資의 決定要因

	常 數	*ln* GNP	*ln g*6076	*ln URB*	*ln RES*	*F*	R^2
(1)	−0.981335 (1.41)	0.791658 (9.70)※※				94.19	0.5843
(2)	4.58512 (19.04)※※		1.35986 (5.82)※※			33.86	0.3357
(3)	1.44828 (1.88)			1.23218 (5.56)※※		30.90	0.3156
(4)	4.97644 (9.95)※※				0.208406 (1.43)	2.06	0.0299
(5)	−1.94684 (2.65)※	0.805863 (10.41)※※			0.266923 (2.95)※※	56.87	0.6328
(6)	4.05925 (9.22)※※		1.34162 (5.77)※※		0.170224 (1.42)	18.20	0.3555
(7)	0.335108 (0.38)			1.29073 (5.99)※※	0.288163 (2.43)※	19.52	0.3716
(8)	−1.1033 (1.49)	0.568902 (6.04)※※	0.49621 (2.47)※	0.470707 (2.57)※		42.61	0.6629
(9)	−2.26864 (2.93)※※	0.585986 (6.67)※※	0.421045 (2.23)※	0.534756 (3.11)※※	0.272018 (3.31)※※	39.57	0.7121

註 : 1) 모든 回歸方程式에 있어서 從屬變數는 國別 1976年末 現在 OECD DAC國家들의 外國人投資殘額(百萬弗)이었고 標本數는 69個國이었음.
2) ※와 ※※는 각각 係數가 5% 및 1% 水準에서 統計的 信賴度가 있음을 意味함
GNP : 1976年 國民總生產(百萬弗)
*g*6076 : 1960~76年間 實質 GNP의 年平均 成長率(%)
URB : 1975年 總人口 중 都市에 거주하는 人口의 比率(%)
RES : 1977年 總輸出額 중 SITC No. 06, 07, 12, 23, 24, 25, 28, 3이 차지하는 比重(%)

資料 : IBRD, *1978 World Bank Atlas*, 1978 (GNP, g6076).
IBRD,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79 (*URB*).
UN,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1977, 1978 (*RES*).

〈表 2〉 國別 豫想 및 實際投資額 比較

實際 < 豫想	實際 ≒ 豫想	實際 > 豫想
그리스 포르투갈	모로코 가나	스페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유고슬라비아	아이보리코스트 말리	콩고 케냐
알제리 튀니지	르완다 시에라리온	디베리아 니제르
이집트 베넨	토고 코스타리카	세네갈 소말리아
차드 이디오피아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잠비아 혼두라스
말라위 모리타니아	방글라데시 한국	자메이카 멕시코
나이제리아 수단	부룬디 싱가포르	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구아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구아데말라 하이티		페루 우루구아이
니카라구아 볼리비아		이스라엘 홍콩
칠레 파라구아이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지아 파키스탄
버마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태국		오트·볼타

註 : 實際≦豫想은 각각 實際外國人投資額이 豫想外國人投資額의 80% 미만 혹은 120% 이상 되는 경우를 意味하고, 實際≒豫想은 實際投資額이 豫想投資額의 80% 이상 120% 미만 되는 경우를 意味함.

〈表 1〉은 이들 國家들의 投資殘額을 前述한 4個變數를 이용하여 回歸分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同表를 檢討하여 보면 前述한 4個變數 중 市場規模가 가장 중요한 變數로 나타나고 있고 其他 經濟成長率, 都市化率등도 모두 중요한 變數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賦存資源의 정도는 그 變數 自體만으로는 별로 중요한 變數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市場規模變數나 都市化率變數와 같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중요한 變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賦存資源이 存在하는 國家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國內經濟規模가 存在하고 下部構造가 發達되어 있지 않으면 投資의 利點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點에 관하여는 보다 많은 硏究가 필요할 것이다).

4個의 變數를 모두 이용하여 설명될 수 있는 開發途上國別 外國人投資規模의 차이는 71%에 이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市場規模한 變數로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58%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開發途上國에 대한 先進國의 投資는 우선은 開發途上國 市場規模에 가장 큰 影響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經濟成長率, 都市化率, 賦存自然資源 등에 追加的 影響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8].

이제 4個의 變數를 모두 감안할 때 豫想되는 外國人投資規模와 실제 導入된 外國人投資規模와를 비교하여 〈表 2〉를 만들어 보았다. 〈表 2〉는 實際外國人投資額이 豫想投資額보다 적거나 비슷하거나 많은 경우 세 그룹으로 69個 標本國家를 分類하고 있다. 同表를 보면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 알제리, 칠레, 볼리비아 그리고 일부 阿洲國家等 최근 政治的으로 불안정했던 國家들의 경우 대부분 實際投資額이 市場規模 등을 감안한 豫想投資額보다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페인, 一部 阿洲·中南美國家中에서도 안정된 國家들, 그리고 홍콩, 말레이지아, 필리핀 등 外國人投資政策이 매우 開放的인 國家들의 경우에는 實際投資額이 豫想投資額보다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實際投資額이 豫想投資額과 비슷하였다.

이와 같이 實際 投資額은 上記 4變數 이외에 政治·社會·文化的인 其他環境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經濟的 變數들로 설명될 수 있는 國別 外國人投資規模의 차이가 70% 以上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外國人投資는 國家間 政治的 安定度나 投資誘引政策에 큰 차이가 없는 한 上記 4個의 經濟變數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政策的 意味

우리 나라는 최근 外國人投資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投資對象範圍擴大, 投資比率制限緩和 등을 통하여 外國人投資를 적극 誘致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上記 統計的 分析結果에 의하면 外國人投資는 市場規模, 經濟成長率, 都市化率,

8) 〈表 1〉의 第(9)式에 있어서 各 獨立變數들의 β係數를 구하여 보면 0.566(GNP), 0.179($g6076$), 0.244(URB), 0.225(RES)로 市場規模가 역시 가장 중요한 變數로 나타나고 있다. 市場規模·成長率·都市化率 사이에는 비교적 높은 相關關係가 存在하고 있으나 各 變數들의 t 값이 상당히 높은 點, 變數들간의 相關係數가 各 變數와 從屬變數와의 相關係數보다 낮은 點 등을 감안할 때 Multi-collinearity 問題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自然資源 賦存 정도 등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與件이 비슷한 國家들간에는 社會的·制度的인 變數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들 他變數들의 영향은 補助的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해서는 投資制度의 改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合理的인 經濟全般 혹은 部門別 政策의 樹立 및 執行으로 판단된다[9].

9) Billerbeck and Yasugi(1979)도 資本輸出國 및 資本導入國의 投資政策을 檢討하는 論文에서 비슷한 結論에 도달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

Balassa, B., "American Direct Investments in the Common Market," *Banca Nazionale Lavoro Quarterly Review,* June 1966.

Bandera, V.N., and J.T. White, "U.S. Direct Investments and Domestic Markets in Europe," *Economia Internazionale,* Feb. 1968.

Billerbeck, K., and Y. Yasugi, *Privata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BRD Staff Working Paper No. 348, 1979.

Dunning, J.H.,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Oxford Economic Papers,* November 1973.

Hufbauer, G.C.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Direct Investment," in P.B. Kenen, e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Kojima, K., "A Macroeconomic Approach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73.

Krause, L.B.,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1968.

OECD, *Investing in Developing Countries,* 1978.

Reuber, G.,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73.

Root, F.R., and A.A. Ahmed, "Empirical Determinants of Manufacturing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uly 1979.

Scaperlanda, A.E., and L.J. Mauer, "The Determinants of U.S. Direct Investment in the E.E.C.,"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69.

Shapiro, D.M., "A Migration Model of U.S. Direct Investment Flows," *Economia Internazionale,* May-August 1977.

〈附表 1〉 國別 外國人投資 總殘額(1976年末 基準)

(단위 : 百萬弗)

國名	外國人投資殘額	國名	外國人投資殘額	國名	外國人投資殘額
브라질	9,100	칠레	410	이디오피아	100
인도네시아	5,100	케냐	500	말라위	100
스페인	4,710	터어키	495	토고	90
멕시코	4,650	아이보리코스트	480	니카라구아	90
베네주엘라	2,900	에쿠아도르	530	시에라리온	80
인도	2,500	알제리아	395	파라구아이	80
말레이지아	2,400	포루투갈	380	뱅글라데시	80
파나마	2,380	도미니카	350	니제르	70
아르헨티나	2,250	태국	350	하이티	70
페루	1,800	세네갈	340	수단	60
홍콩	1,480	모로코	300	스리랑카	60
필리핀	1,400	잠비아	30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60
싱가포르	1,330	가나	280	버마	55
콜롬비아	1,250	구아테말라	260	요르단	50
트리니다드·토바고	1,200	우루구아이	260	소말리아	34
한국	1,150	튀니지	245	베닌	30
나이제리아	1,000	코스타리카	250	차드	25
그리스	950	혼두라스	240	모리타니아	25
자메이카	870	이집트	190	르완다	25
리베리아	850	콩고	160	부룬디	22
이스라엘	800	엘살바도르	130	오트볼타	20
파키스탄	760	유고슬라비아	112	아프가니스탄	20
파푸아뉴기니아	750	볼리비아	110	말리	10

資料 : OECD, *Investing in Developing Countries,* 1978.

勞動生産性指數 測定上의 問題點

朴 烜 求

▷ 目 次 ◁

Ⅰ. 序 論
Ⅱ. 現行 勞動生産性指數의 測定方法
Ⅲ. 現行 測定方法의 問題點
Ⅳ. 改善方案의 提示

Ⅰ. 序 論

「生産性」이란 産出物과 이의 生産에 필요한 投入要素間의 關係를 나타내는 經濟學 用語로서 投入量에 대한 産出量의 比率에 의하여 表示되고 있다. 投入量과 産出量은 그의 定義와 測定方法에 따라 各各 相異한 값으로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그 比率에 의하여 表示되는 生産性도 서로 다른 몇개의 數値로 表示될 수 있다.

이렇게 生産性이 그 測定方法에 따라 값이 달라지고 各各의 測定値가 示唆하는 意味가 相異하여 그 解析에 있어 항상 論難의 對象이 되어 왔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또한 韓國生産性本部에서 推計하여 發表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勞動生産性指數는 그 測定方法 등에서 간혹 問題點이 指摘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具體的인 改善方案 등이 提示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在의 實情이다[1].

本稿에서 意圖하는 바는 現在 韓國生産性本部에서 사용되고 있는 勞動生産性指數의 算出方式을 檢討하여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提示하려는 데 있다.

Ⅱ. 現行 勞動生産性指數의 測定方法

現在 우리 나라에서 公式的으로 사용되는

筆者：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1) 勞動生産性의 一般的인 測定方法에 관하여는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Measuring Labour Productivity*, Geneva, 1969 참조. 韓國의 勞動生産性의 測定方法에 관하여는 Dai-Young Kim, *Constructing a Labor Productivity Index in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of the Korean Economy*, KDI Working Paper 7204, Seoul, Korea: KDI, June 1972; 韓國生産性本部, 「勞動生産性指數의 編制 및 解說」(1964)을 各各 참조.

「勞動生產性指數」는 經濟企劃院의 調査統計局에서 集計한 基礎資料를 根據로 하여 韓國生產性本部에서 算出, 公表되고 있다. 「勞動生產性指數」는 統計局에서 總 420個 品目을 代表系列로 한 每月 事業場調査[2]로부터 集計되는 生產指數와 위의 事業場調査에서 얻어지는 月中 生產職 延勤務人員數(manday per month)를 韓國生產性本部에서 指數化한 勞動投入量指數와의 比率에 의해 算出되고 있다.

產出[3] 및 勞動投入指數의 集計를 위한 事業場調査에서 產出量은 品目單位別로 調査하되, 事業體의 數가 적은 293個의 生產品目은 全數調査를 하며 事業體의 數가 많은 127個의 生產品目은 標本을 設定하여 調査하고 있다. 또한 勞動投入指數의 算出을 위한 生產職勤勞者의 月中 延勤務人員數는 產出量調査에서와 동일한 事業場에서 業種別로 調査된다. 단, 한 事業體에서 여러 品目을 生產하는 경우에는 各 品目의 生產量을 比較하여 生產量의 比率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勤務人員數의 生產量이 적은 部分을 많은 쪽에 포함시키고 있다.

勞動生產性指數 算出의 基本產業分類單位는 製造業에서 27個 小分類 및 1個中分類(其他), 鑛業에서 3個 中分類, 電氣業 全體의 大分類가 사용되고 있으며 綜合指數는 製造業에서의 8個 中分類와 大分類, 鑛業에서의 大分類, 그리고 鑛業·製造業·電氣業의 指數를 綜合한 產業總合指數가 編制된다.

產出指數의 推計에 있어서 小分類 產出指數는 品目別 產出指數의 加重平均에 의하여 얻어지며 現在의 加重値로는 1975年의 『鑛工業센서스』에 나타난 各 品目別 附加價値額의 比率이 사용된다. 또한 中分類 이상의 產出指數 역시 1975年 『鑛工業센서스』의 小分類別 附加價値額의 比率을 加重値로 한 加重平均을 사용한다.

勞動投入指數 算出의 基本產業分類單位는 製造業에서 小分類, 鑛業에서 中分類, 그리고 電氣業의 大分類이며 中分類指數 算出의 경우 小分類指數의 綜合은 小分類 勞動投入指數의 加重平均으로 求한다. 이 때의 加重値는 1975年 『鑛工業센서스』에 나타난 小分類別 生產職勤勞者數의 比率을 사용한다.

위의 方式에 의해서 推計된 各 產業分類別 產出指數와 勞動投入指數의 比率에 의하여 各 產業分類別 勞動生產性指數가 推計된다. 이 推計方式을 數式으로 定理하면 다음과 같다.

基準年度(1975年)와 該當年度의 生產量을 각각 q^o와 q^t라고 하고 m^0와 m^t를 基準年度와 該當年度의 月中延勤務人員數라 하면 各 該當年度의 產出指數 Q^t, 勞動投入指數 M^t, 勞動生產性指數 P^t는 大分類 $i\cdots$, 中分類 $ij\cdot\cdot$, 小分類$ijk\cdot$, 品目分類 $ijkl$別로 아래와 같이 表示된다.

(1) 產出指數 Q^t는,

$$Q^t_{ijk.}=\sum_l\left(\frac{v^0_{ijkl}}{\sum_l v^0_{ijkl}}\right)\cdot\frac{q^t_{ijkl}}{q^0_{ijkl}} \quad \cdots\cdots\cdots(1)$$

$$Q^t_{ij..}=\sum_k\left(\frac{v^0_{ijk.}}{\sum_k v^0_{ijk.}}\right)\cdot Q^t_{ijk.} \cdots\cdots\cdots\cdots(2)$$

$$Q^t_{i...}=\sum_j\left(\frac{v^0_{ij..}}{\sum_j v^0_{ij..}}\right)\cdot Q^t_{ij..} \quad \cdots\cdots\cdots\cdots(3)$$

$$Q^t_{....}=\sum_i\left(\frac{v^0_{i...}}{\sum_i v^0_{i...}}\right)\cdot Q^t_{i...} \quad \cdots\cdots\cdots\cdots(4)$$

2)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의 『產業生產年報』에 나타난 事業場調査를 말함.

3) 產出指數는 生產指數를 의미하며, 生產性指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產出指數라고 表記하였다.

단, v=1975年『鑛工業센서스』에 의한 附加價値額

(2) 勞動投入指數 M^t는,

$$M^t_{ijk.}=\frac{m^t_{ijk.}}{m^0_{ijk.}}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5)$$

$$M^t_{ij..}=\sum_k\left(\frac{n^0_{ijk.}}{\sum n^0_{ijk.}}\right)\cdot M^t_{ijk.} \quad \cdots\cdots\cdots(6)$$

$$M^t_{i...}=\sum_j\left(\frac{n^0_{ij.}}{\sum n^0_{ij.}}\right)\cdot M^t_{ij..} \quad \cdots\cdots\cdots(7)$$

$$M^t_{....}=\sum_i\left(\frac{n^0_{i...}}{\sum_i n^0_{i...}}\right)\cdot M^t_{i...} \quad \cdots\cdots(8)$$

단, n=1975年『鑛工業센서스』에 의한 生產職 勤勞者數

(3) 勞動生產性指數 P^t는,

$$P^t_{ijk.}=\frac{Q^t_{ijk.}}{M^t_{ijk.}}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9)$$

$$P^t_{ij..}=\frac{Q^t_{ij..}}{M^t_{ij..}}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0)$$

$$P^t_{i...}=\frac{Q^t_{i...}}{M^t_{i...}}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1)$$

$$P^t_{....}=\frac{Q^t_{....}}{M^t_{...}}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2)$$

Ⅲ. 現行 測定方法의 問題點

앞에서 記述된 生產性本部의 勞動生產性指數의 測定方法을 檢討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問題點을 指摘할 수 있다.

1. 勞動投入指數 產出의 問題點

가. 生產性이란 一般的으로 投入量과 그에 의한 產出量의 比率로 나타내며 이때 投入量의 算出方式에 따라 그 結果値로서의 生產性의 값이 달라진다.

現在 生產性本部에서 사용하는 勞動投入指數는 그 基礎單位를 月中延勤人員數로 測定하여 이 單位로는 勞動投入量의 變化를 정확히 說明하기가 어렵다. 보다 정확한 勞動投入量의 變化를 測定하기 위하여는 月中延勤務時間數를 基礎로 한 投入指數가 勞動生產性指數의 測定에 쓰여져야 하겠다.

企業의 勞動需要行態는 短期와 長期에서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企業은 短期的 生產增加를 遂行할 때 雇傭人員을 增加시키지 않고 이를 旣存 雇傭人員의 就業時間의 增加로 代替하며 그 生產增加의 趨勢가 長期的으로 나타날 때 雇傭人員을 增加시키고 동시에 勤勞者當 就業時間數를 正常化하는 것이 常例이다. 生產增加가 長期的일 때는 超過勤務手當(overtime payment)이 늘어나 就業者 1人當 勞動費用이 增加하게 되며 이 超過勤務手當의 增加가 雇傭의 增大에 따르는 採用 및 訓練의 諸費用을 超過하게 되어 雇傭人員을 增加시키는 것이 合理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短期的 生產增大가 雇傭人員의 增加를 隨伴하지 않고 就業時間의 增加로 이루어지는 경우 現在의 勞動投入指數 算出方式을 사용하면 指數上으로 相當한 勞動生產性의 向上을 意味하게 된다. 그러나, 勞動의 實際投入量이 增加되었기 때문에 勞動投入을 勤勞時間單位로 推計할 때의 勞動生產性指數는 現在의 方式에 의한 指數보다 적게 나타나게 되어 보다 合理的인 것이 될 것이다.

나, 우리 나라에서 現在 사용중인 勞動投入指數는 生產職勤勞者만을 對象으로 推計되고

있다. 非生産職勤勞者가 勞動投入指數의 集計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外國의 경우 勞動生産性指數가 傳統的으로 勤勞者의 대부분을 이루는 生産職勤動者(blue collar worker)의 賃金決定에 중요한 根據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美國의 예를 보면 勞動生産性指數의 代表的인 統計로 生産職勤勞者의 勤務時間當 生産額(output per production worker manhour)이 쓰여지고 있다[4]. 그러나, 全體勤勞者中에서 非生産職勤勞者의 比重이 漸進的으로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고 非生産職에 의한 販促活動, 企劃, 硏究와 技術開發 등의 결과로 인한 生産量의 增加 또한 看過할 수 없는 實情이다. 또한 生産職勤勞者와 非生産職勤勞者의 賃金決定의 根據가 전혀 別個의 問題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勞動投入指數의 算定에 있어 非生産職勤勞者의 勞動投入量을 포함시키는 方法을 考慮할 필요가 있다.

2. 綜合指數 編制上의 問題點

前述한 바와 같이 中分類 이상의 勞動生産性指數는 小分類 産業의 産出指數와 投入指數를 別途로 綜合하여 編制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各各의 小分類指數를 두 개의 相異한 加重値(1975年『鑛工業센서스』의 附加價値額 및 生産職勤勞者數의 比率)로 加重平均하여 中分類이상의 産出指數와 投入指數를 구하고 이 두 指數의 百分比에 의해 綜分指數를 算出하는 方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P^t = \frac{\sum(q^t/q^0)\cdot v^0}{\sum v^0} \Big/ \frac{\sum(m^t/m^0)\cdot n^0}{\sum n^0}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3)$$

여기서 q^t/q^0와 m^t/m^0는 各各 該當分類의 産出 및 投入指數이며 $v^0/\sum v^0$와 $n^0/\sum n^0$는 각각 下位分類의 該當分類에 대한 1975年『鑛工業센서스』의 附加價値額의 比率과 生産職勤勞者數의 比率이다.

위의 編制方式은 各綜合段階에 있어서 段階別 生産指數와 勞動投入指數를 각각 구하고 있으므로 産出과 雇傭에 대한 各綜合段階別 産業構造의 變化를 알 수 있다.

그러나 勞動生産性指數의 算出課程에서 分子, 分母에 各各 相異한 加重値를 사용하여 이로 인해 새로운 統計誤差를 招來할 가능성이 많다. 다음의 例[5]에서 이러한 編制方式의 問題點을 살펴보면, 小分類 a_1과 a_2의 두 産業으로 이루어지는 中分類 A産業에서 各年度別 投入과 生産이 아래의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다고 하자. 小分類 a_1과 a_2의 年度 0를 基準으로 한 年度 1의 勞動生産性指數 P_{a_1}과 P_{a_2}는 100과 120이다. 이때 中分類 A産業에서의 綜合指數를 現在 쓰이고 있는 編制方式에 의하여 算出하면,

$$P_A = \frac{\sum(q^t/q^0)\cdot v^0}{\sum v^0} \Big/ \frac{\sum(m^t/m^0)\cdot n^0}{\sum n^0}$$
$$=125 \text{ 이다.}$$

〈表 1〉 生産과 投入量의 變化(例)

産業 \ 年度	0		1	
	投 入	生 産	投 入	生 産
a_1	1	2	1	2
a_2	2	10	3	18

4) 美國의 勞動生産性指數 算出方式은 Bureau of Labour Statistics, *Techniques of Preparing Major BLS Statistical Series*, Greenwood Press, New York, pp.119~124 참조.

5) Dai-Young Kim(1972), p.15 참조.

위의 式에서 쉽게 指摘할 수 있는 矛盾點은 이러한 勞動生産性指數는 P_{a1}과 P_{a2}의 두 小分類 勞動生産性指數 100과 120의 代表値가 될 수 없다는 點이다(즉, P_{a1}, P_{a2} 두 값의 代表値 P_A는 항상 두 값 중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아야 한다 : $\min(P_{a1}, P_{a2}) < P_A < \max(P_{a1}, P_{a2})$). 이러한 離脫現象은 勞動投入指數와 産出指數를 各各 相異한 加重値로 평균하여 그 平均値의 比率로 勞動生産性指數를 綜合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離脫現象을 防止하기 위하여는 各小分類의 勞動生産性指數를 어떤 일정한 加重値를 사용하여 加重平均하는 方法이 필요하다. 中分類 이상의 勞動生産性指數를 加重平均으로 算出한다고 前題할 때 解決되어야 할 問題는 加重平均의 算出에서 어떠한 加重値를 選擇하여 사용하는가 하는 點이다. 위의 〈表 1〉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몇 개의 加重値 중에서 가장 適合한 것이 選擇되어질 수 있다.

1) 基準年度의 生産量의 比率
2) 基準年度의 勞動投入量의 比率
3) 該當年度의 生産量의 比率
4) 該當年度의 勞動投入量의 比率

여기서 첨가하여 言及해야 할 事項은 실제 生産量이 生産額(value of output)과 附加價値額(value added)의 두 가지로 測定될 수 있으므로 加重値의 選擇範圍가 基準年度와 該當年度間의 生産額 또는 附加價値額의 比率로 구분될 수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附表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生産額과 附加價値額과의 比率은 時系列上 크게 變化하지 않고 있다. 〈附表 1〉에서 1970年과 1975年을 比較할 때 製造業 全體에서 附加價値額의 生産額에 대한 比率은 各各 27.2%와 26.3%로 1975年에 약간 減少하는 趨勢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차이는 僅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製造業을 小分類別로 살펴 볼 때 몇 개의 産業을 제외하고는 그 比率이 거의 變動하고 있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生産性指數의 算定에 있어서 生産額과 附加價値額 중 어느 것을 選擇하는가는 크게 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다.

加重値의 選擇에서 追加하여 考慮되어야 할 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加重値로 該當年度의 比率(Paasche index)과 基準年度의 比率(Laspeyres index)을 各各 사용하는 경우, 每年의 加重値를 各該當年度의 生産量이나 勞動投入量의 比率로 사용하면 時系列上 連續性이 缺如되어 時系列資料가 不安定的이다. 따라서 一定 基準年度의 生産이나 勞動投入量의 比率을 몇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하면 이러한 問題點들이 解決될 수 있다. 즉, Paasche index 보다는 Laspeyres index를 사용하는 것이 指數의 時系列上의 連續性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基準年度의 比率을 一定期間 동안 連續的으로 加重値로 사용한다면 生産量의 比率과 勞動投入量의 比率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鑛業, 製造業 그리고 電氣業의 生産構造와 雇傭構造를 比較하기 위하여 〈表 2〉를 살펴보기로 하자. 1975年의 生産構造와 雇傭構造를 鑛業, 製造業 및 電氣業의 産業大分類別로 區分할 때 各各의 生産比率과 雇傭比率은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鑛業 및 製造業 各各의 中分類別生産比率과 雇傭比率의 경우에는 顯著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製造業에 있어서 食·飮料品 및 담배製造業. 化學·石

油·石炭 및 고무·플라스틱製造業 등은 높은 生產比率을 차지하나 대신 낮은 雇傭比率을 나타내며 반면에 纖維·衣服 및 가죽製品製造業 등에서는 雇傭의 比重이 生產의 比重보다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各產業別 雇傭의 比重과 生產의 比重이 相異하므로 各各의 比率을 加重値로 사용하여 勞動生產性指數를 綜合 編制하면 그 結果値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리라는 것은 明白한 사실이다. 小分類指數를 中分類指數로 綜合할 경우 加重値로 勞動投入量의 比率을 사용하면 그 意味는 中分類에서의 「單位勞動投入量當 勞動生產性」으로 解析할 수 있으며, 生產量의 比率을 사용하면 그 加重平均値의 意味는 中分類에서의 「單位生產量當 勞動生產性」으로 解析할 수 있다. 따라서 中分類에서의 勞動生產性, 즉, 中分類에서의 勞動者當의 生產性을 把握하려면 小分類 勞動生產性指數를 勞動投入量의 比率로 加重平均한 값을 사용함이 適合하다 하겠다. 〈表 3〉은 附加價値額의 比率과 生產職勤勞者數 比率을 各各 加重値로 사용하여 製造業과 產業總合의 勞動生產性指數를 綜合 編制하고 이러한 新編制方式(Summation of Ratio Method)[6]에 의한 指數 SOR_0(上位分類

〈表 2〉 生產과 雇傭構造의 比較

產業別	生產構造		雇傭構造	
	1970年基準	1975年基準	1970年基準	1975年基準
產業總合	100.00	100.00	100.00	100.00
鑛業	8.44	5.30	7.49	4.57
製造業	85.93	92.69	91.24	94.60
電氣業	5.63	2.01	1.27	0.83
鑛業	100.00	100.00	100.00	100.00
石炭鑛業	52.88	63.49	55.18	69.56
金屬鑛業	24.29	18.73	19.18	13.72
非金屬鑛業	22.83	17.78	25.64	16.72
製造業	100.00	100.00	100.00	100.00
食·飮料品 및 담배	18.52	15.19	12.65	8.79
纖維·衣服 및 가죽	20.28	25.36	33.94	38.37
製材業·나무製品 및 家具	4.04	2.78	5.53	3.57
종이·종이製品 및 印刷出版	6.22	4.52	5.22	4.39
化學·石油·石炭·고무 및 플라스틱	20.60	21.25	11.11	12.31
非金屬鑛物製品	6.52	6.27	4.69	3.68
第一次金屬	4.97	5.03	3.75	3.22
金屬製品 및 機械裝備	15.31	17.40	17.30	21.43
其他	3.54	2.21	5.81	4.24

註 : 產業總合은 製造業, 鑛業, 電氣業의 合을 意味함.
資料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韓國生產性本部 產業經濟調査室.

6) 위의 編制方式, 즉 각 小分類의 勞動生產性指數의 加重平均方式을 흔히 Summation of Ratio(*SOR*) 方式이라 한다. 이에 반해, 現在의 編制方式, 즉, 小分類의 勞動投入 및 產出의 指數가 各各 綜合되어 그 比率로 中分類의 生產性指數를 算出하는 方式을 Ratio of Summation(*ROS*) 方式이라 한다.

附加價値 總額에서 下位分類 産業의 附加價値가 차지하는 比率에 의한 加重平均) 및 SOR_n (上位分類 生産職勤勞者 總數에서 下位分類 産業의 生産職勤勞者가 차지하는 比率에 의한 加重平均)과 現在 사용중인 指數를 年度別로 比較하고 있다.

勞動生産性指數 編制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는(SOR_0 및 SOR_n · 指數 算出에서) 品目分類를 그 最低段階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品目分類別 産出指數와 勞動投入指數의 比率인 品目分類別 勞動生産性指數를 구하고 이의 加重平均으로 小分類 勞動生産性指數를 算出하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 勞動投入指數가 品目分類別로는 集計되지 않고 있으므로 〈表 3〉에 나타난 SOR_0 및 SOR_n 指數는 편의상 그 基礎資料로 生産性本部의 現行 編制方式에 의한 勞動生産性指數의 原資料를 사용하였고 따라서 小分類指數를 指數 編制의 最低段階로 하고 있다. 즉, 産出指數의 경우 統計局에서 직접 編制, 發表하고 있는 産業生産指數를 이용하고 있는 바 이는 總 420個 品目을 代表系列로 한 品目別 指數가 編制되고 있어 이 品目指數의 Laspeyres 方式에 의한 加重平均인 小分類指數를 基礎資類로 하였으며 比較 및 加重値의 基準年度를 1975年으로, 加重値[7]는 1975年의 『鑛工業센서스』에 의거 Gross 槪念의 附加價値, 즉, 減價償却費만을 포함한 附加價値額의 小分類別 合計에 대한 品目別 比率로 정하였다. 또한 勞動投入量指數는 生産性本部에서 編制한 것으로 이는 統計局이 生産指數를 編制하기 위하여 實施하고 있는 産業標本調査 중에서 小分類別 生産職從業員의 月中延勤務人員數(manday)에 대한 資料를 原資料로 이용한 것이다. 綜合指數의 加重値로는 SOR_n의 경우 1975年의 『鑛工業센서스』에 나타난 産業別 勤勞者數의 該當分類에 대한 下位分類의 比率을 사용했으며 SOR_0의 算出에는 역시 1975年 『鑛工業센서스』의 附加價値額의 小分類別 比率 또는 中分類, 大分類別 比率을 사용했다.

〈表 3〉 勞動生産性指數의 編制比較

(1975=100)

	産業總合指數			製造業指數		
	現行	SOR_n	SOR_0	現行	SOR_n	SOR_0
1972	75.5	81.3	81.0	73.9	80.7	79.9
1973	83.1	89.2	88.8	80.4	88.5	88.0
1974	90.1	91.6	91.0	89.6	91.4	90.5
19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76	111.2	111.0	112.4	107.5	111.7	113.5
1977	117.7	122.1	122.9	118.7	123.1	124.1
1978	131.2	138.7	141.8	132.9	140.4	143.9
1979	151.5	156.9	159.7	153.9	159.2	162.7

註 : 現行 勞動生産性指數는 韓國生産性本部의 資料임.
SOR_n=勞動投入量의 比率을 加重値로 使用한 勞動生産性指數.
SOR_0=附加價値額의 比率을 加重値로 使用한 勞動生産性指數.

7) 〈表 2〉의 生産과 雇傭構造 참조.

小分類指數는 製造業에서 27個이며 中分類指數는 鑛業에서 3個, 製造業에서 9個로 合計 13個이고 大分類指數는 鑛業, 製造業, 電氣業의 3個로 構成된다. 이들 指數中 27個 製造業 小分類指數와 3個 鑛業 및 1個 製造業(其他) 中分類指數, 그리고 電氣業의 大分類指數는 原資料에서 직접 編制되는 個別指數에 該當되며 나머지 指數는 個別指數를 Laspeyres式에 의거 加重平均한 綜合指數에 該當한다. 이들 指數의 計算作業은 우선 個別指數의 경우 1975年을 基準年度로 하여 月別指數를 算出한 후 3個月間의 平均에 의하여 每分期別指數를 作成하고 이것을 産業中分類, 大分類 그리고 産業總合의 段階別로 加重平均함으로써 綜合指數를 編制하여 이중 製造業과 産業總合의 年平均値를 낸 것이다. 이러한 新編制方式을 數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OR_0=\frac{\sum\left(v^0\cdot\frac{q^t/q^0}{m^t/m^0}\right)}{\sum v^0}\quad\cdots\cdots\cdots(14)$$

$$SOR_n=\frac{\sum\left(n^0\cdot\frac{q^t/q^0}{m^t/m^0}\right)}{\sum n^0}\quad\cdots\cdots\cdots(15)$$

〈表 3〉에 나타난 SOR_0 및 SOR_n 指數는 前述한 바와 같이 資料의 制約으로 品目單位別 勞動生産性의 加重平均에 의해 集計된 指數가 아니므로 指數의 信賴度에 약간의 問題가 있다고 하겠다. 〈表 3〉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産業總合指數의 경우 세 가지 指數의 1972~79年 사이의 年平均增加率은 現行指數의 경우 10.5%, SOR_n 指數의 경우 9.8%, 그리고 SOR_0 指數의 경우 10.2%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製造業만을 살펴 볼 때, 세 가지 指數의 同期間의 年平均 增加率은 現行指數의 경우 11.0%, SOR_n 指數의 경우 10.2%, 그리고 SOR_0 指數의 경우 10.7%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SOR_n 指數와 現行指數를 비교할 때, 그 增加率이 産業總合과 製造業에서 모두 現行指數에서 높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附表 2〉와 〈附表 3〉에는 SOR_0 및 SOR_n 方式에 의해서 새로 編制된 中分類 이상의 産業別·分期別 勞動生産性指數가 提示되어 있다. 또한 〈附表 4〉에는 現行의 勞動生産性指數가 參考로 提示되어 있다.

附表에 나타난 製造業 中分類의 勞動生産性指數는 編制方式에 따라 몇 産業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纖維·衣服 및 가죽製品製造業과 第1次 金屬製品製造業 및 機械裝備製造業 등에서는 編制方式에 따라 그 指數가 크게 變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食飮料品 및 담배製造業, 나무製品製造業, 종이製品 및 印刷出版業과 石油, 化學, 고무, 플라스틱 製造業의 경우에는 編制方式에 따라 그 指數가 몇몇 時點에서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Ⅳ. 改善方案의 提示

現在 生産性本部에서 集計되고 있는 勞動生産性指數의 算出方式과 그에 따른 問題點들이 위에서 檢討되었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是正하여 勞動生産性指數의 質的向上을 꾀하기 위해 몇가지 改善策을 다음에서 提示하고자 한다.

1. 勞動投入量의 算出

前述한 바와 같이 勞動投入量 算出의 基礎

單位로 生產職 月中延勤務人員數를 사용하여 惹起되는 問題點이 指摘되었는바 앞으로는 勞動投入量 算出의 基礎單位로 月中延勤務時間數를 使用하여 勞動投入量의 推計에 보다 더 正確性을 기해야 하겠다. 現在 勞動廳에서 公表하고 있는 勤務時間數는 自計式에 의한 集計이고 또한 勤勞基準法에 의한 制約 등으로 그 信賴度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믿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勤勞時間數의 調査에 있어서도 被調査者의 理解不足, 被調査者의 勤務時間數에 대한 測定能力의 不備 등의 制約으로 資料의 信憑性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勤勞時間數 資料의 信賴度를 높이기 위해 勤務時間에 대한 명확한 定義, 調査基準의 設定, 被調査者들에 대한 敎育 등의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枝葉的인 問題이나 統計集計上 月中延勤務時間數는 實際作業時間數(Actual work hours)와 賃金支給時間數(Hours paid for)의 두 가지 槪念으로 推計될 수 있으며 흔히 有給休暇等으로 두 數値가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그러나 勞動投入量의 變化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는 實際作業時間數에 의하여 勤務時間數가 算定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指摘되어야 할 點은, 現在로는 生產職勤勞者만이 勞動投入量의 推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補完하여 非生產職勤勞者도 投入量의 集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勞動投入量을 두 가지 方式으로 集計하여 生產職勤勞者의 勤勞時間數와 全體勤勞者의 總勤勞時間數를 竝行하여 사용함으로써 各各에 相應하는 勞動生產性指數를 算定하는 것이 現在와 같이 單一指數만을 使用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하겠다.

2. 品目別 勞動生產性指數의 必要性

現行 勞動生產性指數의 算出은 韓國標準產業分類에 의한 小分類를 最低段階로 하였기 때문에 現在로는 品目別 勞動生產性指數가 發表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國際間의 勞動生產性 또는 勞動生產性의 時系列上의 變動等의 實際的인 指數 使用에 있어 品目別 指數가 필요한 경우가 흔히 있다. 따라서, 勞動生產性指數 算出의 基礎單位를 品目別로 設定하여 指數를 推計 公表하면 指數의 實使用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品目別 指數의 推計에 있어 어떤 경우에는 몇가지 品目이 한 工程에서 生產되어 1個品目의 生產에 投入되는 勞動量을 정확하게 算出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解決하기 위한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指數編制方式의 改編

前述한 바와 같이 現在 쓰이고 있는 產業中分類 이상의 勞動生產性 指數의 綜合編制方式은 投入量指數와 產出量指數에 各各 相異한 加重値를 사용하여 上位分類綜合指數의 離脫現象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離脫現象을 防止하기 위하여 上位分類의 勞動生產性指數의 綜合編制에 있어 下位分類의 勞動生產性을 上位分類 勤勞者 總數에서 各下位分類產業의 勤勞者가 차지하는 比率에 의해 加重平均한 값으로 上位分類 指數를 求하는 方式(즉, SOR_n 方式)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品目單位別 勞動生產性 指數가 最低單位로 算定되면 이 品目單位別 指數를 基礎로

하여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SOR_n 編制方式에 의하여 小分類, 中分類, 大分類 및 產業總合의 各 段階에서의 勞動生產性指數가 算定되어야 할 것이다.

4. 總生產性指數의 必要性

「生產性의 變化」는 두 時點에서 一定量의 生產要素를 投入하였을 때 그 生產課程에서의 產出量이 變化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產出量의 增加 또는 減少는 生產技術의 變化, 規模의 經濟, 經營方式의 變化, 敎育, 訓練 및 經驗 蓄積으로 인한 勤勞者 質의 變化等의 여러 가지 複合的인 要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의 生產性의 變化를 흔히 生產過程에 있어서의 投入要素의 生產的 能率(productive efficiency)의 變化라고 일컫는다[8]. 그러나 生產的 能率이라는 의미에서의 生產性은 單一要素生產性, 즉, 單一投入要素의 投入量과 產出量의 比率로써 測定하기에는 不適合하다. 이를테면 勞動生產性은 勞動의 投入量과 產出量의 比率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投入要素인 資本과의 結合 또는 代替關係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單一要素生產性, 특히 이의 代表的 指標인 勞動生產性指數로는 生產的 能率이라는 의미의 生產性을 測定하는데 不適合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投入要素全體의 投入量과 產出量을 比較해서 나타나는 總要素生產性의 導入이 필요하다.

現在 우리 나라에서 總要素生產性에 대한 檢討와 測定은 몇몇 硏究機關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9]. 그러나 總要素生產性은 生產過程 全般의 効率度를 나타내는 중요한 指數이므로 일정한 體系的인 方法에 의해서 定期的으로 測定 檢討됨이 바람직하다 하겠다[10]. 따라서 어느 特定硏究機關에서 그 指數의 作成方法에 대한 硏究와 定期的인 指數算定을 맡아 遂行하면 앞으로 여러 部門의 經濟問題 硏究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5. 國民所得計定에서의 生產性指數

現在 韓國生產性本部에서 公表되고 있는 勞動生產性指數中에서 產業小分類別 生產性指數는 投入量의 測定에 대한 問題外에는 그 信賴度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綜合指數의 경우에는 編制方式에 있어서의 問題點, 標本調査에 있어서의 代表性의 問題點等으로 그 信賴度가 問題가 되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補完하는 方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國民所得計定의 附加價値를 사용한 勞動生產性의 算定이다. 各 產業에서의 生產量을 그의 附加價値額으로 測定하고 勞動投入量을 經濟活動人口調査에 의한 各 產業別 就業者數로 測定하여 產業別 就業者當 附加價値額을 計算하여 이를 사용하여 勞動生產性의 變化를 測定하는 方法을 말한다[11]. 이 때의 就業者는 被雇傭者 이외에도 雇傭者나 自營業主 또는 無給家族從事者까지 포함하여 產業別 全體勞動力의 推定이 가능하나 반면에 勤勞時間等의 實際的 勞動投入量의 測定이 어려운

8) J.W. Kendrick, *Productivity Trends in the 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61.

9) 예로, 金迪敎, 孫讚鉉, 「우리 나라 製造業의 生產性分析」, 韓國開發硏究院, 1979.

10) 美國의 경우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에서 總生產性指數를 推定하고 있음.

11) 이러한 方式은 金光錫, 『韓國工業化 패턴과 그 要因』(1980) 및 金秀坤, 『賃金과 勞使關係』(1978) 등에서 言及되어 있음.

點이 위의 方式의 弱點이라 하겠다. 또한 위의 方式에서는 附加價値額과 就業者數가 서로 다른 根據에 의해서 구해지고 있다는 點이 문제가 될 수 있다. 〈附表 5〉에 製造業 全體의 分期別 就業者當 附加價値額이 1970年부터 1979年에 걸쳐 指數로 算定되어 있다.

〈附表 1〉 製造業의 生產額에 대한 附加價値額의 比率(1975年 價格)

(단위 : 100萬원, %)

	1 9 7 0			1 9 7 5		
	附加價値(v)	生產額 (0)	v/0	附加價値	生 產 額	v/0
製造業	1,135,630	4,176,668	27.2	2,590,354	9,842,826	26.3
食料品	142,717	682,574	20.1	212,824	1,082,692	19.7
飮料品	89,473	189,200	47.3	169,970	359,450	47.3
담배	111,196	161,083	69.0	201,753	293,520	68.7
纖維	119,871	551,637	21.7	332,880	1,531,731	21.7
衣服	57,050	202,810	28.1	172,544	613,411	28.1
가죽 및 가죽製品	4,366	17,554	24.9	29,270	117,684	24.9
가죽신	4,428	12,937	34.2	16,501	48,201	34.2
製材·콜크 및 나무製品	23,599	122,404	19.3	43,241	224,228	19.3
家具 및 建具	6,676	19,492	34.2	7,468	21,806	34.2
종이 및 종이 製品	28,003	103,791	27.0	55,035	203,967	27.0
印刷 및 出版	29,020	80,455	36.1	47,804	132,530	36.1
工業用化學製品	52,144	226,568	23.0	195.575	827,893	23.6
其他化學製品	34,578	112,817	30.6	90,101	293,970	30.6
石油精製業	158,283	637,980	24.8	223,349	900,265	24.8
石油·石炭의 雜製品	12,729	80,008	15.9	18,044	113,443	15.9
고무製品	11,679	55,088	21.2	38,862	183,269	21.2
其他플라스틱製品	13,878	50,373	27.6	28,752	104,372	27.5
陶磁器 및 粘土製品	2,999	7,407	40.5	4,554	11,246	40.5
유리 및 유리製品	9,474	24,583	38.5	21,864	56,738	38.5
其他 非金屬鑛物 製品	51,251	141,266	36.3	99,198	273,447	36.3
第1次 鐵鋼	19,836	168,963	11.7	85,267	726,362	11.7
第1次 非鐵金屬	7,057	30,366	23.2	23,009	99,020	23.2
金屬製品	14,258	62,784	22.7	36,868	162,331	22.7
機械	14,604	46,390	31.5	54,988	174,701	31.5
電氣機器	34,451	116,232	29.6	188,360	635,568	29.6
輸送用機器	47,807	164,681	29.0	123,301	424,712	29.0
科學計測機器	3,108	12,884	24.1	15,260	63,267	24.1
其他	31,095	94,341	33.0	53,712	162,942	33.0

資料 :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8.

〈附表 2〉 附加價値額의 比率을 加重値로 使用한 勞動生産性指數

(1975=100)

分期		産業總合	鑛業	製造業	電氣業	石炭鑛業	金屬鑛業	非金屬鑛石	飲食料品 및 담배	纖維·衣服 및 가죽	木製品	紙 및 製品 印刷 出版	化學·石油·플라스틱·고무	非金屬鑛物	第1次金屬	金屬製品·機械·裝備	其他
1972	1	74.4	96.1	73.2	76.1	99.3	110.1	70.1	82.6	70.2	94.5	89.9	84.7	80.1	57.2	52.2	62.6
	2	81.7	94.6	81.2	75.3	89.5	122.7	83.2	97.2	78.7	108.5	85.4	91.8	99.1	56.6	53.8	70.8
	3	81.3	84.1	81.2	79.7	79.4	104.5	79.5	87.7	87.5	108.8	80.7	89.5	93.5	62.5	55.1	66.8
	4	85.2	105.8	84.1	88.7	97.6	139.6	99.6	84.5	85.7	116.3	93.5	95.0	111.0	73.4	55.2	71.4
1973	1	84.4	98.3	83.7	85.9	93.2	114.9	98.9	87.2	85.8	102.7	95.7	96.1	89.2	63.8	62.1	70.2
	2	89.1	102.4	88.6	86.4	94.5	137.4	93.8	100.9	86.7	102.6	101.2	95.4	101.4	63.9	70.2	77.9
	3	89.5	104.4	88.8	91.9	99.2	142.0	83.5	93.1	87.4	98.4	103.8	94.9	100.1	74.3	77.0	64.1
	4	92.1	109.7	91.0	98.2	109.1	133.7	86.5	92.5	88.7	94.0	105.5	98.7	100.7	72.4	83.2	72.0
1974	1	87.8	104.1	86.7	100.4	105.8	122.7	78.1	87.4	83.0	94.0	109.8	88.9	88.5	83.7	83.3	76.7
	2	91.5	100.7	91.1	93.3	100.2	112.0	90.8	93.4	87.9	89.6	106.5	88.3	94.6	98.2	91.3	82.7
	3	90.7	94.1	90.6	93.2	93.8	100.8	87.6	96.7	83.6	95.0	98.3	90.0	97.8	93.9	90.7	86.0
	4	93.9	99.6	93.6	99.2	101.1	98.1	95.4	99.4	88.1	86.1	104.3	97.3	102.3	93.0	88.2	89.9
1975	1	95.4	99.1	95.2	102.2	101.5	96.9	92.3	104.3	91.6	87.4	103.0	97.4	97.2	93.5	91.6	92.1
	2	99.2	96.7	99.7	95.3	96.4	94.9	100.2	103.0	99.6	101.7	94.8	96.3	103.0	92.9	103.2	107.5
	3	99.9	100.1	100.1	99.0	100.0	101.7	99.6	90.8	101.8	105.2	99.0	103.6	96.5	102.6	102.8	103.2
	4	105.2	104.1	105.6	104.6	102.4	106.5	107.8	101.8	106.7	107.3	105.3	102.4	103.0	110.9	112.7	97.2
1976	1	108.0	96.6	108.7	108.1	90.3	103.1	112.6	103.0	109.9	107.8	107.6	109.6	92.9	107.1	119.9	102.7
	2	114.0	101.6	115.0	104.7	90.2	116.2	127.4	118.8	111.3	117.7	103.3	118.8	112.1	106.6	123.1	97.7
	3	112.9	97.2	114.8	109.6	87.7	114.4	112.8	111.4	112.6	107.5	111.6	115.0	112.5	132.0	119.5	88.5
	4	114.5	102.7	115.4	114.3	92.4	118.7	122.6	116.2	112.2	110.9	119.6	117.2	116.9	131.8	115.2	102.6
1977	1	116.0	98.1	117.2	121.2	93.8	110.0	100.9	120.9	111.0	107.1	113.0	127.5	99.5	120.1	117.9	130.4
	2	121.8	100.9	123.0	127.0	93.0	116.4	113.0	138.2	115.8	121.8	121.5	118.6	112.3	120.1	130.0	129.4
	3	124.2	104.1	125.5	128.8	93.4	121.8	123.9	145.8	118.5	118.5	121.2	127.0	110.3	116.4	120.7	171.4
	4	129.4	109.3	130.6	134.3	100.8	119.0	129.4	140.2	120.6	120.6	131.0	136.9	119.8	123.4	132.3	160.8
1978	1	133.0	100.2	134.7	139.3	94.8	112.0	106.8	137.6	118.4	114.2	132.6	162.2	122.9	123.9	133.8	133.2
	2	141.0	101.0	143.2	145.3	94.9	116.6	106.1	154.9	127.5	123.2	136.8	160.5	135.1	117.6	150.6	138.9
	3	142.1	98.3	144.4	151.0	94.1	117.4	93.4	162.1	128.3	123.1	137.7	171.2	128.8	113.7	138.6	149.8
	4	151.0	107.8	153.3	155.0	103.2	120.5	111.2	165.7	132.6	129.3	147.7	185.5	141.9	124.6	148.6	172.7
1979	1	153.7	108.0	156.5	148.8	99.5	128.0	115.7	167.3	136.2	122.4	160.0	192.4	129.7	148.3	149.3	156.0
	2	160.0	109.7	163.2	145.0	96.2	135.9	130.6	183.0	147.5	123.3	147.2	188.3	133.3	146.2	164.3	162.5
	3	159.7	108.5	162.8	149.1	94.9	125.5	139.0	176.6	145.9	130.0	152.7	193.0	136.3	132.9	162.7	182.7
	4	165.5	118.4	168.4	154.2	107.4	116.5	160.0	171.6	143.8	124.7	164.0	206.2	150.7	157.9	167.5	213.0

〈附表 3〉 勞動投入量의 比率을 加重値로 使用한 勞動生産性指數

(1975=100)

分期		産業總合	鑛業	製造業	電氣業	石炭鑛業	金屬鑛業	非金屬鑛業	飮食料品 및 담배	纖維·衣服 및 가죽	木製品	紙製品 및 印刷·出版	化學·石油·플라스틱	非金屬鑛物	第1次金屬	金屬製品·機械·裝備	其他
1972	1	74.5	95.9	73.5	76.1	99.3	110.1	70.1	93.2	69.6	90.5	90.2	96.9	82.1	57.6	53.4	62.6
	2	81.6	93.0	81.1	75.3	89.5	122.7	83.2	114.9	78.8	101.3	85.6	102.6	98.4	56.7	57.8	70.8
	3	82.5	82.8	82.4	79.7	79.4	104.5	79.5	96.9	87.1	103.1	80.8	103.1	96.1	63.0	57.6	66.8
	4	86.5	103.8	85.7	88.7	97.6	139.6	99.6	92.5	85.9	111.2	93.7	103.4	108.6	74.0	67.2	71.4
1973	1	85.5	97.1	85.0	85.9	93.2	114.9	98.9	97.0	86.3	97.7	95.9	106.9	90.2	64.2	65.6	70.2
	2	89.8	100.3	89.3	86.4	94.5	137.4	93.8	113.6	87.6	96.1	101.1	106.9	102.9	63.7	72.2	77.9
	3	89.0	102.5	88.3	91.9	99.2	142.0	83.5	94.7	89.1	90.9	93.8	107.1	102.6	73.9	76.7	64.1
	4	92.5	108.7	91.7	98.2	109.1	133.7	86.5	97.7	91.6	88.6	105.8	106.1	103.9	71.8	83.4	72.0
1974	1	91.7	103.5	91.1	100.4	105.8	122.7	78.1	89.9	84.3	91.7	110.1	100.4	90.4	83.2	85.4	76.7
	2	92.2	100.3	91.8	93.3	100.2	112.0	90.8	94.9	89.3	87.8	106.8	97.0	93.1	97.5	91.2	82.7
	3	90.2	93.6	90.8	93.2	93.8	100.8	87.6	95.9	85.2	92.5	98.3	94.4	97.7	93.4	90.9	86.0
	4	92.1	99.8	91.7	99.2	101.1	98.1	95.4	100.6	89.2	86.3	104.3	98.0	102.8	92.4	85.5	89.9
1975	1	94.0	99.3	93.8	102.2	101.5	96.9	92.3	106.1	92.7	88.9	102.9	96.9	97.6	93.8	87.7	92.1
	2	99.6	96.9	99.8	95.3	96.4	94.9	100.2	101.6	99.7	99.0	94.8	98.2	101.2	92.9	100.4	107.5
	3	100.3	100.3	100.3	99.0	100.0	101.7	99.6	89.0	100.8	104.5	99.1	101.3	97.4	102.3	102.0	103.2
	4	106.1	103.8	106.2	104.6	102.4	106.5	107.8	102.9	106.6	109.4	105.3	103.0	103.0	110.9	110.0	97.2
1976	1	107.5	95.7	108.0	108.1	90.3	103.1	112.6	102.5	107.4	112.9	107.7	106.8	93.0	107.6	115.4	102.7
	2	111.0	99.9	111.5	104.7	90.2	116.2	127.4	124.3	107.6	120.0	103.1	108.5	112.1	106.5	119.2	97.7
	3	112.1	95.6	112.9	109.6	87.7	114.4	112.8	113.7	113.1	106.5	111.6	109.0	114.6	131.3	117.6	88.5
	4	113.5	101.1	114.2	114.3	92.4	118.7	122.6	118.4	111.8	108.0	119.7	113.5	119.7	131.7	115.2	102.6
1977	1	114.5	97.2	115.3	121.2	93.8	110.0	100.9	123.9	109.4	106.2	113.2	124.4	102.6	120.4	117.3	130.4
	2	120.6	99.6	121.5	127.4	93.0	116.4	113.0	139.6	114.8	125.1	102.7	117.2	114.4	121.0	131.4	129.4
	3	123.9	102.4	124.9	128.8	93.4	121.8	123.9	143.7	119.1	113.1	121.4	125.6	112.6	117.3	124.1	171.4
	4	129.5	108.0	130.5	134.3	100.8	119.0	129.4	144.7	122.2	122.3	131.3	128.5	123.3	124.1	138.2	160.8
1978	1	130.0	99.2	131.4	139.3	94.7	112.0	106.8	140.1	120.6	114.2	132.8	151.5	125.6	124.7	140.6	133.1
	2	139.4	99.7	141.2	145.3	94.9	116.6	106.1	154.8	129.4	121.9	137.0	153.4	136.6	118.3	158.3	138.9
	3	137.7	97.1	139.5	151.0	94.0	117.4	93.4	154.0	130.6	110.6	138.1	159.7	131.5	115.0	146.1	149.8
	4	147.5	106.9	149.4	155.0	103.2	120.5	111.2	164.4	136.1	126.0	148.2	173.9	143.3	125.8	157.0	172.8
1979	1	149.4	105.7	151.6	148.8	98.9	128.0	115.7	170.0	139.2	126.0	160.6	180.1	132.2	148.9	154.8	156.0
	2	157.1	107.3	159.6	145.0	96.2	135.9	130.6	183.6	150.7	123.4	147.5	178.1	134.7	147.4	169.6	162.5
	3	158.1	106.4	160.7	149.1	94.9	125.5	139.0	184.8	148.7	128.1	153.1	188.1	139.6	133.2	166.9	182.7
	4	162.8	117.5	165.0	154.2	107.4	116.5	160.0	187.6	146.5	126.2	164.7	195.8	153.5	159.4	171.7	213.0

〈附表 4〉 現行 勞動生産性指數

(1975=100)

分 期		産業總合	鑛業	製造業	電氣業	石炭鑛業	金屬鑛業	非金屬鑛業	飲料·食品 및 담배	纖維·衣服 및 가죽	木製品	紙 및 製品·印刷·出版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非金屬鑛物	第1次金屬	金屬製品·機械·裝備	其他
1972	1	70.2	93.3	68.1	76.1	99.3	110.1	70.1	88.5	64.7	92.9	85.7	98.4	76.4	55.1	42.8	62.6
	2	76.6	92.9	75.3	75.3	89.5	122.7	83.2	79.3	72.8	105.6	83.0	103.2	97.1	55.5	47.7	70.8
	3	75.4	82.3	74.6	79.7	79.4	104.5	79.5	93.9	80.8	106.7	98.8	99.2	94.6	60.4	45.8	66.8
	4	79.8	103.0	78.1	88.7	97.6	139.6	99.6	88.0	79.4	113.9	89.7	103.9	111.2	71.0	55.4	71.4
1973	1	78.1	96.6	76.4	85.9	93.2	114.9	98.9	90.9	79.8	101.0	91.6	107.5	86.6	61.6	51.0	70.2
	2	82.9	101.4	81.7	86.4	94.5	137.4	93.8	104.9	81.1	101.3	86.8	105.3	102.6	63.1	60.4	77.9
	3	84.2	102.8	83.0	91.7	99.2	142.0	83.5	93.4	82.7	97.8	94.9	114.3	100.9	74.6	71.0	64.1
	4	87.3	107.3	86.0	98.2	109.1	133.7	86.5	93.4	85.3	92.7	103.1	104.9	100.1	73.7	75.9	72.0
1974	1	84.5	101.4	83.3	100.4	105.8	122.7	78.1	89.3	79.4	93.9	106.5	95.8	87.0	86.2	76.2	76.7
	2	90.7	100.9	90.9	93.3	100.2	112.0	90.8	95.6	85.1	90.3	104.5	95.8	94.1	101.4	100.1	82.7
	3	90.7	94.5	90.4	93.2	93.8	100.8	87.6	98.2	81.3	95.7	99.1	94.5	99.2	96.6	85.8	86.0
	4	94.4	99.6	93.9	99.2	101.1	98.1	95.4	99.1	86.6	85.9	105.0	98.1	102.0	95.9	87.5	89.9
1975	1	96.1	97.5	95.8	101.2	101.5	96.9	92.3	106.8	89.7	86.9	103.4	99.2	95.8	92.7	93.7	92.1
	2	99.5	97.4	99.8	95.3	96.4	94.9	100.2	101.3	98.4	100.8	95.9	99.3	104.5	92.8	100.2	107.5
	3	98.4	100.9	98.2	99.0	100.0	101.7	99.6	92.6	101.0	105.2	96.1	101.9	97.5	103.6	96.4	103.2
	4	105.4	104.1	105.5	104.6	102.4	106.5	107.8	100.4	108.4	107.3	105.1	99.6	102.2	110.9	109.7	97.2
1976	1	108.1	96.2	108.6	108.1	90.3	103.1	112.6	101.6	110.3	107.8	107.0	105.2	91.2	104.9	116.5	102.7
	2	112.1	102.9	113.0	104.7	90.2	116.2	127.4	115.5	110.0	117.7	107.4	115.6	113.4	106.8	118.2	97.7
	3	112.6	99.0	113.5	109.6	87.7	114.4	112.8	109.0	113.7	108.2	115.3	108.8	113.1	134.7	112.0	88.5
	4	112.1	105.1	112.5	114.3	92.4	118.7	122.6	112.8	113.0	111.8	121.0	104.2	116.6	132.6	105.8	102.6
1977	1	110.6	98.2	111.4	121.2	93.8	110.0	100.9	115.4	109.6	109.4	112.7	110.9	98.8	120.2	113.7	130.4
	2	117.7	101.7	118.9	127.4	93.0	116.4	113.0	128.7	114.8	123.0	121.6	110.4	113.1	119.9	126.7	129.4
	3	119.0	104.7	120.0	128.8	93.4	121.8	123.9	135.2	117.2	114.5	121.8	115.7	110.9	116.2	118.7	171.4
	4	123.5	110.1	124.5	134.3	100.8	119.0	129.4	132.1	119.8	122.4	129.0	118.3	119.2	123.3	128.9	160.8
1978	1	123.2	100.3	124.6	139.3	94.7	112.0	106.8	128.7	118.2	107.5	130.4	128.2	120.0	123.7	133.0	133.1
	2	131.3	101.2	133.1	145.3	94.9	116.6	106.1	140.8	126.3	117.2	134.6	126.2	133.9	117.6	149.0	138.9
	3	131.6	97.8	133.5	151.0	94.0	117.4	93.4	145.1	129.2	116.3	134.8	132.8	128.3	113.4	138.6	149.8
	4	138.8	107.1	140.6	155.0	103.2	120.5	111.2	150.0	133.2	120.2	143.8	140.9	140.7	124.2	148.6	172.8
1979	1	143.8	106.2	145.9	148.8	98.9	128.0	115.7	153.1	137.4	117.7	155.1	147.2	125.0	148.1	150.2	156.0
	2	151.3	107.0	153.9	145.0	96.2	135.9	130.6	164.1	148.4	117.1	144.7	145.5	130.5	145.6	165.7	162.5
	3	153.4	107.0	156.0	149.1	94.9	125.5	139.0	166.2	147.3	121.1	147.9	157.4	132.9	133.2	160.8	182.7
	4	157.4	116.9	159.7	154.2	107.4	116.5	160.0	168.4	143.4	117.2	157.2	160.3	143.7	157.6	165.5	213.0

資料：韓國生産性本部,「勞動生産性指數」1974년 1/4분기～1979년 4/4분기.

〈附表 5〉 製造業의 就業者當 附加價値額에 의한 勞動生産性指數

	附 加 價 値 額(百萬원)				勞動 生産性 指數(1975=100)			
	1/4 分期	2/4 分期	3/4 分期	4/4 分期	1/4 分期	2/4 分期	3/4 分期	4/4 分期
1970	238,566	279,611	289,624	327,829	65.5	89.8	78.8	77.7
1971	299,634	344,976	348,218	356,596	74.7	106.4	90.1	89.3
1972	339,704	379,359	385,020	435,105	83.2	102.6	88.1	89.9
1973	430,711	485,889	505,927	565,234	93.0	101.1	93.9	94.0
1974	546,095	593,858	571,039	590,133	101.0	106.8	96.2	87.8
1975	583,457	636,379	654,634	715,884	92.9	106.7	98.1	102.6
1976	713,086	815,943	812,806	834,809	101.3	112.0	97.4	94.9
1977	792,353	913,113	928,555	999,563	98.6	120.6	110.6	112.9
1978	967,813	1,105,128	1,113,364	1,200,611	109.8	130.1	125.1	130.2
1979	1,158,105	1,243,537	1,200,571	1,224,558	123.0	137.7	132.0	133.4

註 : 本指數는 韓國銀行의 製造業의 附加價値額에 대한 資料와 經濟企劃院의 經濟活動人口年報의 就業者數를 75년을 基準으로 各各 指數化하여 그 比率로 구함.

▷ 參 考 文 獻 ◁

金光錫,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 36, 1980.

金秀坤, 『賃金과 勞使關係』,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 19, 1978.

金迪敎, 孫讚鉉, 『우리 나라 製造業의 生産性分析』, 韓國開發硏究院, 1979.

韓國生産性本部, 「勞動生産性 指數의 編制 및 解說」, 1964.

Kim Dai-young, "Constructing a Labour Productivity Index in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of the Korean Economy," KDI Working Paper 7204, June 1972.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Measuring Labour Productivity*, Geneva, 1969.

Bureau of Labour Statistics, *Techniques of Preparing Major BLS Statistical Series*, New York; Greenwood Press, 1969.

Kendrick, J.W., *Productivity Trends in the U.S.*, Princeton, P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韓國 社會福祉서비스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金 東 炫

▷ 目 次 ◁

Ⅰ. 概 觀
Ⅱ. 福祉서비스의 現況과 問題點
Ⅲ.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Ⅰ. 概 觀

우리 나라는 지난 4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 遂行過程에서 年平均 約 10%에 달하는 成長率과 廣範한 經濟構造의 變化를 經驗하였는데 이와 같은 變化는 近代化와 發展이라는 側面에서 큰 意義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開發의 目標가 全般的인 國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 生活의 質을 높이는 「衡平的인 成長과 發展」(equitable growth and development)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開發政策은 많은 社會·經濟的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筆者 : 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韓國의 社會福祉 서비스 政策의 始初는 1945年 解放 이후 美軍政時부터이며 1950年까지는 混亂期로 特異할 만한 事業은 없었으나 1945年 10月에 公布된 美軍政法令에 依據하여 朝鮮總督府의 衛生課가 保健厚生部로 名稱이 變更되면서 旣存의 衛生業務外에 公共救助, 兒童의 厚生 및 保護, 住宅事業 등을 總括하였다. 當時 美軍政의 消極的이며 無計劃的인 政策으로 不充實한 民間救護施設과 外國慈善機關의 亂立, 行政上의 調整未洽, 專門性의 缺如 등으로 많은 問題點을 惹起시켰다. 1951年부터 1960年까지의 時期는 戰後救護期로 急增된 戰爭孤兒, 未亡人 등 戰後 要保護對象者에 대한 收容救護의 必要性에 따라 많은 福祉施設이 建立되었고 UN 및 外國 民間援助活動이 活性化되어 外援團體는 77個로 增加하였다.

1961年부터 1970年까지는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制度確立期로 볼 수 있는데 1961年에 生活保護法과 兒童福利法, 그리고 淪落行爲防止法이, 1970年에 社會福祉事業法이 各各 制定

되었다. 여기서 社會福祉事業이란 첫째, 生活保護法에 의한 各種 保護事業 및 福祉施設의 運營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 둘째, 兒童福利法에 의한 各種 福祉事業 및 福祉施設의 運營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 세째, 淪落行爲防止法에 의한 各種 善導事業 및 福祉施設의 運營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 끝으로 社會福祉 相談, 災害救護, 浮浪人 善導, 職業輔導, 老人休養, 隣保無料宿泊 등 各種 福祉事業 및 福祉施設의 運營 등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뜻한다.

한편 1971年 이후는 經濟의 高度成長과 外援의 相對的인 減縮으로 社會福祉事業은 保護水準의 向上을 위한 政府의 積極的 支援이 要請되고 있던 時期로 볼 수 있겠다.

社會福祉 서비스事業은 特殊한 問題를 지니고 있는 不遇한 사람들에게 問題를 解決해 줌으로써 正常的인 社會人으로 權利와 義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回復시켜 주는 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社會福祉 서비스事業은 社會保障制度의 餘他部門인 社會保險이나 公的扶助와는 本質的으로 다른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福祉 서비스의 對象人口階層은 주로 貧困한 사람들로서 疾病家口, 母子家口, 老齡家口, 心身障碍者 家口들이 되며, 事業에 所要되는 主要한 資源으로는 福祉施設과 專門要員이 있다. 여기서 社會福祉施設이란 一般的으로 社會福祉 서비스對象者들의 保護, 治療, 訓練, 再活, 救濟 등을 目的으로 設置된 場所를 意味한다, 各種 社會福祉 서비스는 이러한 施設을 媒餘로 專門家에 의해서 傳達되는 것인데 施設의 運營主體에 따라 公·私로 구분된다.

本論文의 目的은 우리나라 社會福祉 서비스 政策의 改善을 위하여 現行 制度의 實態와 問題點을 事業別(兒童, 老人, 婦女 및 心身障碍者 福祉)로 分析·檢討하고 앞으로 우리가 追求해야 할 政策課題와 改善方向을 定立하는 데 있다.

Ⅱ. 福祉서비스의 現況과 問題點

우리나라 社會福祉 서비스는 韓國動亂 이래 社會的 需要가 急增하게 됨에 따라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生活保護法, 兒童福利法 및 淪落行爲防止法 등이 制定되었고 1970年代 初에는 社會福祉事業法이 制定되어 이들을 根據하여 現在까지 施行되어 오고 있으나 이 部門에 投入되고 있는 政府의 財政規模는 아직 微微

〈表 1〉 社會福祉事業 豫算의 推移

(단위 : 100萬원)

	G N P (10億원) (A)	一般財政歲出 (B)	保社部豫算 (C)	社會福祉事業豫算 (D)	C / B (%)	D / B (%)	D / C (%)	D / A (%)
1965	805.72	93,534	3,168	—	3.4	—	—	—
1970	2,684.02	441,329	8,590	906	1.9	0.21	10.5	0.034
1975	9,792.85	1,550,214	42,689	2,040	2.8	0.13	4.8	0.021
1980	35,050.00	5,804,061	166,251	10,666	2.9	0.18	6.4	0.030

資料 : 保健社會部 社會局, 1980.

〔圖 1〕 部門別 社會福祉서비스 豫算,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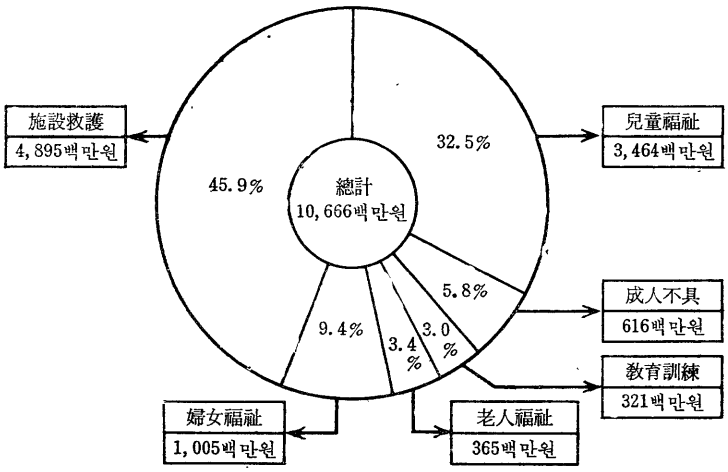

資料 : 保健社會部 社會局, 1980.

한 狀態에 있다. 즉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政府의 社會福祉事業 豫算을 보면 絕對規模面에서는 增加趨勢에 있지만 政府의 一般財政歲出 總額에 대한 比率은 1970年에 0.21%에서 1980年에 0.18%로 떨어지고 있어 政策의 優先順位面에서 社會福祉事業이 얼마나 低調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韓國 社會福祉事業의 特徵은 財源面에 있어서 아직 外國 民間援助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데 實例를 보면, 1979年 保社部 全體 豫算이 125,682百萬원이었는데 이중 外國民間團體로부터의 援助額은 物資와 現金을 포함하여 19,703百萬원(15.7%)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1980年度 保社部 豫算의 6.4%에 해당하는 10,666百萬원이 社會福祉部門에 投入되고 있는데 그 具體的인 內譯을 보면 〔圖 1〕과 같으며, 施設救護서비스(45.9%)에 置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Eugen Pusic, *Social Welfare and Social Development*, (The Mague: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tudies, 1972). pp.210~212.

1. 兒童福祉

最近 한 硏究報告에 의하면 各種 社會保護機關에 收容되어 있는 兒童人口(18歲 未滿)의 比率이 開發途上國의 경우 1,000名當 0.3~8名, 先進國의 경우 10~40名인 데 반해[1] 韓國의 경우(1979年)는 2.1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報告書는 開發途上國의 80億 兒童人口中 約 1%, 즉, 8千萬名이 制度的 保護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그 數는 産業化, 都市化, 人口增加의 壓力, 社會構造의 變化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加速的으로 增加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兒童福利法에 依據하여 18歲 未滿의 兒童을 對象人口로 정하고 있는데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年 兒童人口는 15,843千名으로 全體人口의 45.8%로 總人口對比 兒童人口의 比率은 1966~75年間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絕對數는 增加해 왔다.

兒童에 관한 諸法規로서는 1961年에 制定된

兒童福利法, 生活保護法, 孤兒入養特例法 등이 있는데 그중 兒童福利法은 그 當時의 主要社會問題였던 孤兒, 浮浪兒, 棄兒, 母子世代保護에 立脚하여 制定되었기 때문에 政治, 社會, 經濟與件이 크게 변한 오늘날에 있어서 그 內容에 많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兒童에 대한 行政的 支援은 比較的 活氣를 띠고 있어 兒童福利法에 根據하여 保社部內에 中央福利委員會와 各道에 地方福利委員會를 設置하여 兒童福利事業에 대한 專門家의 助言과 諮問을 얻어 事業을 遂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77年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青少年對策委員會가 組織되어 青少年 善導 및 保護에 관한 綜合的인 對策을 審議하게 되었고 專擔機構 마련을 위해 國務總理室 傘下에 第五調整官室을 設置하였다. 그러나 青少年善導를 위한 硏究 및 豫算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部處間의 綜合的·有機的 連結을 위한 制度的 裝置가 缺如되어 있어 活潑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表 2〉 18歲未滿 兒童人口의 增加推移

(단위 : 千名)

	總 人 口	兒童人口 (18歲未滿)	兒童人口/總人口比率 (%)
1966	29,159	14,318	49.1
1970	31,435	15,257	48.5
1975	34,678	15,893	45.8
1980	38,198	15,737	41.2
1986	42,088	15,740	37.4

資料 : 經濟企劃院, 「人口센서스」 및 「經濟開發四次計劃 基礎資料」(未出刊)에 立脚한 人口推計.

兒童福祉事業은 주로 施設保護事業과 施設外의 其他 事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施設保護事業은 嬰兒, 育兒, 浮浪兒, 職業輔導施設 등을 통해 兒童의 養育, 善導 및 職業技術習得 등 各種 서비스를 提供함으로써 兒童의 健全育成을 圖謀하고 있다. 또한 其他事業으로는 相談事業, 託兒事業과 不遇兒童을 위한 施策으로 入養, 結緣, 年長兒 職業輔導 등이 있으며 그 具體的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兒童福利施設 1979年末 心身障碍兒施設을 제외한 兒童福利施設은 327個所로 28,838名을 保護하고 있고 611個의 託兒施設에 41,632名의 兒童이 受託保護되고 있는데 託兒施設을 제외한 收容保護施設의 現況은 〈表 3〉과 같다.

2) 兒童相談指導機關 兒童福利事業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해 서울特別市 및 各道에 1個씩 兒童相談所가 設置되었고 民間 私設機關을 포함하여 全國에 17個所가 있는데, 兒童과 姙産婦에 관한 相談 및 그 家庭에 대한 調査 指導 등에 관한 事項을 管掌하고 있으며 現況은 〈表 4〉와 같다.

〈表 3〉 年度別 兒童福利施設 現況

(단위 : 個所, 名)

	計		嬰兒施設		育兒施設		浮浪兒施設		職業輔導施設	
	施設	人員	施設	人員	施設	人員	施設	人員	施設	人員
1974	406	40,065	42	3,883	327	30,922	12	3,458	25	1,802
1978	337	30,750	36	2,507	271	23,803	11	2,968	19	1,472
1979	327	28,838	35	2,401	264	22,215	11	2,865	17	1,357

資料 :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報』, 1980.

이러한 相談所는 問題의 事前豫防的 側面에서 期待되는 바가 크나, 運營에 있어서 市·道單位에 相談 및 指導를 위하여 兒童福利指導員, 市·邑·面 單位에 區域內 兒童의 生活狀態와 家庭環境의 把握을 위해 兒童委員을 두고 있으나 兒童委員의 경우 一種의 名譽職으로 專門性이 缺如되어 있어 問題兒童을 相談하는 力量과 役割이 未備한 實情이다.

〈表 4〉 兒童相談機關 現況(1979)

	兒童相談所	兒童福利指導員	兒童委員	相談件數
計	17	295	25,362	22,636
서울	2	24	737	14,521
釜山	2	18	1,154	2,075
京畿	2	34	3,787	1,169
江原	1	26	1,881	269
忠北	1	19	1,281	572
忠南	2	28	2,974	700
全北	1	23	2,282	627
全南	2	36	3,900	1,204
慶北	1	45	4,801	988
慶南	2	35	2,181	455
濟州	1	7	384	56

資料：保健社會部 婦女兒童局, 1980.

〈表 5〉 年度別 託兒保護 現況

(단위：個所, 名)

	施設數	保護兒童數
1974	564	39,211
1978	606	41,106
1979	611	41,632

資料：保健社會部, 婦女兒童局, 1980.

〈表 6〉 年度別 入養事業 現況

(단위：名)

	計	家庭入養	委託保護
1974	3,501	885	2,616
1978	5,034	3,522	1,512
1979	6,699	3,660	3,039

資料：保健社會部, 婦女兒童局, 1980.

〈表 7〉 不遇兒童 結緣事業 現況

(단위：千名)

	1976	1977	1978	1979
結緣兒童數	16,347	21,961	23,560	25,235

資料：保健社會部, 婦女兒童局, 1980.

3) 託兒事業 核家族化와 女性勤勞者의 增加로 말미암아 家庭에서 保護하기 어려운 子女들을 위한 託兒事業의 擴充이 要望되므로 託兒施設의 支援·育成이 要請되고 있다. 政府에서는 이러한 社會的인 要請에 따라 兒童福利施設과 收容兒童의 減少, 棄兒 및 浮浪兒의 未然防止, 勤勞者의 能率向上 및 安定 등의 期待效果를 豫想하여 積極 支援할 計劃으로 있는데 이 事業의 現況을 살펴보면 〈表 5〉와 같다.

4) 入養事業 政府는 그동안 家庭에서 離脫된 兒童을 위해 施設을 통한 保護와 海外入養에 注力해 왔으나 1976年 入養特別法을 制定하여 國內入養 및 委託保護를 積極 推進하게 되었다. 그러나 法的·制度的인 面에서 秘密保障이 未備하고 公開入養에 대한 社會的認識이 否定的이기 때문에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推進狀況이 매우 不振한 狀態에 있다.

5) 結緣事業 結緣事業은 不遇兒童과 社會各界의 人士들을 連結함으로써 後援者를 確保하여 一定額의 學費와 養育費를 支援받는 것으로, 過去에는 주로 社會의 民間資源을 動員하여 造成된 兒童福祉基金으로 推進되어 왔으나 〈表 7〉에서 보듯이 1976年부터는 政府의 不遇兒童을 위한 健全育成對策의 一環으로 이 事業이 擴大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事業이 最近 官主導型으로 推進되어짐에 따라 國民의 自發的인 參與態識이 缺如되게 되었고, 또한 施設保護 兒童에게만

局限되어 있어 受惠範圍가 問題視되고 있다.

6) 成長孤兒 職場周旋 事業 政府는 1977年부터 施設에 收容保護中인 年長兒童에게 職業訓練을 提供하여 職場周旋 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그런데 企業體의 選拔要請으로 1979年에는 1,072名이 就業되어 이들이 健全한 社會人으로 自立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해 주었다는 點에서 意義는 있으나 專門的 職業訓練未備, 施設兒童出身에 대한 社會人의 偏見과 職場不適應에 대한 補完的 프로그램의 缺如 등으로 離職率(1979年 就業兒童中 16.4%가 離職)이 높은 實情이다.

2. 老人福祉

Leonard Z. Breen에 의하면 老人을 ① 生理的·肉體的으로 變化期에 있는 사람, ② 心理的인 面에서 個性(Personality)의 機能이 減少되고 있는 사람, ③ 社會的인 變化에 따라서 社會的인 關係가 過去에 속해 있는 사람 등으로 定義하고 있다. 第二回 國際老齡學會에서는 老人을 人間의 老化過程에서 나타나는 生理的·心理的·經濟的인 社會環境과 行動의 變化가 相互 作用되는 複合形態의 過程으로 定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定義는 老人人口를 把握하는 基準으로 삼기에는 模糊한 점이 있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老人을 判別할 때는 生活年齡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있어서 老人이란 주로 非生產的 年齡(Past Productive Age)을 뜻하며 많은 나라에서는 65歲를 基準으로 삼고 있으나 一部 國家에서는 60歲로 規定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生活保護法에 65歲 이상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老人 人口數는 人口의 增加와 醫學의 發達에 따른 國民 平均壽命 延長 등으로 인해 漸次 增加하는 趨勢에 있으며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年 現在 1,407千名으로 總人口의 약 3.7%를 占하고 있다.

老人福祉가 法的으로 擧論된 것은 1970年에 公布된 社會福祉事業法 第2條에서 老人福祉施設을 社會福祉事業의 一部分으로 規定한 것과 同施行令에서 老人福祉 休養施設에 관한 것을 規定한 것이다. 그런데 最近 急增하는 老人問題의 重要性에 副應하여 保社部는 老人들의 生活安定, 健康問題 등을 解決하기 위한 綜合

〈表 7〉 老人人口 및 福祉對象者 推計

(단위 : 千名)

	總人口	老人人口(65歲以上)	老人人口/總人口比率(%)	居宅保護對象[1]	收容保護對象[1]	治療對象[1]
1975	34,679	1,206	3.5	157	7.2	482
1979	37,355	1,407	3.7	183	8.4	563
1981	38,807	1,526	3.9	198	9.2	610
1986	42,088	1,840	4.4	239	11.0	736
1991	45,251	2,270	5.0	295	13.6	908

註 : 1) 1974年 保健社會部 社會調査에 의한 比率에 立脚한 推計.
資料 : 經濟企劃院, 「四次計劃 基礎資料」(未出刊)에 立脚한 人口推計.

2) Leonard Z. Bree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1960), pp.147~148.

的 方案으로 老人福祉法의 制定을 서두르고 있는데 老人에 대한 定期的인 健康診斷 實施, 醫療保護制度, 老人扶養手當 支給 등에 관한 것을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다.

老人福祉를 위한 綜合的인 制度的 裝置가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行政支援 역시 消極的이고 斷片的인 實情이며 部分的으로 老人團體, 클럽活動 및 老人學校의 運營을 돕고 있으며 社會篤志家에 의한 敬老堂, 老人停과 같은 施設의 設置와 運營을 誘導하고 있다.

現行 老人福祉事業으로는 極少數의 無依無託한 老人들을 위한 養老施設이 있는데 現況을 보면 〈表 8〉과 같다. 한편 施設保護의 惠澤을 받는 老人은 施設保護를 요하는 老人의 34.6%에 不過하다.

最近 老人들의 餘暇善用을 위한 福祉事業으로 老人學校, 敬老堂, 老人亭 등이 運營되고 있으나 좀더 다른 次元에서 그들의 貴重한 知識이나 經驗이 生産的인 方向으로 社會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開發은 거의 없는 實情이다.

〈表 8〉 養老施設 趨移

(단위 : 個所, 名)

	施設數	收容人員
1974	44	2,563
1978	46	2,756
1979	46	2,920

資料 : 保健社會部 社會局, 1980.

3. 婦女福祉

一般的으로 婦女란 14歲 이상의 모든 女性을 意味하지만 婦女福祉는 未亡人, 未婚母, 淪落女性 등의 要保護女性들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1979年 保社部의 『女性世帶主 家口調査分析』에 의하면 女性世帶主 家口의 平均 家口員數는 3.77名이며 月收入은 84,000원으로 1978年度 우리나라 都市勤勞者 月平均 消費支出額인 127,710원과 비교해서 43,710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自家所有者가 39%이며 나머지 61%는 無住宅者로 나타나 女性世帶主 家口에 대한 福祉가 深刻한 問題로 臺頭되고 있다. 한편 淪落女性의 경우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保社部에 登錄된 數는 漸次 減少하는 傾向이 있으나 1977年 保社部 實態調査統計에 의하면 36,924名으로 把握되어 實際는 이보다 훨씬 많은 數로 豫想되고 있다. 未婚母의 경우는 羞恥心 등으로 인해 個人的 次元에서 解決하려는 忌避傾向이 있어 要保護人員의 정확한 把握이 거의 不可能한 實情이다.

〈表 9〉 要保護婦女의 趨移

(단위 : 名)

	要保護 未亡人世帶	淪落女性
1970	70,078	19,247
1975	63,371	15,700
1979	55,905	11,681

資料 : 保健社會部 婦女兒童局, 1980.

그런데 우리나라 婦女福祉에 관한 制度로는 1961年 11月 淪落行爲防止法이 制定되었고 이에 準하여 職業輔導施設의 施設基準令, 淪落女性善導對策委員會의 構成, 保社部 內規로서 婦女相談員의 任用 및 配定에 관한 規則이 마련되어 이 部門에 一連의 體系가 整備되었다. 또한 母子問題에 있어서는 兒童福利의 한 部門으로 取扱되어 1961年 12月에 公布된 生活保護法, 兒童福利法에 依據하여 母子施設이 運營되고 있고 母子問題의 重要性과 積極的인

對策이 要望됨에 따라 母子保健法이 1973年 2月에 制定되었다.

保社部에서는 1969年 淪落女性에 대한 問題解決策으로 同部署內에 關係 公務員과 淪落女性先導專門家를 중심으로 中央 淪落女性善導對策委員會를 組織하고 서울特別市 및 道에 地方委員會를 設置하였으나 行政上의 硬直性과 非能率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인데, 一般婦女子들을 위하여 邑·面單位로 婦女敎室의 運營과 女性團體들의 活動을 後援하고 있는 정도이다.

財政的인 側面에서 每年 支援額이 增額되고 있으나 施設中心의 事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婦女福祉事業은 收容者에 대한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生活도 營爲시키기 어려운 實情에 있다. 그중에서도 法人體에 의해서 運營되고 있는 母女保護施設과 婦女職業輔導施設은 外援이 激減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婦女職業輔導所의 경우 市·道立은 地方費, 郡立은 糧穀·副食·資材·醫療費의 1/2, 法人은 糧穀·副食·資材·醫療費의 全額을 支援받고 있다. 母子保護施設은 近年 새로이 收益財產造成費로 國庫 50%, 地方費 50%를 支援받고 있는데 그 豫算內譯은 〈表 10〉과 같다.

〈表 10〉 婦女福祉 豫算內譯(1980)

(단위 : 千원)

事業名	目標	豫算
婦女相談員配置	221名	256,743
婦女職業輔導所運營	22個所	260,056
運營支援	22 〃	181,212
施設擴張	4 〃	78,844
母子保護施設 運營	36 〃	193,618
運營支援	37 〃	48,441
施設改修	15 〃	15,177
收益事業支援	4 〃	30,000
施設擴張	4 〃	100,000

註 : 市道立 1,000個所 제외.
資料 : 保健社會部 婦女兒童局, 1980.

1) 婦女相談事業 社會問題를 惹起시킬 可能性이 있는 要保護 女性과 家出女性을 對象으로 全國 市·區·郡 등에 專門相談員 215名을 配置하여 相談 및 指導啓蒙을 하고 있는데 1979年度 相談者數는 240,622名이며 年度別 相談實績은 〈表 11〉과 같다. 한편 本事業은 一種의 豫防事業으로 그 意義가 매우 重要하나 相談員 1人當 相談者數가 1,000名을 超過하기 때문에 事業의 效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量보다 質 또는 內容面에 더욱 置重해야 할 것이다.

2) 母子保護事業 本事業은 缺損家庭의 子女를 健全하게 養育하기 위하여 母子院을 設置하여 未亡人 母子世帶를 收容 保護하고 있다.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8年에 2,382世帶에서 점차 減少趨勢를 나타내어 1979年에는 776世帶가 保護를 받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母子保護施設에서 保護를 받고 있는

〈表 11〉 婦女相談 實施 現況

(단위 : 名)

	相談者總數	措置別									
		計	職業斡旋	輔導所入所	歸鄕	保護施設收容	生計保護	結婚仲媒	治療依賴	緊急救護	其他
1974	193,381	186,461	3,383	2,362	14,124	4,564	4,967	4,001	17,603	4,437	131,017
1978	269,235	269,435	7,624	4,262	11,727	—	7,018	—	29,802	10,298	198,704
1979	240,622	236,466	6,798	3,413	9,809	2,720	5,158	3,100	25,759	4,267	175,442

資料 : 保健社會部 婦女兒童局, 1980.

〔圖 2〕 心身障碍者 保護者의 希望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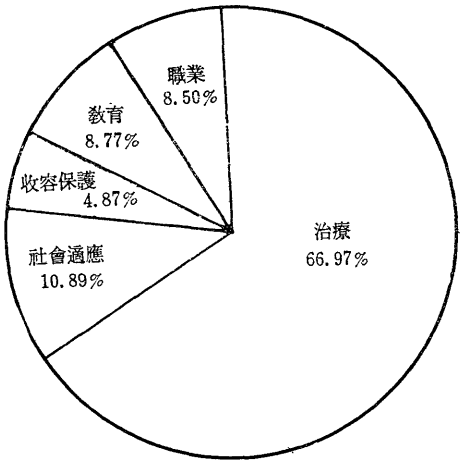

資料 : 保健社會部, 『心身障碍者 實態調査』, 1979.

이 776世帶는 1979年度 全國母女家口 681,789世帶中 8.2%를 차지하는 要保護 母子家口(55,905世帶)의 불과 1.4%에 該當하는 數値로 要保護 母子家口를 위한 事業의 擴充이 要望되고 있다.

3) **婦女職業輔導事業** 要保護女性의 自立更生을 위해 職業輔導所가 設置되어 技術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5個所의 市·道立施設을 합쳐 全國的으로 27個所에서 2,710名에게 洋裁, 編物, 美容 등 職業教育을 實施하고 있는데 婦女職業輔導所 運營 現況은 〈表 13〉과 같다. 그러나 最近 退所者의 약 30%가 再轉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退所後 계속적인 相談을 위한 프로그램의 開發이 隨伴되어야 하겠다.

〈表 12〉 母子保護施設 趨移

	施設數	收容人員(名)	退所者數(名)
1958	67	—(2,382世帶)	1,000
1974	34	3,787 (824世帶)	358
1978	34	3,564 (811世帶)	1,391
1979	35	3,388 (776世帶)	957

資料 : 保健社會部 婦女兒童局, 1980.

4. 心身障碍者 福祉

1979年 實施된 保社部의 心身障碍者 實態調

〈表 13〉 婦女職業輔導所 運營 現況

(단위 : 名)

	施設數	入所者數	年末在所者數					
			計	洋裁	編物	理容	美容	其他
1974	31	12,509	1,593	359	256	363	231	284
1978	27	8,256	2,313	483	308	307	200	1,015
1979	27	9,262	2,710	427	218	321	202	1,042

資料 : 保健社會部 婦女兒童局, 1980.

査에 의하면 우리나라 心身障碍者의 出現率은 〈表 14〉에서와 같이 2.903%로 障碍者數는 1,086,823名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되었고 20歲 未滿의 心身障碍兒童은 278,055名으로 推定되었는데 이는 兒童人口의 1.8%에 해당된다.

이러한 心身障碍者는 그 정도에 따라서 治療, 收容保護, 職業訓練 對象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心身障碍者 對象別 推計는 〈表 15〉와 같다. 또한 心身障碍者 保護者의 要望에 따른 類型을 보면 〔圖 2〕와 같다. 그러나 政府의 事業內容은 治療나 社會適應보다는 일부 障碍者에 대한 收容保護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障碍者는 放置되어 있는 實情이다.

心身障碍者를 위한 福祉事業의 法的 根據는 生活保護法, 兒童福利法, 產業災害補償法, 援護法, 特殊敎育振興法 등에 依存하고 있다.

〈表 14〉 障碍別 出現率

	出現率(%)	障碍者推定數(千名)
總障碍者	2.093	1.087(278)*
肢體障碍	1.501	562(129)
視覺障碍	0.287	108 (20)
聽覺障碍	0.329	123 (29)
言語障碍	0.347	130 (48)
精神障碍	0.439	165 (52)

註 : *는 20歲未滿 障碍兒童數.
資料 : 保健社會部, 『心身障碍者 實態調査』, 1979.

〈表 15〉 心身障碍者 對象別 推計

(단위 : 千名)

	1979	1981	1986	1991
總人口	37,355	38,807	42,088	45,251
障碍者總數	1,087	1,126	1,221	1,313
治療對象人員	728	754	818	879
收容對象人員	53	55	59	64
職業訓練對象人員	92	96	104	112
敎育對象人員	95	99	107	115

資料 : 經濟企劃院, 「4次計劃 基礎資料」(未出刊).
保健社會部, 『心身障碍者 實態調査』에 입각한 推計.

〈表 16〉 心身障碍者 福祉施設 現況

(단위 : 個所, 名)

	成人不具施設		障碍兒童施設							
			計		精神薄弱兒		盲聾兒		肢體不自由	
	施設	人員	施設	人員	施設	人員	施設	人員	施設	人員
1974	23	4,477	36	3,007	—	—	—	—	—	—
1978	31	6,362	52	4,455	19	1,768	18	1,125	15	1,562
1979	30	5.226	54	4,705	20	1,936	18	1,117	16	1,652

資料 : 保健社會部 社會局 및 婦女兒童局, 1980.

〈表 17〉 障碍別 特殊學校 現況(1979)

	學校數	計			國民學校課程			中學校課程			高等學校課程		
		學級數	學生數	敎員數	學級數	學生數	敎員數	學級數	學生數	敎員數	學級數	學生數	敎員數
計	53	714	8,052	809	596	6,541	609	88	1,101	134	30	410	66
視覺障碍學校	13	144	1,105	172	102	714	103	27	213	37	15	178	32
聽覺障碍學校	18	270	3,398	314	219	2,636	227	36	530	53	15	232	34
精神薄弱學校	17	237	2,662	250	222	2,432	222	15	230	28	—	—	—
肢體不自由學校	5	63	887	73	53	759	57	10	128	16	—	—	—

資料 :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1979.

最近 保社部에서는 障碍者福祉를 위한 綜合的 對策의 一環으로 障碍者의 生活保護, 醫療保護, 特殊敎育 및 職業訓練, 就業斡旋, 登錄義務制 등을 主要 骨子로 한 心身障碍者 福祉法의 制定을 準備中에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心身障碍者를 위한 特別法이 아직 없어 行政上의 支援도 保社部, 援護處, 勞動廳, 文敎部 등으로 各各 分散되어 있다. 또한 保社部內에서도 障碍兒童은 婦女兒童局 兒童課에서, 成人障碍者는 社會局 社會課에서 擔當하고 있기 때문에 事業의 連繫性 및 能率性이 缺如되고 있는 實情이다,

心身障碍者를 위한 收容施設은 〈表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年度에 成人施設 30個所(5,226名 收容)와 兒童施設 54個所(4,705名 收容)로 總 9,931名을 保護하고 있다. 이 人員은 收容保護를 希望하는 障碍者(52,936名)의 9.8%에 該當하는 數로서 收容施設이 需要에 비해 絕對的으로 不足하다는 事實을 立證하고 있다.

또한 〈表 17〉을 보면 特殊敎育을 받고 있는 障碍兒童은 1979年度에 8,052名으로 全體 障碍兒童(278千名)의 일부(2.9%)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障碍兒童은 福祉惠澤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1. 地域社會 中心의 豫防事業

產業化, 都市化에 따른 急激한 社會變動과 家族制度의 變化過程에서 社會福祉서비스의 需要가 增大되고 새로운 接近方法이 要求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治療爲主의 事後救護事業에만 置重해 온 施設保護中心의 社會福祉事業은 問題의 事業豫防事業을 위한 地域社會中心의 것으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地域社會中心의 發展戰略은 地域全體의 健全한 發展과 福祉를 위하여 地域住民의 積極的 參與와 協同으로 自發的인 計劃樹立과 서비스 傳達을 擔當토록 함을 意味한다. 이를 위하여 政府의 介入을 極小化하고 民間主導에 의한 家庭中心의 社會福祉서비스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특히 家族制度의 維持發展과 健全한 家庭의 育成과 保護를 위하여 「家族手當制」를 制度化하고 地域社會 單位로 問題發生豫防 및 指導를 위한 相談事業으로 健全한 家庭保護를 維持토록 해야 할 것이다.

2. 傳達體系의 確立

現行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圖 3)는 서비스傳達의 第一線的 機能을 擔當해야 할 區·郡 以下單位의 行政體系 不在로 인해 要保護對象者의 欲求把握이 不可能한 實情이다.

특히 豫想되는 80年代의 福祉需要에 對處하여 制限된 資源의 效率的 活用으로 福祉서비스의 수준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이웃돕기 運動」을 持續的으로 展開하고 篤志家에 의한 社會福祉基金을 造成하는 한편 法人은 물론 個人에게까지 稅制의 惠澤을 주어 積極的인 民間參與(自願奉仕)의 地域社會 雰圍氣를 造成토록 해야 할 것이다.

現福祉서비스 傳達體系의 改善을 위한 方案은 서비스의 綜合性, 專門性 및 接近의 容易性을 위해 〔圖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福祉

〔圖 3〕 現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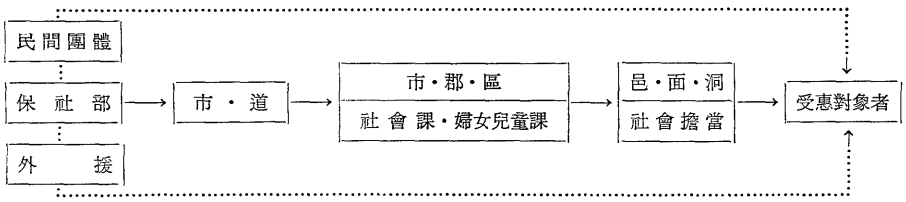

〔圖 4〕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의 改善(例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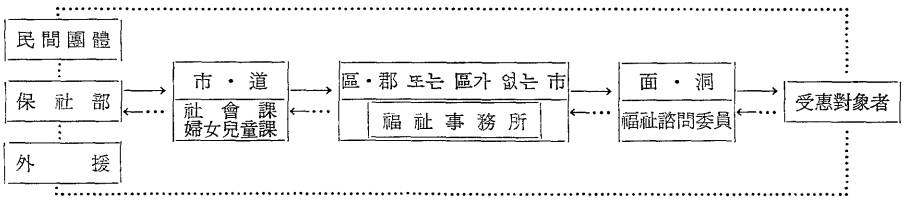

事務所」를 行政單位別로 市는 各區에 1個所, 區가 없는 市와 郡에 各 1個所씩 設置(全國에 202個所 豫想)하고 面·洞에는 福祉諮問委員을 위촉하여 地域社會 發展을 圖謀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福祉事務所」의 機能과 人力充員面은 다음과 같이 例示할 수 있겠다.

機能 各種 法規에 規定되어 있는 社會福祉서비스 業務와 生活保護事業(公的扶助)을 管掌하며 主要事業으로는 ① 兒童保護 相談 및 指導, ② 老人의 問題把握과 相談 및 指導, ③ 障碍者의 發見, 相談 및 措置, ④ 生活保護 對象者의 調査, 選定 및 指導保護措置, ⑤ 生活保護事業의 實施 등을 擔當토록 한다.

人力充員 所長을 포함한 一般行政要員과 福祉專門家인 地區擔當員을 配置토록 한다. 특히 地區擔當員은 그 地域의 受惠對象者의 實態把握, 서비스提供의 必要性 與否判定, 서비스傳達 등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正規大學 또는 國家가 認定하는 機關에서 社會福祉에 관한 필요한 訓練을 받은 者가 選定되도록 한다. 또한 福祉諮問委員은 無報酬로 그 地域實情을 잘 아는 地方篤志家들로서 「福祉事務所」와 地區擔當員의 諮問에 應하도록 한다,

3. 財源調達의 擴大

社會福祉서비스事業을 위한 財源調達의 類型은 一般的으로 다섯 가지로 分類할 수 있는바 收益者 負擔金(user charges), 特別稅(earmarked taxes), 一般稅入(general revenue) 篤志家의 獻金(voluntary contribution)과 이상의 4가지 複合型이 그것이다[3]. 우리의 경우 現在 福祉서비스에 所要되는 財源은 國庫, 地方費, 外援, 民間支援, 自體收入 등에 依存하고 있으며 總社會福祉서비스 費用中 各 財源이 차지하는 構成比는 現實的으로 把握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왜냐하면 民間支援과 外援의 相當部分이 受惠團體에 直接 傳達되기 때

3) Neil Gilbert and Harry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4, p.141.

문이고 그 用途가 福祉서비스에 局限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78年 現在 財源의 대부분이(國庫의 경우 81.6%) 社會福祉서비스 施設運營에 投入되고 있는데 이의 財源別 構成比는 〈表 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18〉 社會福祉서비스施設 運營費의 財源別 構成比

(단위 : %)

	自體收入	國庫	地方費	外援	民間支援	기타
構成比	9.3	19.6	36.8	8.6	8.5	17.2

資料 : 保健社會部 社會局, 1978.

이 表에 의하면 地方費가 36.8%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며 國庫는 19.6% 水準에 달하고 있다. 특히 外援이 아직 8.6%로 相當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財源調達의 問題點을 解決키 위해 改善方案을 摸索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財源의 不足現象은 絶對的인 것과 相對的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社會福祉事業의 경우 前者에 該當한다 하겠다. 日本의 경우 施設事業에 필요한 費用의 50%를 原則的으로 國庫에서 補助하는 것을 볼 때 우리 政府의 役割이 매우 微弱하다 하겠다. 따라서 第5次 5個年計劃期間에는 이 部門에 대한 政府財政支援의 擴大가 있어야겠다.

둘째, 財源調達의 硬直性이다. 우리의 경우 단순히 地方費, 國庫補助, 自體收入에 대부분 依存하고 있는 데 반해 日本의 경우는 國庫補助外에 特別地方債, 社會福祉振興會가 助成한 基金에 의한 融資, 기타 民間團體의 獻金 등으로 多元化되어 있다. 특히 우리는 外援의 役割이 漸次 減少하고 있다는 事實을 감안하여 볼 때 旣存 財源의 보다 效率的인 活用과 아울러 財源調達을 多元化할 필요가 있으며, 民間의 積極的인 參與를 促進할 수 있는 制度的 誘引(稅制上의 惠澤等)을 考慮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 專門人力의 確保와 活用

社會福祉施設에서 從事하는 專門要員의 總數는 〈表 20〉에서 보듯이 1979年 現在 7,966名에 달하고 있으나 專門要員 1人當 收容人員數는 22.6名으로 日本의 경우(兒童福祉 施設의 경우 5.2名)와 比較해 볼 때 要員의 絶對數가 크게 不足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提供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表 20〉 社會福祉施設 專門要員 現況(1979)

(단위 : 名)

	施設數	專門要員數			離職率(%)
		計	有報酬	無報酬	
計	1,097	7,966	7,545	421	26.4
兒童施設	961	7,170	6,800	370	28.7
成人施設	81	541	501	40	19.2
婦女施設	55	255	244	11	14.7

註 : 託兒施設은 兒童施設에 포함.
資料 : 保健社會部 集計, 1979.

專門要員 輩出狀況을 보면 每年 大學의 社會事業學科에서 460名의 卒業生이 社會에 進出하고 있으며, 部分的으로 敎育訓練機關(中央訓練機關 1個所, 地方訓練機關 9個所)에서 養成訓練을 받고 있으나 訓練機能이 微弱하고 특히 地方의 경우 敎育水準이 낮아 專門訓練機關으로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는 狀態이다.

1978年 保社部 標本調査에 의하면 施設專門要員中 資格證 所持者가 全要員의 27.2%이며

資格證 所持者가 없는 施設도 30.3%에 이르고 있어 專門的인 서비스의 提供이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또한 旣存 要員들의 많은 數가 離職現象(26.4%)을 나타내고 있어 問題의 深刻性은 高潮되고 있다.

이와 같은 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첫째, 大學에서 輩出되는 專門人力을 活用할 수 있는 制度的 誘引策으로 國家資格證制度를 마련하여 身分과 處遇를 保障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不足한 專門人力은 人力養成機關을 擴充함으로써 補完토록 하고 이들에게 準專門職 資格證을 賦與하여 活用토록 한다. 세째, 自願奉仕를 活用할 수 있는 制度를 만들어 福祉서비스의 效率을 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福祉事業에는 制度的으로 公認된 專門人力을 具備토록 하여 人力의 浪費를 防止하고 福祉서비스의 質的向上을 圖謀토록 해야 할 것이다.

5. 福祉施設의 再整備

社會福祉施設은 1950年代에 設立된 것이 相當數인데 1978年 現在 全體의 42.1%로 이미 考朽한 建物이 많다. 地域別 分布를 보면 施設과 收容人員의 都市集中現象이 뚜렷해 施設의 67.2%가 都市에 偏重되어 있으며, 〈表 21〉에서 보듯이 設備面에서 醫療, 沐浴, 給水 등 文化的인 設備를 具備치 못하고 대부분 在來的인 方式을 使用하고 있다. 또한 財政的인 어려움으로 인해 收容者에 대한 保護水準도 매우 낮은 實情에 있다.

〈表 21〉 社會福祉 施設狀況

	醫 療	沐 浴	上水道	化莊室(水洗式)
有	62.0%	85.6%	61.0%	22.1%
無	38.0%	14.4%	39.0%	77.9%

資料 : 保健社會部 社會局, 『標本調査報告書』, 1978.

이 외에도 障碍種別이 다른 對象者들을 同一施設에 收容(例 : 精薄兒와 농육아 混合收容)하거나 男女를 混合收容함으로써 各對象者의 異質的인 欲求에 副應하지 못하고 있는 點과 同種施設間의 隔差가 問題로 臺頭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施設運營의 收支가 改善되어야 한다. 즉, 保護水準, 施設設備上의 問題는 충분한 收入源의 確保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의 경우, 社會福祉 施設運營費는 原則的으로 中央이 80%

〈表 22〉 社會福祉서비스 關聯立法 現況(1980年度 現在)

	兒 童	老 人	婦 女	心身障碍者(兒)
法制	兒童福利法(1961) 生活保護法(1961) 入養特別法(1976)	生活保護法(1961)	生活保護法(1961) 兒童福利法(1961) 淪落行爲等防止法(1961) 母子保健法(1973)	心身障碍者 生活保護法(1961) 產災害補償法(1963) 援護法(1963) 心身障碍兒 生活保護法(1961) 兒童福利法(1961) 特殊敎育振興法(1977)

註 : 上記 立法外에도 生活保護法, 淪落行爲等防止法, 兒童福利法에 規定한 施設運用, 기타 福利事業을 위한 法律로서 社會福祉事業法(1970)이 있음.

를 負擔하고 地方政府(都, 道, 府, 縣 또는 市)가 20%를 負擔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경우 最少限 國庫의 負擔率을 50%線까지는 올려야 할 것이다. 長期的인 見地에서 「社會福祉基金」을 造成하여 收益性있는 事業에 投資한다든지 일부 施設을 有料化하여 自體收入을 擴大하는 方向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6. 關係法의 再整備

現行 社會福祉 서비스事業과 關聯된 關係法의 現況은 〈表 22〉와 같다. 특히 兒童福利法, 生活保護法, 淪落行爲等防止法, 社會福祉事業法 등은 直接的으로 福祉서비스의 提供을 基本目的으로 하고 있는데 이의 適用對象과 事業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生活保護法(1961) 65歲 이상 老齡者, 18歲未滿 兒童, 姙產婦, 不具廢疾者, 기타 保護必要가 있는 者를 위하여 養老, 養育, 保護 또는 再活醫療서비스의 提供을 規定하고 있다.

兒童福利法(1961) 18歲 未滿의 要保護兒童과 要保護 姙產婦를 위하여 保育, 母子保護, 障碍兒, 浮浪兒保護, 職業輔導, 兒童相談, 託兒 서비스 등을 提供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淪落行爲等防止法(1961) 淪落行爲 常習者 또는 要保護 婦女子를 위한 保護指導, 職業輔導 등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社會福祉事業法(1970) 同法은 特別한 對象을 위한 것이 아니고 生活保護法, 兒童福利法, 淪落行爲等防止法에서 規定한 各種 施設事業의 運營指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 社會福祉 서비스와 直接 有關한 現行法制를 檢討하여 볼 때 未備點으로 指摘할 수 있는 事項은 첫째, 老人 및 障碍者(兒)와 母子에 관한 福祉基本法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社會福祉事業法을 제외한 生活保護法, 兒童福利法, 淪落行爲等防止法이 모두 1961年에 制定된 것으로 과거 韓國動亂 이후의 戰後救護를 위한 事後治療的 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豫防事業에 傾注하는 福祉서비스 趨勢에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諸法規의 問題點을 解消하고 社會福祉서비스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기 위한 改善方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心身障碍者(兒)를 對象으로 그들의 生計保護, 醫療保護, 特殊敎育 및 職業訓練을 통한 就業機會의 擴大, 公共施設에 있어 心身障碍者(兒) 專用施設 設置의 義務化 등을 明文化한 心身障碍者(兒)法의 制定이 필요하다.

둘째, 65歲 이상의 老人을 對象으로 하는 敬老手當, 定期健康診斷, 醫療保護惠澤 등을 規定하는 老人福祉法의 制定과 母子保護 및 營養의 改善을 위한 母子福祉法, 營養改善法의 制定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社會福祉基本法, 社會福祉基金造成의 制定과 兒童福利法, 社會福祉事業法과 生活保護法의 改正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 諸法規는 經濟成長에 따른 國民福祉 欲求水準의 向上을 감안하여 事前豫防的 서비스의 强化와 實效性을 確保할 수 있는 方向으로의 制定 및 改正이 要望된다.

▷ 參 考 文 獻 ◁

金永謨譯, 『福祉國家와 福祉社會 : 幻想과 現實』, 서울, 經文社, 1979.

保社部 社會保障審議委員會, 『우리 나라의 社會福祉向上策에 關한 硏究』, 1976.

申守植著, 『社會保障論』, 서울, 博英社, 1978.

Breen, Leonard Z.,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1990.

Gilbert Neil & Harry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N.J.: Prentice-Hall Inc.), 1974.

Kadushin, Alfred *Developing Social Policy in Conditions of Dynamic Change* (Vienna: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 1972.

Morris, Robert, *Social Policy of the American Welfare State: An Introduction to Policy Analysis*(N.Y.: Harper & Row), 1979.

Pusic, Eugen, *Social Welfare and Social Development*(Hague: Mouton), 1972.

Rein, Martin, *Social Policy: Issues and Choice and Change*(N.Y.: Random House), 1970.

Rescher, Nicholas, *Welfare: The Social Issues in Philosophical Perspective,*(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72.

Romanyshyn, John M., *Social Welfare*(N.Y.: Random House), 1977.

Zastrow, Charles,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Institutions:* Social Problems, Services And Current Issues(Illinois: Dorsey Press), 1978.

家計消費支出의 分布와 不均等要因 分析

——農家와 都市勤勞者 家口를 中心으로——

崔 奎 燮

▷ 目 次 ◁

Ⅰ. 序 論
Ⅱ. 不均等模型과 分析方法
Ⅲ. 支出分布와 그 集中狀態
Ⅳ. 支出分布의 變動要因
Ⅴ. 要約 및 政策的 意味

Ⅰ. 序 論

한 國家의 經濟成長이나 發展의 目的이 國民 全體의 福祉를 增進시키는 데 있다면 成長의 果實은 가능한 한 고루 分配되는 것이 理想的이다. 國民의 福祉는 무엇이 얼마나 生産되었는가에 따라서 뿐만이 아니고 如何히 分配되었는가에 따라 福祉水準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經濟는 지난 60年代 이후 의욕적인 經濟開發計劃을 통해 급격한 成長을 하여 1人當國民所得이 1975年 不變價格으로 1963年의 123千원에서 1978年에는 375千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全體國民의 生活水準도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社會의 어느 階層의 生活이 더 많이 改善되었으며 貧富間의 生活隔差의 樣相이 어떠한지 등은 分配問題가 現代國家의 主要政策課題로 강조되고 있는 點을 감안할 때 분명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國民 全體의 전반적인 福祉水準을 측정하는 데는 요즈음 GNP 概念을 修正한 經濟厚生의 測定(measure of economic welfare)이나 社會指標(social indicatior)가 이용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方法論上에 合意點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階層別 生活水準을 動態的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는 그 尺度로 家計의 所得을 變數로 볼 것인가, 아니면 生活의 需要充足을 위한 財貨와 用役(goods and services)의 購入에 支拂되는 家計의 消費支出을 變數로 볼 것인가는 問題意識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筆者：韓國開發硏究院 主任硏究員

따라 달라질 수 있다. 所得이 낮은 層일수록 일반적으로 消費性向은 높아지므로 生活水準의 尺度로 所得水準이나 支出水準에 큰 차이가 없겠지만 所得이 높은 層일수록 生活水準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變數는 所得水準보다는 支出水準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階層間의 生活水準隔差나 支出類型別 消費支出의 隔差가 問題意識으로 指摘될 때는 家計의 消費水準이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所得分配에 관한 硏究는 여러 學者들[1]에 의해 많은 硏究結果가 發表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基本需要充足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貧困問題를 深度있게 분석한 硏究結果[2]가 발표되어 學界는 물론 政策立案者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와는 좀 달리 分配問題에 대한 視角을 消費者의 生活水準隔差에 맞추어 봄으로써 國民福祉의 다른 한 側面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本稿의 목적은 所得階層別 家計支出의 分布를 추정하여 이를 動態的으로 分析하고 이들의 變動에 영향을 주는 變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규명하며, 이에 따라 階層間 支出隔差를 줄일 수 있는 政策的 方向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1) 이러한 硏究는 潘性紈(1979), 朱鶴中(1978), Adelman (1978) 참조.

2) 徐相穆(1979) 참조.

3) 需要에 영향을 주는 變數로는 價格과 所得 이외에도 다른 財貨의 購入量이나 消費者의 嗜好 등등이 變數로서 作用하겠지만 本稿에서는 이를 單純化하여 價格과 所得만을 變數로서 보고자 한다.

Ⅱ. 不均等模型과 分析方法

1. 不均等模型의 設定

所得階層間의 家計消費支出不均等에 영향을 주는 원천적인 變數를 有意性있게 選別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低所得層의 支出水準이 高所得層의 그것보다 낮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 階層間의 支出隔差는 財貨市場에서 絶對供給量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問題는 財貨와 用役에 대해 購買力을 갖는 所得이 階層間에 偏在되었거나 財貨의 價格이 低所得層에게는 過重하여 實需要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財貨와 用役의 需要는 自由市場 機能에 의해 決定되기 때문에 각 階層의 限定된 購買力은 階層間의 支出隔差를 가져오게 된다.

經濟理論에서 需要는 價格과 所得의 函數로 보고 있다[3]. 이에 따라 i 所得階層의 j 項目에 대한 支出(D_{ji})은 需要에 영향을 주는 j 項目의 價格(P_j)과 i 階層의 平均所得(Y_i)의 函數로 표시할 수 있다.

$$D_{ji}=d(P_j;Y_i)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

또한 j 項目에 대한 支出不均等度(CR_j)는 j 項目에 대한 i 階層間의 支出 크기와 函數關係에 있으므로 (2)式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R_j=g(D_{ji})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2)$$

여기에서 (1)式을 (2)式에 代入하면 合成函

數의 法則(function of function rule)에 의해 (3)式과 같은 支出不均等函數(expenditure inequality function) 關係를 導出할 수 있다.

$$CR_j = f(P_j; Y_i)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3)$$

이와 같은 支出不均等 函數關係로부터 家計支出不均等의 變動에 대해 價格變動과 各階層間의 所得變動이 어떻게 作用하는가를 檢證하기 위해서는 이 支出不均等函數에 대해 구체적인 定式化(model specification)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函數가 指數函數型을 취할 때 추정된 「파라메터」(parameter)는 직접적으로 그 變數의 彈力性을 제공해 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 經濟分析에서 特定函數의 추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4]. 本硏究에서도 硏究目的上 設明變數(explanatory variable)의 彈力性이 중요시되므로 支出不均等函數를 아래의 (4)式과 같이 정의하고 이를 다시 代數變換(logarithmie transfortation)하여 (5)式과 같은 代數化한 線型方程式(logarithmic linear equation) 형태의 支出不均等方程式(expenditure inequality function)을 假定하였다.

$$CR_j = AP_j^{\alpha_j}\ Y_L^{\beta_{Lj}}\ Y_H^{\beta_{Hj}}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 (4)$$

$$ln\,CR_j = lnA + \alpha_j lnP_j + \beta_{Lj} lnY_L + B_{Hj} lnY_H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 (5)$$

(5)式에서 家計支出不均等度(CR_j)는 價格變數(P_j)와 두 階層의 所得變數(Y_L과 Y_H)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CR : 「지니」集中係數

j : 支出項目(例 : FD=食料品費, HO=住居費, FL=光熱費, CL=衣類費, ED=敎育費, MI=기타 雜費)

P_j : j 項目의 相對價格指數[5]

Y_L : 下位 60% 階層의 實質平均所得[6]

Y_H : 上位 40% 階層의 實質平均所得[6]이다.

이 式에서 所得階層을 下位 60% 階層과 上位 40% 階層으로 區分한 이유는 이용되는 統計資料의 中位値(median)를 갖는 階層이 所得階層으로 分類할 때 60% 內外에 位置한 家口로 밝혀졌고 실제의 回歸分析結果도 이 경우에 統計的 有意性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2. 分析方法

이상과 같은 支出不均等函數에서 推定된 彈力値의 크기에 따라 從屬變數로서의 支出不均等度와 設明變數로서의 階層別 實質所得과 相對價格關係를 圖示하면 〔圖 1〕과 같다. 〔圖 1〕의 (가)는 不均度(CR)에 대한 下位階層의 所得効果를 보여 주는데 만일 Y_H와 P가 不變일 경우 下位階層의 所得이 Y_L^1에서 Y_L^2로 增加한다면 CR은 CR^1에서 CR^L로 $\overline{AE}$만큼 낮아져 不均度(CR)는 그만큼 改善된다. 이때 β_L이 彈力的이면 β_L이 非彈力的일 때보다 不均度는 더욱 減少하게 된다.

〔圖 1〕의 (나)는 CR에 관한 上位階層의 所

4) 이에 관한 代表的인 函數로는 잘 알려진 「콥·다글라스」(Cobb-Danglars) 生産函數가 있다.

5) 相對價格指數의 算定을 위해 各 該當 支出項目의 價格指數를 都市勤勞者家計의 경우는 全都市 消費者物價指數로, 農家의 경우는 農家用品 購入價格指數로 「디플레이트」하였다.

6) 實質所得 算出에 사용된 「디플레이터」(deflator)는 都市勤勞者家計의 경우 全都市 消費者物價指數, 農家의 경우는 農家用品 購入價格指數이다.

〔圖 1〕 支出不均等度에 대한 所得階層別 相對價格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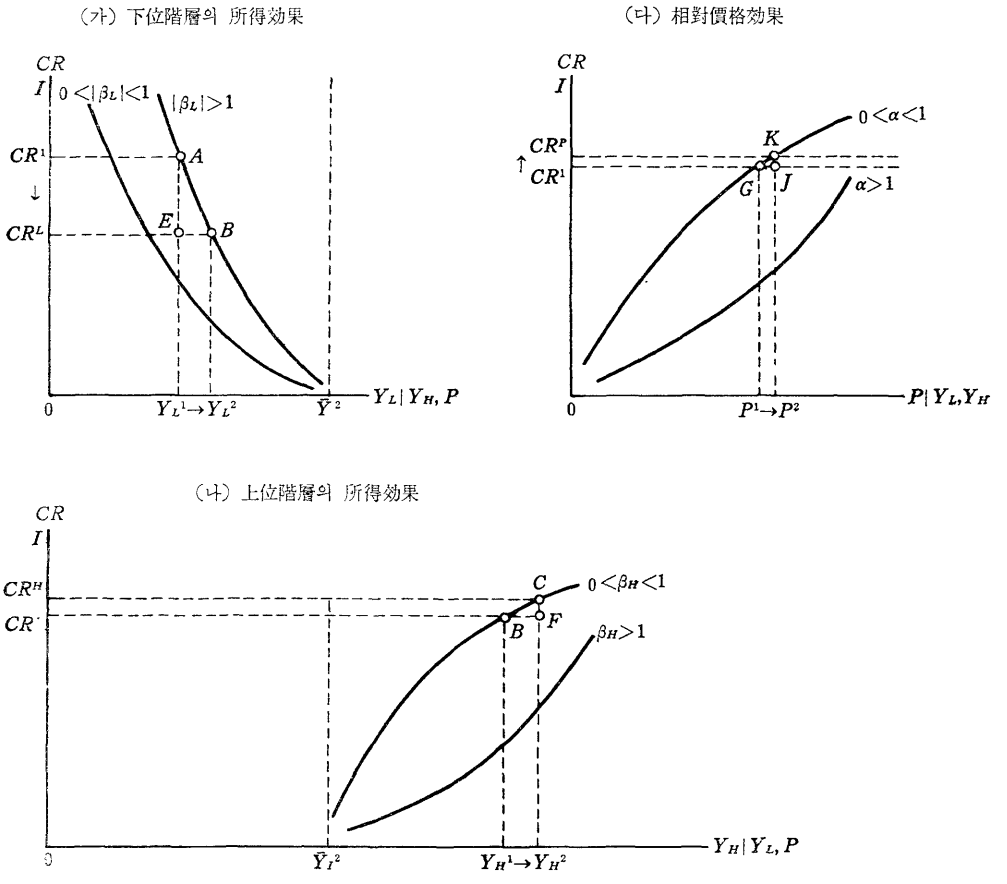

得効果를 보여주는데 만일 다른 變數가 不變일 경우 上位階層의 所得이 Y_H^1에서 Y_H^2로 增加한다면 CR는 $\overline{CF}$ 만큼 增加하여 不均等度(CR)는 그만큼 나빠지게 된다. 〔圖 1〕의 (다)는 CR에 관한 相對價格効果(relative price effects on expenditure inequality)를 보이는 것으로 두 階層의 所得이 不變이라도 相對價格이 P_1에서 P_2로 변할 경우 CR는 $\overline{KJ}$ 만큼 높아져 CR^P 수준에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不均度의 前年同期比 增減(ΔCR)은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Delta CR=\overline{KJ}(\uparrow)+\overline{AE}(\downarrow)+\overline{CF}(\uparrow)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6)$$

(6)式을 달리 表示하면 (7)式이 되며

$$dCR=\frac{\partial CR}{\partial P}dP+\frac{\partial CR}{\partial Y_L}dY_L+\frac{\partial CR}{\partial Y_H}dY_H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7)$$

(7)式에 다시 各變數의 彈力性을 導入하여 고쳐 쓰면 (8)式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7].

7) (8)式은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주어진 支出不均等函數는 (4)式에서

$$CR=f(P,\ Y_L,\ Y_H)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4)$$

$$CR=\alpha\dot{P}+\beta_L\dot{Y}_L+\beta_H\dot{Y}_H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8)$$

여기서 $\dot{C}R$, $\dot{P}$, $\dot{Y}_L$, $\dot{Y}_H$는 前年比 增減率이다. (8)式은 變數들 自體의 構造的인 變化가 分析期間中에 일어난 支出不均等變化에 미친 影響力(寄與率)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alpha\dot{P}$는 相對價格變化가 支出不均等變化에 미친 寄與率이고 $\beta\dot{Y}_L$과 $\beta\dot{Y}_H$는 下位階層(低所得階層)의 所得變動과 上位階層의 所得變動이 각각 支出不均等 變動에 미친 寄與率이 된다.

이러한 關係를 土臺로 하여 支出不均等度에 대한 影響을 좀더 考察하기 위해 앞에서 言及된 (8)式을 다시 쓰면

$$\dot{C}R_j=\alpha_j\dot{P}_j+\beta_{Lj}\dot{Y}_L+\beta_{Hj}\dot{Y}_H \cdots\cdots\cdots\cdots(8)$$

여기서 $\dot{C}R_j=0$가 되기 위한 必要條件 중의 하나는 (9)式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lpha_j\dot{P}_j=0,\quad \beta_{Lj}\dot{Y}_L+\beta_{Hj}\dot{Y}_H=0 \cdots\cdots\cdots\cdots(9)$$

(9)式에서 $\dot{C}R_j=0$를 만족시키게 되는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과 上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을 各各 $\dot{Y}_L^{\circ}$과 $\dot{Y}_H^{\circ}$로 하면 (9)式은 다음과 같이 다시 表示된다.

$$\beta_{Lj}Y_L^{\circ}+\beta_{Hj}Y_H^{\circ}=0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0)$$

(10)式은 다시 두 階層의 所得增加率의 比와 두 階層의 所得變數 彈力値의 比를 양쪽으로 하는 (11)式이 된다.

$$\frac{\dot{Y}_L^{\circ}}{\dot{Y}_H^{\circ}}=\left|-\frac{\beta_{Hj}}{\beta_{Lj}}\right|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1)$$

(11)式에서 支出不均度가 不變($\dot{C}R=0$)이 되려면 上位階層의 所得增加率에 대한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의 比($\dot{Y}_L^{\circ}/\dot{Y}_H^{\circ}$)가 下位階層의 所得彈力値에 대한 上位階層의 所得彈力値의 比(β_{Hj}/β_{Lj}=편의상 다음부터 β比라 稱함)와 같아야 됨을 示唆하고 있다. 같은 方法으로, $\dot{C}R<0$, 즉, 支出不均度가 減少하는 條件은 (12)式과 같고 $\dot{C}R>0$, 즉, 增加하는 條件은 (13)式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frac{\dot{Y}_L^{-}}{\dot{Y}_H^{-}}>\left|-\frac{\beta_{Hj}}{\beta_{Lj}}\right|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2)$$

$$\frac{\dot{Y}_L^{+}}{\dot{Y}_H^{+}}<\left|-\frac{\beta_{Hj}}{\beta_{Lj}}\right|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3)$$

(11), (12), (13)式은 다시 (14)式으로 요약되어 정리된다.

$$\frac{\dot{Y}_L^{+}}{\dot{Y}_H^{+}}<\frac{\dot{Y}_L^{\circ}}{\dot{Y}_H^{\circ}}=\left|\frac{\beta_{Hj}}{\beta_{Lj}}\right|<\frac{\dot{Y}_L^{-}}{\dot{Y}_H^{-}} \cdots\cdots\cdots(14)$$

(14)式에서 β比(β_{Hj}/β_{Lj})보다 $\dot{Y}_L^{-}/\dot{Y}_H^{-}$(上位階層의 所得增加率에 대한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클 때는 支出不均度(CR)는 減少하고 $\dot{Y}_L^{+}/\dot{Y}_H^{+}$이 β比보다 작을 때는 支出不均度는 增加하게 된다.

Ⅲ. 家計支出分布와 그 集中狀態

本硏究의 對象母集團은 都市勤勞者家計와 農家家計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農家家

---

(4)式을 全微分(total differential)하면

$$dCR=f_P dP+f_{Y_L}dY_L+f_{Y_H}dY_H$$

또는 $dCR=\frac{\partial CR}{\partial P}dP+\frac{\partial CR}{\partial Y_L}dY_L+\frac{\partial CR}{\partial Y_H}dY_H$ ……(7)

그런데 $\alpha=\frac{\partial CR}{\partial P}\cdot\frac{P}{CR}$, $\beta_L=\frac{\partial CR}{\partial Y_L}\cdot\frac{Y_L}{CR}$, $\beta_H=\frac{\partial CR}{\partial Y_H}\cdot\frac{Y_H}{CR}$이므로 (7)式은 다시 (7)′式이 되고 이를 다시 (8)式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frac{dCR}{CR}=\alpha\frac{dP}{P}+\beta_L\frac{dY_L}{Y_L}+\beta_H\frac{dY_H}{Y_H} \cdots\cdots(7)'$$

$$\dot{C}R=\alpha\dot{P}+\beta_L\dot{Y}_L+\beta_H\dot{Y}_H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8)$$

計의 所得水準이나 生活水準을 비교할 때 都市勤勞者 家計와 비교되는 경향에도 기인하지만 自營業者를 포함하는 全都市家口의 階層別 所得이 현재 統計當局에서 公式的으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아 資料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8]. 그리고 家計支出分布의 分析對象이 될 支出項目은 주로 食料品費, 住居費, 光熱費, 衣類費, 敎育費, 기타雜費 등이며 分析期間은 1963年부터 1978年이다.

1. 階層別 生計費支出 分布

〈表 1〉에서 우리나라 家口의 階層別 生計費支出(總消費支出) 分布를 보면 都市勤勞者 家口에서보다는 農家家口에서의 分布狀態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다. 1965年의 都市勤勞者家口의 「지니」集中係數는 0.269이고 農家의 그것은 0.175를 보여 큰 對照를 이루고 있다. 1970年에는 이들 두 部門의 「지니」係數[9]가 어느 정도 改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두 部門間에 큰 차이를 보여 都市勤勞者家口의 「지니」係數는 0.245이고 農家의 그것은 0.163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部門間의 生計費支出分布의 차이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 1977年에는 都市와 農家의 「지니」係數가 各各 0.261과 0.147를 보이고 있다. 「지니」係數보다 集中度를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는 十分位分配率[10]을 보면 都市勤勞者家口에서의 十分位分配率은 1965年과 1978年에 각각 23.0/36.2와 24.6/35.4를 보이고 있어 이 기간에 下位 40% 階層

〈表 1〉 階層別 總消費支出 分布와 그 集中値

		十分位階層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10分位/1分位) 比
		1	2	3	4	5~8	9	10			
都市勤勞者家口(%)	1965	4.1	5.4	6.3	7.2	40.8	15.1	21.1	0.269	23.0/36.2	5.15
	1970	4.5	6.0	6.8	7.6	40.0	13.8	21.3	0.245	24.9/35.1	4.73
	1973	4.7	5.8	6.6	7.4	39.6	14.2	21.7	0.254	24.5/35.9	4.62
	1974	4.6	6.0	6.8	7.7	40.9	14.2	19.8	0.235	25.1/34.0	4.30
	1975	4.5	5.7	6.5	7.3	39.5	14.3	22.2	0.262	24.0/36.5	4.93
	1976	4.9	5.7	6.5	7.2	39.7	14.6	21.4	0.254	24.3/36.0	4.37
	1977	4.5	5.6	6.4	7.2	40.2	14.7	21.4	0.261	23.7/36.1	4.76
	1978	4.8	5.8	6.6	7.4	40.0	14.5	20.9	0.248	24.6/35.4	4.35
農家家口(%)	1965	5.5	6.7	7.4	8.2	42.5	13.6	16.1	0.175	28.3/29.7	2.87
	1970	5.9	7.0	7.8	8.5	41.9	13.2	15.7	0.163	29.1/28.9	2.66
	1973	6.1	7.2	7.9	8.6	42.0	13.0	15.2	0.152	29.8/28.2	2.50
	1974	5.7	6.8	7.6	8.4	41.9	13.5	16.1	0.173	28.5/29.5	2.83
	1975	5.7	6.9	7.7	8.4	42.0	13.4	15.9	0.170	28.6/29.3	2.78
	1976	5.7	6.9	7.7	8.4	42.1	13.4	15.8	0.168	28.8/29.2	2.75
	1977	6.2	7.3	8.0	8.7	41.8	12.9	15.1	0.147	30.1/27.9	2.43

註 : 十分位分配率=下位 40% 階層의 占有率/上位 20% 階層의 占有率.
(10分位/1分位)比=(最上位 10% 階層의 占有率/最下位 10% 階層의 占有率)의 比임.

8) 우리 나라의 家計調査 資料의 問題點에 대해서는 朱鶴中(1979, p.28~30) 참조.
9) 本稿에서의 「지니」係數들은 Kakwani-Podder의 「지니」係數 測定方法을 이용하여 算出하였다.
10) 十分位分配率은 上位 20% 階層의 占有率과 下位 40% 階層의 占有率을 對比한 것으로 「지니」係數에 비하여 구체적이다.

의 占有率이 1.6%「포인트」增加하였고 대신 上位 20% 階層의 占有率은 0.8%「포인트」가 減少하였다.

農家部門에서는 이 十分位分配率이 1965年에 28.3/29.7이던 것이 1977年에는 30.1/27.9로 변동하여 下位 40% 階層의 占有率이 1.8%「포인트」가 增加하여 역시 生計費支出分布가 다소 改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十分位分配率로 본 都市와 農家의 生計費分布 樣相에서 주목되는 것은 分析期間을 통해 都市勤勞者家口에서는 下位 40% 階層의 占有率이 上位 20% 階層의 占有率보다 대체로 10%「포인트」가 낮은 데 반하여 農家에서는 이들 두 階層의 占有率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지니」係數보다 集中度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해 주는 10分位/1分位의 比를 보면 都市勤勞者家口의 最上位 10% 階層이 最下位 10% 階層보다 生計費支出面에서 4~5倍 높은 데 반하여 農家의 경우는 그것이 2~3倍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렇게 볼 때 生計費 分布面에서 都市勤勞者家口의 경우는 階層間 隔差가 基準年에서부터 1978年 期間에 약간 改善되기는 했으나 分布樣相이 좋다고 볼 수 없지만 農家의 경우는 都市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2. 支出項目別 消費支出 分布

〈表 2〉와 〈表 3〉은 각각 農家家口와 都市勤勞者家口에서의 支出項目別 支出分布와 集中度를 要約하여 集計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1965年에서부터 1970年代 초반까지는 대체로 「지니」集中係數(Gini concentration ratio)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이 期間에 分配狀態가 改善되었음을 보여 주었는데 그후 石油波動期인 1974~75年에는 모든 支出項目에서 다시 惡化되는 양상을 보였다. 支出項目別 不均等度의 크기를 比較해 보면 分析期間을 통해 敎育費支出에 대한 不均等度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雜費, 衣類費의 順이며 가장 낮은 項目은 光熱費이다. 食料品費의 「지니」係數는 光熱費에서 보다는 높지만 住居費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表 2〉와 〈表 3〉에서 支出項目別로 農家家計와 都市勤勞者家計의 支出分布狀態를 보면 대체로 農家에서의 支出分布 狀態는 모든 項目에서 都市勤勞者家口에서 보다 相對的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十分位分配率을 보면 더욱 뚜렷한데 食料品費의 경우 農家에서는 下位 40% 階層의 消費占有率이 上位 20% 階層의 그것을 언제나 앞지르고 있는 데 반해 都市勤勞者家計의 경우는 오히려 上位 20% 階層의 消費占有率이 下位 40% 階層의 占有率을 약간 앞지르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1977年에 農家와 都市勤勞者家計의 十分位分配率은 각각 33.1/25.3과 27.4/31.0을 보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타 支出項目에서도 十分位分配率을 比較해 볼 때 農家의 支出分布狀態는 都市勤勞者家口에서보다 相對的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우리 나라의 農家家口와 都市勤勞者家口에서의 支出分布 狀態에서 注目할 것은 그간의 經濟成長으로 農家의 경우는 住居費와 光熱費의 경우에 1960年代 초반에 비해 1970年代 후반까지 이들의 支出分布狀態가 改善되지 못하고 있으며 都市勤勞者家計의 경우는 住居費와 雜費支出項目에서 支出分布 狀態가 改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기타 支出項目에서는 支出分布 狀態가 「오일—

〈表 2〉 農家家口의 支出項目別 支出分布와 集中値

	食料品費 (*FD*)		住居費 (*HO*)		光熱費 (*FL*)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1965	0.128	31.4/26.8	0.194	27.2/30.9	0.098	33.3/25.1
1970	0.120	31.9/26.3	0.097	33.5/25.0	0.109	32.7/25.7
1973	0.097	33.4/25.0	0.168	28.0/29.2	0.083	34.5/24.3
1974	0.106	32.8/25.5	0.240	24.3/29.9	0.111	32.6/25.8
1975	0.110	32.7/25.7	0.226	25.1/32.9	0.101	33.2/25.2
1976	0.102	33.1/25.3	0.199	26.8/31.1	0.095	33.6/24.9
1977	0.103	33.1/25.3	0.143	30.5/27.7	0.103	33.1/25.4

	衣類費 (*CL*)		教育費 (*ED*)		雜費 (*MI*)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1965	0.219	25.6/32.5	0.381	16.6/44.5	0.240	24.3/33.8
1970	0.162	29.2/28.8	0.216	25.7/32.3	0.239	24.4/33.8
1973	0.169	28.7/29.2	0.271	22.5/36.1	0.225	25.1/32.8
1974	0.193	27.2/30.8	0.316	20.0/39.3	0.251	23.7/34.7
1975	0.190	27.4/30.5	0.296	21.1/37.9	0.238	24.4/34.8
1976	0.172	28.5/29.5	0.311	20.3/39.0	0.241	24.3/34.0
1977	0.152	29.8/28.2	0.279	22.0/36.7	0.216	25.8/32.3

註：十分位分配率=下位 40%階層의 占有率/上位 20%階層의 占有率.
住居費에는 自家 및 傳貰評價額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表 3〉 都市勤勞者家口의 支出項目別 支出分布와 集中値

	食料品費 (*FD*)		住居費 (*HO*)		光熱費 (*FL*)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1965	0.214	25.8/32.0	0.268	24.7/37.8	0.210	27.4/31.7
1970	0.199	27.3/31.6	0.318	23.1/41.3	0.149	31.2/29.3
1973	0.201	27.3/31.9	0.226	27.5/35.5	0.197	28.1/32.6
1974	0.203	26.8/31.7	0.193	28.1/31.9	0.174	28.7/30.2
1975	0.205	26.8/31.9	0.350	21.7/44.2	0.178	28.9/30.7
1976	0.187	28.0/31.0	0.267	24.5/37.2	0.183	28.0/31.8
1977	0.194	27.4/31.0	0.289	22.9/39.3	0.180	28.4/30.9
1978	0.186	27.9/30.8	0.273	23.2/37.4	0.163	29.8/29.9

	衣類費 (*CL*)		教育費 (*ED*)		雜費 (*MI*)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1965	0.409	15.1/46.7	0.536	9.1/57.5	0.421	14.7/47.8
1970	0.294	22.0/38.2	0.444	13.4/49.3	0.307	21.3/39.3
1973	0.282	22.7/37.7	0.459	13.5/51.6	0.347	19.2/42.7
1974	0.276	23.1/36.8	0.402	14.5/45.0	0.303	21.1/38.7
1975	0.345	19.9/42.8	0.374	16.8/44.1	0.328	20.4/41.3
1976	0.311	20.8/39.8	0.445	13.3/50.5	0.355	18.6/43.4
1977	0.337	19.2/41.2	0.479	12.5/53.1	0.355	18.8/43.4
1978	0.319	20.4/40.3	0.454	14.1/51.9	0.330	20.1/41.6

註：十分位分配率=下位 40%階層의 占有率/上位 20%階層의 占有率.
住居費에는 自家 및 傳貰評價額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쇼크」期間을 제외하고는 같은 期間에 대체로 改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支出項目에 대한 支出不均度의 變動要因을 보다 구체적으로 分析하기로 한다.

Ⅳ. 家計支出分布의 變動要因

1. 支出不均等 回歸模型 結果

支出不均等의 變動을 分析하기 위해 전술한 支出不均等 回歸方程式(式 5)을 支出項目別로 都市勤勞者家計와 農家家計에 대해서 推定한 結果가 〈表 4〉와 〈表 5〉에 각각 나타나 있다[11]. 먼저 農家家計에 대한 推定結果를 보면 方程式의 決定係數(R^2)는 食料品項目에서 가장 높아 食料品에 대한 支出不均度는 推定된 回歸線에 의해 81%가 설명되고 있는 데 반해 光熱費의 경우는 決定係數가 매우 낮다. 기타 支出項目에서의 決定係數는 대체로 만족스럽다 하겠다. 個別說明變數의 推定된 係數의 有意性은 所得變數에서 대단히 높아 光熱費項을 제외하고는 모든 項目에서 1~5% 水準에서

〈表 4〉 支出不均等方程式의 係數推定値(農家家口)

從屬變數	常數	設明變數의 彈力値			R^2	F (3. 12)
		$\alpha_j \ln P_j$	$\beta_{Lj} \ln Y_L$	$\beta_{Hj} \ln Y_H$		
$\ln CRFD$	3.722	0.553 (1.48)	−1.153 (−2.74)	0.671 (1.57)	0.813	15.98
$\ln CRHO$	−8.169	1.668 (1.91)	−2.474 (−1.82)	2.821 (2.19)	0.500	3.67
$\ln CRFL$	−3.750	0.135 (0.34)	−0.857 (−1.16)	0.919 (1.33)	0.175	0.78
$\ln CRCL$	0.334	0.224 (0.55)	−2.548 (−3.34)	2.275 (3.41)	0.682	7.86
$\ln CRED$	7.814	0.398 (0.86)	−3.939 (−3.43)	3.009 (3.11)	0.615	5.87
$\ln CRMI$	0.116	0.091 (0.16)	−1.825 (−2.99)	1.624 (3.18)	0.535	4.21

註 : 標本期間은 1963~77年. 괄호 안의 數字는 t-값임.

〈表 5〉 支出不均等方程式의 係數推定値(都市勤勞者家口)

從屬變數	常數	設明變數의 彈力値			R^2	F	期間
		$\alpha_j \ln P_j$	$\beta_{Lj} \ln Y_L$	$\beta_{Hj} \ln Y_H$			
$\ln CRFD$	−2.548	0.012(0.02)	−0.832(−1.61)	0.803(1.34)	0.778	F (3, 6) = 7.01	1963~72
$\ln CRHO$	2.447	1.189(1.18)	−3.357(−2.78)	2.936(2.63)	0.647	F (3, 5) = 3.10	1970~78
$\ln CRFL$	−0.069	0.036(0.10)	−0.870(−2.31)	0.658(1.89)	0.433	F (3.10) = 2.54	1965~78
$\ln CRCL$	0.520	0.317(1.77)	−1.518(−8.07)	1.254(7.51)	0.915	F (3.10) = 36.00	1965~78
$\ln CRMI$	−3.626	0.726(1.10)	−0.384(−0.90)	0.571(1.62)	0.483	F (3. 5) = 1.56	1970~78

註 : 괄호 안의 數字는 t-값을 나타냄.

11) 通常의 最小自乘法(OLS, ordinary least square)으로 推定하였음.

有意하게 나타나고 있다. 價格變數에서는 所得變數의 경우와는 달리 有意性이 相對的으로 낮지만 食料品項目과 住居費項目에서는 5%水準에서 有意하다고 하겠다. 所得變數의 높은 有意性과 價格變數의 限定된 有意性 때문에 전체 說明變數를 한데 묶어 이들 變數의 個別係數를 통합적으로 有意性을 檢證한 결과 F값은 光熱費項을 제외하고는 모두 5% 水準에서 有意性을 보이고 있다.

推定된 回歸方程式에서 說明變數의 推定된 符號는 예상한 바와 같이 價格變數(α_j)는 正의 符號, 下位所得階層의 所得變數(β_{Lj})는 負의 符號, 그리고 高所得階層의 符號는 正의 符號를 각각 나타내고 있어 어느 項目에서나 支出不均等度는 그 項目의 相對價格과 上位階層의 所得과는 正의 函數關係에 있고 下位階層의 所得과는 負의 關係에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推定된 係數의 크기를 比較해 보면 住居費支出不均等度에 대한 價格彈力値(α_j)는 상당히 彈力的이며 기타 項目의 그것은 非彈力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支出不均等度에 대한 下位階層의 所得彈力値(β_{Lj})는 光熱費項을 제외하고는 모두 彈力的인데 특히 敎育費支出項目에서 가장 彈力的이며 食料品費項에서는 거의 單位彈力的으로 나타나 注目되고 있다. 한편 支出不均等度에 대한 上位階層의 所得彈力値(β_{Hj})는 食料品費項에서 대단히 非彈力的임을 보여 下位階層의 單位彈力性과 對照를 이루고 있어 下位階層의 所得向上이 相對的으로 전반적인 食料品費의 支出不均等度를 줄이는 데 큰 役割을 하고 있음을 示唆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現象은 衣類費, 敎育費, 雜費項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表 5〉에 나타난 都市勤勞者家計에 대한 支出不均等方程式의 推定結果에 의하면 統計的 有意性이 가장 높은 것은 衣類費項目($CRCL$)이며 기타 項目들도 비교적 有意性은 있다고 하겠다. 推定된 方程式에서 係數의 符號는 역시 $\alpha_j>0$, $\beta_{Lj}<0$, $\beta_{Hj}>0$으로 나와 期待된 것과 같게 나타났다. 推定된 設明變數의 彈力値는 農家에서와 같이 住居費支出項目에서 가장 彈力的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衣類費의 順으로 되어 있다.

2. 支出不均等의 變動要因分析

〈表 6〉은 農家에 대한 支出不均等 變動의 要因別 寄與率을 보여 주고 있다. 分析期間中(1963～77年) 下位階層의 年平均 實質所得增加率은 5.855%(A.2欄)이고 上位階層의 그것은 5.792%(A.3欄)였으며, 年平均 相對價格增加率은 交通費, 食料品費, 雜費의 順으로 높았으며 其他 支出項目의 相對價格은 (A.1)欄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相對的으로 減少하였다. 이러한 變數들 自體의 構造的인 變化에 따라 支出項目別 「지니」係數의 變動率이 (A.4)에 나타나 있다. (C.1)에서 (C.5)까지의 要因別 寄與率을 보면 同期間中 下位階層所得寄與率은 −6.75%이고 上位階層所得寄與率은 3.89%를 보여 결국 이들 兩階層의 構造的인 所得變化가 食料品費 支出不均度를 年平均 −2.87%씩 改善시켜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相對價格의 上昇結果 支出不均度는 年平均 0.37%씩 增加하였으므로 全般的으로 同期間中에 일어난 物價와 所得의 變動으로 食料品費의 支出不均度는 −2.5%씩 改善되게 되었다. 支出項目들 중에서 敎育費의 경우는 같은 期間中 實質敎育費가 相對的으로 크게 增

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實質所得의 向上에 起因하여 敎育費支出不均度는 크게 改善되어 왔다. 注目할 것은 住居費와 光熱費項에서는 同期間中에 일어난 變數들 自體의 構造的 變化로 支出不均度가 改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表 7〉에서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增加率[12]을 보면 1963~72年間에 下位階層(A. 2欄)과 上位階層(A. 3欄)의 所得增加率은 각각 11.5%와 7.9%를 보여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上位階層의 그것을 앞질렀으나 1970~78年間에는 오히려 上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을 크게 앞지르는 現象을 보이고 있어 1965~78年間을 比較해 볼 때 都市勤勞者家口의 下位階層과 上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은 각각 5.2%와 5.7%를 보여 農家의 階層間 所得增加率과 對照를 이루고 있다. 都市勤勞者家計에서의 이런 現象은 1970年代의 高物價 餘波와 産業化過程에서 上位階層이 相對的으로 所得面에서 유리한 立場이 아니었나

〈表 6〉 支出項目別 消費支出不均等 要因과 寄與率(農家家口)

項目 / 要因	食料品費 (FD)	住居費 (HO)	光熱費 (FL)	衣類費 (CL)	敎育費 (ED)	雜費 (MI)
年平均增加率(%)						
(A. 1) $\dot{P}_j$	0.667	−0.317	−1.480	−1.999	4.451	1.993
(A. 2) $\dot{Y}_L$	5.855	5.855	5.855	5.855	5.855	5.855
(A. 3) $\dot{Y}_H$	5.792	5.792	5.792	5.792	5.792	5.792
(A. 4) $\dot{CR}$	−2.568	0.777	0.276	−2.502	−3.054	−0.059
彈力値(elasticity)						
(B. 1) α_j	0.553	1.668	0.135	0.224	0.398	0.091
(B. 2) β_{Lj}	−1.153	−2.474	−0.857	−2.548	−3.939	−1.825
(B. 3) β_{Hj}	0.671	2.821	0.919	2.275	3.009	1.624
支出不均等의 要因別 寄與率(%)						
(C. 1) $\alpha_j\dot{P}_j$	0.369	−0.529	−0.200	−0.447	1.770	0.181
(C. 2) $\beta_{Lj}\dot{Y}_L$	−6.753	−14.484	−5.020	−14.917	−23.062	−10.688
(C. 3) $\beta_{Hj}\dot{Y}_H$	3.888	16.342	5.324	13.179	17.951	9.404
(C. 4) C. 2+C. 3	−2.865	1.858	0.304	−1.738	−5.114	−1.284
(C. 5) C. 1+C. 4	−2.496	1.329	0.104	−2.185	−3.344	−1.103
支出不均等改善指標(ratio)						
(D. 1) β_{Hj}/β_{Lj}	0.582	1.141	1.072	0.893	0.787	0.889
(D. 2) $\dot{Y}_L/\dot{Y}_H$	1.011	1.011	1.011	1.011	1.011	1.011

註 : 1) $\dot{P}_j$, $\dot{Y}_L$, $\dot{Y}_H$, $\dot{CR}$는 各各 相對價格, 下位階層所得, 上位階層所得, 「지니」係數의 增加率임.
(C. 1)=相對價格 寄與率
(C. 2)=下位階層所得 寄與率
(C. 3)=上位階層所得 寄與率
(C. 4)=總所得 寄與率
(C. 5)=總所得과 相對價格 寄與率
2) 年平均增加率은 複利率로 計算하였음.
3) 標本期間은 1963~77年.

12) 本稿에서는 自家 및 傳貰評價額이 포함되지 않은 所得을 사용하였음.

여겨진다. 이러한 變數들 自體의 構造的인 變化에서 都市勤勞者家計의 支出不均等 變動의 要因別寄與率을 〈表 7〉에서 보면 食科品의 경우 1963~72年의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相對的으로 유리하여 不均等度는 同期間中 크게 改善되었다. 住居費와 雜費의 경우는 1970~78年間에 下位階層이 所得增加面에서 相對的으로 불리하여 同期間中 두 階層間의 構造的인 所得變動 樣相에 따라 이들 項目의 支出不均度를 多少 增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衣類費의 경우는 1965~78年間에 두 階層의 所得寄與率(C. 4欄)과 相對價格寄與率(C. 1欄)이 각각 −0. 88%와 −0. 72%를 보여 衣類費支出不均等度를 改善시켜 왔다. 注目할 것은 이러한 過去의 두 階層間의 所得增加率의 趨勢에 따른 所得分配 樣相만으로는 住居費와 雜費支出의 不均衡을 改善시키지 못한 점이다. 한 國家經濟의 成長이나 發展의 目的이 全體國民의 福祉를 增進시키는 데 있다면 家計支出의 階層間不均衡狀態는 가능한 改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앞에서 이러한 家計間의 支出不均度를 改善하기 위한 所得分配의 政策指標인 β比에 대하여 論한 바 있다. 〈表 6〉에서 이러한 β比(β_{Hj}/β_{Lj})는 (D. 1)欄에, 두 階層의 所得增加率의 比는 (D. 2)欄에 各各 나타나 있다. 農家의 食料品費 支出의 경우 分析期間동안의 ($\dot{Y}_L/\dot{Y}_H$)比는 1. 011로서 β比 0. 582보다 높으므로 食品費의 支出不均等度는 改善되어 왔다. 이러한 現象은 衣類費, 敎育費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住居費

〈表 7〉 支出項目別 消費支出不均等要因과 寄與率(都市勤勞者家口)

項目 / 要因	食料品費	住居費	光熱費	衣類費	雜費
標本期間	1963~72	1970~78	1965~78	1965~78	1970~78
年平均增加率(%)					
(A. 1) $\dot{P}_j$	0. 881	−3. 949	−1. 348	−2. 774	−2. 154
(A. 2) $\dot{Y}_L$	11. 552	4. 299	5. 188	5. 188	4. 299
(A. 3) $\dot{Y}_H$	7, 913	7. 778	5. 704	5. 704	7. 778
(A. 4) $\dot{CR}$	−2. 520	1. 262	−0. 847	−1. 553	1. 202
彈力値(elasticity)					
(B. 1) α_j	0. 012	1. 189	0. 036	0. 317	0. 726
(B. 2) β_{Lj}	−0. 832	−3. 357	−0. 870	−1. 518	−0. 384
(B. 3) β_{Hj}	0. 803	2. 936	0. 658	1. 254	0. 571
支出不均等의 要因別 寄與率(%)					
(C. 1) $\alpha_j\dot{P}_j$	0. 011	−4. 695	−0. 049	−0. 879	−1. 564
(C. 2) $\beta_{Lj}\dot{Y}_L$	−9. 611	−14. 432	−4. 514	−7. 875	−1. 651
(C. 3) $\beta_{Hj}\dot{Y}_H$	6. 354	22. 836	3. 753	7. 153	4. 441
(C. 4) C. 2+C. 3	−3. 257	8. 404	−0. 761	−0. 722	2. 790
(C. 5) C. 1+C. 4	−3. 246	3. 709	−0. 810	−1. 601	1. 226
支出不均等改善指標(ratio)					
(D. 1) β_{Hj}/β_{Lj}	0. 965	0. 875	0. 756	0. 826	1. 487
(D. 2) $\dot{Y}_L/\dot{Y}_H$	1. 460	0. 553	0. 910	0. 910	0. 553

註 : (A. 1)~(D. 2)의 符號說明은 〈表 6〉을 참조.

의 경우는 (Y_L/Y_H)比가 β比보다 약간 낮아서 支出不均度는 改善되지 못하고 있다. 〈表 7〉에서 都市勤勞者家計의 衣類費를 보면 分析期間(1965~78年)동안의 $(\dot{Y}_L/\dot{Y}_H)$比 (D. 1欄)는 0.91로서 이 때의 β比(D. 2欄) 0.826을 앞질러서 支出不均等度는 改善되어 왔다. 이러한 現象은 食品費와 光熱費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住居費와 雜費의 경우는 $(\dot{Y}_L/\dot{Y}_H)$比가 β比보다 작기 때문에 不均等度는 1970~78年間에 나빠져 왔다.

이렇게 볼 때 β比는 支出不均等度가 改善되거나 惡化되는 所得分配의 轉換點을 提示해 주는 指標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農家家口의 住居費 支出不均等度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過去보다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相對的으로 높아져야겠으며 都市勤勞者 家計의 경우도 住居費와 雜費 등의 支出不均等度을 줄이기 위해서는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을 過去보다 월등히 높여 최소한 β比가 提示하는 수준에 가까와져야겠다.

V. 要約 및 政策的 意味

本硏究는 1960年代 초반 以後의 高度成長過程을 통해 國民의 生活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所得階層間의 生活隔差 樣相이 어떻게 變遷하여 왔는가를 考察하고자 하는 데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해서 資料利用이 가능한 農家와 都市勤勞者家計를 對象으로 階層別 家計支出의 分布를 推定하였고 그 結果를 動態的으로 分析하고 이들의 變動에 影響을 주는 變數들이 어떻게 作用하는가를 糾明하여 階層間의 支出隔差를 改善할 수 있는 政策的 方向을 模索해 본 實證的인 硏究結果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結論的으로 指摘할 수 있다.

첫째,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의 生計費에 대한 階層間 支出不均等度는 60年代 초반에서 1970年代 초반까지는 대체로 「지니」集中係數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이 期間에 分配狀態가 改善되었음을 보여 주었는데 그후 石油波動期인 1974~75年에는 모든 支出項目에서 다시 惡化되는 樣相을 보였고 1976年부터는 多少 改善되는 趨勢를 보여 왔다. 支出項目別 不均等度의 크기를 보면 分析期間을 통해 敎育費(農家), 雜費, 衣類費의 順으로 높았으며 食料品費와 光熱費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全般的으로 모든 項目에 걸쳐 農家에서의 支出不均等度는 相對的으로 都市勤勞者家口에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物價와 所得側面에서의 家計支出不均等要因을 考察하기 위해 支出不均等函數를 推定한 결과 支出不均等度(Gini係數)에 대한 相對價格의 彈力値는 正(+)의 符號, 下位 60% 階層의 實質所得 彈力値는 負(−)의 符號, 上位 40% 階層의 所得彈力値는 正(+)의 符號를 나타내어 相對價格의 上昇과 上位階層의 所得增加는 家計支出分布를 惡化시키는 役割을 하여 왔고 下位階層의 所得增加는 그것을 改善시키는 役割을 하는 것으로 模型의 係數가 推定되었다,

세째, 이러한 函數關係로부터 推定된 說明變數의 彈力値 크기와 分析期間中에 일어난 이들 變數들 自體의 構造的인 變化에 따라 家計支出不均等度가 影響을 받아 왔는데 分析期間을 통해 農家의 食料品費와 敎育費, 雜費는 相對價格이 引上되어 이들 項目의 支出不均等

狀態를 限定的으로 惡化시켜 왔으며 그러나 所得側面에서 보면 그간의 經濟成長으로 都·農家口의 所得이 꾸준히 增加되어 農家에서는 住居費와 光熱費를 제외하고는 모든 項目에서 支出分布狀態가 改善되어 왔으며, 都市勤勞者家計에서는 住居費와 雜費를 제외하고 역시 改善되어 왔다. 특히 食料品의 支出不均度가 改善된 것은 所得增大의 役割이 커서 每年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의 「지니」係數는 각각 −3.3%와 −2.7%씩 減少되었다.

끝으로 支出分布가 改善되지도 惡化되지도 않는, 다시 말해 「지니」係數의 不變狀態($\dot{CR}=0$)를 만족시켜 주는 下位階層과 上位階層의 適正 所得增加率의 「파라메터」인 β比를 支出不均等函數에 기초하여 各 支出項目別로 推定하였다. 이러한 β比는 農家의 住居費에서 1.14를, 都市勤勞者家計의 住居費와 雜費에서 각각 0.875와 1.49를 보이고 있다. 農家의 경우 過去(1963~77)에 下位階層과 上位階層의 年平均 所得增加率이 각각 5.9%와 5.8%를 보여 $(\dot{Y}_L/\dot{Y}_H)$比는 1.011을 보여 住居費의 β比 1.14에 못미치므로 앞으로는 이 部門의 支出不均度를 改善시키기 위해서는 下位階層의 所得이 上位階層의 所得보다 相對的으로 빠르게 增大되어야 한다.

都市勤勞者家計의 경우는 1970~78年間에 下位階層과 上位階層의 年平均 所得增加率이 각각 4.3%와 7.8%를 보여 두 階層間의 所得增加率의 比$(\dot{Y}_L/\dot{Y}_H)$가 0.553을 보여 住居費의 β比 0.875에 크게 못미치므로 都市勤勞者家計의 住居費의 支出不均等度를 改善하기 위해서는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上位階層보다 대폭적으로 增大되어야 한다.

上述한 分析은 分配問題에 대한 視角을 消費者의 生活水準隔差에 맞추어 봄으로써 國民福祉를 다른 한 側面에서 接近해 본 硏究結果이다. 물론 現實的으로 可用資料의 制約도 있었지만 60年代 초반 이후의 韓國의 家計支出分布狀態를 分析하기 위해 불완전하나마 처음으로 試圖해 본 것이므로 앞으로 보다 더 深度있는 硏究를 期待하며, 支出分配에 관한 硏究에 하나의 始發點이 되었으면 한다.

▷ 參 考 文 獻 ◁

潘性紈, 「農家所得의 決定要因과 所得分配」,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編,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㉚, 1979.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65~78.

_____, 『物價年報』, 1970, 1975, 1979.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63~78.

農協中央會, 『農村物價總覽』, 1979.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㉚, 1979.

_____, 「階層別 所得分布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硏究』, 第1卷 第1號, 韓國開發硏究院, 1979.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硏究』, 第1卷 第2號, 韓國開發硏究院, 1979.

Adelman, I. and Sherman Robison, *Income Distribution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Univ. Press, 1978.

Chiang, A.C.,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onomics*, 2nd ed., Tokyo,

McGraw-Hill Kogakusha Ltd., 1975.

Choo, H.C.,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8.

Chung, Y.I., "Overtime Changes in the Regional and Urban-Rural Income Differences in Korea", Tokyo, Manila, The 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The Council for Asian Manpower Studies, 1975.

Crokett, J. and Irving Friend, "A Complete Set of Consumer Demand Relationships", in Irving Friend and Robert Jones(eds.), *Consumption and Saving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0.

Friedman, M., *Price Theor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76.

Hayami, Y., and Robert W. Herdt, "Market Price Effects of Technological Change on Income Distribution in Semi Subsistence Agricultur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59, No.2, 1977.

Iyengar, N.S., "Distribution of Consumption and Income", *A Survey of Research in Economics*, Bombay, Vol., 1978.

Johnstone, J., *Econometric Methods*, 2nd ed., Tokyo: McGraw-Hill Kogakusha, Ltd., 1977.

Kakwani, N.C. and N. Podder, "Efficient Estimation of the Lorenz Curve and Associated Inequality Measures from Grouped Observations", *Econometrica*, Vol.44, No.1, 1976.

Mizoguchi, T. and C. Saeki, "A Study on Expenditure Distribution-Methodology and its Application to Japanese Case", Paper presented for the CAMS-Hitotsubashi University Seminar, Tokyo: 1978.

Pearson, E.S. and N.L. Johnson, "Tables of Incomplete Beta-Function", London: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Suh, S.M. "The Patterns of Poverty in Korea",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9.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 案內

1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 判 · 122 面 高級洋裝 · 1,200원

2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 判 · 158 面 高級洋裝 · 1,800원

3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紈 著 18 切 判 · 250 面 高級洋裝 · 2,000원

4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 判 · 146 面 高級洋裝 · 3,000원

5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 判 · 318 面 高級洋裝 · 4,000원

6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A.O. Krueger 編 18 切 判 · 254 面 高級洋裝 · 4,000원

7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18 切 判 · 198 面 高級洋裝 · 4,000원

8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 判 · 294 面 高級洋裝 · 4,000원

9 韓國의 外換 · 貿易政策
金光錫 L.E. Westphal 共著 18 切 判 · 336 面 高級洋裝 · 4,000원

10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 236 面 高級洋裝 · 4,000원

11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 判 · 202 面 高級洋裝 · 3,000원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秊 著 18 切 判 · 250 面 高級洋裝 · 3,500원

1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 判 · 508 面 高級洋裝 · 4,000원

14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 492 面 高級洋裝 · 4,000원

15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 342 面 高級洋裝 · 4,000원

1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 判 · 532 面 高級洋裝 · 4,500원

17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 判 · 252 面 高級洋裝 · 3,500원

18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18 切 判 · 370 面 高級洋裝 · 3,500원

19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 判 · 244 面 高級洋裝 · 3,500원

20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 判 · 214 面 高級洋裝 · 3,500원

21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 410 面 高級洋裝 · 4,000원

22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M. Roemer 共著 18 切 判 · 194 面 高級洋裝 · 3,500원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 判 · 306 面 高級洋裝 · 5,000원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 判 · 204 面 高級洋裝 · 3,500원

㉕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166 面 高級洋裝・3,500원

㉖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 判・198 面 高級洋裝・4,000원

㉗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林栽煥 共著 18 切 判・250 面 高級洋裝・4,000원

㉘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 判・180 面 高級洋裝・3,500원

㉙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 判・192 面 高級洋裝・4,000원

㉚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 判・470 面 高級洋裝・5,500원

㉛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 判・410 面 高級洋裝・5,000원

㉜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 判・272 面 高級洋裝・4,500원

㉝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 判・236 面 高級洋裝・4,000원

㉞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E.S. Mills 共著 18 切 判・270 面 高級洋裝・4,500원

㉟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 判・306 面 高級洋裝・5,000원

㊱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 判・272 面 高級洋裝・4,000원

㊲ 保健醫療資源 및 診療生活圈

延河淸 金學泳 共著 18 切 判・336 面 高級洋裝・5,500원

㊳ 韓國의 敎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N.F. McGinn 外 18 切 判・272 面 高級洋裝・4,500원

㊴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田英鶴 譯 18 切 判・256 面 高級洋裝・4,000원

㊵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414 面 高級洋裝・5,000원

㊶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近刊

㊷ 需給構造와 物價政策

李 烘 著 近刊

㊸ ***SOUTH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1910~75***

A. Keidel 著 近刊